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

2009. 10.

한 상 국



## 서 언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기본구조가 형성되었던 조세제도는 그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의 과정 중에 세계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속적으로 세계개혁을 단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일련의 세계개혁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우선 최근에 개혁한 기업소득세제를 보자.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이원적인 기업소득세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내외자기업에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국민대우를 실현하고, 업종별·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등 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증치세 과세유형을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 및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 대형 투자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세계개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를 구축하여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투자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됨에 따라, 본 보고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세계개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중국 조세제도의 대부분을 망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또한 최신의 내용을 많이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정책당국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고 있음에 따라 수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 보고서는 중국조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새로운 내용 및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중국의 国家税务总局 및 財政部の 출판물 및 홈페이지 등의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히 관련 법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전북대학교 한상국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 را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목차

제1편 총론 .....	23
I. 경제 및 사회 환경 .....	23
1. 중국의 사회 환경 .....	23
2. 중국의 최근 경제상황 .....	24
II. 조세체계 .....	28
1. 조세체계의 분류 .....	28
2. 중앙세와 지방세 .....	29
가. 중앙세에 속하는 것 .....	29
나. 지방세에 속하는 것 .....	30
다. 공향세에 속하는 것 .....	30
3. 세구기구 조직 .....	31
4. 조세법의 입법과 정책의 제정 .....	34
가. 조세법의 입법 및 정책 제정 기관 .....	34
나. 조세법의 법원(法源) .....	41
다. 조세법의 입법절차 .....	45
라. 조세입법의 원칙 및 특징 .....	47
III. 세수입 규모 및 추이 .....	49
1. 개혁·개방 이전의 조세수입 추이 .....	49
2. 개혁·개방 이후의 조세수입 추이 .....	50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	53
1. 세수 동향 .....	53
2. 기업소득세 .....	54
3. 소비형 증치세제의 전면적인 시행 .....	54
4.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정책(退稅政策)의 변화 .....	55
5. 이진가격조사 .....	55
6. 기타 조세 .....	56

제2편 소득세제 .....	57
----------------	----

I.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	57
1. 서론 .....	57
2. 납세의무자 .....	59
가. 거주납세의무자 및 비거주납세의무자 .....	59
나. 소득원천지의 판정 .....	61
다. 납세의무의 특수처리 .....	63
3. 과세소득 .....	65
4. 세율(소득별 과세소득과 세액의 계산) .....	72
가. 임금,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72
나.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임대경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73
다. 원고료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73
라. 노무보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73
마.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74
4.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	75
가. 과세표준의 계산 .....	75
나. 매차(매회) 수입의 확정 .....	83

다. 기부금에 관한 규정 .....	85
라. 납부세액의 계산 .....	86
5. 조세우대 .....	89
가. 면세소득항목 .....	89
나. 감면소득항목 .....	92
다. 잠정적 면제소득항목 .....	93
6. 국외소득의 세액공제 .....	95
7. 징수관리 .....	97
가. 징수방식 .....	97
나. 세액의 납부 .....	103
다. 개인소득세 납부 화폐 .....	105
II.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 .....	107
1. 서론 .....	107
2. 납세의무자 및 징세대상 .....	109
가. 거주자기업(居民企业) .....	109
나. 비거주자기업(非居民企业) .....	110
3. 과세소득의 계산 .....	112
가. 수입총액 .....	112
나. 비과세(不征收)수입 .....	115
다. 면세수입 .....	116
라. 각종 공제 .....	118
마. 이월결손금 공제 .....	123
4. 세율 및 납부할 세액 .....	123
가. 세율 .....	123
나.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24
다. 외국세액공제 .....	124
5. 자산의 세무처리 .....	126

가. 고정자산 .....	126
나. 생산성 생물자산 .....	128
다. 무형자산 .....	129
라. 장기선급비용(长期待摊费用) .....	130
마. 재고자산 .....	130
바. 투자자산 .....	131
6. 세수우대(조세특례) .....	131
가. 면세 및 감면 .....	132
나.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한 우대 .....	135
다. 소형영세기업(小型微利企业)에 대한 우대 .....	136
라. 추가공제에 의한 우대 .....	136
마.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	137
바. 가속상각((加速折旧)에 의한 우대 .....	137
사. 납세소득액 계산시 수입에의 차감에 의한 우대 .....	138
아. 세액공제에 의한 우대 .....	138
자. 민족자치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	139
차. 비거주자기업에 대한 우대 .....	139
카. 서부지구에 대한 우대 .....	140
타. 세수우대(조세특례) 과도기간 .....	140
하. 기타 우대 .....	141
7. 원천징수(源泉扣缴) .....	142
가. 정의 .....	142
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액 .....	142
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	143
라. 납세자의 직접 납부 .....	143
마. 세무기관의 추정 .....	144
8. 특별납세조정 .....	144
가. 조정 범위 .....	145

나. 정상가격 계산방법 .....	146
다. 사전합의가격(預約定价) .....	148
라. 자료제출 .....	149
마. 세무기관의 납세소득액 조사결정 .....	150
바. 당기 수입에 계상하는 조세피난처의 거주자기업의 특정 이윤 .....	150
사. 기준초과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과소자본세제) .....	151
아. 비사업적 목적의 안배에 대한 납세조정 .....	152
자. 특별납세조정의 법률책임 .....	152
9. 징수관리 .....	152
가. 납세지점 .....	152
나. 과세연도 .....	154
다. 신고·납부 .....	155
라. 외화표시 소득의 환산 .....	156
<b>Ⅲ. 이전가격세제(转让定价税制) .....</b>	<b>157</b>
1. 입법연혁, 특징 및 법률연원 .....	157
가. 입법연혁 .....	157
나. 특징 .....	159
다. 법률 연원 .....	159
2. 현행 이전가격 과세제도 개요 .....	160
가. 적용대상 .....	161
나.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 .....	162
다. 거래원칙 .....	163
라. 이전가격조사 .....	163
마. 정상가격기준 .....	164
바. 이전가격 조정 방법 .....	165
사. 정상가격 입증의무 .....	167

아. 이전가격 세무조사 .....	168
자. 특수관계기업의 세무관리 .....	169
차.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 .....	170
제3편 소비세제 .....	171
I. 증치세(增值稅) .....	171
1. 서론 .....	171
2. 과세대상 .....	173
가. 재화의 판매(매출) .....	173
나. 재화의 수입 .....	173
다. 가공·수리용역의 제공 .....	173
라.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항목 .....	174
마.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행위 .....	174
3. 납세의무자 .....	175
가. 일반구분 .....	176
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	177
4. 납세의무 발생시기 .....	178
5. 세율 .....	180
6. 납부할 세액 계산 .....	181
가. 매출세액의 계산 .....	181
나. 매입세액의 계산 .....	183
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85
7. 면세제도 .....	186
8. 신고와 납부 .....	187
가. 납세기간 .....	187
나. 납세지 .....	188
다. 징수기관 .....	189

9. 증치세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제도 .....	189
가. 증치세전용계산서의 구입 및 사용 범위 .....	190
나.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발행 범위 .....	191
다. 증치세전용계산서 발행시 요구사항 .....	191
라. 증치세전용계산서 발행시기 .....	192
마. 증치세전용계산서의 구성 .....	192
바. 증치세전용계산서의 전산발급 .....	192
사.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법적 책임 .....	193
10. 증치세 수출환급(出口退稅) 관리 .....	196
가. 현행 免·抵·退稅의 시행 방법 .....	197
나. 수출환급조건 및 수출환급 대상기업 .....	199
다. 수출환급 대상재화 .....	200
라. 免·抵·退의 계산방법 .....	202
마. 免·抵·退稅의 등록신청 및 처리시 필요한 증빙 .....	204
<b>II. 영업세(營業稅) .....</b>	<b>206</b>
1. 서론 .....	206
2. 납세의무자 .....	207
가. 일반납세의무자 .....	207
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형태 .....	208
다. 원천징수의무자(扣繳義務人) .....	208
3. 과세범위(과세거래) .....	209
가. 과세범위 .....	209
나. 영토 내 과세대상 간주 .....	213
다. 혼합판매행위(混合行爲) .....	214
라. 겸영행위(兼營行爲) .....	215
4. 세율 .....	215
5. 납세의무 발생 시기 .....	216

가. 기본규정 .....	216
나. 특수규정 .....	217
6. 납부할 세액의 계산 .....	218
가. 수입금액(营业额) .....	218
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의 영업액 .....	219
7. 구분경리 .....	219
가. 품목별 구분경리 .....	219
나. 조세감면 품목의 구분경리 .....	220
다. 증치세 과세대상과의 구분경리 .....	220
8. 영업세 우대정책(감면세) .....	220
가. 과세개시점(起征点) .....	220
나. 감면세 .....	221
9. 신고와 납부 .....	222
가. 징수기관 .....	222
나. 납세지 .....	222
다. 납부기한 .....	224
<b>III. 소비세(消費税) .....</b>	<b>225</b>
1. 서론 .....	225
2. 납세의무자 .....	226
가. 일반규정 .....	226
나. 특수규정 .....	226
다. 원천징수의무자 .....	226
3. 과대대상 품목 및 세율 .....	227
가.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	227
나. 각종 과세소비를 겸영할 경우의 적용세율 .....	229
다. 주류제품에 대한 적용세율의 확정 .....	229
4. 납세의무 발생시기 .....	230

5. 납부할 세액 계산 .....	231
가. 계산공식 .....	231
나. 판매액의 확정 .....	232
다. 소비세 감면세액·환급세액의 계산 .....	238
6. 감면세 .....	241
가. 비과세 .....	241
나. 면제 .....	241
7. 징수 및 납부 .....	241
가.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	241
나. 납세지 .....	242
다. 납세절차 .....	243
<b>제4편 재산세제</b> .....	<b>245</b>
<b>I.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b> .....	<b>245</b>
1. 서론 .....	245
2. 납세의무자 .....	245
3. 과세대상 .....	246
4. 공제금액의 계산 .....	246
5. 세율 .....	249
6. 납부세액의 산출 .....	249
7. 감면규정 .....	250
가. 면제 .....	250
나. 거주기간에 의한 감면 .....	251
다. 구분계산 .....	251
라. 감면신청 .....	252
8. 평가가격의 적용 .....	252
9. 신고와 납부 .....	253

10. 징수 등 .....	254
<b>II. 방산세(房产税) .....</b>	<b>255</b>
1. 서론 .....	255
2. 납세의무자 .....	255
3.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	256
가. 과세대상 .....	256
나. 과세범위 .....	256
4. 과세표준 .....	256
가. 원가기준 .....	257
나. 임대료기준 .....	257
5. 세율 .....	257
6. 세액계산 .....	257
7. 감면규정 .....	257
8. 납부기한 및 납세지점 .....	258
<b>III. 성시유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 .....</b>	<b>259</b>
1. 서론 .....	259
2. 납세의무자 .....	259
3. 과세표준 .....	260
4. 세율 .....	260
5. 세액계산 .....	260
6. 감면규정 .....	260
7. 신고 및 납부 .....	261
<b>IV. 성진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b>	<b>262</b>
1. 서론 .....	262
2. 납세의무자 .....	262

3. 과세대상 .....	263
4. 과세표준 .....	264
5. 세율 .....	264
6. 세액계산 .....	265
7. 감면규정 .....	265
8. 신고 및 납부 .....	266
<b>V.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税) .....</b>	<b>268</b>
1. 서론 .....	268
2. 납세의무자 .....	268
3. 과세대상 .....	269
4. 과세표준 .....	269
5. 세율 .....	269
6. 세액계산 .....	271
7. 감면규정 .....	271
가. 면제 .....	271
나. 감면 .....	271
8. 신고 및 납부 .....	272
<b>VI. 차선세(车船税) .....</b>	<b>273</b>
1. 서론 .....	273
2. 납세의무자 .....	273
3. 과세대상 .....	274
4. 과세표준 및 세액 .....	274
5. 세액계산 .....	275
6. 감면규정 .....	275
가. 법정면세 .....	275
나. 정기면세 .....	276

7. 신고 및 납부 .....	276
<b>VII.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 .....</b>	<b>278</b>
1. 서론 .....	278
2. 납세의무자 .....	278
3. 과세대상 .....	279
4. 과세표준 .....	279
5. 세율 .....	280
6. 세액계산 .....	280
7. 감면 및 환급 .....	280
8. 신고 및 납부 .....	281
<b>VIII. 기타 주요 세제 .....</b>	<b>283</b>
1. 계세(契稅) .....	283
가. 서론 .....	283
나. 과세대상 .....	284
다. 납세의무자 .....	285
라. 과세표준, 비과세 · 감면 .....	285
마. 세율 .....	286
바. 비과세 및 감면 .....	287
사. 신고 및 납부 .....	288
2. 인화세(印花稅) .....	289
가. 서론 .....	289
나. 과세대상 및 세율 .....	289
다. 납세의무자 .....	292
라.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비과세 · 감면 .....	293
마. 세율 .....	295
바. 세무행정 .....	295

3. 자원세(資源稅) .....	298
가. 서론 .....	299
나. 납세의무자 .....	299
다. 원천징수의무자(扣繳義務人) .....	300
라. 과세대상 .....	300
마. 납부할 세액의 계산 .....	300
바. 납세의무 발생시기 .....	302
사. 비과세 및 감면 .....	303
아. 세액의 납부 .....	303

**제5편 조세 행정법제** ..... 305

**I. 세수징수관리제도** ..... 305

1. 총칙 .....	306
가. 목적 .....	306
나. 적용범위 .....	306
다. 징수권한 .....	307
라. 납세자 .....	307
마. 납세자의 권리 .....	308
2. 세무등기제도 .....	309
가. 세무등기(稅務登記)의 개념 및 종류 .....	309
나. 세무등기의 종류 .....	310
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관리와 사용 .....	317
3. 장부 및 증빙의 관리 .....	320
가. 장부·증빙의 관리 .....	320
나. 영수증관리 .....	327
다. 조세통제관리(稅控管理) .....	330
4. 납세신고제도(納稅申報制度) .....	332

가. 납세신고 개요 .....	332
나. 납세신고의 요구 .....	336
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 .....	337
라. 납세신고방법 .....	339
마. 신고연기(延期申报) .....	342
5. 세액징수제도(稅款徵收制度) .....	344
가. 세액징수의 원칙과 방식 .....	344
나. 납세연기와 감면세 .....	349
다.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 .....	351
라. 체납세액(欠繳稅款)관리제도 .....	355
마. 관련기업(關聯企業)에 대한 세무행정상 관리 .....	359
바. 세액의 추징(追徵)과 반환(退還) .....	362
6. 세무조사(稅務檢查) .....	366
가. 세무조사 양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367
나. 세무조사의 종류·원칙과 방법 .....	371
다. 세무조사의 내용과 절차 .....	376

## II. 세무위법 및 세무처벌 .....

1. 세무처벌(稅務處罰) .....	379
가. 행정처벌 .....	379
나. 형사처벌 .....	394
2. 세무위법 .....	397
가. 세무관리 기본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397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증빙관리위반에 대한 처벌 .....	399
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	400
라. 탈세의 인정 및 그 법적 책임 .....	401
마. 허위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403

바. 체납세액추징 도피에 대한 법적 책임 .....	404
사. 수출세액환급 편취의 법적 책임 .....	406
아. 납세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	407
자. 세액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 .....	410
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	410
카. 세무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	411
과. 영수증 관련 법적 책임 .....	413
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조세징수관리업무협조에 대한 법적 책임 .....	416
하. 행정처벌의 권한 .....	417
거.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에 대한 처벌 .....	418
너. 세무행정처벌의 소급시효(追溯时效) .....	419
더. 「세수징관법실시세칙」상의 조세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 .....	420
러. 증치세전용영수증 관련 법적 책임 .....	421
머. 영수증 관련 법적 책임 .....	426

<b>Ⅲ. 조세구제제도 및 행정배상(行政賠償) .....</b>	<b>430</b>
1. 세무행정재심(税务行政复议) .....	430
가. 세무행정재심의 전제조건(前置条件) .....	431
나. 세무행정재심의 사건접수범위 .....	432
다. 세무행정재심의 관할 .....	435
라. 세무행정재심 참가자 및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436
마. 세무행정재심의 절차 .....	439
2. 세무행정소송 .....	443
가. 세무행정소송의 원칙 .....	444
나. 세무행정소송의 관할 .....	445
다. 세무행정소송의 적용범위 .....	447

라. 세무행정소송 참가자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 .....	448
마. 세무행정소송의 내용과 절차 .....	449
바. 집행과 배상 .....	451
3. 세무행정배상(稅務行政賠償) .....	452
가. 세무행정배상개요 .....	452
나. 세무행정배상의 기본원칙 .....	453
다. 세무행정배상의 구성요건 .....	454
라. 세무행정배상의 범위 .....	455
마.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시효, 절차와 표준 .....	456
 참고문헌 .....	 459

# 표목차

## 제1편

<표 III-1> 중국의 조세수입 추이(1950~1977년) .....	49
<표 III-2> 중국의 조세수입과 GDP 분석(1978~2008년) .....	51

## 제2편

<표 I-1> 임금, 급여소득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	72
<표 I-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임대경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표 .....	73
<표 I-3> 노무보수소득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	74
<표 I-4> 과세소득률표 .....	80

## 제3편

<표 I-1> 증치세 과세대상별 세율표 .....	180
<표 II-1> 영업세의 세율 .....	216
<표 III-1> 과세대상 소비품의 품목별 세율 .....	228
<표 I-1> 토지증치세 세율표 .....	249
<표 IV-1> 성진토지사용세 세율 .....	265
<표 V-1> 경지점용세 세율 .....	270
<표 VI-1> 차선세 세목·세액 기준표 .....	275
<표 VII-1> 차량구치세 징수 범위표 .....	279
<표 VIII-1> 인화세 과세대상 및 세율(세액)표 .....	291
<표 VIII-2> 자원세의 과세대상별 세액표 .....	301



# 제1편 총론

## I. 경제 및 사회 환경

### 1. 중국의 사회 환경

중국의 국토 면적은 960만km<sup>2</sup>로 한반도(22만km<sup>2</sup>)의 44배에 달한다. 동쪽 흑룡강과 우수리강의 합류지점에서 서쪽 파미르고원까지 거리는 5,200km이고, 남쪽南沙群島에서 북쪽 흑룡강의 漠河까지의 거리는 5,500km이다. 중국은 东高西低의 지세를 가지고 있으며, 북서부의 青海, 티벳, 新疆지역 등이 대표적인 고원지대이다.

국토가 광활하고 지형이 다양한 만큼 기후 역시 다양하다.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몬순권에 속하지만, 남부의 해남성은 연평균기온이 24℃인 아열대 기후인 반면에 북부의 흑룡강성은 연평균기온이 4℃인 냉대 기후권에 속하는 등 남북으로 큰 기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서부의 青海, 티벳, 新疆지역과 내몽고 지역은 고산 기후 및 건조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地大物博한 나라로서 자원이 많아서 지구상에 지금까지 알려진 150종 가까운 유용광물이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장량이 확인된 것만 134종에 달한다. 또한 국토가 넓어서 동식물 자원도 풍부하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北京, 天津, 上海, 重庆 등 4개 직할시와 内蒙古, 广西壮族, 宁夏, 西藏, 新疆위구르 등 5개 자치구(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제외) 그리고 22개의 성(台湾省 제외)으로 구성된다. 성급 행정구역 밑에 2,859개의 현급 행정구역이 있다<sup>1)</sup>.

---

1) 통계 관련 부분은 『2009 中国统计摘要』, (国家统计局编, 中国统计出版社)에서 인용하였다. 이하 동일함.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2,802만명이며, 남자가 6억 8,357만명이고 여자가 6억 4,445만명이다. 이 중에서 45.7%는 도시(城镇)지역에서 거주하고, 54.3%는 농촌(乡村)지역에 거주하는데, 농촌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5.08%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14세 이하가 19%, 15~64세가 72.7%, 65세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인구 수는 7억 7,480만명이며, 제1차산업에 39.6%, 제2차산업에 27.2%, 제3차산업에 33.2%가 종사하고 있다.

중국은 汉族 등 57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족이 전 인구의 9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구 100만명을 넘는 소수민족은 壮族, 回族, 苗族, 朝鲜族 등 15개 민족이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말 현재 人民币 기준으로 30조 670억원(人民币;RMB, 이하 元으로 통일해서 사용함)이며, 그 구성비를 보면 제1차산업이 11.3%, 제2차산업이 48.6%, 제3차산업이 40.1%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1979~2008년에는 연평균 9.8%, 1991~2008년에는 연평균 10.3%, 2001~2008년에는 연평균 10.2%의 성장을 시현했다. 중국의 국민총생산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8년 말 현재 기준으로 동부 10개 성 및 시는 54.3%, 중부 6개 성이 19.3%, 서부 12개 성이 17.8%, 동북 3개 성이 8.6%를 나타내어 지역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지형, 기후, 민족 등의 다양성에 더하여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면 중국은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세계 또는 복수의 세계 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 중국의 최근 경제상황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 그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재정정책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공

조체제를 가동하기로 해서, 중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의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은 일련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08년 11월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2008년 11월 5일 국무원에서 4조元(人民币)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국내수요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10개 분야에 4조元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을 투입하며,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중 1조 1,800억元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기부양조치는 향후 2년간(2009~2010년)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조元 중 철도·도로·공항·도시·농촌 전력망 건설에 1조 8천억元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부양자금이 투입되는 10개 분야란 주택, 농촌기반시설을 확대, 운송, 건강 및 교육, 환경, 산업, 재해재건, 소득, 조세 그리고 재정이다.

2009년의 거시정책방향을 보면, 현 단계에서의 중국경제는 주기적 하강, 거시조정과 구조조정, 국제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초에 개최된 중국경제공작회의(中国经济工作会议)에서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로 결정하였다. 재정정책으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본방향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서 국채발행,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 확대, 민생지출 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에서는 향후의 경제성장 둔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근의 재정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정정책이 안정에서 지출 확대로 전환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
  - 13개 항목의 감세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무원에서 2008년 11월 12일 4조元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후속조

- 치로서 2,059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승인하고 확정하였다.
- 24개 지방정부에서 18조원 규모의 공공건설 투자계획 발표했는데,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2008년 12월 24일 국무원에서 ‘7대 수출촉진조치’를 발표 및 확정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일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에 增値稅 환급률 인상,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 축소, 필수적인 핵심기술 및 주요 부품의 수입 확대 등을 확정하였다.
- 중소기업 발전과 창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감면, 신용대출 우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우대 조치와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를 통해 대학생과 귀향 농민공의 창업을 지원한다.
- 고용 및 내수경기 진작
  - 2008년 12월 21일 4대 보험료(의료·실업·상해·육아보험)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 2008년 12월 21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개항의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2008년 12월 24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내수확대조치’를 확정하였다.
  - 2009년 1월 7일 졸업생이 스스로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 발표(확정)하였다.
  - 서민계층을 격려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旧正 직전에 빈곤층에 9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 주택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선수금 비율을 인하하였다.
  - 1가구 2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우대대출을 확대하였다.
- 소비권(消費券) 발행

- 금융위기 이후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청두(成都)에서 시범적으로 소비권 발행(2008. 12)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2009년 1월부터 항저우(杭州), 후베이(湖北), 충칭(重庆)지역에서도 소비권, 관광소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권 발행이 이루어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근의 조세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면세점 인상 논의
  -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국내소비를 촉진하고 또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현재 2,000元인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수의 행정사업 수수료 징수 취소 및 정지
  - 2009년 1월 1일부터 행정관리 수수료, 증명 수수료, 검정 수수료 등의 징수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다.
- 소비형 증치세제를 전국적으로 실시
  - 기업의 투자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국 범위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모든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다.
-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 인상
  - 수출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경감시켜서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8년 하반기에 4차례에 걸쳐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다.
-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의 한시적 감면
  - 개인의 주택 구입시 부담하는 관련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의 생애 최초 보통주택(90㎡ 이하)의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1일부터 계세(契稅)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인화세(印花稅)를 면제하였으며,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를 면제하였다.

## II. 조세체계

### 1. 조세체계의 분류

중국의 현행 조세는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7 가지로 분류된다<sup>2)</sup>.

- (1) 유통세류(流通税类)에는 증치세(增值稅), 소비세(消費稅) 및 영업세(營業稅) 등 세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생산과 유통영역에서의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부과된다.
- (2) 자원세류에는 자원세와 성진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稅: 도시토지사용세) 등 두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자원개발 종사자와 도시토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취득하는 자원의 등급별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
- (3) 소득세류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두 가지 세목이 있다. 기업소득세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연영(联营)기업 및 주식제기업 등의 각종 내자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개인소득세는 생산경영자의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된다.
- (4) 특정목적세류는 성시유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稅),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稅)<sup>3)</sup>,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차량구치세(車輛购置稅)<sup>4)</sup> 등 다섯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특정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

2) 징수관리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工商税类, 关税类 및 农业税类가 있으며, 세수의 지배권한에 따라 분류하면, 中央稅, 地方稅 및 共享稅가 있다.

3) 현재 일시적으로 징수가 정지된 상태에 있다.

4) 2001년 1월 1일부터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車輛购置稅가 징수되고 있다.

- (5) 재산세류는 방산세(房产税) 및 성시방지산세(城市房地产税) 등 두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주로 특정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
- (6) 행위세류는 차선세(车船税), 선박톤세(船舶吨税), 인화세(印花税), 도재세(屠宰税), 연석세(筵席税) 및 계세(契税) 등 일곱 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주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 (7) 농업관련세류는 농업세(农业税), 목업세(牧业税)의 두 가지 세목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연엽세(烟叶税)가 담배잎을 과세대상으로 2006년 4월 28일부터 과세되고 있다.

도재세, 연석세 및 목업세는 징수여부가 각 성(시) 및 자치구 등에 위임되어 있으나 부과 여부는 현지의 상황을 보아서 각 성(시) 및 자치구 등이 결정한다.

외자기업 또는 외국인이 부담하는 세목에는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차선세, 선박톤세, 인화세, 계세, 도재세 등이 있다.

## 2. 중앙세와 지방세<sup>5)</sup>

과세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중국의 조세를 분류하면 중앙세, 지방세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인 공향세(共享税)로 나눌 수 있다.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거시경제조절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목을 중앙세에, 경제발전과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세목을 공향세에, 지방의 징수관리에 적합한 세목을 지방세에 귀속시킨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중앙세에 속하는 것

#### ① 관세

5) 中华人民共和国 财政部 税政司 编, 『中国税收制度』(2004), 企业管理出版社, p. 14.

- ② 소비세(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소비세, 증치세를 포함함)
- ③ 지방은행, 외자은행 및 은행 이외의 금융기구의 기업소득세
- ④ 철도부문, 국가우편,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해양석유천연가스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 ⑤ 선박톤세
- ⑥ 차량구치세

나. 지방세에 속하는 것

- ① 영업세(철도부문, 각 은행의 본점, 각 보험회사가 집중 납부하는 영업세는 제외)
- ② 성진토지사용세
- ③ 잠정 징수 정지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 ④ 성시유호건설세(철도부문, 각 은행 본점, 각 보험회사가 집중 납부하는 부분은 제외)
- ⑤ 방산세
- ⑥ 인화세(주식거래인지세는 제외), 경지점용세, 계세, 토지증치세 등

다. 공향세에 속하는 것

- ① 증치세 :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 ② 자원세 :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에, 기타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 ③ 기업소득세
- ④ 개인소득세
- ⑤ 증권(주식)거래에 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
- ⑥ 자원세 등

### 3. 세구기구 조직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는 [그림 I-1]과 같다.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국 계통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며, 성급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성급 지방세무국을 이중 지도한다. 성 이하 지방세무국은 상급 세무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의 이중 지도를 받으며, 상급세무기관의 수직적 지도가 주된 관리체제이다.

국가세무국의 기구 설치는 네 개의 급으로 나눈다. 즉 국가세무총국,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地级(地区, 市, 区, 盟, 州) 국가세무국, 현(县, 市, 区, 旗) 국가세무국이 있다.

국가세무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세의 징수관리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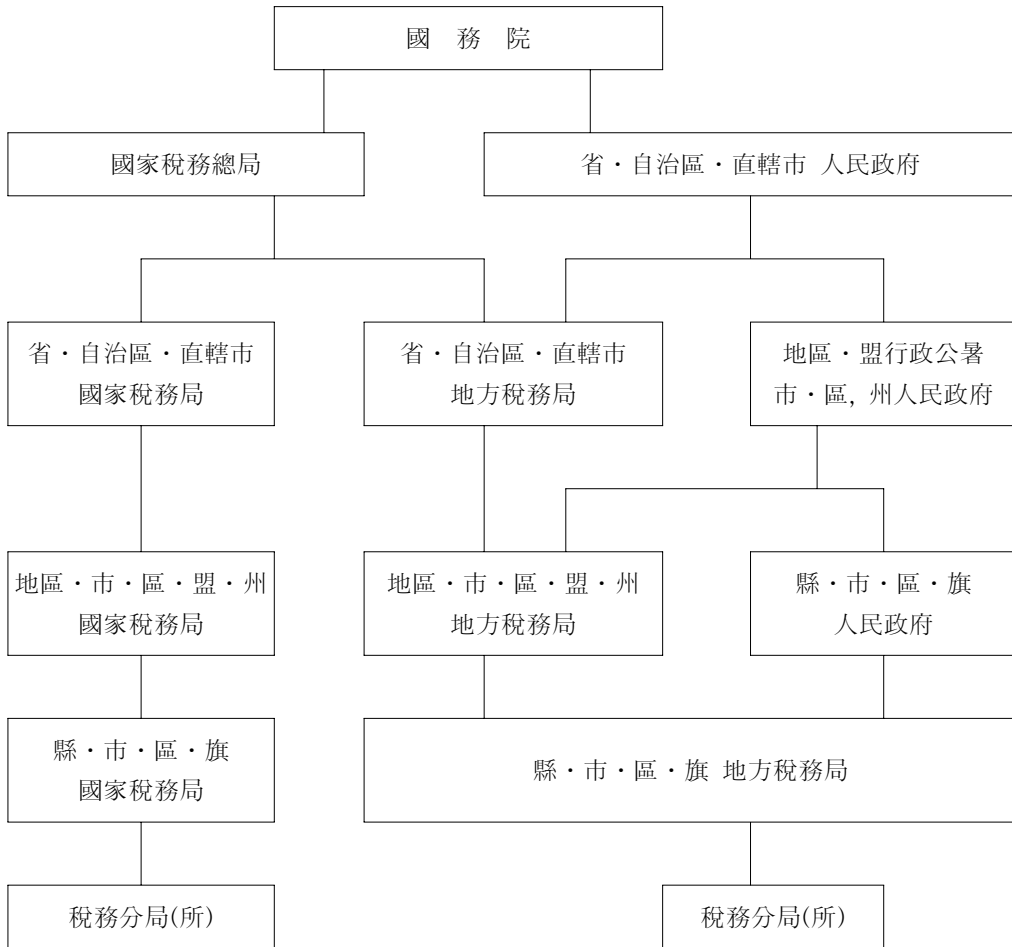
- 증치세
- 소비세
- 수입제품의 소비세 및 증치세(세관에 위탁하여 대리징수함)
- 중앙기업소득세 및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 등기·등록한 기업 및 사업단위의 소득세
- 지방과 외자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업소득세
- 해양석유기업소득세, 자원세
- 증권교역세(징수를 시작하기 전에 증권거래에 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
- 국내(境内; 이하 국내로 통일함)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각종 수입 및 외국인(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각각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납입), 주민의 저축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 수출제품의 세액환급에 대한 관리
- 集贸市场과 개인상공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
- 중앙세의 체납, 보충, 벌금 수입
- 중앙세 및 공향세에 부가징수하는 교육비 부가(철도, 은행 본점, 보험 총회사가 납부하는 부분은 중앙재정에, 기타는 지방재정에 납입)
- 차량구치세

지방세무국의 기구는 행정지역에 따라 설치한다. 성급 지방세무국은 지방인민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이중 지도를 받고, 지방인민정부의 지도를 위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성급 이하 지방세무국은 상급 세무기관과 동급 인민정부가 이중 지도하고 상급 세무기관의 수직 지도를 위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즉 地级(地区, 市, 区, 盟, 州) 지방세무국 및 현(县, 市, 区, 旗) 지방세무국의 기구설치·간부관리·인원편제와 경비지출은 소재지 성급 지방세무국의 수직 관리를 받는다. 국가세무총국이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에 대한 지도는 주로 조세정책, 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조, 국가의 통일된 조세제도, 정책에 대한 감독과 조직 및 경험 교류 등이다. 성급 지방세무국 국장은 지방인민정부가 국가세무총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지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지방세무국은 주로 다음 세금의 징수·관리를 책임진다(국가세무국이 징수하기로 명확히 규정한 지방세 부분과 재정기관이 징수를 책임지는 계세 등 일부 세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영업세
- 개인소득세
- 토지증치세
- 성유호건설세
- 방산세
- 자원세
- 성진토지사용세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2000년에 잠정 징수정지)
- 인지세
- 연석세
- 경지점용세
- 계세
- 지방세의 체납, 보충, 벌금 수입
- 지방영업세에 따라 부가·징수하는 교육비 부가

[그림 1-1]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



자료: 刘佐, 『中国税制概览』(2009年版), 经济科学出版社, 2009. p. 442.

국가세무총국의 수직적인 관리와 성급 인민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이중 지도를 통해서 세제와 조세정책이 법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성급 세무국은 61개, 부성급 도시 세무국이 30개, 地(市·

區·盟·州) 세무국이 1,063개, 현(市·區·旗) 세무국 5,414개, 기층 세무분국(소)이 28,658개가 있다. 전국 세무관련 인원은 86만 1천명이며, 이 중에서 국가세무총국 소속이 46만 1천명, 지방세무국 소속이 39만 9천명이 있다<sup>6)</sup>.

국가세무총국의 조직은 12사 1국 1청<sup>7)</sup>과 11개의 직속사업단위<sup>8)</sup>로 구성된다<sup>9)</sup>.

성급(자치구와 직할시 포함) 지방세무기관에는 지방세무국이 있으며, 7처 1실<sup>10)</sup>로 구성되며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한다.

관세와 선박톤세는 해관총서(海關總署)에서 담당하며, 국무원 직속기관이다.

#### 4. 조세법의 입법과 정책의 제정

##### 가. 조세법의 입법 및 정책 제정 기관

중국에서 법이라고 칭해지는 것에는 국가기관이 그 직권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헌법,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각종 규정·판례 등의 규범성 문서가 있다.

조세 관련 입법과 정책의 제정은 조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제정, 각종 정책의 제정, 인가·보충·수정 및 폐지를 포함한다. 중국의 헌법,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 관련 입법과 정책 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동 상무위원회,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약칭함) 및 동 상무위원회, 국무원 및 재정부,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 그리고 국가세무총국 등이 있다.

6) 刘佐(2009), p. 442.

7) 12司란 政策法规司, 货物和劳务税司, 所得税司, 财产和行为税司, 国际税务司, 收入规划核算司, 纳税服务司, 征管和科技发展司, 大企业税收管理司, 财务管理司, 督察内审司, 人事司를 말한다. 1局이란 稽查局을, 1厅이란 办公厅을 말한다.

8) 직속사업단위란 离退休干部办公室, 教育中心, 机关服务中心, 信息中心, 集中采购中心, 税收科学研究所, 注册税务师管理中心, 中国税务杂志社, 中国税务报社, 中国税务出版社, 扬州税务进修学院을 말한다.

9) 刘佐(2009), p. 4442.

10) 7处 1室이란 税政处, 稽徵管理处, 涉外税收处, 计划会计处, 票证管理处, 人事处, 其他业务处 및 办公室을 말한다.

##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全人大로 약칭함)는 헌법의 개정, 헌법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형사·민사·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2조). 그 법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결의, 결정 등이 있다(‘稅收法律’로 칭해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조세 관련 입법권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인대가 직접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실시에 대한 감독 기능을 통하여 기타 국가기관의 관련 입법 활동을 감독함으로써 입법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세법의 제정이 공민·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사회자원의 배분 및 국가재정수지와 관련되고, 국가의 정치·경제생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가 기본 법률에 속한다. 이와 같은 기본 법률은 전인대에서 제정한다<sup>11)</sup>. 따라서 조세 관련 법률 중 기본적인 전반적인 법률 등은 전인대와 동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예를 들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2007년 말에 폐지됨), 「개인소득세법」 및 「세수징수관리법」 등은 모두 법률의 형식으로 전인대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전인대와 동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세 관련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고 조세법률 체계상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또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여타 기관이 제정한 조세 관련 법규·규칙은 모두 헌법과 전인대와 동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세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상설기관 또는 업무기관으로서 중국

11) 한편 중국의 법률에는 기본 법률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도 조세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고권력기관의 구성부분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자체로 조세입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무원에 조세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즉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전인대 폐회 중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거나 개정한다(헌법 제67조). 그 법형식으로는 법률, 결의, 결정, 조례 등이 있다(‘稅收法律’로 칭해짐).

### 3) 국무원(国务院)

국무원은 곧 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법규<sup>12)</sup>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한다(헌법 제89조). 법 형식으로는 결의, 결정, 명령, 통지, 조례, 규정, 판법(办法) 등이 있다(‘稅收行政法規’로 칭해짐).

국무원 각부·위원회는 법률 및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칙을 공포한다(국무원 조직법 제10조). 법 형식으로는 조례, 규정, 판법(办法), 통령(通令), 명령, 통지, 지시, 실시세칙 등이 있다.

행정법규는 법률형식의 일종으로 중국법률체계상 헌법과 전인대에서 제정한 법률의 하위에 속하고, 지방법규, 부문별 규칙, 지방규칙보다는 상위에 있으며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행정법규의 입법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저촉되는 경우 무효가 된다.

국무원의 조세입법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조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조례 및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공상세제의 개혁과정에서 관련 조세

12) 행정법규란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활동을 지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고 아울러 行政法規制定节次暂行条例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및 외사(外事) 등 각 종류의 법규의 총칭을 말한다(行政法規制定节次暂行条例 第2条).

조례를 제정하고 초안의 형식으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인대의 위임에 의하여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부문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의 기본원칙과 저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잠정규정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할 수 있다.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실천을 통하여 조건이 성숙된 후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할 예정이다.

셋째, 헌법에 의하여 전인대 또는 동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의안은 조세 관련 법률의 초안일 수도 있다.

1984년 전인대는 국무원이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부문의 잠정적 규정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바 있는데, 이것이 국무원이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보장이 급선무로 등장했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법률을 잠정적으로 제정·공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이러한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전인대에서 법률로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입법되는 조세 관련 법률은 대부분이 행정입법(委任立法)이다. 또한 조세 관련 법률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 전문성과 기술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서 행정입법 형식을 통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인 각종 조세 관련 법률(税收行政法规)은 국가법률적 성질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법률체계상 헌법과 전인대에서 제정한 법률의 하위에 속하고, 지방성 법규·부문별 규칙보다는 상위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전인대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국무원은 1994년 1월 1일을 기하여 공상세제개혁(工商税制改革)을 단행하여 여섯 가지 잠정조세(增值税, 营业税, 消费税, 资源税, 土地增值税, 企业所得税) 등을 제정해서 실시하게 되었다<sup>13)</sup>.

#### 4) 재정부(財政部)

재정부는 국가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조세정책 및 국유자본금의 기초업무를 주관하는 거시조절부문이다.

조세 관련 직무로는 조세입법계획을 제출하고, 국가세무총국과 관련 세법 및 조세 관련 조례의 초안을 공동으로 심의한다. 국가예산 안배에 따라 세입계획을 확정하고, 세목의 증감·세율조정·감면세 및 중앙재정에 대하여 영향이 비교적 큰 임시특별 감면세의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과 관련된 조세 및 국제관세 협상에 참여하며, 외국과 조세협약·협정 초안을 체결할 수 있고, 국제조세협약의 협정의 모델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조세부문의 규장(稅收行政規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세무 주관 기관에는 財政部, 國家稅務總局이 있다.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에는 조세 관련 법규, 법규의 구체적 해석, 조세징수관리의 구체적인 규정 및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세부문의 규장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단 이들 법규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상위 법률과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국무원이 위임받아서 제정한 각종 조세관련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권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 있다.

재정부가 공포한 「增值稅 暫定條例 實施細則」, 「消費稅 暫定條例 實施細則」, 「營業稅 暫定條例 實施細則」 및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稅務代理 施行辦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정부가 수시로 공포하는 「○○○○年 ○○月 ○○日 財稅字[○○○○] ○○○號」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通知, 국가세무총국이 수시로 공포하는 「○○○○年 ○○月 ○○日 國稅發[○○○○] ○○○號」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通知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13) 현행 24개의 세목 중에서 法으로 제정된 것이 2개, (暫行)辦法(船舶噸稅)로 제정된 것이 1개이다. 나머지는 모두 (暫行)條例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6개 외에는 1994년 이전 및 그 이후에 제정됨).

### 5) 관세세칙위원회(关税税则委员会)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이 설립한 관세세칙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서 재정부 등 관련 부서 및 위원회의 행정수뇌로 구성된다.

일상 업무는 재정부의 관세세칙위원회 사무실에서 담당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입관세조례’, ‘세관수출입세칙’의 방침·정책·원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관세수정초안과 특별관세 등의 방안을 심의하고, 민족공업제품을 보호하는 관세조치를 제정하고 대외관세 협상에 참여한다.

각종 관세 관련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권은 관세세칙위원회에 있다.

### 6)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세무총국은 국무원에서 국가세무업무를 주관하는 기구이다.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조세법률·법규 및 실시세칙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고(제정된 법규는 ‘税收行政法规’으로 칭해짐), 중앙의 통일된 조세정책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조세업무의 법률·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조세징수관리제도를 제정할 수 있고, 외국 관련 조세정책, 법규의 연구와 대외 협상에 참여하고, 관련 조세협정을 초보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7) 성·직할시·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동 상무위원회

성·직할시·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동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행정구역에 따라 설립한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헌법 제99조 및 제100조와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与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대도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성 법규(地方税收法规)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중국의 입법정책상 전국통일

세법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가 제정한 조세 관련 지방성 법규는 상위 법률인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全人大 및 국무원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의 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전인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조세 관련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sup>14)</sup>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며(헌법 제116조), 기타 성 및 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면, 성·자치구·직할시 및 대도시 인민정부는 헌법·全人大 제정 법률 및 국무원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규장(地方租税规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통일세법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제정한 조세 관련 규장은 반드시 모두 상위의 조세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위임한 권한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상위의 조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상위의 조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위임 없이 지방정부가 조세 관련 규장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은 없으며, 권한을 넘어 제정한 조세 관련 규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국무원이 지방 관련 세법의 잠행조례(城市维护建设税, 房产税 등)을 제정했으며,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현행 조세법률, 법규의 내용 및 조세입법의 실천으로부터 볼 때 현재 주로 조세행정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바, 조세입법권이 비교적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동 상무위원회가 세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한편 중국의 경제 관련 법령에는 잠정(暂行) 또는 시행(试行)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법령이 임시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으로 인해 당해 법령의 수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그 효력의 시간적 제약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14) 단행조례란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제정되는 단행법적인 성격을 지닌 조례이다.

때문이고 둘째, 입법의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아니하였지만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입법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후에 수정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정 또는 시행이라 하여 곧 정식의 입법으로 바뀔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이는 1950년대에 제정된 잠정법규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잠정이든 시행이든 법원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sup>15)</sup>.

#### 나. 조세법의 법원(法源)

중국의 세법은 헌법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통상 전국통일세법의 원칙이라 칭함),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하나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급 국가기구의 조세입법권이 상이함에 따라 제정된 법형식의 등급과 효력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비록 제정된 법형식의 등급과 효력이 상이하다고 하지만 세법은 경제 관련 법규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는 세법은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 및 전인대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무원에서 제정하며, 조세법률(稅收法律)과 행정법규(稅收行政法規, 稅收行政規章)로 구성된다.

중국 세법의 법원(法源)은 국내법인 헌법, 법률, 법규, 규장 등과 국제법인 조세협정, 국제공약 등 국제법을 포함한다<sup>16)</sup>. 이들 법원을 급별로 구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中国法令集(上卷)』, 崔达坤, 郑庆谟 编著(1994). 财团法人 大陆研究所, 1995. pp. 15~16.

16)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으로 헌법, 각종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리고 조세조약이 있고, 불문법원으로 판례법(소수설) 및 관습법이 있다.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의 행정규칙인 예규나 통칙은 법원이 아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에 주의해야 한다.

## 1) 宪法

헌법은 조세법의 법원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법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즉 헌법 제56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조세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법원인데, 즉 헌법상의 각종 원칙적인 규정은 조세입법·사법·집행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이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이 세법의 간접적인 법원으로서의 역할은 여러 방면으로 표현된다.

## 2) 조세법률(稅收法律)

조세법률이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화된 조세문건을 말하며,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 다음이며 조세법의 법원이다.

조세 관련 법률은 중앙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중앙세법체계와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세법체계로 구성된다. 중국은 중앙입법기관인 전인대가 제정하는 기본조세법률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비기본조세법률로 나눌 수 있다. 기본조세법률에는 「개인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 등이 있다. 입법관례에 의하면 현재 입법계획에 들어 있는 「조세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기본조세법률로 될 가능성이 높다. 비기본조세법률에는 「세수징수관리법」 등이 있다. 그 밖에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규범화된 결정·결의도 조세법률의 구성부분이다.

세법의 법원 가운데서 조세법률의 지위가 비록 헌법 다음이지만, 조세법률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직까지 중국의 조세입법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조세행정법규(稅收行政法規)

조세행정법규란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규범화된 조세문건을 말한다. 조세행정법규의 효력은 정식 조세법률보다 낮지만 조세법의 법원이다. 중국 조세행정법규의 형식은 주로 조세조례(暫行條例를 포함), 국무원이 제정한 조세법률의 실시세칙 및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화된 결정과 명령이 있다. 현재 조세행정법규는 중국 조세입법의 주요 형식으로서 1994년에 새로운 세제를 실시한 후 주요 세목인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자원세, 기업소득세, 토지증치세 등은 모두 국무원이 ‘暫行(暫定)條例’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고, 세법체계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모든 세목은 조세법률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 4) 조세행정규장(稅收行政規章)

조세행정규장이란 공무원 조세주관부문이 조세법률·조세행정법규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범화된 문건 및 그 규정이다. 중국의 현행 조세관리체제에 의하면, 공무원 조세주관부문이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을 말한다. 조세행정규장은 조세법률을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많은 부분은 조세법률·조세행정법규에 대한 해석규정들이고 세법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 상황을 보면, 조세행정규장이 세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커서 세법체계의 효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세행정규장의 법률적 효력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의 구성부분이고 세법의 법원에 속한다. 비록 조세행정규장이 우리나라의 예규·통첩에 해당하지만, 세법의 법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난다.

### 5) 지방조세법규(地方稅收法規)

지방조세법규란 중국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자치구·직할시 및 성정부소

재지 도시와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동 상무위원회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화된 조세문건 및 그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실상 중앙집권적인 조세관리 및 입법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소수민족 지역에서 헌법이 확립한 민족구역 자치정책에 따라 지방성 조세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일부 민족지방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전국과는 다른 조세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조세법규란 없다.

## 6) 지방조세규장(地方稅收規章)

지방조세규장이란 성·자치구·직할시 및 성정부소재지 도시와 국무원의 허가를 거친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정부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규범화된 조세문건 및 그 규정을 말한다. 세권(稅權; 과세권)의 구분에 따라 중국의 현행 지방조세규장은 주로 지방성 세목에 대하여 제정한 실시세칙이다.

## 7) 국제조세조약 또는 협정

국제조세조약 또는 협정도 세법의 범원에 속한다. 중국은 전문적인 다자간 조세협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참가한 기타 국제 다자간협정에는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체결한 「관세 및 무역총협정」 중의 조세 및 관세문제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양자간 국제조세조약 또는 조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1월 기준으로 82개의 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세법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적인 효력이 매우 높다. 즉 「세수징수관리법」 제91조에 의하면,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조세조약 및 협정의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내법에 우선함을 밝히고 있다. 향후

경제의 국제화와 중국의 국제경제교류 및 합작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국제조세조약·협정을 근거로 하는 법원도 날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조세법의 입법절차

##### 1) 조세법률의 제정절차

조세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입법의안의 제출, 심의, 표결 통과와 공포 등 네 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세 관련 입법의안은 반드시 유권기관과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일종의 정식 입법절차이다. 조세입법의안은 전인대 개최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고 폐회기간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세법초안은 기타 법률초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두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법률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전인대가 법률의안을 심의할 때 전인대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초안을 심의할 때 상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한다.

##### 2) 조세행정법규의 제정절차

1987년 4월에 제정된 『行政法规制定节次暂定条例』에 의하면, 행정법규는 조례, 규정, 판법으로 나누어진다. 조례(条例)란 특정 분야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전면적·계통적 규정을 정한 것이고, 규정(规定)이란 특정 분야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부분적 규정을 정한 것이며, 판법(办法)이란 특정 사항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정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도 상술한 요

구에 따라 명칭을 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시세칙(實施細則)이 있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하나의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실시세칙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단지 하나의 법률 또는 법규를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무원의 각 부서 및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법규에는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동 조례 제3조). 규정과 판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아니하므로 국무원의 각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도 규정·판법의 명칭을 가지는 법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법규에는 일반적으로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주관부서, 구체적 규범, 상벌방법 및 시행일자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동 조례 제7조).

계획에 포함된 조세행정법규는 재정부가 초고를 담당한다. 조세행정법규의 초안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 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타 주관부문의 업무 또는 기타 부문과 관계가 밀접한 규정은 관련 부문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행정법규초안을 보고할 때 그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초안 작성을 완성한 후에 재정부의 주요 담당자가 서명하고 기타 관련 자료와 함께 국무원의 심사·허가를 받는다. 국무원에 보고한 조세행정법규초안은 국무원 법제사무실이 심사를 담당하고 또한 국무원에 심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행정법규초안은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심사하거나 국무원 총리가 심사·허가한다. 심사 통과된 조세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국무원이 허가하에 재정부에서 공포한다. 공포 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에 등재한다.

### 3) 조세규장의 제정 절차

조세규장은 재정부에서 제정하고, 관련 조세징수관리규장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재정부가 조세규장을 제정할 때 국가세무총국이 참여한다.

조세규장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수요에 의해서 제정한다. 하나는 국가조세법률 또는 조세행정법규에 재정부가 실시세칙 또는 규정을 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세무업무직책과 객관적인 필요에

의해서 조세규장을 제정함으로써 조세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예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세규장은 두 가지 형식으로 공포된다. 즉 중요한 조세규장은 재정부 장관(部长)令의 형식으로 공포되고, 일반 조세규장은 부의 간부(领导)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되며, 재정부의 통지 형식으로 공포된다.

#### 라. 조세입법의 원칙 및 특징

조세입법 원칙이란 조세입법 활동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칙을 말한다.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정부가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및 교훈에서 다음과 같은 조세입법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sup>17)</sup>.

첫째, 실사구시의 원칙이다. 이는 조세입법은 반드시 중국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사회·경제 발전 규율과 세수의 분배 규율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여 조세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발전과 국가 재정의 객관적인 분배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인 결정의 원칙(民主决策原则)이다. 이는 조세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은 반드시 인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인민의 기본적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 지향의 원칙(超前立法原则)이다. 이는 미래 특정 시기의 정치·경제·사회 발전 추세 및 세수 분배 상황을 예측하는 기초 위에서 과학적인 예측수단과 과학적인 입법방법의 운용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에 부합하는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안정의 원칙(连续稳定原则)이다. 이는 조세입법 과정이 조세의 입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일련의 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세법이 일정 기간 동안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조세입법에 양호한 법률환경을 제공해야 한

17) 『中国税收实务全书』金鑫(编), 经济管理出版社, 1995. pp. 849~850.

다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은 다양한 세법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조세입법 과정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할 수 있다<sup>18)</sup>.

첫째, 조세입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조세입법권은 ‘세법의 통일, 과세권의 집중’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조세입법권은 대부분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인대와 동 상무위원회 및 동 상무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무원이다. 개혁·개방이 확대되고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전인대는 해남성(海南省)과 소수민족자치구 등에 지방세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분세제(分稅制)의 시행으로 지방세제도 점차 건립되고 정비될 것이며, 지방의 조세입법권도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조세입법은 위임(授權)입법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중국의 조세법은 입법기관인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개별세법 외에는, 대부분이 경제체제 개혁이 진행중이라는 상황에서 국무원이 전인대 및 동 상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세법은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조세 관련 법률과 국무원이 위임받아서 제정한 조세행정법규를 포함한다.

---

18) 金鑫(编)(1995), 전거서 p. 852.

### Ⅲ. 세수입 규모 및 추이

#### 1. 개혁·개방 이전의 조세수입 추이

건국 초기에서부터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의 중국의 조세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49년부터 1957년까지의 시기이다. 동 시기는 국민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시기로서 새로운 조세제도의 수립 및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동 단계에서는 국민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조세수입도 완만하게 증가해서 1950년의 48.98억 원에서 1957에는 154.89억 원에 이르렀다(<표 Ⅲ-1> 참조).

제2단계는 1958년부터 1977년까지의 시기이다. 대약진운동의 실패, 자연재해 그리고 문화대혁명 등에 의해 조세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후퇴한 시기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1961년과 1968년에는 일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세수입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1970년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조세수입이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70년 이후에는 그 전보다 조세수입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977년에는 468.26억 원에 이르렀다(<표 Ⅲ-1> 참조).

<표 Ⅲ-1> 중국의 조세수입 추이(1950~1977년)

(단위: 억 원)

연도	1950	1955	1957	1960	1961	1965	1968	1970	1975	1977
총세수	48.98	127.45	154.89	203.65	158.76	204.30	191.56	281.20	402.77	468.27

자료: 『新中国50年 财政统计』, 经济科学出版社, 2000. 4.

## 2. 개혁·개방 이후의 조세수입 추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조세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이며, 제2단계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조세수입은 총세수면(절대액 기준)에서 보면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2단계의 증가폭이 제1단계보다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던 1978년의 519.28억원이었던 총세수가 1984년의 947억원에서 利改稅改革의 영향으로 1985년에 이르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하였고, 이 후 7년 후인 1992년에 3,000억원을 돌파한 후 매년 1,000억원 내외가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세계개혁 이후에 중국의 조세수입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1994년 5,127억원, 1996년 6,920억원, 1999년 1조 683억원, 2001년 1조 5,301억원, 2005년 2조 7,779억원, 2007년 4조 5,622억원, 2008년 5조 4,220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시현했다. 1994~2001년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3.6% 성장해서 2001년에 이르러서는 1994년에 비해서 2.8배 증가하였음에 비해 조세수입은 연평균 17.7% 성장해서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세수가 1994년에 비해서 3.7배 증가한 1조 5,301억원에 달하였다. 제2단계 세계개혁의 영향으로 1997년부터는 조세수입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표 III-2> 참조).

〈표 III-2〉 중국의 조세수입과 GDP 분석(1978~2008년)

(단위: 억원, %)

연도	GDP	재정수입	조세수입	조세수입/재정수입	조세수입/GDP
1978	3,645.2	1,132.3	519.3	45.9	14.2
1980	4,545.6	1,159.9	571.7	49.3	12.6
1985	9,016.0	2,004.8	2,040.8	101.8	22.6
1990	18,667.8	2,937.1	2,821.9	96.1	15.1
1995	60,793.7	6,242.2	6,038.0	96.7	9.9
2000	99,124.6	13,395.2	12,581.2	93.9	12.7
2001	109,655.2	16,386.6	15,301.4	93.4	14.0
2002	120,332.7	18,903.6	17,636.5	93.3	14.7
2003	135,822.8	21,715.3	20,017.3	92.2	14.7
2004	159,878.3	26,396.5	24,165.7	91.5	15.1
2005	183,084.8	31,649.3	28,778.5	90.9	15.7
2006	211,923.5	38,760.2	34,804.4	89.8	16.4
2007	257,306.0	51,321.8	45,622.0	88.9	17.7
2008	300,670.0	61,316.9	54,219.6	88.4	18.0

주: 조세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자료: 『中国统计年鉴』(2007), 中国统计出版社, 2003. 9.

『中国财政年鉴』(2007, 中国财政杂志社, 2002. 12.

『中国统计摘要』(2009), 中国统计出版社, 2009. 5.

학계의 일각에서는 세수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이 기간중에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점(GDP 성장률이 1996년까지는 거의 두 자리수임), 정책당국이 적절한 조세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적절한 시기에 세계개혁을 추진한 점 등) 및 지속적으로 세수의 징수를 강화했다는 점 등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sup>19)</sup>. 특히

19) 『当前中国税收政策研究』, 安体富,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00; 『中国经济发展中的税收政策』, 许建国, 中国财政经济出版社, 1998.

1997년부터는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조세정책을 적절히 추진했고, 정책당국이 징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조세수입 증가율은 利改稅改革의 마무리 단계였던 1985년의 115.4%, GDP성장률이 각각 30% 및 35%에 달했던 1993년 및 1994년의 29.1% 및 20.5%를 제외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19%선이라는 상당히 큰 기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II-2> 참조).

조세부담율은 利改稅改革의 마무리 단계였던 1985년에 22.8%를 시현한 것을 제외하면, 1996년까지 점진적인 하향 추세를 보였다(1996년 10.2%). 이는 GDP성장률이 조세수입 증가율을 초과한 결과이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GDP성장률이 둔화되고 조세수입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2년에는 조세부담률이 16.8%에 이르렀다(<표 III-2> 참조).

##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정치 및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목을 개혁하는 등 조세체도를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운영방향을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로 확정하고,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서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업의 투자욕을 고취를 위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生产型 增值税 시스템’을 ‘消费型 增值税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등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조세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세수 동향

2008년도 중국의 총조세수입은 5조 4,21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전년 대비 33.7% 증가하였음에 비하여,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하여 증가 속도가 줄었다. 이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세수입이 증가하였지만, 하반기에는 국제 금융위기로 GDP 증가율 하락, 수출입의 증가율 하락 등 거시경제지표의 하락 및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총조세수입에서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增值税 22.4%, 企业所得税 20.6%, 营业税 14.1%,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增值税와 消费税가 13.6%를 차지하였다.

## 2. 기업소득세

내·외자기업간 차등과세로 인한 기업간 공정경쟁 저해, 외자기업의 편법적 조세부담 회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업소득세제가 시행되었다. 세율이 25%로 통일되었고, 과세소득의 稅前 공제항목이 통일되었고, 기존의 지역 중심의 조세우대제도가 폐지되고 산업 중심의 새로운 조세우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납세조정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기업소득세 수입 인식을 발생주의 및 실질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함을 통지하여 수입 인식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国税函 [2008] 875호).

국가세무총국은 「关于印发 <非居民企业所得税源泉扣缴管理暂行办法> 的通知; 비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정방법(国税发 [2009] 3호)」을 제정·발표하여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 재산양도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함을 통지하였다.

## 3. 소비형 증치세제의 전면적인 시행

그 동안 중국정부는 거시경제의 과열 유발 및 재정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증치세의 유형 전환(생산형 증치세 → 소비형 증치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2004년 7월 1일부터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서 8개 업종(장비제조업, 석유화학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형 증치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중부 6개 성 지역으로 소비형 증치세를 시행하다가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전국 범위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모든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다. 종전에 실시하던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세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의 증치세 환급정책은 취소하였다. 소규모 납세자의 징수율

을 통일적으로 3%로 인하 조정하였다.

#### 4.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정책(退税政策)의 변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증치세는 정치·경제적인 복합요인에 의해서 수출에 따른 환급률이 조정되었다. 2008년 초까지 중국은 무역흑자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성장 방식으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2007년 7월 1일부로 2,821개 품목의 환급률을 인하 및 취소하였고, 2008년 4월 5일부로 가공 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였다. 2009년 2월 1일부터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중국의 경기침체 및 수출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자국의 수출산업 부양을 위하여 취한 조치였다.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6월 8일 일부 노동집약형제품, 기계전자제품, 심가공제품 등 품목의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의 인상을 통지하였다(财税[2009] 88号). 이는 2008년 8월부터 시작해 일곱 번째, 2009년 들어 네 번째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것이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해외수출의 대규모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5. 이전가격조사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주요 규정을 ‘제6장 특별납세조정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세무당국은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만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손실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해서(国税函[2007] 236호) 이전가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09년 1월 8일에는 「关于印发<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的通知;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国税发[2009] 2号)」을 발표해서 동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

하였는데, 동 실시방법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이전가격문서자료, 원가분담약정, 국외피지배회사, 과소자본 및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을 근거로 한 특별세무조정사항의 세무실무 지도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6. 기타 조세

중국 세무당국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때 부과되던 0.1%의 印紙稅를 면제하였다.

2008년 11월 1일부터 개인의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이 처음 구매하는 90㎡ 및 그 이하의 일반 주택은 契稅 세율을 잠시 1%로 인하하며, 개인의 판매 또는 구매 주택은 印花稅를 잠시 면제하며, 개인의 판매 주택은 土地增值稅를 잠시 면제하였다(財稅 [2008] 137호).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감면하였고, 보통 주택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세 과세기준을 변경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었다((財稅 [2008] 174호).

중국 세무당국은 현대화된 기업제도의 건립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제도의 개혁에 대해 契稅를 면제하였다(財稅[2008] 175호).

## 제2편 소득세제

### I.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稅)

#### 1. 서론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임금(工资) 및 급여(薪金), 개인상공업자(个体工商户)의 생산·경영소득 등 개인(자연인)이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세목이다. 소득 종류별로 구분되어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수입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을 제정하였다<sup>20)</sup>.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이다. 동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5차례 수정되었다<sup>21)</sup>.

1998년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정부는 국내산업 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적극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개인의 투자와 소비를 격려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저

20) 이후 국무원은 각각 1986년 1월, 1986년 9월에 각각 「中华人民共和国城乡个体工商户所得税暂行条例」, 「中华人民共和国个人收入调节税暂行条例」를 공포하였다.

21)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제2차 수정하였고,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제3차 수정하였으며,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제4차 수정하였으며,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제5차 수정하였다.

축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였으나<sup>22)</sup>, 현재는 잠정 면제하고 있다.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sup>23)</sup>과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조합기업법」<sup>24)</sup>의 공포 및 실시로 개인이 독자기업과 조합기업(合伙企业)을 점차 많이 설립함에 따라, 국무원(国务院)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정지하고 그 투자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하여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을 참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의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국무원에서 2008년 2월 18일에 수정·공포해서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의 기본생활 지출 또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2005년 10월 27일)에서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 개인소득세법 수정 결정」을 통과시켜서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임금 및 급여소득의 필요경비공제액을 800元에서 1,600元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12월 말의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2,000元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개인소득세법 제8조를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인소득이 국무원(国务院)에서 규정한 액수를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취득하는 임금·급여소득이 있

22)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1999년 8월 30일)에서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을 공포하고 저축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회복하였고, 국무원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징수시작 기간의 제정을 위임하였다. 이에 국무원은 동년 1999년 9월 30일에 「对储蓄存款利息所得征收个人所得税的实施办法」을 공포하고 199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23) 1인의 자연인이 중국 국내에 설립하고, 투자자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며, 투자자가 그 개인의 재산으로 기업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경영실체이다(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제2조).

24) 한국에서는 조합의 개념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업법이란 형태로 규범화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민법통칙」에도 조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조합기업이란 형태를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에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의미에서 조합기업은 법인의 형태만 갖추지 않았을 뿐 그 양상을 비교해보면 일반조합기업은 한국의 합명회사, 유한조합기업은 한국의 합자회사와 비슷하다(김주, 2006. p. 53).

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및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액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자진 납세신고 하도록 하였다.

## 2.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민, 개인상공업자 및 중국에 소득이 있는 외국 국적인,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를 포함한다. 이들은 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상이한 납세의무를 진다.

중국 국내(境内)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가. 거주납세의무자 및 비거주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주소는 없지만 국내에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sup>25)</sup>과는 달리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는 외국인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이 중국 국외소득이 있는

25) 중국 국내에 주소는 없지만 국내에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 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제6년이 되는 해부터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국내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말하며, 5년 중 1년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1년 이하 거주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납세하면 된다. 이는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한 과세연도 중에 중국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sup>27)</sup>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가 중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외국인이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보수도 국외의 고용주가 지불 및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는 외국인이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중국 국내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일수가 90일<sup>28)</sup>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관련하여 국외 고용주가 지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비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26)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개정 전 개인소득세법의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우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예외조치로서 특수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7) 세수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183일.

28) 세수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183일.

29)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개정 전 개인소득세법의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우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예외조치로서 특수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란, 호구(户口), 가정, 경제적 이익관계 등의 이유로 중국 국내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

- “중국 국내”라 함은 중국대륙을 의미하며, 홍콩·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호구”란 한 사람이 특정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국 국민은 국내에 호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납세의무자로 판정된다.
- “경제적 이익관계”라 함은 주로 개인의 주요 재산이 위치한 장소와 경영활동중심의 소재지 등이 중국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이러한 것들이 중국 국내에 존재한다면 당해 납세자는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습관적으로 거주한다” 함은 개인이 교육, 여행 또는 노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에서 체류하다가 그 원인이 소멸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일수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1년 이상 거주”라 함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한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중국 국내에서 365일을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과세연도 내에 임시로 출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임시출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임시출국이란 1회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계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출국을 말한다.

#### 나. 소득원천지의 판정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한 무제한납세의무를 지우고, 비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소득원천지의 판정은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각종 과세대상소득의 원천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임금·급여소득(工资, 薪金所得)  
납세자가 재직 또는 고용된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의 소재지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생산·경영소득(生产, 经营所得)  
납세자가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장소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노무보수소득(劳务报酬所得)  
납세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장소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특허권사용료소득(特许权使用费所得)  
특허권의 사용지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利息, 股息, 红利所得)  
자금을 사용하고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기업·기구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소재지를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 재산임대소득(财产租赁所得)  
임대재산의 사용지를 소득 원천지로 한다.
  
- 재산양도소득(财产转让所得)  
양도한 부동산이 있는 곳 또는 동산을 양도하는 곳을 소득의 원천지로 한다.

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다음 소득은 지불장소가 중국 국내 어디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 재직, 피고용, 계약의 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게 하고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국내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서 취득한 소득
- 각종 특허권을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게 하고서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내의 기업·기구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배당금 및 이익분배금

납세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가 취득한 다음의 소득은 지불장소가 중국 국외에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 국외원천소득으로 한다.

- 재직, 고용, 계약의 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국외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국외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 각종 특허권을 중국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취득하는 소득
- 중국 국외의 기업·기구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

#### 다. 납세의무의 특수처리

##### 1)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나 국내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납세자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는 외국인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이 중국 국외(境外; 이하 국외로 통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중국 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제6년이 되는 해부터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즉 국내의소득 모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1995년 9월 16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또 위에서 서술한 규정을 집행할 때 5년 기간의 계산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통지하였다(财税 [1995] 98号).

① 5년 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중국 국내에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말하며, 5년 중 1년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1년 이하 거주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납세하면 된다. 이는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② 개인이 중국에서 만 5년을 거주한 후의 납세의무에 관한 확정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만 5년을 거주한 후, 제6차 연도부터 이후연도 중에 국내에서 만 1년 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중국 국내·국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단지 해당연도의 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만약 그 개인이 제6차 연도부터 이후의 어떤 납세연도 내에 국내 거주일수가 90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그 거주일수가 만 1년이 되는 연도부터 다시 새롭게 5년 기한을 계산한다.

③ 5년 기한을 계산하는 시작기일

개인이 국내에서 만 5년 동안의 거주 여부는 1994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2)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나 1개 납세연도 중의 중국 국내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미만 거

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납세의무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한 과세연도 중에 중국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가 중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외국인이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보수도 국외의 고용주가 지불 및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는 외국인이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 중국 국내에서 연속해서 또는 누계하여 거주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관련하여 국외 고용주가 지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비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 3. 과세소득

현행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제도(分项税制)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소득을 확정할 때 분류 및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제2조 및 동 실시세칙은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득 항목을 다음과 같이 11개의 항목으로 분류 및 열거하고 있다.

#### 1) 임금·급여소득(工资, 薪金所得)<sup>30)</sup>

임금·급여소득은 비교적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인이 재직 또는 피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임금, 급여, 상여금(奖金), 연말 보너스(年终加薪), 노동배당(劳动分红; 성과급), 성과급(津贴), 实费补偿金(补贴) 및 재직 또는 피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말한다. 이 중에서 연말 보너스 및 노동배당은 일률적

30)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임금(工资)이라 하고, 관리·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급여(薪金所得)라 한다.

으로 임금·급여소득으로 과세한다.

임금·급여 성격에 속하지 않는 보조금, 수당차액 또는 납세자 본인의 임금·급여소득 항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은 과세하지 아니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인 자녀 보조금(独生子女补贴)
- 공무원 기본급여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보조금, 수당차액과 가족구성원의 부식보조비
- 탁아 보조비
- 출장수당, 식대보조비

## 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个体工商户的生产·经营所得)

개인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취득한 생산·경영수입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개인상공업자가 취득한 자신의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기타 각종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구분해서 징수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은 다음과 같다.

- 개인상공업자가 공업, 수공업, 건축업, 교통운송업, 상업, 음식업, 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업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 개인이 정부 관련 부문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상 서비스활동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 개인이 개인상공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기타 소득
- 위의 개인상공업자와 개인이 취득한 생산·경영과 관련된 각종 소득

조합기업법(合伙企业法)과 개인독자기업법(个人独资企业法)의 공포 및 실시로 인해 개인이 조합기업과 개인독자기업을 점차 많이 설립함에 따라, 이들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00년 6월 20일에 「国务院关于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征收所得税问题的通知」 국무원의 개인독자

기업 및 조합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다. 동 통지는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개인의 기업 설립을 지지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정지하고 투자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하여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을 참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결정하였다. 동 통지는 국가재정부문에서 구체적인 조세정책과 과세방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국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0년 9월 19일에 「关于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投资者征收所得税问题的规定, 财税[2000] 9号; 개인독자기업 및 조합기업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2000년 1월 1일부터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의 투자자의 생산·경영소득을 모두 개인소득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개인독자기업법」과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조합기업법」에 따라 등기하고 설립한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
-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条例; 사영기업조례」에 따라 등기하고 설립한 독자 및 조합 성격의 사영기업
-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 변호사법」에 따라 등기하고 설립한 조합기업성 변호사사무소
- 정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고 무한책임과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기타 개인독자 및 개인조합기업 성격의 기구 또는 조직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수입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3년 7월에 「关于规范个人投资者个人所得税征收管理的通知, 财税[2003] 158号; 개인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동 통지에 의하면,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가족구성원 및 관련 인원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 기업

의 생산·경영과 무관한 소비성 지출과 자동차·주택의 구입 등 재산성 지출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윤배분으로 보아 투자자 개인의 생산·경영 소득에 산입하고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 3)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对企业事业单位的承包经营·承租经营所得)

이는 개인의 도급경영(수탁경영)·임차경영 및 하청(转包)·전대(转租)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이 도급·임차경영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회 취득한 임금·급여 성격의 소득을 포함한다.

### 4) 노무보수소득(劳务报酬所得)

이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계·디자인(装潢)·설치(安装)·제도·화학실험(化验)·테스트(测试)·의료·법률·회계·자문(谘询)·강연(讲学)·뉴스(新闻)·방송(广播)·번역·원고심사(审稿)·서화·조각·영화·녹음·녹화·공연(演出)·광고·전시·기술서비스·소개서비스(介绍服务)·중개서비스(经纪服务) 및 기타 노무에 종사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sup>31)</sup>.

### 5) 원고료소득(稿酬所得)

이는 개인이 작품을 도서, 간행물의 형식으로 출판·발표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31) 노무·보수소득과 임금·급여소득은 양자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노무·보수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비고용의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임이고, 임금·급여소득은 기관·단체·학교·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 재직·고용되어 수령하는 보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말한다. 작품이라 함은 문학작품, 서화작품, 사진작품 및 기타 작품을 말한다. 작가가 작곡한 후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작원고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원고료소득은 비교적 높은 지식에 의하여 창작되는 정신적인 산물이어서 엄밀히 말할 때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범주에 속하여야 하나, 현행 세법은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소득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고료소득이 지적활동(정신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이 과세소득항목의 납세자를 조세정책상 일정하게 우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 6) 특허권사용료소득(特许权使用费所得)

이는 개인이 특허권(专利权),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专利权技术) 및 기타 특허권(其他特许权)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에는 원고료소득(稿酬所得)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자본이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은 모두 특허권사용료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 7)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利息, 股息<sup>32)</sup>, 红利所得<sup>33)</sup>)

이는 개인이 채권·주권을 소유하면서 취득하는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이 저축기구에 저축해서 취득하는 예금이자소득과 개인이 각종 기업의 채권을 구매하면서 취득하는 이자소득 및 개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이자 및 주식배당소득 등을 포함한다.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股息, 红利)은 개인이 株券을 소유하여 취득한 주식이자 와 배당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3년 7월에 「关于规范个人投资者个人所得

32) 주식이자(股息)는 주주가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로 상장회사(上市公司)로부터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 즉 주식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므로 股息이라고 부른다.

33) 배당소득(红利所得)은 상장회사가 주식이익을 배분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이익을 말한다.

税征收管理的通知, 财税[2003] 158号; 개인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는데, 동 통지에 의하면 개인이 취득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수입도 ‘이자·이익배당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인독자기업·조합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가족구성원 및 관련 인원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 기업의 생산·경영과 무관한 소비성지출 및 자동차·주택 등 재산성 지출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익배당 배분으로 보아서 ‘이자·주식이자 및 이익배당소득’ 항목에 산입하고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 납세연도 내에 개인투자자가 투자기업(개인독자기업 및 조합기업은 제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경영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이자, 주식이자 및 이익배당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 8) 재산임대소득(财产租赁所得)

이는 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机器设备),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 9) 재산양도소득(财产转让所得)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 주식,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 잠정적으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 10) 우연(우발)소득(偶然所得)

이는 개인이 상금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기타 우연하게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 11) 국무원 재정주관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기타 소득(经国务院财政部门确定征收的所其他得)

이는 위의 십여 가지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해야 할 기타의 개인소득은 국무원 재정부문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결정한다. 경제 발전에 따라 개인의 수입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출현 가능성이 있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본 과세항목을 두고 있다. 본 과세항목을 됴으로써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기타 소득’의 항목에 따라 과세하는 주요 수입은 다음과 같다.

- 80세 이상의 중국과학원 院士가 ‘蔡冠深中国科学院院士荣誉基金会(蔡冠深 중국과학원 院士 영예기금회)’로부터 취득하는 영예상금
- 은행부문이 국가가 규정한 이자율과 가치보장보조율(保值贴补率)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불하는 저축유인 장려금(揽储奖金)
- 재직단위가 관련 보험비용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하는 무배상금 우대수입(无赔款优待收入)
- 주주가 증권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리베이트)수입(回扣收入)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은행의 同期 저금이자율로 보험 기간 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생명보험가입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및 유사한 수입
- 단위와 부문이 연말 총결산·각종 축전 및 업무거래 등의 활동에서 기타 단위와 부문의 관련 인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실물과 유가증권 등

#### 4. 세율(소득별 과세소득과 세액의 계산)

분류세제의 정책적 목적에 부응하고 개인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또한 공평 경쟁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각자의 과세표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초과누진세율의 채택으로 개인수입을 조절하고,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례세율은 계산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에도 유리하다.

세법이 규정한 각종 과세표준 항목의 구체적인 적용세율은 <표 I-1>과 같다.

##### 가. 임금,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임금, 급여소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5~45%이다.

<표 I-1> 임금, 급여소득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단위: %, 元)

	월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	500元 이하	5	0
2	500元 초과 ~ 2,000元	10	25
3	2,000元 초과 ~ 5,000元	15	125
4	5,000元 초과 ~ 20,000元	20	375
5	20,000元 초과 ~ 40,000元	25	1,375
6	40,000元 초과 ~ 60,000元	30	3,375
7	60,000元 초과 ~ 80,000元	35	6,375
8	80,000元 초과 ~ 100,000元	40	10,375
9	100,000元 초과	45	15,375

#### 나.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임대경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 및 사업단위의 도급경영·임대경영소득에 대해서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표 1-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임대경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표

(단위: %, 元)

	납세연도 과세소득액	세율	누진공제액
1	5,000元 이하	5	0
2	5,000元 초과 ~ 10,000	10	250
3	10,000元 초과 ~ 30,000	20	1,250
4	30,000元 초과 ~ 50,000	30	4,250
5	50,000元 초과	35	6,750

#### 다. 원고료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원고료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이며, 납부할 세액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실제 세율은 14%이다.

#### 라. 노무보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노무보수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고, 납부할 세액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실제 세율은 14%이다.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노무보수소득이 1차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라 함은 개인이 1차에 취득한 노무보수의 소득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

다. 납세소득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까지의 부분은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에 다시 납부할 세액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므로 노무보수소득은 실제 20%, 30%, 40%의 세 가지 초과누진세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표 1-3〉 노무보수소득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단위: %, 원)

	매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	20,000원 이하	20	0
2	20,000원 초과 ~ 50,000원	30	2,000
3	50,000원 초과	40	7,000

마.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2007년 8월 15일부터 거주자의 저축이자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도급(임차)경영의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분배방식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청부인 및 임대차인의 도급 또는 임차경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세율도 다르다. 국가세무총국은 1994년 8월 1일에 발표한 「关于个人对企业事业单位实行承包经营, 承租经营取得所得征税问题的通知」; 개인이 기업사업단위에 대해서 도급경영·임차경영을 해서 취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 규정에 의하면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 수급인 및 임차인이 기업경영 성과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않고, 단지 계약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득은 임금, 급여소

특항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5~45%의 9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 수급인 및 임차인이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단지 도급인(발주자) 또는 임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 후 기업경영 성과가 귀속되는 모든 수급인 및 임차인이 취득한 소득은 기업 및 사업체의 도급경영, 임차경영에 대한 소득항목에 따라서 5~35%의 5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 4.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서로 다른 과세표준 항목의 비용공제기준과 매회 수입을 잘 파악해야 한다.

##### 가.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취득한 수익에서 동 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필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법은 각각의 과세항목에 대하여 정액 및 정률의 두 가지 비용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각 과세항목의 과세표준의 확정근거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임금·급여소득

임금·급여소득은 납세자가 매월 취득한 수입액에서 2,000원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금·급여소득의 비용공제 기준을 매달 2,000원으로 확정된 것은 납세자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비용 지출을 감안한 것이며, 이로써 다수의 저수입자가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다. 동시에 매달 수입 2,000원 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정책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납세자의 세부담을 세제개혁 전후에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 전문가를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인과 외국에서 일하는 중국인의 실제 수입수준과 소비수준을 감안하여 개인소득세법 제6조는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중국 국내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와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고 중국 국외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평균 수입수준, 생활수준 및 환율 변화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비용을 확정할 수 있고 추가공제비용의 범위와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 인원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매월 임금·급여소득에 2,000元의 비용을 공제한 후 다시 2,800元을 공제한다(매월 임금에서 4,800元을 공제한다).

- ① 중국 국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일하고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외국인
- ② 초빙을 받아 중국 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외국인 전문가
- ③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으나 중국 국외에서 재직 또는 고용되어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 ④ 공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이 확정된 기타 인원

그 밖에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임금·급여소득의 공제기준은 상술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 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수입총액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경영 및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각종 수입을 말한다. 이는 상품판매수입, 영업수입, 노

무서비스수입, 공사대금수입, 재산임대 또는 양도수입, 이자수입, 기타 업무수입과 영업외 수입을 포함한다. 개인상공업자의 각종 수입은 권리의무발생주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원가·비용이라 함은 납세자가 생산·경영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각종 직접지출과 원가에 산입되는 간접비용 및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지출과 원가에 산입되는 간접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경영과정에서 실제로 소모하는 각종 원재료, 보조재료, 부품, 외부구입한 반제품, 연료, 동력, 포장물 등 직접재료와 발생한 상품매입원가,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물세, 전기세, 출장비, 임대료(금융리스는 제외), 저가소모품 등과 생산·경영인원에 지불한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판매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제품, 자가제조한 반제품을 판매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위탁대리판매 수수료, 광고비, 전시비, 판매서비스비용 및 기타 판매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경영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노동보험비, 자문비, 소송비, 감사비, 토지사용비, 저가소모품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개업비상각, 회수할 수 없는 대금(대손), 업무준대비, 납부한 세금 및 기타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무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경영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이자순지출, 환금순손실, 금융기관 수수료 및 모금 중의 기타 재무비용 등을 포함한다.

손실이란 납세자가 생산·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영업외 지출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고정자산 실사손실, 폐기·훼손 및 판매한 순손실, 자연재해 또는 의외사고손실, 공익구제성기부, 배상금, 위약금 등을 포함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의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 ① 개인상공업자에 대한 비용공제기준 및 종업원의 임금공제기준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 내지 동일한 지역의 다른 업종 간의 임금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이러한 기준을 각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

에 위임하여 확정하게 한다.

- ②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기간의 차입금 이자지출은 합법적인 증명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같은 유형, 同期의 대부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③ 2004년 1월 1일부터 농촌세금개혁 시범기간에 농업특산세를 취소하고 농업세를 감면한 후 개인상공업자 또는 개인이 재배업, 양식업, 사육업, 어업을 전문 경영할 경우 그 경영 항목이 농업세(농업특산세를 포함. 이하 같음), 목축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한다면 그가 취득한 '네 가지 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잠정 징수하지 않는다. 농업세, 목축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네 가지 업종을 겸영하고 네 가지 업종의 소득을 단독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업종의 생산·경영소득과 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네 가지 업종의 소득을 단독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 전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 ④ 개인상공업자와 개인이 합자하여 취득한 이윤은 이자, 주식이자, 보통주배당금소득의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⑤ 개인상공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개인이 취득한 것이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각종 과세소득은 각 과세항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 ⑥ 개인상공업자의 연간 경영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손은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다음 연도의 경영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보충함에 부족할 경우 해마다 연속하여 보충할 수 있으나 최장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부 개인상공업자가 자체 계산능력이 부족하여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법 실시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과세표준

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그 과세표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의 소득계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보자.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에 대하여 장부조사과세를 실시할 경우, 그 생산·경영소득은 전체적으로 「个体工商户个人所得税纪税办法(试行); 개인상공업자 개인소득세 과세방법(시행)」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다만 일부 항목의 공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① 투자자의 비용공제기준(공제표준)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이 개인소득세법의 ‘임금·급여소득’ 항목의 비용공제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투자자의 임금은 税前에 공제할 수 없다.
- ② 기업 종업인원의 임금지출은 기준(표준)에 따라 세전공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이 기업소득세 과세임금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 ③ 투자자 및 그 가족이 쓴 생활비용은 세전에 공제할 수 없다. 투자자 및 그 가족이 쓴 생활비용이 기업생산·경영비와 혼동되어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든 비용은 투자자 개인 및 그 가정에서 쓴 생활비용으로 보아 세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업의 생산·경영과 투자자 및 그 가정생활에 공용되는 고정자산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의 생산·경영유형과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전에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용의 금액 또는 비례를 확정한다.
- ⑤ 기업이 실제 발생한 노동조합경비, 직원복지비, 직원교육 경비는 각각 과세 임금총액의 2%, 14%, 2.5%의 기준 내에서 실제 발생액 대로 공제한다.
- ⑥ 기업이 매 과세연도에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선전비용은 당해 연도의 매출수입(영업수입)의 2% 이내에서 증빙에 의해 공제된다. 초과분은 이후 연도로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
- ⑦ 기업의 매 납세연도에 발생한 생산·경영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집대

비는 다음의 규정된 비율 내에서 실제 발생액 대로 공제할 수 있다. 즉 연간 매출(영업)수입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매출(영업)수입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연간 매출(영업)수입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의 5%와 초과금액의 3%를 더한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⑧ 기업이 적립한 적립금(자본에 계상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둘째, 인정과세 방법을 보자. 확정징수를 실시하는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은 정액징수, 과세소득률 확정징수(인정세율에 의한 징수) 및 기타 합리적인 징수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확정징수방식을 채택할 경우 과세소득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과세소득} \times \text{적용세율}$$

$$\text{과세소득} = \text{수입총액} \times \text{과세소득률}$$

$$\text{또는} = \text{원가비용지출액} \div [1 - \text{과세소득률}] \times \text{과세소득률}$$

각각 다른 업종의 과세소득률은 <표 I-4>와 같다.

<표 I-4> 과세소득률표

(단위: %)

업 종	과세소득률
공업, 교통운송업, 상업	5~20
건축업, 부동산개발업	7~20
음식서비스업	7~25
오락업	20~40
기타 업종	10~30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그 주된 경영항목에 따라 과세 소득률을 확정한다.

### 3)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서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이란 납세자가 도급경영·임차경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경영이윤과 임금 급여성격의 소득을 말한다. 필요비용이란 매달 2,000元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동 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 ① 도급·임차경영을 실시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매 납세연도에 취득한 도급·임차경영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 및 납부해야 하지만, 하나의 납세연도 내에 도급·임차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도급·임차경영의 월수를 하나의 납세연도로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표준} = \text{당해 연도의 도급·임차경영수입액} - (1,600 \times \text{당해 연도의 실제 도급·임차경영 월수})$$

- ② 기업이 도급·임차경영을 실시한 후 완벽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그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稅收徵收管理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징수 방식을 확정한다.

### 4) 노무보수소득·원고료소득·특허권 사용료소득과 재산임대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과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800元을 공제하고, 4,000元을 초과할 경우 20%의 비용을 공제하며,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보수소득과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수입액을 확정할 때 개인이 기술양도에 종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산임대소득의 수입액을 확정할 때 규정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외에 유효하고 정확한 증빙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지불한 수선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수선 비용은 매회 800元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공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다음번 수입에서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다.

### 5) 재산양도소득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을 양도한 수입액에서 재산의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원가란 다음을 가리킨다.

- ① 유가증권 : 매입가 및 매입할 때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련 비용
- ② 건축물 : 건설비 또는 구입가격 및 기타 관련 비용
- ③ 토지사용권 :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지불한 금액과 토지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
- ④ 기계설비·차량과 선박 : 구입가격, 운송비용, 설치비 및 기타 관련 비용
- ⑤ 기타 재산은 상술한 방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납세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재산원가증빙을 제공하지 않아 재산의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재산의 취득원가를 확정한다.

여기에서의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채권양도시 공제해야 할 재산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법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구입한 같은 종류의 채권의 매입가와 매입과정에서 납부한 세금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구입한 당해 유형의 채권의 수량의 합을 나누고 다시 납세자가 판매한 당해 유형의 채권의 수량을 곱한 후 당해 유형의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과 비용을 더한 것이다.

#### 6)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우연소득과 기타소득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우연소득과 기타소득은 매번 수입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나. 매차(매회) 수입의 확정

각종 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지않은 항목에서 ‘매차(매회) 수입(每次收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매회 수입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매 항목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관건이 된다.

개인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7가지 소득에 대하여는 공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공제비용은 매회 과세표준의 대소에 의거하기 때문에 정액과 정률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일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납세자가 매회 수입의 개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1조는 각종 소득의 매회 수입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노무·보수소득

노무·보수소득이 1회성 수입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취득한 것을 1회(차)로 하고, 동일 항목의 연속적인 수입에 속하는 경우에는 한달 내에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 2) 원고료소득

원고료소득은 매번 출판·발표하여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① 개인이 매번 도서, 신문, 간행물의 방식으로 동일 작품을 출판·발표할 경우 출판단위가 원고료를 사전지불하든지 아니면 할부로 지불하든지, 또는 당해 작품을 추가인쇄한 후 다시 원고료를 지불하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그 원고료수입을 합하여 1회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과세해야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곳에서 출판·발표하거나 동일 작품을 재판하면서 취득하는 원고료수입은 각 곳에서 취득한 수입 또는 재판수입을 각각 구분하여 매번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 ③ 개인의 동일 작품을 신문·간행물에 연속 게재할 경우 연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원고료수입을 합하여 1회로 보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④ 연재한 후 다시 책을 내면서 원고료수입을 취득하거나 또는 먼저 책을 낸 후 다시 연재하면서 원고료수입을 취득할 경우 재판(再版) 원고료로 보아 매번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3) 특허권사용료소득

한 항목의 사용권을 1회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납세자는 하나의 특허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사용권도 남에게 제공하고 사

용료를 받을 수 있다.

#### 4) 재산임대소득

재산임대소득은 매달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 5)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은 이자·주식이자·배당을 지불할 때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 6) 우연소득

우연소득은 매번 취득한 당해 수입을 1회로 한다.

#### 7)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매번 취득한 당해 수입을 1회로 한다.

#### 다. 기부금에 관한 규정

개인의 수입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개인이 교육 및 기타 사회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는 상황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개인의 이러한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법 제6조는 개인이 그 소득으로 교육과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부분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무원은 이에 의하여 기부 및 그 공제와 관련하여 한층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부는 반드시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 국내의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어야 한다. 수증대상은 반드시 교육과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심

각한 자연재해를 받은 지역, 빈곤지역이어야 한다. 기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또 세법과 세법 실시조례의 규정을 기초로 일련의 기부를 장려하는 소득세우대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 라. 납부세액의 계산

일반적으로 매 항목 수입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다시 당해 항목 수입의 과세표준에서 적용세율을 곱하면 당해 항목 수입의 납부세액이 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그러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그 계산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속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확하고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세율표의 내재적 관계에 의하여 누진공제액을 도출해 냈다. 누진공제액은 일반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세율표상에 표시되어 있다. 속산법을 사용한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각종 소득의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1) 임금·급여소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 &= (\text{매월 수입액} - 2,000\text{元 또는 } 4,800\text{元})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end{aligned}$$

## 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 &= (\text{연간수입총액} - \text{원가} \cdot \text{비용 및 손실})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end{aligned}$$

## 3)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 &= (\text{납세연도 수입총액} - \text{필요비용})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end{aligned}$$

## 4) 노무·보수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매회 수입액} - 800元) \times 20\% \end{aligned}$$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매회 수입액} \times (1 - 20\%) \times 20\% \end{aligned}$$

③ 매회 수입의 과세소득이 20,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 &= \text{매회 수입액} \times (1 - 20\%)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누진공제액} \end{aligned}$$

## 5) 원고료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times (1 - 30\%) \\ &= (\text{매회 수입액} - 800\text{元}) \times 20\% \times (1 - 30\%) \end{aligned}$$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times (1 - 30\%) \\ &= \text{매회 수입액} \times (1 - 20\%) \times 20\% \times (1 - 30\%) \end{aligned}$$

### 6) 특허권 사용료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매회 수입액} - 800\text{元}) \times 20\% \end{aligned}$$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매회 수입액} \times (1 - 20\%) \times 20\% \end{aligned}$$

### 7) 재산임대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text{과세표준} = \text{매회(매월) 수입액} - \text{관련비용} - 800\text{元}$$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과세표준} = [\text{매회(매월) 수입액} - \text{관련비용}] \times (1 - 20\%)$$

### 8) 이자·주식이자·배당소득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매회 수입액} \times 20\%$$

### 9) 자산양도소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수입총액} - \text{자산원가} - \text{관련 비용}) \times 20\% \end{aligned}$$

### 10) 우연소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매회 수입액} \times 20\% \end{aligned}$$

### 11) 기타소득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 \text{매회 수입액} \times 20\% \end{aligned}$$

## 5. 조세우대

현행 개인소득세법과 실시조례 및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규정 등으로 납세자가 특정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과 특정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일련의 면세 및 감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 가. 면세소득항목

- (1)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军 이상 부대단위, 외국 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교육·기술·문화·위생·체육·환경 보호분야에 대한 상금

이와 같은 각종 상금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상금을 지급하는 단위는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인민해방군 군 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상금은 반드시 세법이 열거한 7개 분야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2) 국채와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국채이자란 중국 재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보유하여 취득하는 이자소득이다.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란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발행한 금융채권을 개인이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소득을 말한다.

(3)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补贴)과 수당(津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 특수수당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보조금과 수당을 말한다. 중국과학원 원사(院士)수당 및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院士)수당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복지비(福利费), 위로금(抚恤金), 구제금(救济金)

복지비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적립한 복지비 또는 노동조합 경비 중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을 말한다. 동 보조금은 반드시 일부 특정 사건 또는 이유로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일정한 정도의 곤란이 발생한 경우에 재직하는 단위에서 지불하는 임시적인 생활곤란 보조금이다.

단위가 개인에게 지불하는 다음의 보조금은 면세되는 복지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납세자의 임금, 급여수입에 산입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국가가 규정한 비례나 기수(基数)를 초과하여 남겨둔 복지비, 노동조합경비 중에서 개인에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

- 복지비와 노동조합경비 가운데서 본 단위의 모든 직원에게 지불하는 보조금
- 개인이 자동차, 주택, 컴퓨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위가 지불하는 임시적인 생활곤란 보조성격에 속하지 않는 지출

위로금이란 개인이 공적인 일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의외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구제금이란 국가 각급 민정부문이 개인에 지급하는 생활곤란보조금을 말한다.

(5) 보험배상금(保险赔款)

개인의 각종 재해,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6) 군인의 전직비(转业费), 제대비(复员费)

중국 군인이 전직, 제대시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부문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수령하는 전업비 또는 제대비를 말한다.

(7)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간부, 직원에게 발급하는 정착비(安家费), 퇴직금(退职费), 퇴직임금(退休工资), 이직임금(离休工资), 이직생활보조비(离休生活补助费)

(8)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위에서 서술한 소득은 「中华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领事特权与豁免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소득이다.

(9) 중국 정부가 참가한 국제공약 및 체결한 협약 중에 면세로 규정된 소득

(10) 국무원 재정부문이 허가한 면세소득

#### 나. 감면소득항목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허가를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국가세무총국은 1999년 5월에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이 개인소득세 감세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임금·급여소득,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과 특허권사용료소득 등 6가지 소득에 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자연재해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중국의 사회보험제도가 아직까지 완비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감면의 폭과 기한에 대하여는 각 성 및 자치구와 직할시 인민정부에 위임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의 이러한 위임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상응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3) 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감면을 허가하는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예상 밖의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된다.

2003년에 전국적으로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발생하자 동 기간 동안에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关于调整部分行业在“非典”疫情期间税收政策的紧急通知; SARS 발생 기간 중의 일부 직종의 세금을 조정하는 정책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표해서 일부 직종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감면한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 다. 잠정적 면제소득항목

다음의 소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개인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 (1) 개인이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고발·협조함으로써 취득하는 포상금
- (2) 개인이 원천징수세액 수속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원천징수수수료
- (3) 외국 국적의 개인이 비현금 형식(非現金形式) 또는 실비지급 형식(实报实销形式)으로 취득한 주택보조금(住房补贴), 급식보조금(伙食补贴), 이사비(搬迁费), 세탁비
- (4) 외국 국적의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취득한 국내·외의 출장보조금
- (5) 외국 국적의 개인이 취득한 친지방문비, 언어훈련비 및 자녀교육비 등
- (6) 개인이 5년 이상 자기가 거주한 유일한 가정생활용 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소득

- (7) 이직 및 퇴직(离·退休) 연령에 도달하였지만 업무수요로 인하여 이직 및 퇴직연령을 적절히 연장해야 하는 고급전문가(국가가 지급하는 정부특수수당을 받는 전문가 및 학자를 가리킴)가 이직 및 퇴직연장기간에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은 퇴직·이직임금(离·退休工资)으로 간주해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sup>34</sup>).
- (8) 외국 국적의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이자, 배당소득
- (9) 다음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의 전문가가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① 세계은행전문대부금협약(世界银行专项贷款协议)에 의하여 세계은행이 직접 중국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외국 전문가
  - ② UN(联合国)에서 직접 중국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전문가
  - ③ UN원조항목(联合国援助项目)을 위하여 중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 ④ 원조국이 중국에 파견하여 전문적으로 그 나라의 무상원조항목을 위하여 근무하는 전문가
  - ⑤ 양국 정부가 체결한 문화교류항목(文化交流项目)에 의하여 중국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문화교육전문가의 임금·급여소득을 해당되는 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 ⑥ 중국 대학국제교류항목(大专院校国际交流项目)에 의하여 중국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문화교육전문가의 임금·급여소득을 해당되는 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 ⑦ 민간과학연구협정(民间科研协定)을 통해 중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임금·급여소득을 해당되는 나라의 정부기구가 부담하는 경우
- (10) 주식분산개혁(股权分置改革) 중 비유통주의 주주가 대가방식으로 유통주

---

34) 国发 [1983] 141号 및 国办发 [1991] 40号 참조.

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권 및 현금 등에 대하여는 유통주 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 (11) 강제적으로 이주당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표준 이사보상비(拆迁补偿款)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12) 개인이 취득하는 영수증 즉권복권 당첨상금은 800元까지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800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3) 2006년 6월 1일부터 보험판매원(保险营销员)의 수수료 중 판매비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수수료 중의 노무보수부분은 실제 납부한 영업세 및 부가비용을 공제하고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보험판매원의 수수료는 판매비와 노무보수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수수료의 60%를 판매비로 본다.
- (14) 제2회 고등교육의 명사장학금(名师奖学金)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6. 국외소득의 세액공제

국가간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双重征税)를 피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은 납세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 세수관할권(税收管辖权)을 행사할 때 그 소득이 국외에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이한 상황으로 나눠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제7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률에 의거,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은 국내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

- (1)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그 소득의 원천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고 실제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 (2) 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상이한 국가 또는 지역과 상이한 과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중국 세법 규정의 비용공제표준(費用減除標準)과 적용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 내의 상이한 과세항목이 중국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중국 국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차액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본 납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이후 납세연도의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의 잔액 중에서 추가공제(補扣)할 수 있으며, 추가공제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의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는 국외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完稅憑證)의 원본(原件)을 제공해야 한다.
- (4) 공제한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합리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세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지만 국내의 거주일수가 만 1년이 되는 개인이 중국 국내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7. 징수관리

### 가. 징수방식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분류세제를 채택하고 있고 개인소득세를 실시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국민의 납세의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 및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제8조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두 개 이상의 곳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자진신고납부(自行申报纳税)

자진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법 규정의 납부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취득한 과세소득 항목과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세수징수관리법과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세무총국은 「个人所得税自行申报纳税暂行方法; 개인소득세법 자진신고납부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1995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고 공포하였다. 동 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신고방식과 신고장소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1) 자진신고납세의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개인소득세법 자진신고납부 잠정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는 반드시 직접 세무기관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득이 12만원 이상인 경우

- ② 국내의 두 곳 또는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 ③ 국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 ④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⑤ 공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연간소득이 12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에 「个人所得税纳税申报表; 개인소득세납세신고표」를 기입해서 납세신고서에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신분증 및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2) 자진신고납세의 납부기한

자진신고납세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간소득이 12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해야 한다.
- ② 개인상공업자 및 개인독자·파트너십기업 투자자가 취득하는 생산·경영소득의 납부세액으로 월별로 선납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월 종료된 후 7일 내에 납세신고를 한다. 분기별 예납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 분기가 종료된 후 7일 내에 납세신고를 한다.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납세자는 3개월 내에 종합정산하여 납부(汇算清缴)한다.
- ③ 납세자가 연말에 1회성 도급경영·임차경영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입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하나의 납세연도 이내에 도급경영·임차경영 소득을 여러 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소득을 취한 후의 7일 이내에 선납하고, 연말 마감한 후의 3개월 이내에 종합정산하여 납부한다.
- ④ 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 30일 내에 중국 국내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⑤ 이상의 규정 외에는 납세자는 기타 각종 과세소득을 취득한 다음 달 7일 이

내에 세무기관에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⑥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어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稅收徵收管理法 제27조 및 동 실시세책 제37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 (3) 자진신고납세의 신고방식

납세자는 数据电文·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또는 주관 세무기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 방식으로 신고납세하는 경우에는 발송지의 소인일자가 실제 신고일자가 된다.

납세자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 또는 타인에게 위탁해서 납세신고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법정휴일일 경우에는 휴일의 익일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납세자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납세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 (4) 자진신고납세의 신고장소

- ① 납세자가 신고납세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수입원천지의 주관 세무기관이다.
- ②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그 중 한 곳의 세무기관을 선택·고정하여 신고납세한다.
- ③ 국내에 재직·고용 단위가 없고, 연간 소득항목 중 개인공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의 실제 경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④ 국내에 재직·고용 단위가 없고, 연간 소득항목 중 생산·경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중국 국내에 호적이 있으

나 호적 소재지와 중국 국내 일상적인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의 세무기관을 선택·고정하여 신고납세한다. 중국 국내에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일상적인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⑤ 기타 소득 납세자의 납세신고장소는 별도로 규정한다.

## 2)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代扣代缴) 대리공제 대리납부)

원천징수는 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이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불할 때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동시에 개인소득세신고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방법은 세원의 근원을 통제하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소득세법 및 동 실시조례 그리고 세수징수관리법 및 동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个人所得税代扣代缴暂行方法;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잠정방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잠정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 범위,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담당해야 할 책임, 원천징수기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1)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기업(회사), 사업단위, 기관, 사단조직, 군대, 중국 주재 기구, 개별 사업자 등 단위 또는 개인은 모두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여기에서의 중국 주재 기구는 외국의 주중국영사관·대사관 그리고 유엔 및 기타 법에 의하여 외교특권과 면제를 가지는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기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술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2) 원천징수의 범위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① 임금, 급여소득
- ②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 ③ 노무보수소득
- ④ 원고료소득
- ⑤ 특허권사용료소득
- ⑥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 ⑦ 재산임대소득
- ⑧ 재산양도소득
- ⑨ 우연소득
- ⑩ 공무원 재정부문을 거쳐 세금의 징수를 확정하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소득(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포함함)을 지급할 때 납세자가 본 단위의 직원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할 개인소득세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라는 것은 현금지급, 환어음(匯撥)지급, 대체지급(轉帳支付)과 유가증권, 실물,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 (3)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에게 세법에 열거한 각종 과세소득을 지불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든 실물 또는 유가증권을 지급하든, 그리고 지불방식 또는 납세자가 본 단위의 인원에 속하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모두 소득의 지불과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전문적인 세금처리인원을 지정하여 세금처리인원

이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작업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세금처리 인원은 과세소득을 지불하는 재무회계 인원일 수도 있고 기타 부서의 인원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처리인원을 확정하거나 또는 세금처리인원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명단을 주관 세무기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로 다른 부문이 과세소득을 지불할 경우 세무처리인원에 보고하여 총계하게 해야 한다. 법적 책임의 부담면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대표(또는 단위의 주요 담당자), 재무회계부문의 담당자 및 원천징수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관련 인원은 원천징수의무의 합법적인 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반드시 납세자에게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원천징수세액증빙을 발급하고 납세자의 이름, 단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번호(상술한 증거서류가 없을 경우 신분을 유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증거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등 개인상황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임금·급여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인원 수가 많아 원천징수세액증빙을 일일이 발급하기 불편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원천징수세액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했음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완납 근거를 필요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을 요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증빙을 적극적으로 신청·수령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비공식 원천징수증빙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때 납세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때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과세소득의 지불을 잠정 정지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稅收征收管理法**」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원천징수의

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 장부를 작성하여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扣繳个人所得税报告表;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를 받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수한 곤란이 있어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县级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연기신고할 수 있다.

#### (4) 원천징수 수수료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에 따라 2%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비용지출 및 원천징수업무를 잘 처리한 세무처리인원을 독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계산할 때 세무기관이 조사하여 발견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보충징수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나. 세액의 납부

각 과세소득 항목의 각각 특징에 의하여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세 가지 세액징수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건별계산징수(按次计徵), 월별계산징수(按月计徵), 연도별계산징수(按年计徵)가 있다.

건별계산징수를 하는 경우는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우이다.

월별계산징수를 하는 경우는 임금·급여소득의 경우이다. 그러나 채굴업, 원양

운송업과 원양어업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수준이 계절·기후와 생산량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한해 중에 다만 몇 개월의 임금만이 기산점에 도달하고 기타 대부분 달의 수입은 매우 낮다. 세부담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국무원은 세법의 위임하에 상술한 세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급여소득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로 예납하는 방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연봉제 기업의 수입배분 특징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조건에 부합되어 연봉제를 실시하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는 평소에는 월별 예납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연도별 징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 투자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이 있다. 납세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하는 소득도 연도별로 세액을 정산·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수입이 제때에 균형 있게 국고에 납입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법, 세법 실시조례 및 관련 조세정책은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자진신고납세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모두 다음달 7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 ② 채굴업, 원양운송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급여소득은 월별 예납하고 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임금·급여소득을 합계하고 다시 12개월로 평균하여 전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보충(多退少补)한다.
- ③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 예납하며 납세자가 다음달 7일 이내에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납부하며 多退少补한다.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 투자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하며 투자자가 매달 또는 매 분기가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완납하고 多退少补한다.
- ④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연도별

로 계산하고 납세자가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다. 납세자가 1년 이내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도급 경영, 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할 경우 매번 소득을 취득한 후의 7일 이내에 예납해야 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완납해야 하며 多退少补한다.

- ⑤ 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중국 국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세연도에 따라 이미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했을 경우, 소득 원천지국의 납세연도가 종료되고 세액을 결산·완납한 후의 30일 이내에 중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소득을 취득할 때 세액을 결산·완납했거나 또는 국외에서 소득 원천지국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중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이 규정한 상술한 기한에 따라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기한의 마지막 1일이 법정휴일일 경우 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의 마감일로 한다.

그 밖에 납세자가 특수한 곤란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국의 허가를 거쳐 세액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 다. 개인소득세 납부 화폐

중국에서 세금을 계산 납부함에 있어서 인민폐(人民币)를 단위로 하고, 개인소득세의 비용공제액 및 과세표준 모두 인민폐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법 제10조는 “각종 소득의 계산은 인민폐를 단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외환일 경우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규정한 공시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환율에 따라 어떻게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건별·월별·분기별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액을 예납할 경우 및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해야 할 세액을 계산·납부할 경우 모두 세금완납증빙(完稅凭证)을 작성 발급한 이전 달 마지막 1일에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이 공포한 공시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 ② 소득이 외환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연도 중에 세액을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에 정산·납부할 경우, 월별 또는 건별로 세액을 예납한 외환소득은 다시 환산하지 않고, 세액을 보충해야 하는 소득부분은 이전 납세연도 마지막 1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공시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 II.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

### 1. 서론

중국의 현행 기업소득세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정치 및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 관련 세제를 개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기업소득세제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의 중국의 대외경제 관계는 극히 제한적이였다. 따라서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조세가 부과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8년 말부터 국내경제 활성화정책과 대외경제 개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1980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세제(「中外合资经营企业所得税法; 중외합자경영업기업소득세법」, 「外国企业所得税法; 외국기업소득세법」)를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이후 10여년간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이 세제를 시행해오던 중에 경제환경이 변하고 특히 외자기업 유치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자 그 동안 시행해오던 세제의 적지않은 부분이 현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与外国企业所得税法;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이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과거의 「中外合资经营企业所得税法」과 「外国企业所得税法」을 통합·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外商投资企业 및 外国企业(외자기업으로 간칭함)이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단일과세체제 아래에 있게 되었고, 따라서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체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도입·시행되어 왔던 内资企业所得税制는 기업 소유 형태에 따라 国营企业所得税, 国营企业调节税, 集体企业所得税, 私营企业所得税 및 城乡个体工商户所得税 등이 각각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자기업소득세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또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내자기업소득세제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무원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잠정조례」를 제정·공포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혁의 주요 목표는 국가와 기업간의 분배관계를 조정하고 규범화해서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을 실현하는 것인데, 당시 개혁은 주로 내자기업소득세의 통일에 중점을 두었다. 즉 공평한 세부담을 통한 경쟁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원칙 아래 旧制의 国营企业所得税, 国营企业调节税, 集体企业所得税 및 私营企业所得税를 통합했다. 과세대상은 내자기업이며, 세율은 旧税制의 최고 세율보다 하향 조정된 33%의 비례세이며, 특히 외자기업소득세의 세율과 일치시켰다<sup>35)</sup>. 또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했다. 「企业所得税暂行条例; 기업소득세잠정조례」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国营企业所得税, 国营企业调节税, 集体企业所得税 및 私营企业所得税의 관련 법규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기업소득세제는 외자기업소득세 및 내자기업소득세라는 이원적인 구조를 유지해 오다가 2007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5차 회의에서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일한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 및 外国企业 所得税法」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에서 공포하여 시행된 「中华人民共和国 企业所得税暂行条例」는 동시에 폐지되고 중국의 기업소득세제는 일원화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기존의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 및 外国企业 所得税法」과 「中华人民共和国 企业所得税暂行条例」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총 8장

35) 중국정부는 内外资企业所得税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통합해서 内外资의 구분이 없는 통일된 企业所得税制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1월 28일에는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实施条例」(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실시조례)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중국 국내기업의 경영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체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조치로서, 내외자기업에게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국민 대우를 실현하고, 업종별·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2. 납세의무자 및 징세대상

중국 국내의 기업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를 통칭하여 기업이라 한다.

기업이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및 외국기업 등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合伙企业)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이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民办非企业单位), 기금회, 외국상회 및 농민전업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 등이 포함된다.

기업소득세의 징세대상은 기업의 생산경영소득, 기타소득 및 청산소득이다.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으로 나뉜다.

### 가. 거주자기업(居民企业)

거주자기업이란 중국법에 따라 중국 국내에 설립되거나 또는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국법에 따라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업이라 함은 중국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말한다.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말한다.

실제 관리기구라 함은 기업의 생산경영 및 인원, 기장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면 관리와 통제가 실시되는 기구를 가리킨다.

거주자기업은 중국 국내·외에 원천을 둔 모든 소득, 즉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재화판매소득, 노무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红利)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및 수증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중국 국내·외에 원천을 둔 모든 소득은 다음 원칙에 의해서 확정된다.

- 재화판매소득 : 거래활동 발생지에 따라 확정된다.
- 노무제공소득 :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 확정된다.
- 재산양도소득
  - ① 부동산양도소득 :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확정된다.
  - ② 동산양도소득 : 동산을 양도하는 기업 또는 기구·장소 소재지에 따라 확정된다.
  - ③ 권익성 투자자산의 양도소득 : 투자대상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된다.
    - 주식이자(股息), 배당소득(红利所得) 등 권익성 투자소득 :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된다.
    -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기업 혹은 기구·장소의 소재지 혹은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확정된다.
    - 기타소득 :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문에서 확정된다.

#### 나. 비거주자기업(非居民企业)

비거주자기업이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기업, 그리고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

업을 가리킨다.

실제 관리기구라 함은 기업의 생산경영 및 인원, 기장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면 관리와 통제가 실시되는 기구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기구·장소란 중국 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및 장소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다.

- ① 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기구
- ② 공장, 농장, 목장, 조림지, 어장, 자연자원을 개발·채굴하는 장소
- ③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 ④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⑤ 기타 생산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구 및 장소

비거주자기업의 위탁영업대리인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위탁단위 및 개인이 비거주자기업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등을 포함), 위탁단위 및 개인이 계약·보관·납품 등을 하는 영업대리인은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구 및 장소로 간주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비거주자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구·장소가 취득한 중국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및 중국 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관계란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소득을 얻기 위한 지분 및 채권을 소유하거나 소득을 취득할 재산 등을 소유·관리·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장소를 설립하기는 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그 기구·장소와 실제 관련이 없는 때에는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3. 과세소득의 계산

과세소득액은 기업의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不征税收入), 면세수입, 각종 공제액, 이월공제가 가능한 이전연도 결손보전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소득} = \text{수입총액} - \text{비과세수입} - \text{면세수입} - \text{각종 공제액} - \text{이월결손금}$$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은 「권리의무 발생주의(权责发生制)」를 원칙으로 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수입과 비용은 대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수입과 비용은 대금이 당기에 수불된 경우라도 당기에 계상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및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기업소득세 규정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기업이 중국 경·내외의 전체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수입총액, 공제 범위·표준, 자산의 세무처리 및 이월결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외국정부 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의 내용이 「기업소득세법」과 다를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가. 수입총액

##### 1) 수입총액의 내용

기업이 화폐 또는 비화폐 형식으로 각종 소득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이 수입총액이 된다.

기업이 취득한 수입 중 화폐 형식이란 현금·은행예금·매출채권(应收帐款)·받을어음(应收票据)·만기보유채권투자(准备持有至到期的债券投资) 및 채무면제

(債務的豁免) 등을 포함하며, 비화폐 형식은 고정자산·생물자산(生物資産)·무형자산·재고자산·매각가능채권투자·노무 및 관련 권익 등을 포함한다.

비화폐 형식으로 획득한 수입은 공정가격(公允價値)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공정가격이란 시장가격에 의해 확정된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거나 재화, 재산, 용역 등을 기부, 채무상환, 찬조, 자본모집, 광고, 견본, 직원복지 혹은 이윤분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재화의 판매, 자산의 양도 및 노무의 제공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에서 소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열거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된 소득 이외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소득도 모두 납세할 소득에 포함된다. 즉 수입총액에 기타수입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수입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화판매수입 :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재료, 포장물, 저장품(低值耗品) 및 기타 재고자산을 매출하고 얻은 수입
- 노무제공수입 : 기업이 건축, 내부장식, 수리수선, 교통운수, 창고임대, 금융보험, 우편통신, 자문중개,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훈련, 음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사회서비스, 여행, 오락, 가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으로 취득한 수입
- 재산양도수입 :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식, 채권 등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수입
- 주식이자,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 기업의 권익성 투자에 의해 투자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수입
- 이자수입 : 기업이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얻는 수입으로 예금이자, 대여금이자, 채권이자, 연채이자 등
- 임대료 수입 :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또는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
- 특허권 사용료수입 :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

허권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

- 수증수익 : 기업이 기타 기업,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화폐성·비화폐성 자산
- 기타수입 : 이상에 규정된 수입 외의 기타수입으로, 기업의 자산잉여수입(资产溢余收入), 기한경과 미반환 포장물 보증금 수입(逾期未退包装物押金收入),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된 미지급금액(确实无法偿付的应付款项), 이미 대손처리한 후에 회수한 매출채권(已做坏帐损失处理后又收回的应收款项), 채무재조정수입(债务重组收入), 보조금수입(补贴收入), 위약금수입, 외환수입(汇兑收益) 등

## 2) 수익인식 시기

수익의 인식은 발생주의(权责发生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 종류별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판매 의사를 가지고 재화, 제품, 공사가 인도되고 노무가 제공되어 당해 대가를 취득하든지 취득할 권리를 획득한 시점을 수익의 계상시기로 하고 있다.
- 재화판매수입 : 기업회계준칙 제4조에 의하면 재화판매수입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 ① 기업이 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상의 주요 위험 및 보수를 매입자에게 이전한 경우
  - ② 기업이 소유권과 관련된 계속관리권이 이미 없어졌고,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력이 이미 없어졌을 것
  - ③ 수입한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것
  - ④ 관련된 경제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 ⑤ 관련 있는, 이미 발생한 혹은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 배당, 특별배당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 :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

- 로 규정한 경우 이 외에는 투자 상대방이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
- 이자수입 : 계약서에 약정된 채무인의 이자지급일
- 임대료수입 : 계약서에 약정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일
- 특허권 사용료수입 : 계약서에 약정된 특허권 사용자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수증수익 : 실제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

### 3) 특수한 수익인식 시기

- 할부방식에 의해 재화를 판매한 경우 : 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수령일
- 대형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등의 수탁가공제작 또는 건축, 내부장식, 조립업무에 종사하거나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작 또는 공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연도 내의 공사진척도 또는 완성된 작업량에 따라 수익의 실현을 인식한다.
- 제품분할방식으로 취득한 수입 : 기업이 제품을 분배받은 날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수입액은 제품의 공정 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그리고 재화·재산·노무를 기증·채무상환·찬조·광고·샘플·직원복지 또는 이윤 분배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재산의 양도 또는 노무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비과세(不徵收)수입

국가가 특정 납세자와 특정 항목을 두고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기업의 정상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기업이 취득하는 특정 수입에 대해서 징세를 하지 않거나 면세하는 특수정책을 취하고 있다. 곧 이를 통하여 국가는 기업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경제의 균형 발전 촉진을 도모한다.

총수입액 중 다음 수입은 비과세수입(징수하지 않는 수입)으로 한다.

### 1) 재정보조금(財政拔款)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관리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조직에 지급하는 재정자금을 말하며, 국무원 및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에 따라 수취하고 재정관리에 납입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행정사업성 수수료(收費)란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무원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회공공관리를 시행하거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대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재정관리에 납입된 비용을 말한다.

정부성 기금이란 기업이 법률·행정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전용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재정자금을 말한다.

###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수입

기타 비과세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하는 수입으로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전용 용도를 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통과한 재정성 자금을 말한다.

## 다. 면세수입

### 1) 국채이자수입

기업이 취득한 국채로부터 얻은 이자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간의 주식이자·배당소득 등 권익성 수익**

거주자기업이 다른 거주자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그 기구·장소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주식이자·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 수익**

이 권익성 투자수익에는 거주자기업이 공개 발행하고 상장해서 유통하는 주식에 투자하여 12개월이 되지 않은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이란 다음과 같다.

- 법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등기수속을 하였을 것
-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것
- 취득한 수입을 그 조직과 관련이 있는 지출 및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부를 등기심사 또는 정관(章程)이 규정한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할 것
- 재산 및 그 과실(孳生息)은 분배에 사용하지 않을 것
- 등기심사 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의 말소 후의 잉여재산을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등기관리기관이 그 조직과 성질 및 취지가 같은 조직에 기증하고 사회에 공고할 것
- 투자자가 그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권도 유보하지 않고 행사하지 아니할 것
-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이나 복리가 규정한 비율 내에서 통제되고 그 조직의 재산에서 분배하지 않을 것

- 국무원 제정·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할 것

## 라. 각종 공제

### 1) 공제의 정의

기업에 실제 발생한 수입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지출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과세소득 계산시 수입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합리적인 지출이란 생산경영활동의 관례에 부합하는 당기 손익 또는 관련 자산 원가에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상적 지출을 말한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 ①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로 나뉜다. 수익성 지출은 발생 당기에 직접 공제하고, 자본성 지출은 기간을 나누어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발생 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다.
- ② 기업의 비과세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재산의 상각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 ③ 기업소득세법 또는 그 실시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지출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지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원가

- 원가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원가, 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소모성 비용을 말한다.
- 즉 기업이 상품의 판매, 노무의 제공, 고정자산·무형자산 양도의 원가를 말한다.

#### ② 비용

- 비용이란 하나의 과세연도중에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판매(경영)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말한다. 이미 원가에 계상된 관

련비용은 제외한다.

- 판매비용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품 판매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고비·운수비·보험비·대리수수비·임금·복지비용 등을 포함한다.
- 관리비용이란 기업의 행정관리부문이 관리조직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각종 지원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재무비용이란 기업이 경영성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순수한 이자 지출·환차손·금융기구 수수료 및 기타 비자본화 지출을 포함한다.

③ 세금

- 세금이란 기업소득세 및 공제(抵扣)가 인정되는 증치세 이외에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 및 그 부가세를 말한다.
- 즉 기업이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는 소비세, 영업세, 성시유호건설세, 관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방산세, 차선세, 인화세, 교육비부가(教育费附加) 등을 말한다.

④ 손실

- 손실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실사차이(盘亏), 과손, 폐기손실(报废损失), 재산양도손실, 대손상각(呆帐损失),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 기업에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 및 보험 배상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며,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은 이후 납세연도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당기수입에 산입한다.

⑤ 기타지출

- 기타지출이란 원가, 비용, 세금, 손실을 제외한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 지출을 말한다.

## 2) 공제금액의 구체적 내용

### ① 재화(貨物)판매의 원가

- 기업이 재고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나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자산 원가는 납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 ②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기업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납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순자산가액이란 관련 자산 및 재산의 세무상 금액으로부터 규정에 의해 공제한 감가상각비, 감액손실, 상각비, 보증금 등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 ③ 인건비

-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급여·임금은 공제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급여·임금이란 기업이 각 납세연도에 그 기업의 임직원 혹은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형식 또는 비현금 형식의 모든 노동보수를 의미하며, 기본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연말임시상여금, 시간외수당 및 기타지출을 의미한다.
- 기업이 직원을 위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기본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은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투자자 혹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충양로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는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표준과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공정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인신안전보험비와 공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여 공제하는 기타 상업보험비 외에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상업보험비는 공제할 수 없다.
- 기업에서 발생한 종업원복지비 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또한 종업원 교육비 지출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발생한 종업원 교육비 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이후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지출한 노동조합경비는 임금·급여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④ 접대비

-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로 발생한 접대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광고선전비

- 기업의 각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되는 광고비 및 사업선전비는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매출액(영업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초과 부분은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⑥ 공익성 기부금

-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혹은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을 통해 「中华人民共和国公益事业捐赠法;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한 기부금을 가리킨다.
- 공익성 기부금은 연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연도 이윤총액이란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도 회계이익을 가리킨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다.

⑦ 감가상각비 등

- 유·무형 자산에 대한 상각비에 대하여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⑧ 이자비용

-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합리적 범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가

불필요한 차입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을 구입·건설하거나 12개월 이상의 제조를 거쳐야 판매가능 상태에 달하는 재고 재화를 위해 차입이 발생한 차입금인 경우 관련자산의 구입, 건설기간에 발생한 합리적 차입비용은 자본성 지출로서 자산의 원가에 산입해야 하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

⑨ 외화환산손실

- 기업의 화폐거래 및 납세연도 종료시점에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기말 인민폐 평균환율에 의해 인민폐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한 환산손실은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한 부분이나 소유자에 대한 권익분배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다.

⑩ 자산감치손실

- 자산감치손실(资产减值损失)은 재고자산 하락준비금, 고정자산감치준비금 등이 있다.
-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을 받지 않은 준비금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⑪ 대손충당금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은 채무자의 특정 사유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 그 후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을 직접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계상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 대손충당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손으로 처리하며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한다.

3) 공제의 배제

기업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납세할 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 투자자에게 지급한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 기업소득세 세액
- 채납세금
- 과태료, 벌금, 재물 몰수로 인한 손실
- 기부금 한도(연간 이윤총액의 12% 이내)를 초과한 지출
- 창조지출
-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 기업 사이에 지불하는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구 사이에 지불하는 임차료 및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비은행기업 내의 영업기구 사이에 지불하는 이자
- 취득한 소득과 관련 없는 기타의 지출

#### 마.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亏损)이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및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0(零) 이하인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결손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그 이월 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내에 이익 또는 손실을 막론하고 모두 실제 보충가능 기한으로 계산한다.

### 4. 세율 및 납부할 세액

#### 가. 세율

기본세율은 25%이다. 거주자기업 및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고 취득한 소득이 기구·장소와 연관이 있는 비거주자기업에 적용된다.

저세율은 20%이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

거나,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비거주자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관의 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조세협정(稅收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법과 그 조세협정이 다른 경우에는 그 조세협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중국과 세수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거주자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영세기업(小型微利企業)은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도신기술기업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나. 납부할 세액의 계산

기업의 납부할 세액은 과세소득액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기업소득세법의 세수우대(조세특례) 규정에 따른 감면, 이중과세방지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소득액} \times \text{적용세율} - \text{감면세액} - \text{공제세액}$$

감면 및 공제세액은 기업소득세법과 국무원의 조세우대규정에 따라 경감하거나 면제·공제하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 다. 외국세액공제

기업이 획득한 다음 소득에 대해 중국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은 당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함이다.

- 거주자기업이 중국 국외에 원천을 둔 납세할 소득
-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고 중국 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당해 기구·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납세할 소득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란 중국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중국 국외의 조세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실제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가리킨다.

공제한도액은 동 소득액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으로 하며,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및 지역(地区)별로 구분하되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외국세액공제 한도액} = \text{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중국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 \times (\text{국외원천소득금액} \div \text{국내외 소득금액 총액})$$

국외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액이 당해 납세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본 연도의 납세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이후 5개연도 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국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란 기업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중국 국외에 원천을 둔 주식이자·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외국기업이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 중 당해 소득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주민기업의 공제 가능 외국소득세 세액으로 하여 외국세액공제 한도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국외 세무기관이 귀속연도를 표시하여 발행한 납세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5. 자산의 세무처리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고정자산, 생물자산(生物资产), 무형자산, 장기선급비용(長期待攤費用),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은 모두 역사적 원가(历史成本)를 세무상 금액(计税基础)으로 한다.

역사적 원가란 기업이 당해 자산을 취득할 때 실제 발생한 지출(취득원가)을 말한다. 기업이 각종 자산을 소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산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 규정에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세무상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 가.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서 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주택, 건축물, 기계, 기구, 운반공구 및 기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설비, 기구, 공구 등이 포함된다.

#### 1) 고정자산의 세무상 금액(计税基础)의 확정

- 외부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가격, 지불한 관련 세금(税费) 및 당해 고정자산이 예정된 용도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기타 지출을 더한 금액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자가 건조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금융리스(融资租入)에 의한 고정자산은, 리스계약(租赁合同)에 약정된 지불총액 및 임차인(承租人)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비용이 세무상 금액이며, 리스계약에 지불총액을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평가증(盘盈)한 고정자산은 동종 고정자산의 재매입원가(重置完全价值)가 세무상 금액이 된다.
- 증여, 투자, 비화폐성 자산교환, 채무재조정(债务重组)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公允价值) 및 지불된 관련 세금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개축한 고정자산은 개축 과정중 발생한 개축 비용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 방법은 직선법(直线法)과 가속상각법(加速折旧)이 있다. 직선법에는 연한평균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포함되며, 가속상각법에는 연수합계법과 이중체감법이 포함된다.
-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 현황에 따라 추정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한 번 확정된 추정잔존가액은 변경할 수 없다.
- 고정자산이 특수 원인으로 인하여 내용연수를 단축(가속상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주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3) 고정자산의 최저상각연한

-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고정자산 종류별 감가상각계산 최저상각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물, 건축물 : 20년
  - ② 항공기, 기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 설비 : 10년
  - ③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기구, 공구, 가구 등 : 5년
  - ④ 항공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수공구 : 4년
  - ⑤ 전자설비 : 3년
-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의 개발,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업성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 및 관련 고정자산의 감모·감가상각방법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 나. 생산성 생물자산

생물자산이란 생명이 있는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소모성 생물자산, 생산성 생물자산 및 공익성 생물자산으로 구성된다.

생산성 생물자산이란 기업이 농산품의 생산, 노무제공 혹은 임대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생물자산을 가리키며, 경제림·연료림·산축(产畜)·역축(役畜) 등을 포함한다.

##### 1) 생산성 생물자산의 세무상 금액(计税基础) 확정 방법

- 외부에서 구입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구입가격에 지불한 관련 세금(税费)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증여, 투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획득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에 지불한 관련 세금(税费)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2)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

생산성 생물자산은 직선법(정액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생산성 생물자산에 투입한 사용월의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사용이 정지된 달의 익월부터 상각을 정지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 정황에 의해 추정잔존가액(预计净残值)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일단 확정된 추정잔존가액은 변경할 수 없다.

생산성 생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의 최저상각연한은 다음과 같다.

- 임목류 : 10년

- 가축류 : 3년

#### 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생산, 노무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소유하는 실물형태가 없는 인식가능 비화폐성 장기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영업권(商譽) 등이 포함된다.

##### 1) 무형자산의 세무상 금액(计税基础)

-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지불된 관련 세금(税费) 및 직접 이 자산을 사용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지출을 더하여 세무상 금액을 확정한다.
- 자가 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중 당해 자산의 자본화 조건에 부합되고 예정 용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지출을 더한 금액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증여, 투자,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 등 방식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및 지불된 관련 세금(税费)을 더한 금액이 세무상 금액이 된다.

##### 2)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직선법(直线法)에 의하여 상각하며, 무형자산의 상각연한(摊销年限)은 10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투자 또는 양수한 무형자산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약정된 사용연한을 내용연수로 상각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기업을 전부 양도하거나 청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 라. 장기선급비용(长期待摊费用)

장기선급비용이란 기업이 이미 발생했으나 당기 혹은 차기 이후에 각각 나누어서 비용처리하는 상각기간이 1년 이상인 각종 비용을 말한다.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 지출은 고정자산의 금후 예상 사용연한에 따라서 상각한다. 고정자산의 개량지출은 건물, 건축물의 구조 변경, 사용연한의 연장 등에 발생한 지출을 말한다.
- 임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개량지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약정된 잔여 임대기간에 따라서 상각한다.
- 고정자산의 대수리지출(大修理支出)은 수리지출액이 취득시점 과세기초의 50% 이상이면서 수리 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2년 이상 연장할 경우에 한하여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한다.

## 마.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판매를 위해 소유하는 제품 또는 상품, 재공품, 생산 또는 노무제공 과정 중에 소비되는 재료 및 물자 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현금지불 방식에 의해 획득한 재고자산은 구입원가와 지불된 관련 세금(稅費)을 원가로 한다.
-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에 의해 획득한 재고자산은 당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稅費)을 원가로 한다.
- 생산성 생물자산에 의해 수확한 농산물은 생산 또는 수확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배부할 간접비 등의 필요 지출을 원가로 한다.

기업이 사용 또는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先進先出),

가중평균법(加权平均; 총평균법), 개별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가 계산방법을 일단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바.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대외적으로 권익성 투자 및 채권성 투자를 하여 형성된 자산을 말한다.

투자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현금지불방식에 의해서 취득한 투자자산은 구입가격을 원가로 한다.
-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투자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税费)을 원가로 한다.

기업의 대외투자 기간중에 투자자산의 원가는 납세소득액 계산시에 공제할 수 없고,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시에 공제한다.

### 6. 세수우대(조세특례)

세수(조세)우대정책의 일반원칙을 보면 첫째, 중국정부는 중점 육성·발전 장려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우대하며 둘째, 특정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 특별항목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및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각기 다른 기업소득세 우대를 적용받는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종사하는 경우 그 우대항목의 소득은 구분경리하고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가. 면세 및 감면

1) 기업에 있어서 다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세한다.

- ① 국채이자수입 : 기업이 국무원 재정부문 발행 국채의 보유로부터 획득한 이자수입
- ②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간의 주식이자,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 수익 : 거주자기업이 다른 거주자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획득한 투자수익
- ③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당해 기구·장소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주식이자,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 수익
- ④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 조직의 수입

공개 발행되어 상장 유통되는 주식을 연속 12개월 미만 보유함으로써 획득한 투자수입에는 위 ②, ③의 면세하는 주식이자,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에 종사하여 획득한 수입은 위 ④의 면세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④의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의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며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비영리조직 등기 수속을 합법적으로 이행
-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
- 취득한 수입은 당해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 지출에 사용하는 외에 전액을 등기 혹은 정관(章程)에서 규정한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할 것
- 재산 및 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 등기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직의 해산 후의 잔여재산을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관이 당해 조직과 성질, 취지가

같은 조직에 증여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할 것

- 투자자가 당해 조직에 투자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적 권리도 유보 또는 향유하지 않을 것
- 직원의 급여 및 복리지출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당해 조직의 재산을 변칙적으로 분배하지 않을 것

2) 기업에 있어서 다음 항목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세한다.

- ① 야채, 곡물, 서류, 유류, 두류, 면화, 마류, 당류, 과일류, 견과류의 재배
- ②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육성
- ③ 한의약재 재배
- ④ 임목의 육성과 재배
- ⑤ 목축, 가금류 사육
- ⑥ 임산품의 채집
- ⑦ 관개, 농산물 초기가공, 수의, 농업기술 보급, 농기계 작업 및 유지 보수 등 농·임·목축·어업 서비스업
- ⑧ 원양어업

3) 다음 소득은 기업소득세 징수를 50% 감면한다.

- ① 화초, 차 및 기타 음료, 향료 작물 재배
- ② 해수 및 내륙 양식

4)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 항목'에의 투자·경영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 기업이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 항목의 투자경영에 종사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의 최초 생산경영수입이 귀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연도로 한 제1연도부터 제3연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연도부터 제

6연도까지의 기업소득세는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 항목’이란 「公共基础设施项目企业所得税优惠目录: 공공기초설비항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목록」에서 규정하는 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시설 등 항목을 말한다.
- 기업이 이 항목에 대하여 위탁영업, 위탁건설 및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감면기간 내에 해당 항목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양도받은 날로부터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만료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감면 우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이 항목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 5)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 항목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 항목에 종사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의 생산경영수입이 귀속하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차연도부터 제6차연도까지의 기업소득세는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항목인 오수처리·쓰레기 처리·메탄가스의 종합개발 이용·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개조 및 해수담수화 등을 포함한다. 그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의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정한다.
- 감면기간 내에 해당 항목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만료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감면 우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6) 거주자 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

-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은 1개 납세 연도내의 거주자 기업의 기술양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한다.

#### 나.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한 우대

##### 1)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기업의 소득

- 국가의 중점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신기술기업에 대하여는 15%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국가의 중점지원이 필요한 고도신기술기업이란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 ① 제품(노무)이 「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 국가 중점지원 하이테크기술영역」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할 것
  - ②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할 것
  - ③ 하이테크기술제품(노무)의 수입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할 것
  - ④ 기업의 종업원 총수에서 과학기술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할 것
  - ⑤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하이테크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2) 경제특구 및 上海浦东新区에 설립된 하이테크기업

- 2008년 이후에 深圳, 珠海, 汕头, 厦门, 海南经济特区 및 上海浦东新区에 등기를 한 국가의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은 경제특구 및 上海浦东新

區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경영수입이 발생한 납세연도로부터 제1차연도 및 제2차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차연도에서 제5차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 다. 소형영세기업(小型微利企业)에 대한 우대

-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영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2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영세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않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 ① 공업기업 : 연도 납세할 소득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② 기타기업 : 연도 납세할 소득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라. 추가공제에 의한 우대

##### 1) 연구개발비의 추가공제

-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시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말하며,
-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은 당기 손익에 계산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실행한 공제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비의 50%를 추가로 공제한다.
-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분할 공제한다.

##### 2) 장애인 및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취업인원의 고용에 지급한 임금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실제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그 급여의 100%를 추가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 장애인의 범위는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3)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취업인원의 고용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추가공제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마.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 1)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납세할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창업투자기업이 비상장 중소하이테크기술기업에 2년 이상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액의 70%를 납세할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잔액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바. 가속상각(加速折旧)에 의한 우대

- 1)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기업의 고정자산이 가속상각을 필요로 할 때 다음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의 세대교체가 비교적 빠른 고정자산
  - 항상 강한 진동이나 높은 부식 상태에 처해 있는 고정자산
- 2) 상각연수 단축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최저감가상각연수는 규정(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 제60조)된 감가상각연수의 60%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 3) 가속상각방법으로는 이중체감법(双倍余额递减) 또는 연수합계법(年数总和法)을 채용할 수 있다.

#### 사. 납세소득액 계산시 수입에의 차감에 의한 우대

- 1) 기업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산업정책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획득한 수입은 납세할 소득액의 계산시에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수입에서 차감한다 함은 기업이 「资源综合利用企业所得税优惠目录;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 규정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국가가 제한 및 금지하지 않고 국가 및 업계의 관련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획득하는 수입은 그 수입금액을 90%로 감하여 수입총액에 계상함을 말한다.
  - 이 원재료가 생산제품의 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2) 이 항목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 아. 세액공제에 의한 우대

- 1)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 안전생산 등에 사용하는 전용설비를 구입한 투자액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 에너지 절약, 절수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및 「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용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의 당해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당해 연도 감면 부족액은 이후 5개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3) 이 항목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를 적용받는 기업은 전용설비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해야 하며, 구입 후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를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이미 공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이 항목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은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이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 자. 민족자치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 1)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자치지역 기업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 중 지방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감면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 2) 민족자치지역이란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법」에 따라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을 말한다.
- 3) 민족자치지역 내의 국가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지 못한다.

#### 차. 비거주자기업에 대한 우대

- 1)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동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는 10%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중국정부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고 획득하는 외국정부의 이자소득
- ②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 및 거주자기업에 대하여 우대자금을 제공하고 획득하는 이자소득
- ③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소득

#### 카. 서부지구에 대한 우대

- 1) 국가가 규정하는 서부지구 및 기타지구에 설립되고,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 산업 업종을 주영업으로 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주영업수입이 기업총수입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세무기관이 감면을 심사·확정해서 2001~2010년 기간 동안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2) 위의 지구에서 새로이 창업하는 교통·전기·수력·우정 및 TV방송업 등의 기업이 상술한 항목의 기업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세무기관이 감면을 심사·확정해서 제1차연도 및 제2차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차연도에서 제5차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 타. 세수우대(조세특례) 과도기간

- 1) 「기업소득세법」 공포 이전에 이미 설립 인가된 기업이 당시의 세수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의 우대를 받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 후 5년 내에 점진적으로 동법이 규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이와 관련하여 국무원은 「关于实施企业所得税过渡优惠政策的通知(国发2007年39号); 기업소득세 과도기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 3) 이 규정에 따른 점진적인 세율조정 방법에 의하면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2008년 18%, 2009년 20%, 2010년 22%, 2011년 24%, 2012년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래 24%의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2008년부터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4) 기업이 기간을 정하여 감면세 우대를 받고 있는 경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신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기한이 만료하기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익을 내지 못하여 세수 우대를 받지 못한 경우 우대 기한은 신법 시행 연도부터 기산하여 종료한다.
- 5) 「기업소득세법」 공포 전에 이미 설립이 인가된 기업이라 함은 동법 공포 전까지 등기등록이 완료된 기업으로, 2007년 3월 16일 이전에 공상등기관리기관에 설립등기를 마친 기업을 말한다.
- 6) 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장려정책에 따라 재정부, 세무총국 및 해관총서가 연합하여 발표한 「关于西部大开发税收优惠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1]202号); 서부대개발 세수우대(조세특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에 규정된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계속적으로 집행된다.
- 7) 기업소득세 우대정책과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우대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우대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우대를 받을 수는 없다. 우대조치를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 하. 기타 우대

-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및 集成电路企业<sup>36)</sup>에 대해서는 세전공제, 고정자산 감가상각, 세율, 환급정책 등에서 일정한 조세우대조치를 취한다.

- 증권투자기금이 증권시장에서 획득한 수입, 투자자가 증권투자기금 배분으로 취득한 수입, 증권투자기금이 관리인이 기금으로 주식 및 채권을 매매해서 획득한 차액은 일시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7. 원천징수(源泉扣繳)

### 가. 정의

비거주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소득 즉,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지만 획득한 소득이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는 원천징수(源泉扣繳)해야 하며,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扣繳义务人)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자란 관련 법률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비거주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대금의 지불의무를 직접 지는 단체 혹은 개인을 의미한다. 지급이란 현금지급, 환어음(匯撥)지급, 계좌이체 및 권익교환 지급 등 화폐지급과 비화폐 지급을 말한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기한이 도래한 때에, 지급금액 또는 기한이 도래한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도래한 지급할 금액이란 지급인이 권리의무 발생주의(权责发生制原则)에 따라 관련 원가 및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 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액

원천징수 대상 납세소득액은 기업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36) 반도체칩의 생산, 조립, 측정 및 6인치 이하의 실리콘 재료 제조를 하는 독립법인자격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 주식이자·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수입은 그 수입총액
- 재산양도소득은 그 수입총액에서 재산의 순가치를 차감한 잔액
- 기타소득은 위 두 규정의 방법을 참고하여 계산

여기서 말하는 수입총액이란 비거주자기업이 지급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대금 및 대금외비용을 가리킨다.

#### 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획득한 공정작업과 노무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세무기관이 공사작업수입(工程价款) 또는 노무비의 지급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예정된 공사작업 혹은 노무제공 기한이 하나의 과세연도 미만이고,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을 경우
- 세무등기 혹은 임시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 국내의 대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 규정된 기한에 따른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 또는 예정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현금 이상의 세무기관이 지정하며, 동시에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근거, 계산방법, 원천징수 기한 및 원천징수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 라. 납세자의 직접 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가 당해 소득발생지에서 납부해야 한다.

소득발생지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에 규정된 소득발생지의 확정 원칙

에 따른 소득발생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 재화판매소득 : 거래활동 발생지에 따라 확정
- 노무제공소득 :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 확정
- 재산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확정
  - 동산 양도소득 : 동산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구·장소 소재지에 따라 확정
  - 권익성 투자자산의 양도소득 : 투자대상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
- 주식이자·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소득 :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소재지에 따라 확정
-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기업 혹은 기구·장소의 소재지 혹은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확정
- 기타소득 :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문에서 결정

#### 마. 세무기관의 추징

납세자가 법률에 따른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납세자의 중국 국내 다른 수입항목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추징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세액을 추징할 경우에는 그 추징 이유, 추징액,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번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소재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기업소득세보고표(扣繳企业所得税报告表)를 제출해야 한다.

## 8. 특별납세조정

기업소득세법은 제6장에 특별납세조정(特別納稅調整)을 두어 납세자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가. 조정 범위

특별납세조정이란 기업과 관련기업(关联方;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에 있어 독립거래 원칙(独立交易原則)에 부합되지 않아 당해 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과세 수입이나 소득액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그 관련기업과 무형자산을 공동개발 또는 양수도하거나, 노무를 공동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발생한 원가는 납세소득액 계산시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거래 원칙이란 관련이 없는 거래 상대방간의 공정거래가격(公平成交价格) 및 영업상규에 따라 거래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 1) 관련기업(关联方)

관련기업이란 기업과 다음 중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기업·기타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자금, 경영, 판매, 구매 등 방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경우
- 이익관계상 서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거래가 발생한 납세연도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소급하여 납세조정을 행할 권한이 있다.

## 2) 관련기업간의 관련 업무의 세무처리

- 기업이 그 관련기업과 무형자산을 공동개발 또는 양수도하거나, 용역을 공동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발생한 원가는 납세소득액 계산시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 기업과 관련 상대방이 원가를 분담할 때에는 원가와 예상수익의 대응원칙에 의해 분담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기업과 관련기업의 원가 분담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 원가는 납세소득액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다.

## 3) 관련기업간의 거래 유형

- 유형자산의 구매·판매와 양도 및 사용 : 건물, 건축물, 교통공구, 기계설비, 공구·상품(产品) 등 유형자산의 구매와 판매, 양도, 임대 등 업무를 포함한다.
- 무형자산의 양도와 사용 : 토지사용권, 출판권(저작권), 상표, 상호, 특허와 전용기술 등 특허권, 공산품 외관설계 또는 실용신안 등 공업재산권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의 제공업무를 포함한다.
- 자금융통 : 각종 장단기자금 대여와 담보, 유가증권의 매매 및 각종 이자가 계산되는 미지급 및 연불지급채무 등을 포함한다.
- 용역 제공 : 시장조사, 판매, 관리, 행정사무, 기술서비스, 정비, 설계, 자문, 대리, 과학연구, 법률, 회계사무 등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

### 나. 정상가격 계산방법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기업이나 관련기업의 과세대상 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조정할 권한이 있다.

### 1)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

-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구매 및 판매시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 책정을 한 경우
  - ② 자금융통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 업종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 ③ 노무를 제공할 때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노무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 ④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의 제공시에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 ⑤ 기타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 2)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

- 기업이 관련기업과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기업과의 거래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그 납세소득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업이 그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기업 혹은 그 관련기업의 납세수입이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이 아닌 거래로 인하여 납세수입 또는 소득

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1조에 열거된 납세조정에 있어 정상가격 계산의 합리적 방법이란 다음과 같다.

-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可比比价受控格法) : 관련 관계가 없는 거래 쌍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를 행할 때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방법
- ② 재판매가격법(再销售价格法) : 관련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관련 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다시 판매하는 가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의 판매이익을 차감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③ 원가가산법(成本加成法)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함으로써 가격을 정하는 방법
- ④ 거래순이익률법(交易净利润法) : 관련 관계가 없는 거래쌍방이 동일 혹은 유사한 거래에서 얻는 순이익 수준에 의하여 이익을 확정하는 방법
- ⑤ 이익분할법(利润分割法) : 당해 기업과 관련 상대방의 합산이윤 또는 손실을 양자간에 채용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법
- ⑥ 기타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 다. 사전합의가격(预约定价)

관련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사전합의가격제도(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두고 있다. 즉 기업은 세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련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 원칙과 가격결정방법을 예약할 수 있다. 기업이 미래 연도의 관련기업간 거래에서의 가격결정 원칙과 계산방법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세무기관과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협상하고 확인을 거친 후 가격결정을 협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전합의가격제도를 통해서 기업은 사전에 세무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세무기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합의가격제도 규정의 법제화로 납세자는 중국의 세무당국과 사전합의가격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좀 더 정교하고 신뢰할 만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받게 되었다.

사전합의가격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실제 경영기간이 10년이 초과된 기업
- 이전 연도에 중대한 탈세문제가 없었던 기업
- 법에 의해서 세무신고하고 관련자료를 보존하는 기업

#### 라. 자료제출

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를 관련 업무거래 보고서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무기관이 관련 업무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과 그 관련기업 및 관련 업무조사와 관계있는 기타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관련 업무조사와 관계 있는 기타기업이란 피조사기업과 경영내용 및 방식이 유사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은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기업간 거래와 관련된 가격·비용의 결정 기준, 계산방법 및 설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업 및 관련 업무조사와 관계 있는 기타 기업은 세무기관과 약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자료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관련거래와 관련한 가격,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 및 설명 등 동 기간의 자료
- 관련거래에 의해 보급된 재산, 재산사용권, 역무 등 재판매(양도) 가격 또는 최종판매(양도) 가격에 관련된 자료
- 관련 업무조사와 관계 있는 기타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피조사기업과 비교 가능한 제품가격, 가격결정방식 및 이윤수준 등 자료
- 기타 관련 업무거래와 관계된 자료

마. 세무기관의 납세소득액 조사결정

기업이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업무거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소득액을 조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납세할 소득액 계산에는 다음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동종 혹은 유사한 기업의 이윤율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
-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법
- 관련기업집단의 전체 이윤의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
-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

기업이 위와 같이 규정된 방법에 의해 조사 결정한 납세할 소득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인정을 거쳐, 조사 결정된 납세할 소득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당기 수입에 계상하는 조세피난처의 거주자기업의 특정 이윤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민이 통제하는, 실제 세부담이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즉 25%보다 뚜렷하게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수요에 의하지 않고 이윤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 이윤 중 당해 거주자기업에 속하는 부분은 당해 거주자기업의 당기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조세피난처에 대한 간주배당).

- 여기서 중국 거주민이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국경 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을 말하며, 실제 조세부담이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에 현저히 미달한다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통제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① 거주자기업 또는 중국 거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당해 외국기업의 50% 이상의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 ②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민의 주식보유 비율이 위 규정에 미달하지만, 주식, 자금, 경영, 매매 등 방면에서 당해 외국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사. 기준초과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과소자본세제)

과소자본이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주로 타인자본, 즉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 즉 자본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규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채권성 투자 및 권익성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 지출은 납세할 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권성 투자란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또는 기타 이자 성격의 방식에 의한 보상을 해야 하는 용자를 가리킨다.
- 권익성 투자(지분성 투자)란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이 필요없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말한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련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채권성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관련기업이 관련없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채권성 투자
- 관련없는 제3자가 제공한, 관련기업이 보증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채권성 투자
- 기타 간접적으로 관련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실질적으로 부채 성격을 가진 채권성 투자

#### 아. 비사업적 목적의 안배에 대한 납세조정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이 없는 거래에서 그 납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조정할 권한이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상업 목적이 없다는 것은 세액의 감소, 면제 또는 납부 지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 특별납세조정의 법률 책임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의 특별납세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 조정하여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추가 징수하는 이자는 추정세액이 속하는 납세연도의 익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이러한 이자는 납세할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이자율은 세액이 귀속하는 납세연도중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하는 동 기간의 인민폐 대출 기준이자율에 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 43조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민폐 대출기준 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 9. 징수관리

### 가. 납세지점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기업간의 기업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없다.

기업이 일괄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소득액을 통일 계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제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 1) 거주자기업

세수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기업은 기업등기등록지(企业登记注册地)를 납세지로 한다. 기업등기등록지란 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등기등록한 주소지를 가리킨다.

다만, 등기등록지가 중국 국외인 경우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업기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합산계산(汇总计算)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의 합산계산 및 납부시에는 응당 통일된 방법으로 납세소득액을 계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정한다.

### 2) 비거주자기업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및 중국 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은 그 기구·장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2개 혹은 2개 이상의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기준을 거쳐 그 주요 기구·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할 수 있다.

- 세무기관의 심사 기준이란 각 기구·장소 소재지 세무기관의 공동 상급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하는 것을 가리킨다.
- 주요 기구·장소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기타 각 기구·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질 것
  - 각 기구·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장부·증빙을 갖추고 있을 것

비거주자기업이 승인을 얻어 기업소득세를 일괄납부한 후 기구·장소의 증설,

합병, 이전, 정지,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일괄납부의 책임을 지는 주요 기구·장소를 그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소득세를 일괄납부하는 기구·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나. 과세연도

기업소득세는 기업이 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에 납하며, 연도 종료시에 정산납부하는데, 많이 납부하면 환급(多退)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납부(少补)한다.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연도는 서력기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업이 한 과세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여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에 부족한 경우, 그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과세연도로 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청산기간을 하나의 과세연도로 한다.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企业所得稅年度納稅申報表)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납부한다.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경영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다. 신고·납부

기업은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표(預繳企業所得稅納稅申報表)와 재무회계보고서(財務會計報告)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 마감 후 45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결산보고서와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표(年度企業所得稅納稅申報表)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납세연도 내에 손익 또는 손실에 관계없이 모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현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 납부기한 및 신고서 제출기한의 최종일이 일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인 경우 최종일의 익일을 기한의 최종일로 한다.

### 1) 중간예납

기업소득세는 기업이 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에 납하며,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표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월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 이윤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예납해야 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 이윤에 의해 예납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 납세연도 납세소득액의 월별 또는 분기별 평균액에 의해 예납하거나, 현지 세무기관이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예납한다. 기업소득세의 월별 또는 분기별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예납방법이 한 번 확정되면 당해 연도 내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2) 연도납세정산

기업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5월 이내에 세무기관에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연도 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财务会计报告)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경영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연말에 정산할 때, 적게 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다음 연도에 납부해야

하며, 과다선납한 소득세 세액은 다음 연도에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공제할 금액이 크거나 다음 연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처리해야 한다.

### 3) 청산소득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 당기 기업소득세를 정산·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말소등기(注销登記) 처리 전에 그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라. 외화표시 소득의 환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인민폐(人民币)로 계산하며,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소득은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기업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예납할 때, 월 또는 분기별 마지막 날의 인민폐 중간 환율(人民币汇率中间价)로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연도종료 정산신고 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로 예납한 세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고 당해 납세연도에 기업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부분만 납세연도 최종일의 인민폐 중간 환율로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의 조사에 의해 환산 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할 세액이 조사 확인된 직전 월의 마지막 1일의 인민폐 중간 환율로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소득을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재계산한다.

### Ⅲ. 이전가격세제(转让定价税制)

#### 1. 입법연혁, 특징 및 법률연원

##### 가. 입법연혁

중국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转让定价税制 또는 转移价格税制 또는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务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과세소득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과세당국은 1991년에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3조 및 동법 실시세칙 제52조~제58조에 특수관계기업(关联公司)간의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한 이후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했다.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대부분 미국 연방소득세법(IRC) 제482조, 미국 재무부 소득세 규칙 및 OECD의 이전가격지침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제도상으로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은 1980년대 초에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고,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을 조세상으로 우대했지만, 동 법령에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합자기업의 외국 측 등은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해서 이윤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준비했다.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현상이 경제특구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남에 따라, 深圳(Shen Zhen)경제특구의 인민정부는 1987년 11월에 지방성 법규인 「深圳特区外商投资企业与关联公司交易业务税务管理的暂行办法; 深圳特区的外商投资企业与关联企业间交易业务的税务管理에 대한 잠정 办法」을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 办法(Ban Fa)은 중국의 이전가격법제 중

에서 처음 제정된 법규이며 또한 유일한 지방성 법규였다.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현상이 경제특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전국을 과세범위로 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1년 4월 국가세무총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기업소득세법」을 수정·합병해서 「外商投资企业所得税和外国企业所得税法; 외자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3조에 이전가격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동법은 이전가격에 대한 최초의 정식 입법이었다. 1991년 6월 「외자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을 반포했으며, 동 실시세칙 제52조~제58조에 이전가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1992년 9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세수징수관리법」 제24조에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두었다. 1992년에 국가세무총국은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收管理实施细则; 关联企业간 업무거래 세수관리 실시세칙」 및 몇 개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통지를 제정·공포했다. 1993년에 제정·공포한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제36조~제42조에 세수징수관리법 제24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리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입법체계가 초보적이지만 수립되었다.

국가세무총국은 1998년 4월, 기존의 관련 법령, 관련 조세조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제 등을 참조해서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收管理规程(试行); 关联企业간 업무거래 세수관리 규정(시행)」을 제정·공포했으며(1992년에 제정된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收管理实施细则」을 대체입법한 것임), 2004년 10월에 부분 개정하였다. 동 규정은 모두 12개장 52조로 이루어졌으며, 이전가격의 원칙, 방법 및 세무관리 순서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 법규에 비해서 진일보된 형태를 가졌다.

2002년 9월에 새로운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을 제정·공포했는데(1993년에 제정된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을 대체입법한 것임), 동 실시세칙 제36조~제41조에 이전가격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9월에 「关联企业间业务往来豫约定价实施规则(试行); 关联企业간 업무거래 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시행)」을 제정·공포했다. 동 실시규칙은 모두 8개 장

33조로 이루어졌으며, 사전합의가격(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은 기존의 이전가격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보강하였다.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행 규정에 불과했던 APA 관련 규정이 법제화되었다. 또한 이전가격 관련 탈세 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2009년 1월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特別内税调整实施办法(试行); 특별납세조정 실시관법(시행)」를 제정해서 「기업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에 명시된 ‘특별납세조정’ 부분의 세부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이전가격자료 제출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 나. 특징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은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도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내자기업간에도 적용되지만, 주된 적용대상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다.

둘째, 적용대상거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대상이 된다.

셋째, 적용세목의 범위는 기업소득세가 중심이 되나, 증치세·영업세·소비세 및 기타 세목도 대상이 된다.

넷째, 중국 이전가격세제는 신고조정형제도이다.

다섯째,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다. 법률 연원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법률적 연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规章) 그리고 조세협약이다.

주요 법률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税收征收管理法(1992, 2001)」 제

24조(개정 후 제36조), 「企业所得税法(2007)」 제41조 및 제42조 등이 있다. 이들은 이전가격세제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법률이다.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인 「税收徵收管理法实施细则(1993, 2002)」 제36조~제42조(개정 후에는 제51조~제56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2007)」 제109조 내지 113조, 「增值税暂行条例」 제7조, 「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제16조 등에서 이전가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관련 규칙인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务管理实施办法(1992); 关联企业间 업무거래 세수관리 실시판법」,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收管理规程(试行)(1998); 关联企业间 업무거래 세수관리규정(시행)」 및 「关联企业间业务往来豫约定价实施规则(试行)(2004); 关联企业间 업무거래 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시행)」,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施行), 国税发(2009년) 2号; 특별납세조정실시판법(시행)」, 「国家税务总局关于强化跨境关联交易监拱和调查的通知, 国税函(2009) 363号; 국세세무총국의 관련국제거래의 감독과 조사 강화에 대한 통지」 등에서 이전가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收管理规程(试行)(1998)」은 2004년 10월에 발표한 「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关联企业间业务往来税收管理规程>的通知, 国税发(2004) 14号; 국가세무총국의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제 관리 규정>의 수정에 관한 통지」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중국은 약 80여개 국가와 UN모델협약 및 OECD모델협약을 참조해서 조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조세협약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처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협약상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중국 국제조세 법률제도상 중요한 연원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조세협약은 체결 당사국의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한중조세협약 제9조에서는 특수관계기업을 정의하고,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2. 현행 이전가격 과세제도 개요

「税收徵收管理法」 및 동 「实施细则」, 「企业所得税法」 및 동 「实施条例」, 「特

別納稅調整實施辦法(試行)」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개요를 정리한다.

### 가. 적용대상

적용대상을 세목과 거래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목을 중심으로 보면, 적용세목의 범위는 기업소득세가 중심이 되나, 증치세·영업세·소비세 및 기타 세목도 대상이 된다.

거래를 중심으로 보면,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다. 특수관계기업에는 내국기업 및 외국기업이 모두 포함된다(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 내외자기업이 모두 포함되지만 주된 적용대상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다. 개인간의 거래나 일방이 개인인 거래도 『稅收徵收管理法』에 따라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특수관계기업이란 다른 기업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회사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말하며, 주식 지분 정도, 경영권 장악 여부 및 기타 방법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다. 즉 형식적 기준보다는 실질적 기준에 의해서 판정하고 있다.

- 상호간 직·간접적으로 타방 지분총액의 2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또는 제3자가 25% 내지 그 이상의 지분을 지배하는 경우
- 기업과 다른 기업간의 대차(借貸)자금이 기업자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거나 기업의 대차자금 총액의 10% 또는 그 이상을 다른 기업에서 보증(담보)한 경우
- 기업의 이사 또는 經理(사장) 등 고급 관리인원의 절반 이상 또는 1인 이상(1인 포함)의 상근이사가 다른 기업에서 파견된 경우
-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반드시 다른 기업에서 특허권(산업재산권, 독점기술 등을 포함)를 제공해야만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기업이 생산경영을 위하여 구입하는 원자재, 부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 포함)을 다른 기업에서 공급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를 다른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
  - 일방기업의 생산경영·거래에 대해 실제로 지배하거나 또는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가족, 친척관계 등을 포함)

특수관계기업이란 서로 독립된 기업실체를 의미하므로, 본점(总机构)이 지점(分机构)에 관리비용을 배분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나.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

주요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의 구입판매, 양도 및 사용 : 건물, 건축물, 교통공구, 기계설비, 공구·상품(产品) 등 유형자산의 매매·이전(양도)과 임대차업무를 포함한다.
- 무형자산의 양도 및 사용 : 토지사용권, 출판권(저작권), 상표, 상호, 특허와 전용기술 등 특허권, 공산품 외관설계 또는 실용신안 등 공업재산권의 소유권이전과 사용권의 제공업무를 포함한다.
- 자금융통 : 각종 장단기자금 대부와 담보의 실행, 유가증권의 판매 및 각종 이자가 계산되는 미지급 및 연불지급채무 등을 포함한다.
- 노무 제공 : 시장조사, 판매, 관리, 행정사무, 기술서비스, 정비, 설계, 자문, 대리, 과학연구, 법률, 회계사무 등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

관련기업간 거래액의 확정에 있어서 업무거래의 성질에 따라 발생한 다음 유형의 업무거래에 있어서 실제 지불하거나 수취한 대금·비용의 금액이 바로 관련기업간 거래액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제품(상품)의 구입·판매업무에서 실제 지불하거나 수취한 대금의 금액

-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자금융자금액 및 상응한 이자(각종 관련 비용을 포함)
-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노무 제공에서 실제 지불하거나 수취한 노무비용의 금액
- 기업과 관련기업간에 유형자산을 양도하고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에서 실제 지불하거나 수취한 비용의 금액
- 기업과 관련기업간에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등 업무에서 실제 지불하거나 수취한 비용과 금액

일방기업과 타방기업이 특수관계기업일 경우 납세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상황을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다. 거래원칙

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구·장소와 그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대금·비용을 수취하거나 지불해야 한다. 즉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성립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독립기업가격)으로 행해져야 한다.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란 관련 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공평거래가격과 영업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 라. 이전가격조사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이 보고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2개월 내에 주요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주요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생산·경영관리 결정권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과의 업무 거래 액수가 비교적 큰 기업
- 장기적인 결손기업(연속 2년 이상 결손인 경우)
- 장기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계속적으

로 확대하는 기업

-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관계기업과 업무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 기업의 이익수준이 동 업종 기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기업의 이익수준이 그룹 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기업
- 특수관계기업에 지급한 각종의 비용이 불합리한 기업
- 법정 조세감면기간 만료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기타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

매년 조사 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점조사 대상기업의 3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매년도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무보고와 함께 관련 거래 조사표의 제출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기업의 일상적인 정보도 이용하여 위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 마. 정상가격기준

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구·장소와 그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대금·비용을 수취하거나 지불해야 한다. 즉 업무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정상가격 및 통상의 사업관행을 토대로 수행된 영업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독립거래기준을 의미한다.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독립기업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과 이들의 특수관계기업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란 관련 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공평거래가격과 영업관

례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 바. 이전가격 조정방법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거래유형별로 정상가격 조정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국 연방소득세법(IRC)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산출방법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체이고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 전문 조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인 원가가산법(CPM)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 유형자산 거래가격에 대한 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해서 조정한다.

-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可比比价受控格法 : CUP) :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진 당해 거래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거래활동의 가격에 따라 조정한다.
- ② 재판매가격법(再销售价格法 : RPM) : 관련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출하는 가격에 의해 취득하는 이윤수준에 따라 조정한다.
- ③ 원가가산법(成本加成法 : CPM)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가격에 따라 조정한다.
- ④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체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OECD 이전가격 지침과 동일). 비교이익법(CPM), 이익분할법(PSM), 거래순이익률법(TNMM법) 등이 있다.
-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성격 및 심리분석의 결과에 근거해서 관계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상응한 조정방법을 선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 자금거래에 대한 조정

- ① 특수관계기업간 융자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수준을 참고하

여 조정한다.

- ② 즉 특수관계기업간의 자금융자시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이자가 관련 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또는 이자율이 동종사업에서의 정상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이 정상이자율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채무자에게 다시 전대하는 융자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에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합계하여 산출한 것을 정상이율으로 본다.

- 용역비용에 대한 조정

- ① 특수관계기업간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용역활동의 정상비용 수취기준을 참조하여 조정한다. 즉 조정시 기업과 특수관계기업간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 관계가 없는 기업간 제공한 용역의 업무성격, 기술요구, 전문수준, 부담책임, 대금지급조건과 방식, 직접 및 간접원가 등의 비교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 ② 특수관계기업간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용역비용이 독립기업간의 사업거래에 기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은 유사한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비용기준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형자산의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조정

특수관계기업간에 임대차 등 형식으로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수취 또는 지급하는 사용료(임대료)는 관련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정상비용)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양도와 사용권 제공거래에 대한 조정

특수관계기업간 무형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의 평가가액 또는 수취사용료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업이 특수관계기업에게 지불하는 관리비는 공제(비용화)할 수 없다.

#### 사. 정상가격 입증의무

정상가격의 입증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 즉 조사대상기업은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 이전가격의 정상성·합리성을 증명해야 한다.

세법 및 그 실시세칙,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를 조사할 때 관련 거래가격, 비용기준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은 서면 형식으로 기업에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해야 하고, 기업은 당해 통지를 받은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자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관련기업 및 제3자 거래와의 거래상황, 예를 들면 구입판매, 자금대차, 노무 제공,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양도 및 사용권의 제공 등
- ② 가격요소의 구성상황. 예를 들면 수량, 장소, 형식, 상표, 지불방식 등
- ③ 거래가격과 비용근거를 확정하는 기타 자료

주관 세무당국이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의 정상성,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유형자산의 구입판매 : 관련기업간 거래상품의 브랜드 지명도와 시장점유 정도, 각 관련기업의 기능 및 시장에서의 위치, 판매가격의 계절성 파동, 무형자산이 상품(제품)에 대한 영향 정도, 품질등급, 성능 및 정가방식 등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무형자산의 양도와 사용 : 주로 거래되는 무형자산 및 그 양도조건(지역 범위, 권한 부여 범위 등을 포함), 독점성 및 유지가능시간, 양도인이 제공하는 기술지지와 인력교육 등 노무의 가치, 상표가치의 유지보호비용(광고선전과 품질통제비용을 포함),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사용 또는 양도함으로써

인한 예상이윤 또는 절약되는 원가, 가격구성과 지불방식 등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③ 노무의 제공 : 주로 관련기업이 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진정 수익성이 있게 하는지, 지불하거나 수취하는 노무비용표준이 합리적인지, 그 중 직접·간접비용과 이윤수준이 합리적인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자금의 거래 : 주로 용자업무와 관련된 통상 이자율수준, 용자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용내역의 합리성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아. 이전가격 세무조사

이전가격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업의 선정 → 서면조사 → 실지조사 → 기업과의 협의 → 경정통지>라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업이 선정된다. 거래 상대기업이 특수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주관세무기관에 「中华人民共和国企业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업무거래신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고를 바탕으로 거래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액에 대해 구분·집계·분석·판정을 하게 된다. 실지 조사대상은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내에서 30%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주관 세무기관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한다. 서면조사에서는 이익(손실)액, 투자 또는 판매이익(손실)률, 원가·비용지출의 합리성, 자금대차의 이율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서면조사만으로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지조사에서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조사대상기업을 방문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열람·검토한다.

실지조사 후에는 세무기관 내부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즉 경정통지를 하기 위해서 조사대상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무

기관이 문제점과 경정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대상기업은 이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가격의 합리성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설명한다.

조사대상기업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정통지가 통지된다. 기업은 경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경정세액에 불복할 경우에는 우선 경정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행정재심(复议)신청과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 자. 특수관계기업의 세무관리

납세연도중 기업과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가 있을 경우, 현지 세무기관에 연 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中华人民共和国企业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업무거래 신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세무기관이 기업과 특수관계기업간 업무거래 상황을 조사할 때, 관련 거래 가격·비용기준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업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거래 가격·비용기준 등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벌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 이전가격에 대해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성격을 서면 또는 회담 형식으로 피조정기업에 통지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사 해당 납세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액에 한정된다. 조사·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정식으로 감사통지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 특별한 원인으로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전 연도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전으로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을 소급할 수 있고 최장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이 이전가격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한 후, 재심(复议)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经济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원전치주의). 재심신청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재심을 불허한다.

#### 차.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과세당국은 2004년 9월에 「关联企业间业务往来预约定价实施规则; 关联企业间 업무거래 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을 공포함으로써 APA제도(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행규정에 불과했었는데, 기업소득세법 제42조에 APA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APA 규정의 법제화로 납세자는 중국의 세무당국과 APA를 논의함에 있어 좀 더 정교하고 신뢰할 만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받게 되었다.

APA제도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의 결정(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위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사전 약정을 맺어서 이전가격 조사와 분쟁에 대한 우려를 덜고, 예측가능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호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동 실시규칙은 일방적(Unilateral) APA제도와 양자간(Bilateral) 또는 다자간(Multilateral) APA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방적 APA제도는 납세자와 관할 중국 세무당국과 체결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APA제도는 중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된 타국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할당국을 포함한다.

APA제도의 운용을 보면, <APA 신청전 사전협의 → APA 정식신청 → APA 신청내용의 심사 및 평가 → APA 협의 → 합의서 체결 → APA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로 이루어진다.

APA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업이 신청서와 특수관계기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승인한 후 기업과 APA에 관한 협의서에 조인을 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APA제도는 자동적으로 갱신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료 90일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계속승인신청을 하고 동시에 신뢰할 만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일관되게 APA제도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 제3편 소비세제

### I. 증치세(增値稅)

#### 1. 서론

중국 정부는 업종 전문화를 통해서 협동생산을 촉진하고, 기업간의 횡적 경제 연합의 추진을 통해서 공업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개조하고 또한 기업의 이중 조세부담이라는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1979년 하반기부터 기기·기계류 등에 대해서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물품(產品)판매수입액에 세금이 부과되던 것이 물품판매수입 중의 부가가치(增値)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79년부터 1982년 말까지의 시험단계에서는 선정된 일부 지역의 기기·기계류, 농업기구, 자전거·재봉틀·선풍기 등에 대해서 증치세를 부과했다. 1983년 1월부터 1984년 10월까지는 확장단계로서,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상기 품목에 증치세를 부과했다. 1984년 10월부터 증치세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증치세제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단계로 접어들었다. 즉 국무원이 9월에 「中华人民共和国 增値稅條例(草案);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조례(초안)」을 공포하고 재정부가 「中华人民共和国增値稅條例實施細則;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조례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12개의 품목에 대해서 증치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1989년에는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담배·술·화공품 등을 제외한 3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품세(產品稅)의 과세대상은 점차 축소되었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 조례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증치세제의 시행을 통해서 업종 전문화를 통한 협동생산의 촉진, 기업간의 횡적 경제연합의 추진을 통한 공업 생산구조의 합리적 조정 및 개조 그리고 기업의 이중 조세부담 방지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재정수입면에서 다른 유통세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자, 중국 정부는 1993년의 세제개혁에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마무리지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체계의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비록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이들 선진국보다 뒤떨어져 있고 또 조세제도 역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증치세를 세제의 중심에 두고 소비세와 영업세를 보충적인 위치에 두는 간접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의 증치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확대 개편된 증치세는 원래의 「中华人民共和国 增值税条例(草案)」와 「中华人民共和国 产品税条例(草案)」;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세 조례(초안)를 통합한 것으로써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복잡했던 세율(8~45%)을 간단히 했다(기본세율과 최저세율). 동시에 공상통일세(工商统一税)를 취소하고 내외자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세법에 따라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증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대부분의 용역부분에 대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영업세를 참고하여야 한다.

2009년 1월부터 중국의 증치세는 생산형 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치세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 및 모든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제를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받는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해줌에 따라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정책 및 국산설비투자에 대한 증치세 환급정책은 폐지되었다. 한편 소규모납세의무자의 징수율을 개정해서 공업기업과 상업기업 모두 3%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 2. 과세대상

증치세 과세대상은 재화(貨物)의 중국 경내(境內)판매 또는 재화의 수입, 과세노무의 제공 등이다. ‘境內’라고 함은 재화를 판매하는 선적지 또는 소재지가 중국 국내이며, 제공된 과세노무가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 ‘과세노무’란 가공·수리·수선 용역 등 공업적 용역을 말하며, 그 외의 용역은 대부분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영업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증치세와 영업세가 동시에 과세되지는 않는다.

### 가. 재화의 판매(매출)

재화의 판매란 유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란 전기·열·기체 등을 포함하는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유상이란 구매자로부터 화폐, 재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며, 재화란 전력, 열, 및 가스를 포함한 움직일 수 있는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

### 나. 재화의 수입

수입하는 재화란 수입 통관하는 재화를 말하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다. 가공·수리용역의 제공

가공·수리용역의 제공이란 대가를 받고 가공·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이란 위탁을 받아 재화를 가공하는 것이다. 즉 위탁자는 원료와 주요 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고 가공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수리란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재화를 수리 및 복원하여 원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러나 단위나 개인사업 운영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그 단위나 종업원을 위하여 제공한 가공, 수리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치세법상 단위란 국가소유기업, 집단소유기업, 개인소유기업, 합작투자기업, 기타 기업, 관리단위, 협회,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한다.

#### 라.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항목

- 1) 재화의 선물(貨物期貨) 거래는 실물의 수속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2) 은행이 금 및 은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3) 전당업에서 찾아갈 수 없는 물품(死當物品)을 매출하는 업무 및 위탁사업에서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화물을 매출하는 업무는 모두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4) 우체국이 매출하는 상품(예를 들면 우표, 首日封, 郵折 등)의 생산 및 우정부문 이외의 기타 단위·개인이 매출하는 것은 모두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마.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행위

##### 1) 다음의 행위는 재화의 매출로 의제해서 증치세를 과세한다.

- 재화를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교부하여 매출하는 행위
- 대리매출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것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서 통일 계산을 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매출하기 위하여 이송하는 행위

-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한 재화를 증치세 비과세항목으로 사용하는 행위
-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한 재화를 단체의 복리를 위해서, 또는 개인이 소비하는 행위
-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거나 매입한 재화를 기타 단위 또는 개인상공업자(个体工商户)에게 투자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거나 매입한 재화를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행위
-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거나 매입한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 2) 혼합매출행위(混合銷售行為)

혼합매출행위란 과세되는 매출행위와 면세 또는 비과세되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매출액을 말한다.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단위나 개인상공업자의 혼합판매활동은 증치세가 과세되는 판매활동으로 간주된다.

## 3) 면세 및 비과세사업을 모두 겸영(兼營)하는 행위

증치세 납세자가 면세 및 비과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액과 과세용역 및 비과세용역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별도의 회계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회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용역과 재화 및 과세용역은 함께 증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3. 납세의무자

증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단위와 개인이다. 납세의무

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된다.

## 가. 일반구분

### 1) 단위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단위는 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단위는 기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한다.

### 2) 개인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은 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에는 개인상공업자와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 3)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4) 임대인과 도급인

기업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하청을 주어 경영할 경우, 임대인이나 도급인은 증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5) 원천징수의무자(扣繳義務人)

국외의 단위나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물품을 매출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

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대리인이 없으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증치세를 납부한다.

#### 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 1) 일반납세자(一般納稅人)

일반납세자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增值稅暫定條例實施細則」에서 규정한 소규모납세자 표준을 초과하는 기업과 기업성 단위이다.

다음의 납세자는 일반납세자에 속하지 않는다.

- 연간 과세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의 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개인(개인경영자 이외의 기타 개인 제외)
- 비기업성 단위
- 증치세의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

일반납세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에 인정 수속을 밟아 법정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일반납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1994년에 「增值稅一般納稅人申請認定辦法; 증치세 일반납세자 신청 인정 판법」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增值稅暫定條例」를 실시한 이후에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申請認定辦法」을 공포하기 전에 새로운 표준의 순조로운 집행을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현행 증치세 일반납세자 인정에 관한 유관 규정을 계속 집행하며, 2008년도 과세매출액이 새로운 표준의 소규모납세자를 초과해서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관 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 인정 수속을 처리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 2) 소규모납세자(小規模納稅人)

소규모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규정기준 이하이고 또한 회계 계산이 건전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할 수 없는 증치세 납세자이다. 회

계 계산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증치세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산출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增值税暂行条例 및 동 实施细则의 규정에 의하며, 소규모납세자의 인정표준은 다음과 같다.

-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와 재화의 생산이나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로 하되 재화의 도매나 소매도 겸영하는 납세자는 증치세 과세대상 연간 매출액(이하 ‘과세매출액’이라 함)이 50만 元 이하. 재화의 생산이나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로 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연간 재화 생산 또는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의 매출이 과세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 재화의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80만 元 이하
- 연간 과세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표준을 초과하는 기타 개인은 소규모납세자로 납세한다.
- 비기업성단위,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소규모납세자로 납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납세자는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며, 증치세전용계산서를 사용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징수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반납세자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增值税小规模纳税人征收管理办法;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징수 관리 방법」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인정은 주관 세무기관이 세법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4. 납세의무 발생시기

증치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통상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이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수속 당일이다.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기는 원천징수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당일이다.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판매에 대한 조세채무의 발생시점의 구체적 기준은 매출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직접지불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액을 수령하거나 또는 매출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획득하는 당일
- 위탁판매 및 은행대리수금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여 위탁수속을 처리한 당일
- 외상매출 및 분할지급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약정한 대금회수 당일이며,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약정한 대금회수일이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한 당일
- 선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당일이며, 생산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대형 기계설비·선박·비행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는 당일 또는 계약서상의 대금 수취일
- 다른 납세자에게 위탁하여 재화를 대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단위의 대리매출명세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상품대금을 수령한 당일이며, 대리매출명세서나 상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탁해서 대리판매하는 재화를 인도하고 만 180일이 되는 당일
- 과세용역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출액을 징수할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취득한 당일
- 납세자가 매출의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기타단위·개인에게 인도하여 판매하는 것과 대리매출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것 외에는 재화가 이전된 당일

## 5. 세율

증치세는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듯이 기본세율(17%)과 저세율(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sup>37)</sup>을 적용하고 있다.

저세율과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본세율(17%)을 적용한다.

다만,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는 3%의 징수율(征收率)을 적용한다. 소규모납세자는 경영규모가 작고, 회계계산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납세자처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징수율로 간단하게 계산한다. 징수율이 과거에는 4%와 6% 두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조정되어 3% 하나만 있으며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표 1-1〉 증치세 과세대상별 세율표

구 분	세 율	대 상 품 목
기본세율	17%	- 물품판매, 물품수입(경감세율분 제외), -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을 제공
저세율	13%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도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
영세율	0%	물품 수출시

따라서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즉, 세율이 다른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

37) 영세율제도에 대해서는 <10. 증치세 수출환급제도> 참조

고 또한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용역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재화나 과세용역에 대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6. 납부할 세액 계산

증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법(购进扣稅法)으로 계산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 같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세율을, 매입세액은 매입액에 세율을 각각 곱해서 산출한다.

### 가. 매출세액의 계산

#### 1) 매출액

매출액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대가 및 부대비용(价外費用)을 의미한다.

부대비용은 가격 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속비,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비,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대리수납액, 대리지급액, 포장비, 포장물임대료, 보관비, 품질보증비, 운수하역비 및 기타 각종 부대비용이다. 다만 다음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소비세가 징수되는 소비품을 수탁가공하고 대리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소비세
-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매출세액
- 다음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운송비
  - ① 운송부문의 운송비용 계산서가 구매측에게 교부되고
  - ② 납세자가 그 계산서를 구매측에게 재교부(이송)한 경우

재화의 판매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부대비용은 회계 처리에 상관없이 모두 매출액에 산입시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각종 항목의 비용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켜 납세를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매출액을 결정한다.

기업은 매출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출방식을 사용한다. 매출방식이 다르면 매출자가 취득하는 매출액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 세법은 특수한 매출방식하의 매출액 확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① 할인판매(折扣销售)

할인판매는 판매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할 때, 구매자의 구입수량이 비교적 많다는 등의 이유로 구매자에게 가격 우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판매의 경우 매출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계산서에 각각 기재해야만 에누리한 후의 잔액이 증치세를 계산하는 매출액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출액에 대해 하나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에누리액에 대해서도 한 장의 朱书(적색)으로 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 매출자는 에누리액을 공제한 후의 매출액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구매자는 에누리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치세를 과소납부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상판매(以旧换新方式销售)

보상판매(신품교환방식)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유상으로 오래된 재화를 회수하는 매출행위이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래된 재화를 새로운 재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새로운 재화의 매출액에서 오래된 재화의 회수가격을 차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화의 판매와 재화의 회수를 2개의 거래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액(회수액)은 상계할 수 없다.

### ③ 원금상환방식의 매출(还本销售方式销售; 반환조건부판매)

원금상환방식의 매출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한 후 일정한 기일까지 1회 또는 분할로 구매자에게 전체 가액나 일부 가액을 상환하는 매출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제적으로는 일종의 자금융통으로 재화를 자금의 사용가치로 바꾸어 취득하고 기한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다. 세법규정은 이 방식

을 채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면 그 매출액은 재화의 판매가격이며 매출액에서 원금상환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④ 물물교환방식의 매출(以物易物方式銷售; 현물교환)

물물교환방식은 비교적 특수한 매매활동으로 매매의 양 당사자가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의 재화로 상호 결제하는 재화매매의 방식이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모두 매입·매출 처리해야 하여 각자 내놓은 재화의 가액으로 매출액 및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각자 받은 재화의 가액으로 매입액 및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2) 매출세액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증치세액이다. 매출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매출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적용세율}$$

증치세는 价外稅(외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의 공식에서 매출액은 매출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이다. 매출세액은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세액란에 기입되는 금액이다.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국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때 인민폐 환산율은 국가에서 공표한(원칙상 중간율) 그 일자나 거래가 발생된 달의 초일에 통용되는 환율로 할 수 있다. 납세자는 먼저 채택할 환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 나.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세액이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증치세액이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과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 즉 매출자가 수취한 매출세액은 바로 구매자가 지불한 매입세액이 된다.

중국의 증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된다. 이처럼 매입세액은 차감항목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가 지불한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납세자가 구입한 재화와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증치세 과세항목에 사용하지 않고 비과세항목·면세항목에 사용하거나 단체복리, 개인소비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 지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처럼 중국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세법규정상 탈세로 처리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조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증치세 공제 서류상에 표시된 증치세액과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으로 제한한다.

- 매출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전용계산서에 표시된 증치세액
- 세관장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영수증에 표시된 증치세액

또 중국 세법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농업생산자로부터 농산품을 구입하거나 소규모납세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13%의 공제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매입세액} = \text{매입가격} \times \text{공제율}$$

- 재화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운송비용, 재화를 판매하면서 지불한 운송비용 및 생산경영 과정 중에 지불한 운송비용은 운송비용결산서(運費決算單據)에 표시된 운송비 금액과 7%의 공제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매입세액} = \text{운송비용금액} \times \text{공제율}$$

증치세 잠정조례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항목 및 면세항목 그리고 단체복지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되는 재화나 과세용역
-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나 과세용역
-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나 과세용역
-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하는 납세자 자가 소비품
- 위의 항목의 운송비용 및 면세재화 판매에 따른 운송비용 등

#### 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당기 납부할 세액} &= \text{당기 매출세액} - \text{당기 매입세액} \\ &= \text{당기 매출액} \times \text{적용 세율} - \text{당기 매입액} \times \text{적용세율} \end{aligned}$$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초과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초과분이 전액 환급되지는 않지만, 수출품목에 따라 다른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조성평가가격(組成計稅價格; 과세표준)과 규정된 세율을 기초로 계산하며, 조성평가가격 및 납부할 세액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조성평가가격} = \text{관세감정가액} + \text{관세} + \text{소비세}$$

$$\text{납부할 세액} = \text{조성평가가격} \times \text{세율}$$

## 2) 소규모납세자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규정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징수율}$$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합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매출액} = \frac{\text{세포함 매출액}}{1 + \text{징수세율}}$$

## 7. 면세제도

다음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세한다.

- 농업 등의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 피임약 및 피임용구
- 고서적
- 과학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및 장비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 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용품
- 판매자가 사용중이던 물품의 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증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아울러 증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 8. 신고와 납부

### 가. 납세기간

증치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한 후에 구체적인 납세기간을 정한다. 증치세 납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및 1개 분기로 구분되며(분기의 규정은 소규모납세자에게만 적용됨),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건별로 납부한다.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증치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다음 기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기간으로 1개월 또는 1개 분기를 납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납세기간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부터 15일 이내의 전월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증치세를 납부(解繳)하는 기간은 위의 기간과

같다.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장이 증치세전용납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근거로 세관에서의 수출 수속을 마친 후 당해 수출품에 대한 환급을 월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정한다.

수출재화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완료된 후 재화의 반품이나 세관신고의 철회가 발생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나. 납세지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세하도록 하고, 지역이 다른 경우 납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은 증치세의 납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 한 縣(市)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점은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 또는 수권(授權)한 재정·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縣(市)에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응당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外出经营活动税收管理证明; 외지 경영 활동 세수관리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사업장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외지 경영 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응당 판매지 또는 노무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판매지 또는 노무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다른 지역(시)에서 고정된 근거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판매가 발생한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기관이 미납세액을 징수(補征)한다.

- 고정사업장이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지 또는 과세용역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판매지 또는 과세용역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기관이 미납세액을 징수(補征)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한 세관에 신고·납부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시설(기구)이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다. 징수기관

증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는 세관장이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송하는 자가 사용품목에 대한 증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 9. 증치세전용계산서(增值稅专用发票)제도

증치세전용계산서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중요한 상업증빙이자 증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증치세 세액계산 및 거래징수의 법적 증빙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의 시행과 더불어 증치세전용계산서 수수에 관한 기본규정으로 「增值稅专用发票使用規定; 증치세전용계산서 사용규정」을 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판매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일반납세자는 본 규정에 따라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와 보통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부정환급 등의 사건이 빈발하자 국가세무총국은 세금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전용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金税工程」을 추진하였다.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金税工程」 시스템을 통해서만 증치세전용계산서를 구입 및 발행하고 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증치세전용계산서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는 「増値税专用发票使用规定」과 「税收征收管理法」에 규정된 관련 벌금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가. 증치세전용계산서의 구입 및 사용 범위

증치세전용계산서는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납세자만 취득·구매·사용할 수 있고, 소규모사업자나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 없다.

증치세전용계산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일반납세자가 증치세전용계산서를 구입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다음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구입자격을 인정한다.

- 회계제도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기관에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의 수치 및 기타 증치세 관련 세무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납세자일지라도 다음 경우에는 증치세전용계산서를 취득·구입·사용할 수 없다.

- 정확한 기장능력이 없는 자 : 재무회계제도 및 과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자
-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자 : 과세기관에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및 기타 증치세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출할 수 없는 자
-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자 : 세금계산서 발행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과세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발행 범위

일반납세자는 재화, 과세용역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면세 및 비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반드시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다.

-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 재화를 수출하거나 중국 국외에서 과세용역을 매출한 경우
- 재화를 비과세항목에 사용하는 경우
- 재화를 단체복지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비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다. 증치세전용계산서 발행시 요구사항

증치세전용계산서는 반드시 아래에 나열하는 발행요건에 따라서 발행되어야 한다.

- 필적이 깨끗하고 분명해야 한다.
- 수정해서는 안 된다.
- 항목을 빠뜨림 없이 작성해야 한다.
- 전용계산서와 물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전용계산서상의 금액과 실제 수취한 금액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 각 항목의 내용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 모든 란은 한 번에 발행해야 하고 상·하 란의 내용과 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 영수란(发票联)과 공제란(低扣联)은 재무 전용도장 또는 영수증 전용도장을 찍어야 한다.
- 규정된 발행시기에 따라 전용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위조한 전용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 세금계산서를 제본으로부터 분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용계산서의 양식이 국가세무총국이 통일 제정한 양식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 라. 증치세전용계산서 발행시기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시기에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거래 이전 또는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전술한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같다.

#### 마. 증치세전용계산서의 구성

증치세전용계산서는 통일기준에 규정된 대로 기본적으로 4장(联)이 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증치세전용계산서 각 장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第1联(发票联) : 증빙용으로 구입자가 보관하며 기장의 증빙으로 사용한다.
- 第2联(低扣联) : 매입세액공제용으로 구매자가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사용한다.
- 第3联(记帐联) : 기장 증빙용으로 판매자가 보관하며 매출 기장의 증빙으로 사용한다.

#### 바. 증치세전용계산서의 전산발급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발행에 컴퓨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의 보고·비준을 거쳐 세무당국의 감독하에 제작된 영수증 양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증치세전용계산서(전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산세금계산서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전산기술전문가 또는 운영전문가가 있는 경우
- 전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와 월별 상품수불부 및 재고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분국이 정하는 기타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 사.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법적 책임

##### 1)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불법취득에 대한 처벌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불법 구매하거나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구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함께 또는 단독으로 2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불법 구매하거나 위조한 전용계산서를 구매하고 다시 허위발행 또는 판매할 경우 각각 형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2) 규정에 따라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증치세전용계산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고정사업자가 임시로 외지 성·시에 가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임의로 휴대하여 외출하고 경영지에서 전용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경영지 주관 세무기관은 영수증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고 휴대한 전용계산서에 '위장사용 폐기'라고 기입할 수 있다.

백지 전용계산서를 불법 휴대, 우편발송, 운송 또는 보존할 경우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전용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 분실·도난이 발생한 기업은 분실·도난 당일에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중국세무보」와 TV 등 매체를 통하여 분실·도난당한 세금계산서의 폐기를 공고·성명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는 외에 상황의 경중에 따라 반년 내에 전용계산

서를 사용·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존하고 있는 전용계산서를 회수하는 처벌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이 신고한 분실·도난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발행·대리발행을 발견할 경우 동 기업은 또 탈세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3) 규정에 따라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에 따라 전용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항목을 빠뜨리거나 재무 전용도장 또는 영수증 전용도장을 찍지 않은 등을 포함) 모두 세액공제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이 이미 전용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를 발행할 경우 제때에 실제금액 대로 당기의 매출액에 산입하여 과세해야 한다. 전용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매출계좌에 산입하여 계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탈세로 처리한다.

전용계산서를 허위발행할 경우 모두 계산서상 열거한 재화의 적용세율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세액을 보충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용계산서를 허위발행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허위발행하는 것, 자신을 위하여 허위발행하는 것, 타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허위발행하게 하는 것,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발행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전용계산서를 허위발행하거나 수출세액환급, 세액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영수증을 허위발행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발행한 세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상술한 행위로 탈세를 진행하여 금액이 특별히 크고 상황이 특별히 중하여 국가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단위범죄일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처하고 직접담당자인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담당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며, 허위발행한 세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허위발행한 세액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4) 증치세전용계산서를 위조·절도 및 불법판매하는 경우의 처벌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용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량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전용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용계산서를 판매할 경우 수량이 특별히 크고 상황이 특히 중하며 경제질서를 심히 파괴할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단위범죄의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처하고 동시에 직접담당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담당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량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용계산서 또는 수출환급세액, 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절도할 경우 형법상 국가수출환급세액 탈세에 관한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용계산서를 불법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량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량이 클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 5) 증치세세금계산서에 관한 기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전용계산서 사용규정을 위반하는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増値税专用发票使用规定**」과 「**税收征收管理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현금 이상의 국가세무국의 허가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전용계산서의 사용을 정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전용계산서를 회수하며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전용계산서사용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명하고 기한 내에 여전히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地·시급 이상 국가세무국의 허가를 거쳐 전용계산서의 사용정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재화를 구매하고 과세용역을 제공하면서 취득한 전용계산서의 ‘영수란(发票联)’, ‘공제란(抵扣联)’이 세금계산서 사용규정의 발행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용계산서의 ‘영수란’, ‘공제란’을 분실할 경우 그 원인을 묻지 않고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취득한 허위발행 또는 대리발행 전용계산서는 증치세의 합법적인 세액공제증빙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면서 금액을 지불한 단위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판매단위,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매출액이 규정된 기준 이상이고 회계계산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세무기관에 세무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일반납세자는 현금 이상 국가세무국의 허가를 거쳐 매입세액의 공제를 정지하고, 매출액에 따라 증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동시에 전용계산서의 사용권을 취소하고 보존하고 있는 전용계산서를 회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회계 계산이 건전해지고 세무기관에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때에야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할 수 있고 전용계산서의 사용권을 다시 허가할 수 있다.

## 10. 증치세 수출환급(出口退税) 관리

수출환급(出口退税)이란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한 증치세와 소비세를 영(零)세율제도에 의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납부할 증치세와 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1994년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잠정조례 및 소비세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出口货物退免税管理办法; 수출재화 환급관리 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증치세 수출환급이란 수출거래에 의한 증치세 수출환급제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출환급제도는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 또는 대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장부상에 매출로 기장한 후, 수출외화영수정산서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매월(1~15일까지) 과세기관에 신고하여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감면하는 제도이다.

수출환급제도는 零의 세율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을 환급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따른 환급과 면세와는 별도로 재정수입 조절을 목적으로 「增值稅暂行條例 制2条」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환급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시에는 최신의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가. 현행 免·抵·退稅의 시행 방법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은 면세·공제·환급(免·抵·退)이라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 ‘免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产货物)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抵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부품·연료·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한다(매입세액공제).
- ‘退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당월 공제(차감)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1) 면세·공제·환급(免·抵·退)의 기본 요건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이다. 생산기업이란 독립채산을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아울러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과 기업집단을 말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영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이하 ‘생산기업 수출’로 약칭)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증치세 면세·공제·환급(免·抵·退)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상업합자기업이 중국명품을 수출하는 경우, 对外贸易经济合作部(外经贸部로 약칭함)가 비준시에 확정된 수출 경영 범위 내에서 면세 및 환급 적용을 받는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产货物)를 수출하는 경우 계속 증치세 징수면제 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가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 2) 환급 및 면세 정책

중국 정부는 특정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환급 및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 수출 면세 후 환급(出口免税并退税)

다음의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세액을 환급한다.

- ① 수출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의 직접수출 또는 外贸企业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 ② 수출경영권을 가진 外贸企业이 직접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기타의 外贸

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재화

- ③ 생산기업이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 ④ 기타 특정기업이 수출하는 재화

□ 수출 면세와 매입세액 불환급(出口免稅不退稅)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 ①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 ② 外貿企業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일반계산서를 수취한 재화의 수출은 면세하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 ③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는 국가규정 면세품

□ 수출과세 후 매입세액 불환급(出口不免稅不退稅)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환급하지 않는다.

- ① 進料加工하여 수출하는 재화
- ② 피임약품과 기구, 고서적의 수출
- ③ 담배수출
- ④ 군용품 및 군대 관련 기업이 군수공장이나 군수부문에서 조달한 재화의 수출
- ⑤ 국가가 규정한 면세재화

나. 수출환급조건 및 수출환급 대상기업

수출하는 재화가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재화
- 대상 재화가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된 재화
- 장부상 수출매출로 처리한 재화
- 수출대금을 외화로 결제한 재화

수출환급 대상기업이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허가를 취득한 기업과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수출입면허를 보유한 대외무역기업
- 수출입면허를 보유한 제조기업
- 외상투자기업
-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로 수출하는 제조기업
- 특정기업(해외건설기업, 해외도급기업, 외항선박, 원양선박, 국외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 투자하는 기업, 외국정부 차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 낙찰된 국내기업, 국외에서 원료를 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 기타 특정기업 등)

#### 다. 수출환급 대상재화

수출 면세 후 환급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제품
- 대외무역기업이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재화
-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에 투자하는 재화
- 해외도급기업이 해외도급공사에서 사용하는 재화
- 외항선박, 원양선박에 공급하고 외화로 결제하는 재화
-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 국외로 반출되어 가공,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 원재료 및 부품
- 외국정부 차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서 국내기업이 낙찰받은 기전제품
- 특정 철강기업이 수출품 제조기업에 판매하는 강재
- 외국대사관, 영사관이 지정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자가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또는 중국산 제품
- 중국정부의 우대대출과 합자합작기금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재화

- 구상무역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
- 수출가공구 밖의 기업이 수출가공구 내로 반출하는 재화
- 보세구역 내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외 수출경영권 보유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품 가공에 사용하는 재화
- 보세구역 외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재화
-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
- 수출기업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매하고 계산서를 취득한 레이스, 공예품, 향신유, 임산물, 조립제품, 죽제품, 등나무제품, 어망어구, 송진, 오배자, 생옷, 말총, 산양가죽, 종이제품 등 12종
- 출국면세점이 판매하는 담배, 주류, 공예품, 실크, 의류, 강장식품
- 기타 환급이 승인된 재화

수출 면세가 가능하나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임가공 수출재화
- 고서화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재화
- 피임약품 및 피임도구
- 담배수출 면허를 가진 기업이 수출하는 정부의 수출할당 범위 내의 담배
- 군용품 및 군수기업이 수출하는 군수조달물품
- 대외무역기업이 직접 구입하여 수출하는 면세재화(면세농산물 포함)
- 대외무역기업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일반계산서를 취득하고 구입하여 수출하는 재화
- 국가가 규정한 자경농산물 등 기타 면세재화

수출면세가 불가능하나 환급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대외원조 수출재화
- 천연우황, 사향, 구리 및 구리합금 등 수출금지재화
- 수출쿼터 이외에 수출하는 원유

## 라. 免·抵·退의 계산방법

수출 재화의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免·抵·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先征後退(先징수 后환급)방법이다.

### 1) 免·抵·退의 계산방법

수출에 따른 증치세의 환급과 면세에 관한 현행 제도를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进出口货物实行免抵退办法的通知, 财税[2002]第7号;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수출 재화에 대한 진일보한 免抵退 판법 실행에 대한 통지」 및 「生产企业出口货物“免, 抵, 退”税管理操作规程(试行), 国税发[2002]11号; 생산기업의 수출재화에 대한 “免, 抵, 退”税 관리 조작 규정(시행)」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당기에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당기 납부 세액} = \text{당기 내수재화의 매출세액} - (\text{당기 매입세액} - \text{당기 免·抵·退 세액의 면세 불능 및 공제 불능 세액}) - \text{전기 미공제세액}$$

- 免·抵·退税額の 계산

$$\text{免·抵·退税額} = \text{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times \text{환율} \times \text{수출재화 환급률} - \text{免·抵·退 세액의 공제액}$$

그 중:

- ① 수출재화 본선인도가격(离岸价; F.O.B)은 수출영수증에 계산된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② 免·抵·退 세액의 공제액 = 면세구입 원재료가격 × 수출재화 환급률

- 당기 환급할 세액과 免·抵·退税額の 계산

- ①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当期期末未留抵税额) ≤ 당기 免·抵·退税額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当期应退税額) = 당기 기말 미공제 세액  
 당기 免·抵·税额 = 당기 免·抵·退税額 - 당기 환급 세액

②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 > 당기 免·抵·退稅額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 = 당기 免·抵·退稅額

당기 免·抵세액 = 0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은 당기 「增值稅納稅申報表」상의 ‘기말 미공제 세액(期末留抵稅額)’으로 한다.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계산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환율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화물 환급률)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공액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공제액 = 면세구입 원재료 가격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재화의 환급률)

## 2) 先征後退方法

外貿企業 및 기업재무제도를 실시하는 工貿企業이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단계에서의 매출 증치세를 면제한다. 구매한 재화의 원가는 外貿企業이 대금을 지불하면서 증치세도 지불하였으므로 수출 후 환급받은 징세와 환급액(退稅額)의 차는 원가에 산입한다. 外貿企業이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증치세 전용계산서상에 기록된 매입액에 환급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환급세액 = 外貿企業이 구입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금액 × 환급률  
= 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 - 수출재화 관련 공제할 수 없는 세액

外貿企業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자수·공예품 등 12가지 수출재화는 이미 구입하면서 증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환산한 다음 환급액을 결정한다.

$$\text{환급세액} = \text{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div (1 + \text{징수율}) \times 6\% \text{ 또는 } 5\%$$

## 마. 免·抵·退稅의 등록신청 및 처리시 필요한 증빙

### 1) 등록신청

제조기업 또는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출허가가 없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위탁 수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환급등록신청 또는 임시수출환급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서
-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위탁수출협의회서
- 기타 관련서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 거래은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서류와 당초 환급등록증을 첨부하여 과세기관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파산, 해산, 철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산관리국에 신고하기 전에 과세기관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매년 과세기관으로부터 환급등록증을 검열받아야 한다.

### 2) 免·抵·退의 기본절차 및 필요한 증빙

기본적으로 생산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고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상

매출로 처리한 후, 증치세 법정 납세기간 내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와 免·抵稅 신고를 하며, 증치세 납세신고를 완료한 후 매월 15일 이전(휴일이면 순연)에 다시 주관 세무기관에 ‘免·抵·退稅’ 신고를 한다. 세무기관은 생산기업이 신고한 免·抵·退稅 자료에 대하여 심사·심사비준·청산·검사를 실시한다.

신고시에 필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주관 세무기관에의 증치세 납세와 免·抵·退稅 신고시에는 다음 증빙을 제출한다.
  - ① 증치세납세신고서(增值稅納稅申報表)
  - ② 退稅부문(환급부문)이 확인한 生产企业出口貨物免·抵·退申報匯總表(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抵·退 신고 합산표)
  - ③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증빙
  
- 退稅부문(환급부문)에의 免·抵·退稅 신고시에는 다음 증빙을 제출한다.
  - ① 生产企业出口貨物免·抵·退申報匯總表(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抵·退 신고 합산표)
  - ② 生产企业出口貨物免·抵·退申報明細表(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抵·退 신고 명세표)
  - ③ 세무부문이 심사·확인한 증치세납세신고표(增值稅納稅申報表)
  - ④ 進料加工의 경우 일부 서류 추가 작성
  - ⑤ 정장 바인딩(裝訂成冊)한 보고표(報表)와 원시증빙
  
- 생산기업이 통관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退(稅)稅 관련 환급과 면세 관련 세무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주관 세무기관에 ‘免·抵·退稅’ 신고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수재화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 Ⅱ. 영업세(营业税)

### 1. 서론

영업세는 중화민국 시대부터 시행된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세목으로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도 계속 부과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1958년에 세제 간소화 조치를 취하면서 영업세·货物税·商品流通税 및 印花税 등의 네 가지 세목을 통합한 工商统一税를 부과하면서 영업세의 부과가 중지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이 가속되면서 경제발전상 영업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84년의 제2단계 利改税 개혁시에 영업세를 공상통일세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인 세목을 이루도록 했다. 국무원은 1984년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草案);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정조례(초안)」를 공포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상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위가 경영행위로 취득하는 영업수입에 영업세를 부과했다.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사회 및 정치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93년 12월에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를 제정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영업세를 시행하였다.

新营业税의 과세대상은 축소되었다. 즉 旧营业税에서 과세대상이던 상당수 항목들이 新营业税에서는 제외되고, 제외된 이 항목들이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회의에서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를 수정·공포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업세는 중국 내에서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현행 영업세는 증치세가 과세되는 가공, 수리수선용역을 제외한 용역과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영업세의 기본규정은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공포한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이다.

## 2. 납세의무자

### 가. 일반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영업세 잠정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함)되며, 영업세 잠정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용역이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전신업, 문화체육업, 오락 및 서비스업에 있어 과세항목의 범위에 드는 용역을 말한다.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는 유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국내라는 것은 세수행정 관할 구역을 말한다.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제기업, 기타의 기업 및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위, 기타의 단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세활동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현금,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한 독립 회계단위든지 비독립 회계단위든지 모두 포함된다.

개인이란 개인상공업자(个体工商户) 및 사업활동을 하는 기타 개인을 말한다.

#### 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형태

중앙철도운영사업의 납세자는 철도부이며, 합작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합작철도공사이고, 지방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지방철도 관리기관이다. 기간 운송 노선의 지방관리사업의 납세자는 지방기간 노선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로, 항공, 관로 및 기타 육상운송에 종사하는 단위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며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단위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도급으로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영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나 하청을 주는 기업은 임차인이나 하청인이 납세자가 된다.

#### 다. 원천징수의무자(扣繳义务人)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 및 설치업의 하청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청자가 된다.
- 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타인이 매표하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 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의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그 대리인은 그들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리인이 된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구입자가 원천징수 대리인이 된다.
  - 재보험업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 개인 연예관리비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연예관리영업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 영업세조례 제12조의 2항에서 언급하는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 3. 과세범위(과세거래)

#### 가. 과세범위

영업세의 과세범위에는 영업세 조례에서 언급된 중국 국내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가 포함된다.

과세용역이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전기·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및 서비스업에 있어 과세항목의 범위에 드는 용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교통운수업

교통운수업이란 운송도구 또는 인력·축력을 이용하여 화물이나 여객을 목적지로 운송함으로써 공간위치의 이동을 실현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세법은 교통운수업의 과세범위를 육로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도관운송, 하역운반 등으로 정하고 있다.

#### 2) 건축업

건축업은 건축, 조합, 설치 등 방법으로 제품과 토지를 연결시키는 생산활동으로서 제2산업에 속한다. 건축업은 유동성이 크고 건축제품이 다양하며 시공조건이 변화가 많고 시공주기가 길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건축업세목의 과세범위는 건축, 수선, 설치, 장식과 기타 공정작업이다.

건축이란 각종 건축물·구조물을 신축·개량 또는 확장하는 공정작업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과 연결된 각종 설비 또는 기둥(支柱), 컨베이어, 가마 및 금속구

조 공정작업을 포함한다.

수선이란 건축물·구조물에 대하여 수리와 보충, 보강, 보수 및 개선을 진행하고 본래의 사용가치를 회복하게 하거나 또는 사용기한을 연장시키는 시공작업을 말한다.

설치란 생산설비, 동력설비, 기중설비, 운송설비, 전동설비, 의료시험설비 및 기타 각종 설비의 조립·설치공정작업을 말하는데, 설비와 관련된 작업대, 사다리, 난간의 조립·설치공정작업과 설치된 설비의 절연, 방부, 보온 및 페인트 등 공정작업을 포함한다.

장식이란 건축물·구조물에 대하여 장식을 함으로써 더욱 보기 좋게 하거나 또는 특정된 용도를 가지게 하는 공정작업을 말한다.

기타 공정작업이란 건축, 수선, 설치, 장식 이외의 각종 공정작업을 말한다.

### 3) 금융

통상 금융이란 화폐자금의 유통을 말하는데, 즉 화폐, 신용, 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활동의 총칭이다. 예를 들면 화폐의 발행과 회수, 예금의 저축과 인출, 대부금의 방출과 회수, 국내외 자금의 환금과 결산, 금은, 외환, 유가증권의 매매, 어음할인시장(贴现), 콜 머니(同业拆借)시장의 활동, 보험, 신탁, 임대 등등은 모두 금융활동에 속한다.

영업세 잠정조례는 과세노무를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행위만이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므로 대부금, 결산, 신탁, 금융리스, 금융상품의 양도, 금융경영업(金融經紀業)과 기타 금융업무는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고, 자금조달업무와 금융기구간의 거래는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4) 보험업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통하여 상업화 경영원칙을 운용하여 집중된 보험료로 보험예비기금(保險後備基金)을 설립

하고 계약상 규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재산과 이익손실에 대한 경제보상 및 개인의 사망, 상해, 연로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데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경제행위이다.

보험업의 과세범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수취한 대가 즉 보험료와 저축성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이자수입이 해당된다.

### 5) 우편·통신업

우편이란 실물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로서 서신 또는 소포, 우편환송금, 잡지간행물, 우편물품 판매, 우편저축 및 기타 우편업무를 포함한다.

전신이란 각종 전송설비로 전자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전보, 팩스, 전화, 전화기 설치, 전신물품의 판매 및 기타 전신업무를 포함한다.

### 6) 문화·체육업

문화·체육업이란 문화·스포츠활동을 경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문화산업이란 문화활동을 경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과세범위는 공연, 방송과 기타 문화산업을 포함하고 유람지를 경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을 참조하여 과세한다.

스포츠산업이란 각종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거나 또는 스포츠 경기, 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7) 오락업

오락업이란 오락활동을 위하여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세목의 과세범위는 무도장, 노래방, 다방,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게임장,

PC방 등 오락장소를 경영하고 오락장소가 고객의 오락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음식 및 기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란 설비, 도구, 장소, 정보 또는 기술능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세목의 과세범위는 대리업, 여관업,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9) 무형자산의 양도

무형자산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실물형태를 갖추지 않지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종류는 많은데 토지사용권, 저작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영업권(商譽) 등이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는 무형자산으로는 토지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저작권, 영업권(商譽)이 있다. 즉 과세범위에 열거하지 않은 기타 무형자산의 양도는 본 세목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10) 부동산의 판매

부동산의 판매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은 건축물·구조물과 기타 토지부착물을 포함한다.

부동산 판매의 과세범위는 건축물·구조물 또는 기타 토지부착물을 판매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구조물 또는 토지부착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영구적인 사용권의 양도 및 제한된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구조물이란 건축·설치와 공정작업 등 생산방식을 통하여 형성된 건축제품을 말하는데 가옥, 굴뚝, 도로, 도기를 굽는 가마, 항구, 뚝, 우물, 기둥, 컨테이너, 금속구조공정 등을 포함한다.

기타 부착물이란 건축물·구조물 이외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기타 부동산을 말하는데 수목, 농작물, 화초 등을 포함한다.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란 유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이하 ‘과세활동’이라 함). 그러나 단위나 개인상공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과세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상’이란 현금, 재화 및 기타 경제적 효용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가 신축건물을 판매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가 건축활동을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가공·수선 및 교체용역은 과세용역이 아니다(이하 ‘비과세용역’이라 함).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한적 재산권이나 항구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단위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한다.

#### 나. 영토 내 과세대상 간주

다음 각 호의 활동은 중국 국내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한다.

- 국내에서 발생하여 제공되는 용역
- 국내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싣고 출국하는 것
- 국내에서 여행단을 모집하여 국외로 여행하는 것
- 양도한 무형자산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판매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
- 국내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내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국내의 보험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 다만, 국내의 보험기관이 수출재화를 위해서 제공한 보험은 제외한다.
- 국외의 보험기관이 국내의 재화를 목적물로 하여 제공하는 보험서비스

#### 다. 혼합판매행위(混合行爲)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 영업세 과세용역의 제공과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판매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하나의 판매행위가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됨과 동시에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용역의 제공은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포함되어 영업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하여 재화의 판매는 증치세의 과세범위에 포함되어 증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과세용역의 제공과 재화의 판매의 양자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세와 증치세 중 어느 과세행위의 발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혼합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 단위나 개인상공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분류하며, 판매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
- 위의 대상 이외의 단위 및 개인의 혼합판매 활동은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여 그 판매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

위에서 언급된 재화란 유형의 동산을 말하며 전기, 열 및 가스를 포함한다.

기업 재화의 생산, 도매 및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단위나 개인상공업자에게는 주로 재화의 생산, 도매 및 소매활동에 종사하면서 과세용역에도 종사하는 기업, 기업의 성격을 가진 단위, 개인상공업자를 말한다. 납세자의 판매활동이 혼합판매활동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 라. 겸영행위(兼营行为)

겸영행위라 함은 한 납세자가 재화의 공급 또는 노무의 제공을 별개의 거래행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겸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하여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 대해 증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겸영한 과세용역이 증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세무총국 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면세, 감세 항목의 영업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영업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 및 감세를 해주지 않는다.

## 4. 세율

영업세의 과세항목과 세율은 「영업세 과세항목 및 세율표」에 정해져 있으며, 그 조정은 국무원에서 한다. 세율은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에는 간편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3%와 5%의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표 11-1〉 영업세의 세율

(단위: %)

과세항목	과세범위	세율
1. 교통·운송업	육상, 수상, 항공 및 관료, 하역 및 인도	3
2. 건축업	건설,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기술용역	3
3. 금융·보험업		5
4. 우편·전기·통신업		3
5. 문화·체육업		3
6. 오락업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 및 오락시설	5~20
7. 서비스업	대리업, 호텔, 음식점,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및 기타용역	5
8. 무형자산의 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권의 양도,	5
9. 부동산의 양도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양도	5

주: 유흥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특정세율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 직할의 성, 자치구 및 특별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 5. 납세의무 발생 시기

### 가. 기본규정

영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대가를 수취하거나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때이다.

나. 특수규정

1) 선수금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선수금(预收款)을 받는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수금에는 착수금도 포함된다.

2) 自家 건축 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自家 건축물이 판매되고, 그 수입금을 수령하거나 판매액을 징수할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취득하는 때이다.

3)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양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이다.

4) 건설업의 경우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구체적으로 통지에 규정되어 있다(1994. 7. 18. 国税发 [1994] 159号 참조)

5)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를 수취하거나 또는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날이다.

## 6.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영업세의 납부할 세액은 수입금액 및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영업세 수입금액} \times \text{세율}$$

납세의무자가 외화로 영업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는 데 적용하는 외화환율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당일 또는 당해 월 1일의 기준환율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어느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1년간은 변경할 수 없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입금액(영업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금융업은 외화를 수령하는 당일 또는 당해 분기말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하는 기준환율에 의해 영업액을 환산하고, 보험업은 외화를 수령한 당일 또는 당해 월말의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하는 기준환율에 의해 영업액을 환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어느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1년간은 변경할 수 없다.

### 가. 수입금액(营业额)

납세자의 영업세 수입금액이란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판매의 경우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전대가와 가격외 비용의 총액이다.

가격외 비용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기금, 자금조달비용, 대리수령 금액, 대체금 등 금전 이외에 수취하는 각종 성격의 대가를 말한다.

- 모든 가격외비용은 회계정책규정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영업세는 납세의무자가 속한 업종마다 각각 영업수입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결

정에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영업세 규정은 업종마다 구체적으로 영업세 수입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의 영업액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가격이 명백히 낮고 이를 합당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납세의무자가 해당 월에 제공한 동종의 과세용역 또는 판매한 동종의 부동산의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영업액 결정
- 납세의무자가 최근에 제공한 동종의 과세용역 또는 판매한 동종의 부동산의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영업액 결정
- 다음 공식에 따라 조성계세가격(과세표준)을 결정

$$\text{과세표준} = \text{영업원가 또는 공사원가} \times \frac{(1 + \text{원가이익률})}{(1 - \text{영업세율})}$$

※ 원가이익률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산하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 7. 구분경리

### 가. 품목별 구분경리

서로 다른 과세품목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수입액, 양도금액 및 판매액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수입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조세감면 품목의 구분경리

영업세를 감면하는 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의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지 않으면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다. 증치세 과세대상과의 구분경리

과세용역과 과세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에 모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용역의 판매액과 재화의 판매액이나 비과세용역 판매액을 별도로 기장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별도로 기장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용역과 재화 그리고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모두 증치세를 과세하며 영업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과세 및 비과세 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 동 겸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증치세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세무총국 산하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 8. 영업세 우대정책(감면세)

영업세의 우대정책은 국가경제 생활을 큰 범위에서 조절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저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우대와 감면세 그리고 과세개시점을 포함한다.

#### 가. 과세개시점(起征点)

영업수입금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영업세 과세개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영업세의 과세개시점을 규정한 것은 납세자 중 개인이 경영활동에서 기본적인 수입수준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과세개시점의 규정은 개

인에게만 적용된다. 세법은 영업액이 과세개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영업액이 과세개시점에 도달할 경우 전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세 잠정조례 및 그 실시세칙은 과세개시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세무기관이 당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당지에서 적용하는 과세개시점을 확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재정부가 정한 영업세 과세개시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간별(월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개시점은 월별 수입금액 1,000~5,000元
- 횟수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개시점은 매 회당(또는 1일) 수입금액 100元

수입금액이 과세개시점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나. 감면세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영업세를 면제한다.

-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부양,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참여 학습 계획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적 신앙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 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제, 식물보전, 농목업, 보험용역 및 관련

기술훈련용역, 가금, 축산, 및 수중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 치료용역

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하며,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다.

## 9. 신고와 납부

### 가. 징수기관

영업세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영업세 징수는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른 현(또는 시)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여 용역이 발생된 곳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정시설이 소재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이 미납세액을 징수한다.

### 나. 납세지

#### 1) 기본규정

영업세의 납세지는 과세용역의 발생지를 기준으로 한다.

#### 2) 특수규정

영업세 납세지의 기본규정 외에 업무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규정을 두고 있다.

- 각 지방의 세원 경쟁으로 인한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은 납세자가 여러 개의 성에 걸친 건축업 공정노무를 제공할

경우 노무제공자의 기구 소재지에서 납세하고, 운송업에 종사할 경우 손익을 계산하는 기구의 소재지에서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납세하고,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기구 소재지에서 납세한다.
- 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세한다.
- 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권·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토지·부동산의 소재지이고, 단위와 개인이 물품·설비 등 동산을 임대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임대단위기구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거주지로 한다.
- 중국 국내에 있는 전신단위가 전신업무를 제공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전신단위의 기구 소재지로 한다.
- 중국 국내에 있는 단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기타의 단위와 개인에게 교육, 정보, 원거리 성능테스트, 검사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단위기구 소재지로 한다.
- 중국 국내에 있는 단위가 설계(설계과정에서의 탐사·측량 등 업무를 포함한다), 공정감독관리, 성능테스트와 자문 등 과세노무를 제공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단위기구 소재지로 한다.

### 3) 신고납부 특례

공사 현장이 둘 이상의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4) 납세지 변경

소재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지역 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는 납세자가 납세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세무기관이 납세지를 결정한다.

#### 다. 납부기한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개 분기이다. 납세자의 실제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관할 세무국이 결정하며 과세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 또는 1개 분기를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5일, 10일, 15일로 선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정된 세액의 잔액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위 두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다만, 금융업(전당업제외)에 대한 과세기간은 분기이며, 보험업의 과세기간은 1개월이다.

### Ⅲ. 소비세(消費税)

#### 1. 서론

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비생활필수품)인 컬러TV와 소형승용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198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세목으로서, 원래의 명칭은 「特別消費税」였다. 당시 문란했던 이 두 품목의 생산 및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또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2월에 「关于对彩色电视机, 小轿车开征特別消費税的决定; 컬러TV와 소형승용차에 대한 特別消費税 과세 결정」을 공포하고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 세목은 생산자·위탁가공자 및 수입자 등이 부담하며 물품의 원가를 구성하였다.

1992년에 이르러 컬러TV의 보급이 보편화되자, 컬러TV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를 중지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소형승용차 한 품목만 남게 되었다. 1993년 12월 국무원이 「中华人民共和国消費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를 발표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소비세가 시행됨에 따라 하나의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 시대는 마감되고 11개의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세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세가 11개의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 조정적인 위치에 있어서 사치성 소비재 내지는 소비억제 대상품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새로운 소비세제를 통해서 여전히 소비구조를 조절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며 가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세는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거시 조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비세의 기본규정은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中华人民共和国消費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및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공포한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이다.

## 2. 납세의무자

### 가. 일반규정

소비세는 중국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에 열거된 소비세 과세물품(금·은장식은 불포함)을 생산, 위탁가공 또는 수입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위(单位)란 기업(국유기업·집체기업·사영기업·주식제기업·합영기업·외상투자기업 및 기타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말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个体工商户) 및 중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개인을 가리킨다.

중국 국내란 소비세 과세물품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가 국내인 것을 가리킨다.

### 나. 특수규정

중국 국내에서 금은·보석과 도금악세사리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금은·보석과 도금악세사리 소비세의 납세자이다. 금은·보석과 도금악세사리를 위탁가공하고 위탁대리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도 납세자이다.

### 다.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물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과세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소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과세물품을 단체에게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자가 되며, 과세물품을 수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단체가 소비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납세자가 개인에게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물품을 회수한 후 위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개인상공업자에게 과세물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미 소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위탁인이 수령한 후 직접 매출하였다면 다시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3.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 가.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소비세 과세항목 및 세율·세액표」에 열거되어 있다. 즉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열거되지 않는 것은 소비세 과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6년 3월에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14개 품목에 소비세가 과세된다. 담배, 주류 및 주정, 귀중품 및 보석류, 완성유, 오토바이 그리고 소형자동차는 별도의 세부 항목이 있다.

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과 정액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세대상 품목별로 비례세율이나 정액세율의 적용은 주로 각종 과세소비재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과세대상 소비품의 품목별 세율

(단위: %)

과세품목	세율(세액)	과세품목	세율(세액)
1. 담배류		⑤ 溶剂油	리터당 0.20원
① 갑류궐련	표준상자 150원 + 판매액 × 45%	⑥ 윤활유	리터당 0.20원
② 을류궐련	표준상자 150원 + 판매액 × 30%	⑦ 연료유	리터당 0.10원
③ 雪茄烟(궐련)	25	⑧ 항공유	리터당 0.10원
④ 시가(cigar)	30	7. 자동차 타이어	3
2. 주류 및 주정		8. 오토바이	
① 粮食 및 薯类 백주	매 斤당 0.50원 + 출고가격 × 20%	① 배기량 250cc 미만	3
② 황주	톤당 240원	② 배기량 250cc 초과	10
③ 갑류 맥주	톤당 250원	9. 소형자동차	
④ 을류 맥주	톤당 220원	① 승용차(9인승 미만)	
⑤ 기타주	10	1) 배기량 1.5ℓ 미만	3
⑥ 酒精	5	2) 배기량 1.5ℓ ~ 2.0ℓ	5
3. 화장품, 고급 피부·모 발보호용품	30	3) 배기량 2.0ℓ ~ 2.5ℓ	9
4. 귀중품 및 보석류		4) 배기량 2.5ℓ ~ 3.0ℓ	12
① 금·은장신구, 다이아 몬드 및 동 장신구	5	5) 배기량 3.0ℓ ~ 4.0ℓ	15
② 기타 귀금속류, 보석류	10	6) 배기량 4.0ℓ 초과	20
5. 폭죽 및 폭염	15	② 中轻型商用客车 (10~23 인승)	5
6. 완성유		10. 골프공 및 용품 등	10
① 무연휘발유	리터당 0.20원	11. 고급 손목시계	20
② 유연휘발유	리터당 0.28원	12. 요트(游艇)	10
③ 디젤유	리터당 0.10원	13. 1회용 나무젓가락	5
④ 나프타	리터당 0.20원	14. 원목 바닥재(마루)	5

주 : 종량세 적용 과세품목의 환산단위는 맥주 1톤 = 988리터,

황주 1톤 = 962리터, 휘발유 1톤 = 1,388리터, 디젤유 1톤 = 1,176리터

현행 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며 황주·맥주·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는 정액세율을 적용하며, 담배·곡물 및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에 대해서는 혼합과세방식을, 그 외의 과세소비재에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정액세율은 적용하는 품목은 사용량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산정의 편리를 위하여 이같은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세는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价内稅이다. 즉 생산·유통가공 또는 수입하는 단계에서 세금이 납부됨에 따라 이후 도매·소매 등의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비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확정하고 기타 어떤 단위(조직)나 개인은 조정할 수 없다.

#### 나. 각종 과세소비품을 겸영할 경우의 적용세율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비품의 매출액·판매수량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판매수량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소비품과 비과세소비품 그리고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비품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트제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품의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취급하는 납세자란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 다. 주류제품에 대한 적용세율의 확정

주류란 알코올도수가 1도 이상인 각종 주류이다. 주정이란 증류 또는 합성 방식으로 생산된 주정도수 95도 이상인 무색투명한 액체를 말한다. 주류에는 곡물로 빚은 白酒, 고구마로 빚은 白酒, 황주, 맥주 및 기타 酒로 구분된다. 주정에는 각종 공업용 주정, 의료용 주정 및 식용 주정이 포함된다.

주류의 징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정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백주(白酒)는 주정으로 사용된 원료에 의해 결정된 백주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세율을 확정한다. 주정원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을 적용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주정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백주는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외부에서 구입한 백주의 도수를 낮추거나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병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기타 외부에서 구입한 백주에 향 또는 조미료를 가하여 생산한 백주는 사용한 원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원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모두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외부에서 구입한 백주가 품종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일률적으로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곡물, 고구마류 등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백주는 곡물로 빚은 백주로 보고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고구마류 및 곡물 이외의 기타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백주는 모두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로 보고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4. 납세의무 발생시기

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매출대금의 결제방식 또는 행위의 발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매출한 과세소비재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외상매출 또는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대금 회수일에 납세의무가 발생
  - ② 선수금(預收款)을 받고 매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비재를 인도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
  - ③ 위탁판매 및 은행위탁수금방식(托收承付和委托银行收款)으로 매출한 과세소비재는 과세소비재를 인도하고 인수절차가 완료된 날 납세의무가

발생

④ 기타의 경우에는 매출대금을 수취하거나 매출대금을 받기 위해 증빙을 수취한 날 납세의무가 발생

- 자가 사용한 과세소비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이송하여 사용한 날
  - ※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납세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이전한 때에는 소비세를 부과한다.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재화를 수령한 날
  - ※ 원청자가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하청 가공된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수입한 과세소비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당일이다.

## 5. 납부할 세액 계산

소비세의 납부할 세액은 세율에 의거 계산하는 종가세와 단위당 세액에 의거 계산하는 종량세 및 양자의 혼합계산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가. 계산공식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에 따르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하에서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판매액(매출액) × 세율

종량법하에서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판매량이란 다음에 규정하는 과세소비재의 양을 말한다.

- 과세소비재의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소비재의 판매량을 말한다.
- 자가생산 과세소비재의 자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제공된 과세소비재의

양을 말한다.

- 가공을 위하여 하청된 과세소비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회수한 과세소비재의 양
-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이 확인한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과세평가량

규정에 따라 과세소비품의 계량단위의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맥주 1톤 = 988리터

황주 1톤 = 962리터

휘발유 1톤 = 1,388리터

디젤유 1톤 = 1,176리터

용제유 1톤 = 1,282리터

윤활유 1톤 = 1,126리터

혼합과세방식이란 종가법과 종량법을 결합한 과세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적용범위는 담배·곡물 및 고구마류로 빚은 맥주가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비례세율} + \text{판매수량} \times \text{정액세율(또는 단위세액)}$$

## 나. 판매액의 확정

### 1) 판매행위의 확정

판매액(과세표준)을 확정할 때 우선 과세소비품의 판매행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소비세 조례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 상황은 모두 판매 또는 판매로 간주하여 매출액(또는 판매량)을 확정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 과세소비품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 양수인으로부터 화폐, 재화, 노무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세소비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비품으로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을 교환하는 것, 과세소비품으로 수수료 또는 매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 판매량 이외에 구매자 등에게 장려 또는 보수의 용도로 별도로 과세소비품을 지불하는 행위
- 납세자가 자가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을 기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납세자가 비과세소비품의 생산과 재건공정, 관리부문, 비생산기구, 노무의 제공 및 증여, 협찬, 광고, 샘플 및 직원 복지장려 등에 사용하는 경우 모두 판매로 본다.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 : 위탁가공이란 위탁자가 원료와 주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비를 수취하고 일부 보조재료를 잠시 대신 사용하여 과세소비품을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한 과세소비품 또는 수탁자가 먼저 원재료를 위탁자에게 판매한 후 다시 가공을 접수하는 과세소비품,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과세소비품은 납세자의 재정상 판매로 처리하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수탁자가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탁가공해서 회수한 과세소비품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을 계산하지 않고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2) 종가법하에서의 판매액

- 과세소비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총대가 및 가격외비용이다.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증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과세소비품의 판매액에서 증치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판매액과 증치세를 함께 수취하였다면 소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치세를 제외한 판매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소비재 판매액} = \frac{\text{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1 + \text{증치세율 또는 징수율})}$$

‘가격외 비용’란 기타의 기금, 기금모집비, 반환이익, 교부금, 위약금(연체이자),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임시비용, 품질보상비, 운임 및 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 및 기타 청구한 가격에 가산되는 성격의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운송부문이 운송비를 구매자에게 교부한 것
- ② 납세자가 그 영수증을 구매자에게 교부한 것

기타 가격 외 비용은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 모두 판매액에 산입해야 한다.

- 납세자가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을 교환하는 데 사용한 과세소비품, 주식투자 및 채무상환 등 용도에 사용한 과세소비품은 납세자의 같은 유형 과세소비품의 최고 판매가격을 판매액으로 해서 소비세를 계산해야 한다.
- 자가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은 납세자가 생산하는 같은 유형 과세소비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자가 사용을 위해서 자가 제조한 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성평가가격(추정가격)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조성평가가격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조성평가가격} = \frac{(\text{원가} + \text{이윤})}{(1 - \text{소비세율})}$$

원가란 과세소비품의 생산원가이고, 이윤이란 과세소비품의 전국 평균이윤율에 따라 계산한 이윤을 말한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이란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이 당월에 판매한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법으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을 계산할 수 없다.

- ① 판매가격이 정확한 입증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
- ②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자가 제조해서 사용하는 소비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비독립계산 소매부(門市部)에 판매한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은 외부 판매액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비품을 구매하여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소비세 납부세액에서 구매한 소비품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은 수탁자의 같은 유형 소비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같은 유형 소비품의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조성평가가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같은 유형 과세소비품의 판매가격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에 판매한 같은 유형 소비품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만약 당월에 판매한 같은 유형 소비품의 각 기간의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판매수량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판

매가격이 현저히 낮으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는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가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세소비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사한 소비품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성평가가격을 이용하여 과세한다. 조성평가가격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조성평가가격} = \frac{(\text{재료원가} + \text{가공수수료})}{(1 - \text{소비세율})}$$

재료원가란 위탁자가 가공재료를 제공하는 실제 원가를 말한다.

가공수수료란 수탁자가 과세소비품을 가공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비용(대신 지불한 보조재료의 실제원가를 포함)을 말한다.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다시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할 경우 과세시 소비세 납부 세액에서 원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허용하는 원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이라 함은 휘발유, 디젤유, 소형 승용차를 제외한 일곱 가지의 이미 세금을 납부한 원료를 말한다.

- 수입 과세소비품은 조성평가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종가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수입소비재는 조성평가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조성평가가격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조성평가가격} = \frac{(\text{관세과세가격} + \text{관세})}{(1 - \text{소비세율})}$$

### 3) 종량법하에서의 판매액

종량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비품의 수량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과세소비품을 생산·판매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비품의 판매수량이다.
- 자가 제조하고 자가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비품의 이송(移送) 사용수량이다.
- 과세소비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취득한 과세소비품의 수량이다.
- 수입과세소비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이 확정한 과세소비품의 수량이다.

### 4) 종량세 및 증가세의 혼합계산방법의 판매액

담배와 곡물로 빚은 백주,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에 대하여 동시에 매출액·판매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증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계산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액과 판매수량은 증가세 계산방법에서의 매출액과 종량세 계산방법에서의 판매수량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과세소비품의 판매수량} \times \text{단위세액} + \text{과세소비품의 판매가격} \times \text{비례세율}$$

### 5) 과세소비품의 조사결정 과세가격(추계과세)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과세가격을 확정하여 확정된 과세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 확정권한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담배와 곡물로 빚은 백주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 기타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은 성급 국가세무국이 확정한다.
- 수입한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확정한다.

다. 소비세 감면세액 · 환급세액의 계산

1) 과세소비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① 생산 · 판매하는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세율인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하한 후의 세율로 소비세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한다.
- ② 생산 · 판매하는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 · 징수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납세자가 외부구입하거나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연속적으로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계산방법은 앞서 말한 과세소비품을 생산판매 · 위탁가공하는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를 수 있다.
- ④ 생산 · 판매하는 배기량의 오염률이 낮은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세를 허가받았을 경우, 납부세액과 규정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해야 할 소비세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감면세액} = \text{적용세율} \times \text{매출액} \times 30\%$$

$$\text{납부해야 할 세액} = \text{적용세율} \times \text{매출액} - \text{감면세액}$$

2) 수출시의 소비세 감면세액 · 환급세액 계산방법

수출 과세소비품은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 외에, 면세 또는 선징 후퇴(先征後退; 先징수 后환급) 또는 세액환급을 진행한다.

- 수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하는 계산방법

- ① 증가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경우, 생산기업이 자가 제조

한 과세소비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게 한 공장의 매출액을 근거로 면제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감면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감면해야 할 소비세액} = \text{수출 과세소비품의 공장 실제매출액} \times \text{소비세 세율}$$

- ② 종량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경우, 실제 수출량에 따라 면제한다. 감면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감면해야 할 소비세액} = \text{과세소비품의 실제 수출량} \times \text{단위세액}$$

실제 징수관리 중에 수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직접 면세할 경우 납부해야 할 소비세와 면제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선징후퇴(先征後退; 先징수 后환급) 소비세의 계산방법

- ① 증가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생산기업이 동 과세소비품의 수출을 위탁한 공장의 매출액을 세액환급의 근거로 하여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환급세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text{수출 과세소비품의 공장매출액} \times \text{소비세 세율}$$

- ② 종량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실제 수출량을 근거로 환급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text{과세소비품의 실제 수출량} \times \text{단위세액}$$

- 수출환급세액의 계산방법

- ① 증가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무역회사가 공장으로부터

동 과세소비품을 구입할 때 소비세를 징수하는 가격을 환급세액의 근거로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공장의 매출액에 증치세 세액을 포함할 경우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급세액의 근거로 해야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text{수출 과세소비품의 구입금액(또는 공장매출액)} \\ \times \text{소비세 세율}$$

- ② 종량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무역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수량을 환급세액의 근거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text{과세소비품의 수출량} \times \text{단위세액}$$

수출 과세소비품의 매출액 및 세액이 현저히 높고 정당한 이유도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액환급 또는 면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외국통화 판매액의 환산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이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과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에 대하여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액을 인민폐로 환산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환율은 대금 회수 당일이나 당월의 초일에 발표된 국가고시환율(원칙적으로 중간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어떤 종류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한번 채택한 환산율은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 6. 감·면세

### 가. 비과세

당해 소비품을 별도의 소비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비과세한다.

### 나. 면제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수출된 과세소비재의 세액 면제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 7. 징수 및 납부

### 가.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 1) 일반적인 과세기간 및 납부기한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개 분기이다. 납세자의 실제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중요성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이 별도로 정하며 정수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 또는 1개 분기를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15일 내에 정산하여 납부한다.

## 2) 수입하는 경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통관 및 세액납부증명이 발행된 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나. 납세지

소비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재(외지에서 스스로 판매하거나 위탁대리 판매하는 것을 포함) 및 자가 제조·자가 사용한 과세소비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자 주관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그 중 납세자가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을 외지에서 판매하거나 위탁대리 판매하게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소비품의 판매를 심사·허가받은 후 납세자 주관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납부한다.
- 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縣(市)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는 지점 소재지에서 소비세를 납부한다.
- 과세물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대리 징수하여 납부한다. 수탁자가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원천징수행위에 속하고 진정한 납세자는 여전히 위탁자이다.
- 수입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과세소비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한 세관(수속지 세관)에서 소비세를 납부·납부한다.
- 납세자가 다른 縣(市)에 가서 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를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縣(市)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된 후 납세자 소재지 또는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자가 과세소비품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서 일정 조건하에 소비세를 환급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환급지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과세소비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소비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선징후 퇴방법(先征後退方法)을 취했을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자는 세관신고지의 수출세액 환급업무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의 환급을 신청한다. 다만 수출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세액환급을 처리한 후 다시 반품이 발생하면 수출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소재지의 수출세액 환급업무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이미 환급받은 소비세 세액을 신고 및 보충 납부해야 한다.
-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품에 품질 등 문제가 있어 구매자가 반품할 경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 및 확인을 거친 후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다. 납세절차

##### 1)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납세절차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품은 판매시에 세금을 납부한다. 소비세는 价内徴收 방법을 실시하기 때문에 세액은 소비품 가격의 구성부분이다. 과세소비품을 판매한 후 매출액의 실현에 따라 소비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도 실현이 되고 판매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은 세금이 실현되는 단계와 일치하여 재정수입이 제때에 확보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 2) 자가 제조하고 자체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의 납세절차

납세자가 자가 제조해서 자체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을 연속적으로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송해서 사용시에 납세한다.

### 3)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납세절차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화물을 교부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4) 수입 과세소비품의 납세절차

수입 과세소비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한다.

## 제4편 재산세제

### I.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 1. 서론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래 중국 정부가 국유토지 사용권의 유상양도를 허락한 이후, 도시 토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결과 부동산이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국 정부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13일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稅暂行條例;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를 제정하여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5년 1월 27일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稅暂行條例實施細則;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토지증치세는 단위 및 개인이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속물을 양도하고서 취득하는 가치증가액(增值收益;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 2. 납세의무자

국유토지 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속물(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칭함)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위는 각종 기업·사업단체·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개

인은 개인상공업자를 포함한다.

외상투자기업(外商投资企业), 외국기업, 외국의 在中 기구, 외국 국민,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등도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으면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과세대상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착물을 양도하고서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란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속·증여방식으로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유토지란 국가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상건물이란 지상·지하의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토지상에 건설한 일체의 건축물을 말한다.

부착물이란 토지상에 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일단 이동하면 손상되는 물품을 말한다.

### 4. 공제금액의 계산

가치증가액(增值額)이란 양도할 토지사용권 또는 지상건물 등에 대한 취득가격의 초과부분인데,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다음 공제항목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가치증가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 납세의무자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토지대금과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리비용을 말한다.

### 2) 토지개발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신축원가(비용)

-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에 토 지수용 및 이주보상비·전단계공사비(선급공사비)·건설공사비(建築安裝工 程費)·기초시설비·附帶公共施設費 및 개발간접비용을 포함한다.
- 토지수용 및 이주보상비는 토지수용비·경작점용세·노동력 재배치 및 유 관 지상·지하 정착물의 철거·퇴거보상을 위한 순지출, 이주용 건물구입 관련 지출 등을 포함한다.
- 전단계공사비(선급공사비)는 기획·설계·사업타당성 연구와 수맥(水文)· 지질조사·측량·제도·3通1平(상하수도, 전기, 도로, 整地) 등 지출을 포함 한다.
- 건설공사비는 도급 형식으로 도급단위(하청업체)에 지불한 비용과 자체 영 업방식으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 기초시설비는 개발구역 내의 도로·수도·전기·가스·하수처리·통신·조 명·환경위생·녹화 등 공사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 부대공공시설비는 개발구역 내의 유상양도할 수 없는 공공 관련시설에 발생 한 지출을 포함한다.
- 개발간접비용은 개발사업을 직접 조직 및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 하며, 인건비·직원복리비·감가상각비·수리비·사무비·수도전기료·노동 보호비·가설전용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 3) 토지개발, 신축건물 및 그 부착물에 대한 비용 등 부동산 개발비용 또는 기존 사용 주택 및 건축물의 평가액

- 부동산 개발비용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련된 판매비용·관리비용·채무비용을 말한다.
- 채무비용 중의 이자지급은 부동산 양도 항목별로 비용을 계산·배분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실제대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업은행의 동기 동종 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부동산 개발비용은 위 1),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합계금액의 5% 이내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 이자지급을 부동산 항목에 따라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 개발비용은 위 1),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합계금액의 10% 이내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 기존 사용 주택 및 건축물을 양도하는 때는, 정부가 설립을 비준한 부동산 평가기구가 평가 결정한 대체원가(재취득원가)에 신규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평가가액이 되며, 이 평가가액은 반드시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상술한 공제액 계산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 4)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조세

- 부동산 양도시 납부한 营业税·城市维护建设税·印花税를 말한다.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납부한 教育费附加金도 세금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다.

### 5) 재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위 1), 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합계금액의 20%를 공제항목금액에 가산이 가능하다.
- 납세자가 대규모 일괄개발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양수한 후 부동산을 분할 개발하여 재양도할 경우, 공제금액은 총토지면적에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계산하여 할당하거나 세무기관이 확인한 기타 방식으로 계산하여 할당할 수 있다.

## 5. 세율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초과누진을 구조이다.

〈표 1-1〉 토지증치세 세율표

(토지)가치증가액	적용세율
공제금액(필요경비)의 50% 미만	30%
공제금액의 50% 이상 100% 미만	40%
공제금액의 100% 이상 200% 미만	50%
공제금액의 200% 이상	60%

## 6. 납부세액의 산출

토지증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가치증가액과 세율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다. 가치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입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식 중의 5%, 15%, 35%는 속산공제계수이다.

- 가치증가액(增值額)이 공제항목금액의 50% 미만

$$\text{토지증치세액} = \text{가치증가액} \times 30\%$$

- (토지)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50% 초과, 100% 미만

$$\text{토지증치세액} = \text{가치증가액} \times 40\% - \text{공제항목 금액} \times 5\%$$

- (토지)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100% 초과, 200% 미만

$$\text{토지증치세액} = \text{가치증가액} \times 50\% - \text{공제항목 금액} \times 15\%$$

- 공제항목금액의 200% 이상

$$\text{토지증치세액} = \text{가치증가액} \times 60\% - \text{공제항목 금액} \times 35\%$$

## 7. 감면규정

### 가. 면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 ① 납세의무자가 보통표준주택(普通标准住宅)을 건축하여 판매하되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보통표준주택은 소재지의 일반민용주택(一般民用住宅)표준에 따라 건축한 거주용 주택이다. 고급아파트, 별장, 콘도단지(度假村) 등은 보통표준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 보통표준주택과 기타 주택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각 성·자치구·직할

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 납세자가 보통표준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고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치증가액 전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징수한다.
- ② 국가건설의 수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용(征用·收回)한 부동산
- 도시계획 및 국가건설의 필요로 정부에 수용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 나. 거주기간에 의한 감면

개인이 업무조정(근무지 변경) 또는 거주조건의 개선으로 인하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自用住宅)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하며, 거주기간이 만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50% 경감하여 징수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대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지만,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 다. 구분계산

납세의무자가 보통표준주택과 기타 다른 종류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부동산의 가치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각각 구분하여 가치증가액을 계산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표준주택에 대해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

## 라. 감면신청

상술한 감면규정에 부합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세무기관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심의를 받아 토지증치세를 감면받는다.

## 8. 평가가격의 적용

납세의무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가격에 따라 계산·징수한다.

- ① 부동산 매매가격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지상건축물 및 그 부차물의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낮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동산 매매가격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부동산평가기구가 동일지역, 동종 부동산의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가격은 반드시 주관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세무기관은 평가가격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치증가액을 확정한다.
  
- ② 제시된 각종 공제항목 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할 때 공제항목금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 공제항목금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기구는 건물대체원가(重置成本价)에 신구할인율(成新度折旧率)를 곱하여 계산한 건물원가와 토지사용권 취득시 기준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 세무기관은 평가가격에 따라 공제항목금액을 확정한다.
  
- ③ 양도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격이 부동산평가기구가 평가한 거래가격보다 낮고, 증빙이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세무기관은 부동산평가액을 참고하여 부동산 가치증가액을 확정한다.

## 9.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신고시에는 신고서에 건축물과 토지사용권증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보고서 및 부동산 양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액을 신고한다.

세무기관이 확정된 세액 및 지정한 납기 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지정한 납기란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 변경 및 등기를 하기 전을 말한다.

납세자가 빈번하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해 부동산 양도후 매건마다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한은 세무기관이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납세자가 전체 항목의 준공 결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입이 발생했지만 원가 확정 또는 기타 원인으로 토지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토지증치세를 먼저 징수하고 해당 항목 전부가 준공되어 결산을 마친 후 정산하여 초과납부한 부분은 환급받고 과소납부한 부분은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이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준공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입이 발생했지만 원가 확정 또는 기타 원인으로 토지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때는 토지증치세를 먼저 예정납세한 후 당해 부동산이 준공되어 결산을 마친 후 정산하여 초과되는 부분은 환급받고, 과소납부 부분은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세무국이 현지의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납세의무자가 토지증치세 조례에 따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관리부문 및 부동산관리부문은 관련 소유권 이전절차를 실행해서는 아니 된다.

## 10. 징수 등

토지증치세의 징수와 관리는 「**稅收徵收管理法**」의 관련 규정과 본 조례에 따라 수행한다.

토지증치세는 인민폐(人民币)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이 외국화폐일 경우, 수입취득 당일 또는 당월 1일 국가 외환관리기관(중국 인민은행)이 공표한 공시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세액을 계산한다.

## II. 방산세(房产税)

### 1. 서론

현행 방산세는 1986년 9월 15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 잠정조례」를 제정·반포한 이후 시행되고 있다.

방산세는 건축물(房产)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건축물 가격이나 건축물의 임차료 수입을 그 징수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방산세는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또한 고정자산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위해서 과세되고 있다.

방산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 2. 납세의무자

방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중국 국내의 도시, 현 소재지(县城), 建制镇<sup>38)</sup>, 工矿区<sup>39)</sup>에 있는 징수범위 내의 건축물을 소유한 단위나 개인이다.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도 포함된다.

- 재산권(产权; 소유권)이 국가 소유인 것은 경영관리 단위
- 재산권이 집체 또는 개인소유인 것은 집체단위나 개인
- 재산권을 저장잡힌 것은 저장잡은 사람(저당권자)
- 재산권의 소유인과 저당을 잡힌 사람이 건축물 소유지에 있지 않는 경우에

38)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설립된 진(镇)이다.

39) 공산업이 비교적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국무원이 규정한 건재진 표준에 부합하지만 아직 건재진이 설립되지 않은 대중형 공장, 광산기업 소재지이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을 받은 지역이다.

는 그 건축물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인

- 재산권이 미확정되거나 전당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인
- 납세단위나 개인이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인
-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은 방산세를 납부한다.

### 3.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 가. 과세대상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이란 지붕·벽 및 기둥 등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바람과 비를 차단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산·학습·업무·오락·거주 또는 물품저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건축물 개발기업이 건설한 분양주택(商品房, 商品住宅)은 분양 전에는 방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분양 전에 건축물 개발기업이 분양주택을 사용했거나 세를 놓는 경우에는 방산세를 부과한다.

#### 나. 과세범위

방산세의 과세범위는 도시, 현 소재지(县城), 建制鎮 工矿区이다.

방산세의 과세범위에는 농촌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며, 농촌 경제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4. 과세표준

방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다.

### 가. 원가기준

회계장부상의 고정자산(건축물) 항목에 기재된 취득가액에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정한 일정액(건축물 가액의 10%~30%)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계장부상의 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된 취득가액이란 건축물 건설비와 건축물과 분할할 수 없는 각종 부속설비 또는 독단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설(예를 들면, 통풍·조명·난방 설비 등)의 가격을 포함한다.

### 나. 임대료기준

임대한 건축물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임대료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5. 세율

세율은 비례 세율이며, 과세표준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세율이 있다.

- 과세표준이 원가기준인 경우 : 1.2%
- 과세표준이 임대료기준인 경우 : 12%

## 6.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적용세율}$$

## 7. 감면규정

다음 건축물은 방산세를 면제한다.

- 국가기관·사회단체·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국가 재정부문으로부터 사업경비를 조달받는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비영리성 의료기구, 질병 통제 기구 및 부녀자·유아 보건기구 등 의료·위생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종교사찰·공원·명승고적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건축물
- 기타 재정부가 비준한 면세 건축물

위의 규정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방산세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감면을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납세단위와 면세단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각자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방산세를 면세하거나 납세하도록 한다.

건축물 개발기업이 건설한 분양주택(商品房, 商品住宅)은 분양 전에는 방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8. 납부기한 및 납세지점

방산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분할(분기) 납부한다.

구체적인 분할 납부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정한다. 현재는 각지에서 분기 또는 반년마다 세액을 납부한다.

방산세는 건축물 소재지의 과세기관에 신고·납부한다.

### Ⅲ. 성시유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

#### 1. 서론

성시유호건설세는 도시를 유지 및 보호하고 건설하는 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목적세이다.

현행 성시유호건설세는 1985년 2월 8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유호건설세 잠정조례」를 제정·반포하고,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고 있다.

성시유호건설세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부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附加税이다.

성시유호건설세는 국가세무총국 및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 2. 납세의무자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기타의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부대, 사회단체, 기타의 단위, 개인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 등이 포함된다.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 3. 과세표준

성시유호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소비세·영업세 세액이 과세표준이며, 증치세·소비세·영업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 4.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 납세의무자의 소재지가 시내(市区)인 경우 : 7%
- 납세의무자의 소재지가 현 소재지(县城), 建制镇인 경우 : 5%
- 납세자의무의 소재지가 시내(市区), 현 소재지(县城) 또는 建制镇 이외의 지역 : 1%

###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소비세·영업세 세액에 해당되는 적용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실제 납부 증치세} \cdot \text{소비세} \cdot \text{영업세 세액} \times \text{적용세율}$$

### 6. 감면규정

성시유호건설세는 단독으로 감면할 수 없고, 附加税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증치세·소비세 및 영업세가 감면되면 함께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다.

- 증치세·소비세 및 영업세의 징수가 감면되면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감면된다.
- 증치세·소비세 및 영업세가 환급되면 성시유호건설세도 함께 환급된다.

- 세관에서 수입된 재화에 대해서 증치세 및 소비세를 징수하지만 성시유호건설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 삼협댐 건설(三峡工程建设)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삼협댐 건설기금(三峡工程建设基金)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성시유호건설세와 教育费附加를 면제한다.

## 7. 신고 및 납부

성시유호건설세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은 증치세·소비세·영업세의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과 같다.

## IV. 성진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 1. 서론

성진토지사용세는 성진(城镇; 도시)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성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토지등급 차이로 인한 수입조절, 토지사용 효율 제고 및 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성진토지사용세는 1988년 9월 27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중화인민공화국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를 제정·반포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성진토지사용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 2. 납세의무자

도시(城市), 현 소재지(县城), 진(建制镇) 및 工矿区(공업광산지구)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 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라 함은 종업원 7인 이하(본인 제외)로 구성된 개인자영업자(个体工商户)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
-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 소재지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인 또는 대리 관리인

-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권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인
- 토지사용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의 쌍방

다수의 개인 또는 단위가 공동으로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보유한 각 개인 한 명 한 명 또는 각 단체 하나 하나를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개인 또는 각 단체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 3. 과세대상

도시(城市), 현 소재지(县城), 건제진(建制镇) 및 工矿区(공업광산지구)에 소재하는 국가 및 집체 소유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도시, 현 소재지, 진 및 工矿区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 도시(城市)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시를 말한다.
- 현 소재지(县城)란 현 인민정부 소재지를 말한다.
- 建制镇이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건립된 镇을 말한다.
- 工矿区(공업광산지구)란 공업과 상업이 비교적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국무원이 규정한 建制镇의 기준에 부합되나 아직 建制镇으로 편제되지 않은 중대형 공업광산기업 소재지를 말한다. 工矿区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건립된다.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도시(城市) 토지에는 도시 토지 및 교외 토지가 포함된다.
- 현 소재지(县城) 토지란 현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城镇)의 토지를 말한다.
- 건제진(建制镇) 토지란 镇 인민정부 소재지의 토지를 말한다.

건립된 도시, 현 소재지, 건제진 및 工矿区 이외의 지역의 토지는 성진토지사용

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4.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토지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세무기관이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근거하여 규정된 세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성진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

토지점유 사용면적의 측량 업무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토지면적은 ‘m’로 표시한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확정한다.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된 단위가 토지면적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측량된 면적을 실제 점용면적으로 한다.
- 아직 실제 점용면적을 측량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부문이 발행한 토지사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증서에 기재된 토지면적을 실제 점용면적으로 한다.
- 아직 점용면적을 측량하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사용증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토지면적을 실제 점용면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토지사용증서가 발행된 이후 토지면적을 재조정한다.

#### 5. 세율

성진토지사용세는 정액세액을 채용하고 있다. 즉 폭이 다른 차별세액을 채용해서 대·중·소의 도시와 현 소재지(县城), 건제진(建制镇) 및 工矿区에 따라 서로 다른 단위세액을 적용한다(<표 IV-1> 참조).

대·중·소의 도시의 구분은公安부문에 등록된 비농업부문의 인구 수에 의하여 구분하며, 국무원에서 반포한 「城市规划条例; 성시규획조례」가 근거가 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市政 건설 상황과 경제 변영 정도에 따라 규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적용세액 폭을 확정할 수 있다.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적용세액은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낮출 수 있으나, 낮추는 금액은 위에서 서술한 최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적용세액을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높일 수 있으나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표 IV-1〉 성진토지사용세 세율

(단위: 元)

구 분	인 구	m <sup>2</sup> 당 세액
대도시	50만명 이상	1.5~30
중도시	20만명 ~ 50만명	1.2~24
소도시	20만명 이하	0.9~18
현성, 건제진, 공광구	-	0.6~12

## 6. 세액계산

성진토지사용세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단위당 세액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실제 점유 과세토지면적} \times \text{단위(m}^2\text{)당 세액}$$

## 7. 감면규정

다음의 토지는 성진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 도시의 도로, 광장, 녹화지대 등 공공용지
- 종교사원, 공원, 명승고적 등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지
- 승인을 받아 산을 개간하거나 간척을 하여 정지한 토지와 개간한 방치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달부터 5~10년간 성신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 기업이 설립한 학교, 병원, 탁아소 등에 사용하는 토지
- 비영리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토지
-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사용하는 토지
- 면세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세단위의 토지
- 석유·전력·석탄 등 에너지원 용지, 철도·도로·항공시설 등 교통용지 등 정부정책의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 재정부는 성신토지사용세가 면제되는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용지와 기타 용지를 별도로 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이 확정된 성신토지사용세의 감면대상 범위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소유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
- 면세단위 직원의 가족이 거주하는 숙소용지
- 부동산 관리부문이 주택임대료 조정개혁 이전에 임대한 주택용지
- 집체기업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병원·탁아소·유아원의 용지
- 민정부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복지기업의 공장용지
- 주택건설기업의 분양주택용지 등

## 8. 신고 및 납부

성신토지사용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되 분기별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납세기한은 성·자치주·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분양주택(新建商品房)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사용하는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 보유주택(存量房)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및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서(房屋权属证书)가 발급된 달의 다음 달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 주택건설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사용하거나 또는 인도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 신규로 수용된 경작지는 수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때에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 신규로 수용된 비경작지는 수용허가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진토지사용세는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사용하는 토지가 동일한 성·자치주·직할시의 관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동일한 성·자치주·직할시의 관할 내에서 지역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성·자치주·직할시의 지방세무국에서 납세지를 확정한다.

## V.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税)

### 1. 서론

경지점용세는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농업용 경지 보호를 위해서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세목이다.

경지점용세는 1987년 4월 1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를 제정·반포하고, 당일부터 시행하였다. 현행 경지점용세는 2007년 12월 1일 수정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경지점용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 2.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또는 기타 비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지점용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라 함은 종업원 7인 이하(본인 제외)로 구성된 개인자영업자(个体工商户)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하지만,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재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지점용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3. 과세대상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기타 비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경지점용세의 징수 범위에는 국가 소유의 경지와 집체 소유의 경지가 포함된다.

경지란 농작물을 심는 다음 토지를 말한다.

- 양곡을 재배하는 토지
-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채마지
- 원예지
- 목초, 작물 윤작지 등

### 4.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용하고 있는 경지의 면적이 과세표준이다.

### 5. 세율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의 1인당 경지 점용 면적과 현지의 경제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단위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당해 지역의 평균 단위세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표 V-1〉 경지점용세 세율

(단위: 元)

지구(县급 행정구역 단위로 1인당 평균 경지면적)	m <sup>2</sup> 당 단위세액
1인당 경지면적이 1무(亩)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	10~50
1인당 경지면적이 1~2무(2무 포함)인 지역	8~40
1인당 경지면적 2~3무(3무 포함)인 지역	6~30
1인당 경지면적 3무 초과 지역	5~25

주 : 1무(亩)는 666.7m<sup>2</sup>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경지면적 및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서 각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평균 단위세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上海市 45元, 北京市 40元, 天津市 35元
- 江苏, 浙江, 福建, 广东 등 4개 省 : 30元
- 辽宁, 湖北, 湖南 등 3개 省 : 25元
- 河北, 安徽, 江西, 山东, 河南, 重庆, 四川 등 7개 省·市 : 22.5元
- 广西, 海南, 贵州, 云南, 陕西 등 5개 省·自治区 : 20元
- 山西, 吉林, 黑龙江 등 3개 省 : 17.5元
- 内蒙古, 甘肃, 青海, 宁夏, 新疆 등 6개 省 : 12.5元

각 지역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된 평균 단위세액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현급 행정구에 적용하는 m<sup>2</sup>당 단위세액을 확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 및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 1인당 경지면적이 특별히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지점용세의 단위세액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으나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현지 단위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6. 세액계산

경지점용세는 실제로 점용한 경지의 면적에 단위세액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실제로 점용한 경지의 면적)} \times \text{m}^2\text{당 단위세액}$$

납세의무자의 실제 점용면적이 허락받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과세하며, 실제 점용면적이 허락받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면적으로 과세한다.

## 7. 감면규정

경지점용세의 주요한 면제 및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면제

- 부대 군사시설 용지
- 학교, 유아원, 경로원 및 병원 용지
- 철도, 활주로, 항공기 계류장 용지
- 화약고 용지
- 장의, 화장 용지
- 수몰지역 이주민, 재해민, 난민의 주택용지 등

### 나. 감면

- 농촌주민(농업 戶口를 가진 거주자로서 어민, 목축자 포함)이 경지를 점용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하였다면 위에 규정한 세액의 50%로 감면 징수한다.

- 농촌혁명 열사 가족이나 혁명 상이군인, 무의탁자, 혁명 근거지, 소수민족지역, 산간벽지의 생활이 곤란한 농민이 규정된 용지 기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 소재지 乡(镇)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으면 감세 또는 면세받을 수 있다.
- 국가혁명 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방 빈곤지역이 취로사업(以工代赈办法)으로 건설하는 도로의 경우로서, 경지점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문의 심의 또는 지방세무국의 심사를 거쳐서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경지점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민정부서가 경영하는 장애인고용 복지공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비용에 따라 경지점용세를 감면한다.

## 8. 신고 및 납부

경지점용세의 납세의무는 국토관리부문이 경지점용을 승인한 날에 발생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경지를 먼저 점용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점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국토관리부문이 경지점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관리부문과 동급인 과세기관에 경지점용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경지점용세의 징수기관은 지방세무기관 또는 재정기관이며, 성급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경지점용세의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는 토지사용 신청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지점용을 승인한 국토관리부문의 동급 과세기관에 감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토자원부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성급 과세기관에 감면신고를 하여야 한다.

## VI. 차선세(车船税)

### 1. 서론

차선세는 중국 국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2006년 12월 29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정조례」를 제정·반포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2월 1일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공포·실시하였다.

현행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暂行条例」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던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사용패조세 잠정조례」와 내자기업에 적용되던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사용세 잠정조례」를 통합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두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차선세는 중국 내에서 차량·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이며,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다.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 2. 납세의무자

차선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며, 이에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그리고 개인자영업자(个体工商户)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관리자란 차량·선박에 대한 관리 및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단위를 말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기구는 자동차 차선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에 따라 차선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

차량·선박의 소유자가 또는 관리인이 차선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인이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 3. 과세대상

차선세가 부과되는 차량 및 선박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된 차량 및 선박이다.

여기서 차량·선박이란 법률에 의해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하는 차량 및 선박을 말한다. 차량선박관리부문이란 공안, 교통, 농업, 어업 및 군사 등 법에 의해 차량 및 선박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부문을 말한다.

차량에는 동력 및 비동력 차량이 포함된다. 선박에는 동력선박 및 비동력선박이 포함된다.

### 4. 과세표준 및 세액

차선세는 「车船税暂行条例」에서 규정한 정액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车船税税目·税额表; 차선세 세목 및 세액표」의 항목과 세액조정 범위 내에서 항목과 조정 폭 및 구체적인 적용세액을 결정한다.

차선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계수 단위는 대(辆), 화물차 및 삼륜·저속화물차의 계수단위는 빈차(自重)의 톤수, 선박의 계수단위는 순톤수이다.

차량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된 조정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표 VI-1〉 차선세 세목·세액 기준표

(단위: 원)

세 목	과세단위	세액표준	비 고
승용차	대	60~660	전기자동차 포함
화물차	차량톤수	16~120	반 트레일러 등 포함
삼륜·저속화물차	차량톤수	24~120	-
오토바이	대	36~180	-
선박	순톤수	3~6	예인선과 바지선은 구분하여 선박세액의 50%에 따라 계산

## 5. 세액계산

차선세의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단위(대, 톤)} \times \text{세액표준}$$

새로 구입한 차량 또는 선박의 경우, 구입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월로부터 월에 따라 계산한다.

## 6. 감면규정

「车船税暂行条例」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면세와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면세로 구분한다.

### 가. 법정 면세

- 무동력차량 및 선박(무동력 바지선 제외)
- 트랙터

- 어로·양식어선
- 군대 및 무장경찰용 차량 및 선박
-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범인호송 및 긴급구호용 등의 차량 및 선박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토세를 이미 납부한 선박
- 중국의 관련법률 및 중국이 체결·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대사관, 영사관, 국제조직 및 관련자의 차량 및 선박

#### 나. 정기면세

- 장애인 전용차량
- 기업이 설립한 각종 학교, 병원, 탁아소, 유아원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
- 비영리의료기관, 질병통제소, 및 산아보건기구 등 위생기관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

이외에도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도시·농촌 공공교통차량 및 선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면과 면세를 시행할 수 있다.

## 7. 신고 및 납부

차선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차량·선박관리부문이 심사·발급한 차량 및 선박 등기증서·운행증서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차선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매하는 동시에 차선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선세는 1년 단위로 징수하되 분기마다 납부하며, 그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차선세의 납세지는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둘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사용되는 차량 및 선박의 경우에는 차량 및

선박의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차선세는 지방세무기관이 징수관리를 담당하며, 2007년 납세연도부터 징수했다.

## VII.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

### 1. 서론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는 새로 도입된 세목으로서,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목으로 행위세에 속한다.

2000년 10월 22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치세 잠정조례」를 제정·반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량구치세는 원래 교통부문에서 오래 전부터 징수하던 「车辆购置附加费; 차량구치 부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조세화한 것으로, 조세화 전과 후에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일하여 차량취득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었다. 또한 「车辆购置附加费」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본 조례 시행 후에 거래하는 경우 차량구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차량구치세는 국가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다.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교통사업 건설에 사용된다.

### 2.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을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이다. 구매란 구매·수입·자체생산·수증 및 기타방식(경매 및 경품 취득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위라 함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및 기타 단위를 말하며, 개인이라 함은 자영사업자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 3. 과세대상

차량구치세의 징수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표 VII-1>과 같다.

<표 VII-1> 차량구치세 징수 범위표

과세차량	구체범위	주 석
자동차	각종 자동차	-
오토바이	스쿠터	최고 시속 $\leq$ 50km/h, 엔진배기량 $\leq$ 50cm <sup>3</sup> 인 2륜 동력차량
	2륜 오토바이	최고 시속 $>$ 50km/h, 또는 엔진배기량 $>$ 50cm <sup>3</sup> 인 2륜 동력차량
	3륜 오토바이	최고 설계시속 $>$ 50km/h, 또는 엔진배기량 $>$ 50cm <sup>3</sup> 이며, 빈차량무게가 400kg 이하인 3륜 동력차량
전차	무궤도 전차	전기를 동력으로 전용 전력수송케이블로 전기를 공급받아 운행되는 차량
	궤도전차	전기를 동력으로 궤도에서 달리는 대중교통차량
트레일러	전장 트레일러	무동력 설비로 독립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고 견인차량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반장 트레일러	무동력 설비로 견인차량과 공동으로 적재하고 견인차량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농업용 수송차량	삼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 $\leq$ 7.4kw, 적재량 $\leq$ 500kg, 최고속도 $\leq$ 40km/h인 삼륜 동력차량
	4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 $\leq$ 28kw, 적재량 $\leq$ 1500kg, 최고속도 $\leq$ 50km/h인 사륜 동력차량

### 4. 과세표준

납세자가 구입한 자가 사용 과세차량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차량 취득시 판매자에게 지급한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증치세액은 과

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 수입하여 사용하는 과세차량의 과세표준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표준} = \text{관세 과세가격} + \text{관세} + \text{소비세}$$

납세자가 자가 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과세차량은 주관 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에서 조사 결정한 최저 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차량 제조기업이 제공한 가격정보에 의거하되 차량의 시장평균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유형별로 과세차량 최저 과세가격을 규정한다.

## 5. 세율

차량구치세는 1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차량구치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 6. 세액계산

차량구치세의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7. 감면 및 환급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치세를 감면한다.

- 주중국 외국대사관·영사관, 주중국 국제조직기구 등의 외교관이 사용하는 차량은 면세한다.

-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부대무기장비 주문계획에 편입한 차량은 면세한다.
- 고정장치를 갖추고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면세한다.
- 방재부서 및 삼림소방 전용차량은 면세한다.
- 귀국유학생이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국산 소형승용차(1대에 한함)는 면세한다.
- 국무원 규정상 면세 또는 감세를 허용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한다.

차량구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품질 등의 원인으로 납세자가 구입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판매상에게 반환하는 경우
- 공안차량관리기구가 차량등록 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신고 및 납부

차량구치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차량구치세 정수관리관법」에 의해서 신고·납부하며, 1차량 1신고제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가 과세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등록지의 세무기관에 차량구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납세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차량구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차량등록지란 차량의 번호판을 발급 또는 취소하는 장소를 말한다.

납세자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차량구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이 없을 경우,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는 차량등록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납세자가 구매해서 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자가 사용 과세차량은 수입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

여야 한다.

자가 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차량을 취득해서 자가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소유가 변경되거나 차적이 이전되는 등의 경우, 차주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변동수속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 VIII. 기타 주요 세제

### 1. 계세(契稅)

#### 가. 서론

계세(契稅)는 이전되는 토지 사용권 및 건축물(房屋)소유권의 이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인 1950년 4월에 정무원(政務院; 정무원)은 「契稅暫行條例; 계세잠정조례」를 제정·공포해서 국민의 토지 및 건축물 재산권을 보호함을 분명히 했으나, 사회주의화가 진전되면서 계세의 징수가 정지되었다.

개방·개혁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토지 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 거래의 중심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되고, 정부의 재정 조달 기능 및 부동산시장의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국무원은 1997년 7월 7일에 「中华人民共和国契稅暫行條例; 중화인민공화국 계세 잠정조례」<sup>40)</sup>를 공포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조례가 계세의 기본규범이며, 재정부는 하위 법규인 「中华人民共和国契稅暫行條例實施細則; 중화인민공화국 계세 잠정조례 실시세칙」<sup>41)</sup>을 1997년에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계세는 중국의 조세체계 분류상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세는 1회에 걸쳐서 징수하며 내·외국인 및 내·외자기업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계세의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지방정부 세입의 중요한 원천을 이루고 있다.

---

40) 国务院令[1997]224号

41) 财税[1997]52号

## 나. 과세대상

계세의 과세대상은 중국 국내(境内)에서 발생한 토지 사용권 및 건축물소유권(土地·房屋权属)의 이전행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의 이전

#### (1)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 토지사용권의 ‘전양’ 등으로 인한 취득

중국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집체소유이며,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 토지사용권은 이전의 주체에 따라 ‘출양(出让)’과 ‘전양(转让)’으로 구분된다. ‘출양’이란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전양’이란 ‘출양’ 이후에 단위 및 개인간에 토지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에 대해서만 계세가 과세된다.

토지사용권의 이전은 매매·증여 및 교환을 포함하며, 농촌 집체토지의 도급경영권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 (2) 건축물 소유권의 이전

건축물 소유권의 이전은 매매·증여 및 교환을 포함한다.

건축물은 건축물 소유권(지상건축물의 점유·사용·수익·처분의 권리)과 토지 사용권(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점유·사용·수익·처분의 권리)으로 구성된다. 주택개량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적용방(经济适用房) 등 일단의 건축물 소유권은 토지에 부착된 토지사용권을 포함하지 않는다<sup>42)</sup>.

---

42) 이와 같은 건축물 소유권은 관습상 ‘小产权(小产权)’이라고 칭해짐.

## 2)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의 이전간주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의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면 토지사용권 양도, 건축물 매매 또는 건축물 증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계세를 과세한다.

- (1)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
- (2)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
- (3) 상금을 받는 방법으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
- (4) 예약구매방식 또는 주택건설대금을 자금으로 모아 미리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

### 다.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하는 단위(單位)와 개인은 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소유제 및 국적을 구분하지 않으며, 소유단위와 개인은 차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한다. 단위란 사업단위, 국가기관, 군사단위, 사회단체, 농촌집체경제조직, 각종 형식의 기업(외국기업, 외국주재기구 및 각종 형식의 조직 등) 및 기타조직을 말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인수(承受)란 양수, 구매,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라. 과세표준, 비과세·감면

#### 1) 과세근거

- (1)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매매로 인한 취득 : 실제

매매가격이 과세근거(과세표준)이다. 실제매매가격은 계약서상의 확정된 가격이다.

- (2)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증여로 인한 취득 : 징수기관이 현지에서 확인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시장가격
- (3)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교환 거래는 계세를 면제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교환거래는 당해 차액부분, 즉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교환에서 교환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폐·실물·무형자산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더 지불한 일방이 계세를 납부한다. 교환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세를 면제한다.
- (4) 대체방식(划拨方式)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비준을 얻어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부동산은 매각하는 자가 부동산 계세를 추가납부(补缴)한다. 과세근거(과세표준)는 추가납부한 토지사용권의 매각대금(出让费用) 또는 토지수익이다.
- (5)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매매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또는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을 교환한 가격의 차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징수기관은 현지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에 과세근거(과세표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应纳税额)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비례세율을 채용하고 있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마. 세율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가 3%~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

지의 상황을 참작해서 3~5%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및 등록한다. 현재 北京, 天津, 上海, 浙江, 福建, 山东, 广东, 重庆, 云南 등은 세율이 3%이고, 山西, 江苏, 安徽, 河南, 湖南, 四川 등은 세율이 3%이다. 서장자치구(西藏自治区)에는 아직까지 세제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 바. 비과세 및 감면

다음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제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 (1)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나 건축물을 인수하여 사무, 교학, 의료, 과학연구 및 군사시설로 사용할 경우는 세제를 면제한다.
- (2) 성진(城镇)의 직원이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얻어서 국가가 규정하는 표준면적 이내에서 최초로 공유주택(公有住房)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세제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단지 1번만 적용된다.
- (3) 이미 구매한 공유주택으로 ‘토지출양금’과 기타 ‘출양비용’을 추가납부(补缴)해서 완전한 재산권 형태를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를 면제한다.
- (4) 철거(拆迁)로 인해서 개인이 새롭게 구입한 주택의 경우, 구매가격에서 철거 보상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를 면제한다.
- (5) 개인이 처음 구입한 90m<sup>2</sup> 및 그 이하의 보통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세율을 잠정적으로 1%로 한다.
- (6)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집을 소실하여 다시 집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세제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 (7) 황폐한 산·황폐한 고랑·황폐한 언덕 및 황폐한 사막의 토지사용권을 인수하여 농업·임업·목축업 및 어업의 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는 세제를 면제한다.
- (8) 중국의 관련 법률 및 중국이 체결·참가한 국제조약·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 중국 주재 연합국 기구 및 외교 대표, 영사관원과 기타 외교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서 세제를 면제한다.

- (9) 토지 및 건축물이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의해 수용 또는 점용된 후, 다시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각 성(省)·자치구(自治区) 및 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 (10) 기업의 구조조정(改制重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 (11) 재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감면 및 면제항목이 있다.

#### 사. 신고 및 납부

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계약 관련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납세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의 계세 징수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그 징수기관이 결정한 기한 이내에 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의 계세 징수기관에서 계약거래세 면제 또는 감면 수속을 한다. 과세표준금액(计税金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省)급 징수기관에서 면제 및 감면수속을 한다.

계세의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면제 및 감면을 보면, 징수기관은 면제 및 감면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세무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세의 감면에 대해서 동 등록방법은 성(省)급 징수기관에서 제정한다.

계세의 면제 및 감면을 비준받은 납세자가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더 이상 규정된 면제 및 감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 및 감면받은 계세 세액을 추가납부(补缴)해야 한다. 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관련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을 변경한 당일이다.

납부할 세액은 인민폐(人民币)로 계산한다. 토지사용권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

하고 외화로 결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 국가 외환관리기관(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인민폐의 시장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세액을 계산한다.

## 2. 인화세(印花稅)

### 가. 서론

인화세(印花稅)는 경제활동 중에 작성·사용 및 수령하는 증빙(凭证)에 징수되는 세목이다.

중국 건국 초기에 인화세를 과세하였으나, 1958년 세제간소화 조치를 취할 때, 과세가 정지되었다. 개방·개혁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와 더불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증빙)의 작성·사용 및 수령이 점차 증가하자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중국 정부는 인화세를 제정·공포하였다. 즉 1988년 8월 6일 국무원에서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稅暂行條例;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정조례」<sup>43)</sup>를 제정·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어서 1988년 9월 29일 재정부에서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稅暂行條例施行細則;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정조례 시행세칙」<sup>44)</sup>를 제정·공포하였다. 동 조례가 인화세의 기본규범이며, 중국의 조세체계 분류상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화세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각종 과세대상 문서(증빙)의 작성·사용 및 수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 나.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5종류 13개 항목이다.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43) 国务院令[1988]11号

44) 财税[1988]255号

서 인화세 잠정조례(印花稅暫行條例)에 열거된 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1) 각종 계약서(經濟合同) : 매매, 가공(加工承攬), 건설공사의 하청(도급), 자산의 리스(財產租賃), 재화운송(貨物運送), 창고보관, 대출(채무), 재산보험, 기술계약 및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증빙)
- (2) 소유권 이전 문서(증빙)
- (3) 영업 장부
- (4) 권리 및 허가 증서
- (5)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

13개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VIII-1>과 같다.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의 하나로 공개 발행한 주식도 있다. 즉, 주식제기업이 공개 발행한 주식이 매매·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될 때, 이전 당일에 성립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이전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각각 1%의 세율로 인화세를 부과한다.

전자 형식으로 서명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서(증빙)도 규정에 의해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sup>45)</sup>.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화세는 각각 다른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적용하며 자세한 세율은 <표 VIII-1>과 같다.

인화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문서의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인화세를 부담하며, 세율은 비교적 낮다. 비례세율은 각종 계약서, 소유권 이전 문서, 일부의 영업장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정액세율은 권리 및 허가증서, 영업장부 중 기타 회계장부에 적용되고 있다.

---

45) 財稅[2006]162號.

〈표 VIII-1〉 인화세 과세대상 및 세율(세액)표

항 목	내 용	세 율	납세자
1. 매매계약	공급계약, 사전구매, 구매, 합작구매 및 협의, 조절, 보상, 무역 등의 계약	매매금액의 0.3%	계약 당사자들
2. 가공계약	가공, 주문, 수선, 수리, 인쇄, 광고, 측량 및 제도, 측정 등의 계약	가공료 혹은 도급수입의 0.5%	계약 당사자들
3. 건설공정 조사 및 설계	실지조사 및 설계계약을 포함	수취액의 0.5%	계약 당사자들
4. 건축 및 설치 도급 계약	건축, 설치공사 도급 계약	도급액의 0.3%	계약 당사자들
5. 재산임대계약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 기구, 설비의 임대계약	임대액의 1%, 1元 미만은 1元	계약 당사자들
6. 재화운송계약	민간항공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육상운송 및 연계운송 계약	운송료의 0.5%	계약 당사자들
7. 창고보관계약	저장 및 보관계약	저장, 보관료의 1%	계약 당사자들
8. 대출(채무)계약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채무자간에 체결한 채무계약	채무액의 0.05%	계약 당사자들
9. 재산보험계약	재산, 책임, 보증, 신용 등 보험계약	재산보험계약에는 보험수입의 1%. 책임·보증·신용 보험계약은 건당 5元	계약 당사자들
10. 기술계약	기술개발, 양도, 자문 및 서비스 등 계약	계약서상 기재액의 0.3%	계약 당사자들
11. 소유권이전 문서	재산소유권, 관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기술 사용권 등 이전 증서,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 및 商品房 판매계약	표기액의 0.5%	소유권이전 당사자들
12. 영업 장부	생산·경영용 장부	실재자본과 자본적립금 합계의 0.5%. 기타 회계 장부 건당 5元	장부비치·기장자
13. 권리 및 허가 증서	정부발행 부동산권리증, 영업허가증, 상표등록증, 특허증서, 토지사용증서	건당 5元	수령인

#### 다.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인화세 잠정조례(印花稅暫行條例)에서 열거하는 경제 관련 문서(증빙)를 작성·사용 및 수령하는 단위 및 개인은 인화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란 사회단체, 농촌집체경제조직, 각종 형식의 기업(외국기업, 외국주재기구 및 각종 형식의 조직 등) 및 기타조직을 말한다. 즉 각종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제기업, 기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사단위(部隊) 및 기타 단위를 말한다.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단위 및 개인까지 포함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 관련 문서(증빙)의 작성·사용 및 수령이 다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계약 당사자(立合同人)

각종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납세자가 된다. 계약 당사자란 문서(증빙)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가진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단 계약의 담보인, 증인, 감정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에게는 인화세의 대리 납부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은 납세의무자와 동등한 세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 2) 소유권이전 당사자(立据人)

소유권이전 당사자란 각종 재산권의 소유권이전 문서(증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3) 장부비치·기장자(立帳簿人)

장부비치·기장자란 생산·경영용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 4) 수령인(領受人)

수령인이란 정부 발행 부동산권리증, 영업허가증, 상표등록증, 특허증서, 토지사용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 5) 사용인(使用人)

사용인이라 함은 국외에서 작성·영수한 과세대상 문서(증빙)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과세대상 문서를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가 인화세 납세의무자이며, 각측은 보유한 문서상의 과세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6) 전자과세문서 서명자

전자과세문서 서명자란 전자 형식의 각종 과세문서(증빙)에 서명하는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 라.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비과세·감면

인화세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은 과세대상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 비례세율 또는 정액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 1) 비례세율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2) 정액세율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대상 문서의 건수} \times \text{단위당 세액}$$

구체적인 과세표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매매계약(购销合同) :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
- (2) 가공계약(加工承揽合同) : 가공수입
- (3) 건설공정 조사 및 설계 계약(建设工程勘察设计合同) : 실제 취득하는 비용
- (4) 건축 및 설치 도급계약(建筑安装工程承包合同) : 도급금액
- (5) 재산임대계약(财产租赁合同) : 임대금액
- (6) 재화운송계약(货物运输合同) : 수취한 운송비수입
- (7) 창고보관계약(仓储保管合同) : 수취한 창고보관수입
- (8) 대출계약(借款合同) : 대출금액
- (9) 재산보험계약(财产保险合同) : 수취한 보험료수입
- (10) 기술계약(技术合同) :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 (11) 소유권이전 문서(产权转移书据) : 문서에 기재된 금액
- (12) 영업장부(营业帐簿) : 자금을 기재한 장부(자금장부)는 실제자본과 자본  
적립금을 합한 금액. 영업장부 중 기타 장부의 경우에는 장부의 수량
- (13) 권리 및 허가 증서(权利·许可证照) : 과세대상 증서의 건수(수량)

인화세의 과세대상은 5종류 13개 항목이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인화세 잠정조례에 열거된 문서 및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러한 문서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는다. 인화세의 면제항목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1) 인화세가 이미 납부된 문서의 부분 또는 사본
- (2) 정부,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에 재산을 기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
- (3) 재정부가 인화세를 면제하는 기타의 문서
  - ① 국가가 지정한 수매부문이 촌민위원회, 농민 개인과 체결한 농산물 수매 계약
  - ② 무이자, 할인이자 대출계약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국가금융기구에 우대대출금 제공으로 실행한 계약
  - ④ 부동산 관리부서가 개인과 체결한 거주용 주택임대계약
  - ⑤ 군수물자, 구급물자, 재난물자의 운송 등 특수운송계약
  - ⑥ 기업개혁으로 인한 재산소유권이전 등

#### 마. 세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화세는 각각 다른 비례 세율과 정액세율을 적용하며 자세한 세율은 <표 VIII-1>과 같다.

#### 바. 세무행정

인화세표(印花稅票; 수입인지)의 액면가액은 인민폐를 단위로 하며, 1角<sup>46)</sup>, 2角, 5角, 1元, 2元, 5元, 10元, 50元, 100元의 9가지가 있다.

인화세표는 유가증권으로서 각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국이 제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일반적으로 인화세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한 후 세액에 해당하는 인화세표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완성된다. 인화세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

46) 1角은 0.1元에 해당한다.

### 1) 인지첨부방식(自行貼花)

인화세 과세대상 문서의 수량이 적거나 인지의 첨부 횟수가 비교적 적은 납세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한 후 세액에 해당하는 인화세표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 2) 일괄첨부방식 또는 일괄납부방식(滙貼或滙繳辦法)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이 비교적 많거나 인지의 첨부가 많은 납세자가 주로 사용한다.

#### (1) 일괄첨부방식(滙貼辦法)

과세문서 1건의 납부세액이 500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지 과세기관에 납부하고, 세금납부서 또는 세금완납증명을 신청 및 교부받아서 문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과세기관이 문서상에 인화세 완납표지를 주기하여 인지 첨부를 대신한다.

#### (2) 일괄납부방식(滙繳辦法)

동일 종류의 과세대상 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는 횟수가 많은 경우, 첨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지 과세기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기간에 따라 인화세를 일괄납부한다. 일괄 납부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간은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3) 위탁대리징수방식(委託代征辦法)

과세기관의 위탁을 받아 과세대상 문서를 발행하거나 처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과세기관의 위탁을 받아 인화세의 징수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과세기관은 대리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인화세표는 과세문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인화세표의 절취선에 봉인하거나 인화세표에 선을 긋는 방법 등으로 각 인화세표를 소인하여야 한다. 이미 첨부된 인화세표는 재사용할 수 없다.

인화세표는 과세문서의 실행이나 수령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동일한 과세문서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실행되고 각 당사자들이 사본을 받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납부할 인화세 전액에 해당하는 인화세표를 각자의 사본에 첨부할 의무를 진다.

이미 인화세표를 첨부한 과세문서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액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각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sup>47)</sup>.

- ①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세문서에 대한 인화세액에 부족하게 첨부한 경우 또는 첨부된 인화세표에 소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세액의 0.5~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sup>48)</sup>.
- ② 이미 첨부되었던 인화세표를 재사용하여 인화세를 미납부하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세액의 0.5~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사안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sup>49)</sup>.
- ③ 인화세표가 위조된 경우, 과세당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10,000元の 벌금을 부과한다.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10,000~50,000元の 벌금을 부과한다. 그 사안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sup>50)</sup>.

47)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征收管理法) 및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이 수정 공포된 이후, 印花稅暫行條例 제13조 및 印花稅暫行條例施行細則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 부분의 내용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國稅發[2004]15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즉 印花稅暫行條例 제13조 및 印花稅暫行條例施行細則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가 수정되었다.

48) 國稅發[2004]15호에 의해서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가 적용된다.

49) 國稅發[2004]15호에 의해서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가 적용된다.

- ④ 인화세를 일괄납부하는 모든 증빙에는 과세기관이 지정한 일괄납부 인감을 날인하고 번호를 달아 편철한 후, 이미 붙인 인지나 세금납부서의 1쪽을 편철한 뒷면에 첨부하고 소인·보관함으로써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세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2,000~10,000元의 벌금을 부과한다<sup>51)</sup>.
- ⑤ 납세자는 납세증빙을 잘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국가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기타 증빙은 이행 완료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세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2,000~10,000元의 벌금을 부과한다<sup>52)</sup>.
- ⑥ 일괄납부방식을 채택한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규정한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경우, 과세기관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을 추정함과 동시에 추정세액의 0.5~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사안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sup>53)</sup>.

### 3. 자원세(资源税)

#### 가. 서론

자원세는 중국 국내에서 일정한 자연자원의 채굴 또는 제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특정한 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재정부와 국무원의 관련 부문이 자원세의 과세항목 및 세율과 함께 자원제품의 등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자원세의 과세 목적은 자원간의 상이한 조건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수입 차이를

50) 国税发[2004]15号에 의해서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책 제91조가 적용된다.

51) 国税发[2004]15号에 의해서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책 제91조가 적용된다.

52) 国税发[2004]15号에 의해서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책 제91조가 적용된다.

53) 国税发[2004]15号에 의해서 세수징수관리법 제60조가 적용된다.

과세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각 지역 또는 생산단위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채굴 및 절약하게 하는 데 있다.

현행 자원세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4년부터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등 자연자원을 개발 및 이용하는 데 따르는 조건상의 우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등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자원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다.

개혁·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자, 중국정부는 경제·사회 및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원세를 확대 개편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세의 기본법규는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이 제정·공포한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이다. 동년 12월 30일에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제정·공포하였다.

#### 나.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아래 과세대상인 광물자원의 채굴 또는 소금의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단위(单位)에는 국유기업·집체기업(集体企业)·사유기업(私有企业)·주식제기업·기타 기업과 행정단위·사업단위·군사단위·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가 있다.

기타 기업에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하는데, 자원세는 자원제품의 채굴 또는 제조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본적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단위가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과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중외합작방식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구사용료를 징수하고 자원세는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 다. 원천징수의무자(扣繳義務人)

자원세가 납부되지 않은 광산품(礦產品)을 구매하는 단위는 자원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와 같은 단위에는 독립광산기업, 연합기업 및 기타 단위가 있다.

자원세가 납부되지 않은 광산품(礦產品)을 구매하는 단위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소규모 또는 비경상적으로 자원제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단위 및 개인의 자원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라.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원에는 원유(채굴한 천연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원광(보석, 대리석 등), 흑색금속 원광(철광석, 망간광 등), 유색금속 원광(동광석, 납·아연광석 등) 및 소금(고체염, 액체염)이 있다.

각각의 과세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재정부와 국무원의 관련부문이 정한 「資源稅稅目稅額標準明細表: 자원세 세목 세액 표준 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

#### 마.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 과세수량

납세자가 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매출수량이 과세수량이다.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가 사용 수량이 과세수량이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과세수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입하는 자원세 미납부 과세제품수량으로 한다.

납세자가 과세물품의 매출수량 또는 이송사용수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정하는 折算比로 환산한 수량으로 과세수량을 삼는다.

## 2) 구분계산

여러 가지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납세자는 과세항목별로 과세물품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과세항목별로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과세액을 적용하게 된다.

## 3) 단위세액

과세대상 및 세액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표 VIII-2〉 자원세의 과세대상별 세액표

과세대상	세 액	과세대상	세 액
원유	8~30元/톤	흑색금속원광	2~30元/톤
천연가스	2~15元/천m <sup>3</sup>	유색금속원광	0.4원~30元/톤, m <sup>3</sup>
석탄	0.3~5元/톤	고체염	10~60元/톤
기타 비금속원광	0.5~20元/톤 또는 m <sup>3</sup>	액체염	2~10元/톤

- 주: 1. 원유는 채취한 천연석유를 의미하며, 인조석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천연가스는 단독 채굴하거나 원유와 함께 채굴되는 천연가스를 의미한다. 석탄광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잠정적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석탄은 원탄만을 의미하며, 세탄·선탄 및 기타 석탄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기타 비금속 원광은 보석, 옥석, 대리석 등이며, 위에 열거된 제품과 정광염을 제외한다.  
 5. 고체염은 바다원염, 호수원염, 암염을 의미한다. 액체염은 간수를 말한다.

## 4) 세액계산 방법

자원세의 납부할 세액은 각각의 과세대상의 수량에 단위세액을 곱해서 계산하

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수량 × 단위세액

원천징수할 세액 = 구입한 자원세 미납부 광산제품의 수량 × 단위세액

#### 바. 납세의무 발생시기

##### 1)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판매대금 총액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 총액을 수령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취득한 날이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할부판매 결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판매계약에서 규정한 대금 수령일
- 납세자가 선수금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을 출하한 날
- 납세자가 기타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판매대금 수령증빙을 수취한 날

##### 2) 과세대상 물품을 자가 생산·자가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자가 생산·자가 사용하는 과세대상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제품을 이동해서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3)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대리납부하는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이다.

## 사. 비과세 및 감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한다.

- 원유채취 과정에서 유전의 가열 및 유정 수리에 사용된 원유는 면제한다.
- 납세자가 과세대상 물품의 채굴 또는 제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가 정황을 참작하여 감면을 결정한다.
-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의 감면항목

납세자는 감면대상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 아. 세액의 납부

### 1) 과세기간

자원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주관 세무기관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고정 과세기간에 과세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과세할 수 있다.

### 2) 납부기한

과세기간으로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선택할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월별 신고와 함께 직전 월의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으로 1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세액의 납부기한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3) 신고 및 납부

자원세는 과세대상 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한 지역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본래의 성·자치구, 직할시의 지역범위 내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되, 그 납세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복수의 지역에 걸쳐 자원세 과세대상 물품을 채굴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그 산하 생산단위 및 채산단위가 동일한 성·자치구·직할시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굴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굴지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할 세금은 독립채산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는 단위가 채굴지의 실제 매출량(또는 자가사용량) 및 적용하는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자원세는 자원세 과세대상 제품의 구입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편 조세행정법제<sup>54)</sup>

### I. 세수징수관리제도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征收管理法)은 조세의 징수 및 납세행위를 규범화해서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진 조세절차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법은 현행 각종 세목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롭게 제정되는 세목에도 적용되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화교, 홍콩인, 국유 및 사영기업 등의 경제실체, 개인상공업자(个体工商户) 등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조세에 대한 징수관리에 적용된다.

국무원은 1986년 4월 21일에 「中华人民共和国稅收征收管理暂行條例;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 잠정조례」를 제정하여서 시행하였으며, 이는 內資企業의 조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조례를 바탕으로 內·外資企業의 조세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전인대 상무위는 1992년 9월 4일 「中华人民共和国稅收征收管理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관법」이라 약칭함)을 공포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5년 2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고, 2001년 4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다시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수징관법」에 근거해서 국무원은 2002년에 「中华人民共和国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이라 약칭함)을 공포하였다.

---

54) 본편은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2006)의 제2장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세수징관법」과 국무원의 각종 행정법규를 관철 및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일련의 구체적인 세수징수관리제도를 제정하였다. 동시에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조세 관련 부분과 최고 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 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이 제정한 조세 관련 사법 해석 역시 세수징수관리 법률의 법원(法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률·법규·규장(规章)은 중국 세수징수관리의 법제 체계를 이루고 있고, 중국의 각종 세수징수관리업무의 법적 근거가 되며, 또한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근거가 된다.

「세수징관법」은 중국 조세징수관리제도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며, 모두 6장 9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세무관리, 제3장 세금징수, 제4장 세무조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무행정재심, 행정소송 및 행정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기술하며, 세금징수의 내용 중 이전 가격 관련 부분은 제2편 국제조세 부분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 1. 총칙

### 가. 목적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세수 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동법 제1조에서 그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 나. 적용범위

「세수징관법」 제2조에서는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각종 조세의 징수와 관리는 모

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세목의 신설, 징수 중단, 감세, 면세,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법률이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지점용세, 계세 등의 세목은 재정부가 징세의 책임을 지고 있어서 일반 세목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세수징관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와 선박톤세에 대하여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해관(海關)이 대리징수·관리한다.

#### 다. 징수권한

「세수징관법」 제3조에서는 어떠한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 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수징관법」 제5조에서는 각 지방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세수징수관리 범위에 따라 각각 징수관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전국의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하되, 「세수징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징수 권한은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있다.

#### 라. 납세자

「세수징관법」 제4조에서는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위와 개인을 납세자(納稅人)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리공제·대리수취 납부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도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 1) 납세자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이 납세자이

며, 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에 대해 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며 또한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 2) 징수의무자

법률 및 행정법규상 대리공제·대리수취 납부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扣繳義務人)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공제하거나 대리수취한 세액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공제 대리납부(代扣代繳)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입 중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여, 납세자를 대리하여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수취 대리납부(代收代繳)란 거래관계로 인하여 납세자로부터 세액을 수취하여 대신 국가에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납세자의 권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허용되는 주요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세무기관은 세수법률·행정법규를 널리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며, 납세자를 위해 무상으로 납세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국가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진술권 및 변호권이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 제기 및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규율 위반행위를 고발 및 제보할 수 있다.
- 모든 단위와 개인은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세무기관과 조사담당기관은 반드시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또한 세무기관은 제보자에게 공헌 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2. 세무등기제도<sup>55)</sup>

### 가. 세무등기(税务登记)의 개념 및 종류

세무등기는 ‘납세등기’(纳税登记)라고도 하는데 세무기관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며 법에 따라 납세자의 개업·변경·취소 및 생산경영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법정등기관리를 실시하는 일종의 세무관리제도이다<sup>56)</sup>. 이는 징수 및 납부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한 증명이며, 납세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즉 법에 의해 신고하고 세무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정 의무이며, 또한 법에 의해 세무등기를 처리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중요한 업무이다.

세무등기를 하는 것은 조세의 정상적인 징수와 납부질서를 수립하고 세원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여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세무등기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납세

55) 1998년에 제정된 「税务登记管理办法: 세무등기관리방법」이 2003년에 개정되어 国家税务总局 第7号令으로 공포되었고,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6)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한 제도이다.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세무등기는 「세수징관법」에 규정된 법정제도이며, 세무관리의 중요한 절차이자 기초이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한 후 법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기관에서 영수증을 구입하며, 감면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등기의 종류에는 설립세무등기(設立稅務登記), 변경세무등기(變更稅務登記), 취소세무등기(注銷登記), 검사신청세무등기(報驗登記), 영업정지 및 복귀 등기(停復業登記) 그리고 원천징수세액등기(扣繳稅款登記) 등이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세원의 감독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교체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구세무등기증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세무등기가 세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되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통하여 부동산, 도시토지 및 차량·선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 및 분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동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기반 구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나. 세무등기의 종류

### 1) 설립세무등기(設立稅務登記)

설립세무등기란 납세자가 어떤 지역에서 기업 등을 설립하거나 또는 어떤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세무등기는 공상등기의 개업등기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가) 설립세무등기의 대상

기업 및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분점 그리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상공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로 총칭함)는 생산·경영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장영업집조(工商营业执照, 임시공장영업집조 포함)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납세자가 임시공장영업집조를 수령한 경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을 심사 발급한다)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장영업집조를 처리하지 않았으나 관련 부문의로부터 비준을 받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상술한 규정 이외의 기타 납세자(국가기관, 개인과 고정된 생산·경영 장소가 없는 유동성 농촌소상인 제외)는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발생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 나) 납세자의 세무등기처리절차

세무등기는 정상적인 징수 납부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등기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세무기관이 제출한 문제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처리할 때, 다음의 증거서류와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① 공장영업집조 또는 기타 영업심사비준 증거서류
- ② 관련 계약서, 정관, 협의서
- ③ 조직기구의 통일코드(代碼)증서

- ④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또는 업주의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거서류
- ⑤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관련 증거서류 및 자료

납세자는 세무등기표<sup>57)</sup>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① 단위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업주의 성명 및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거서류의 번호
- ② 주소, 경영장소
- ③ 등기유형
- ④ 계산방식
- ⑤ 생산경영방식
- ⑥ 생산경영범위
- ⑦ 등록자본금(자본), 투자총액
- ⑧ 생산경영기한
- ⑨ 채무담당자, 연락전화번호
- ⑩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관련 사항

세무기관은 세무등기를 신청한 납세자가 제공한 각종 증거서류,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고, 수속이 완벽하고 요구에 부합될 경우에만 등기를 접수할 수 있고 경영 유형에 따른 세무등기표를 발급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작성한 ‘세무등기표’와 제공한 증거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세무등기코드의 편제 요구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등기코드를 부여(설립)하고 등기해야 한다. 세무등기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세무등기의 핵심절차이며, 세무등기코드는 세무등기의 기초이자 또한 조세징수관리 기타 절차의 기초이기도 하며, 납세자의 납세신분에 대한 인식코드이다. 세무등기코드의 편제 원칙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

57)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의 서식보다는 매우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심사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무등기증은 세무등기증 및 부분 또는 등록세무등기증 및 부분으로 나뉜다. 정본, 부분은 같은 법률 효력을 가지며, 정본은 납세자가 보관하고 부분은 납세자가 세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 2) 변경세무등기(變更稅務登記)

변경세무등기란 납세자의 세무등기 내용에 변화가 생겨 세무기관에 신고처리하는 세무등기절차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한 후 발생한 생산경영의 변화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처리한 후 세무등기의 내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세무등기표 중의 내용에 변화가 있고 세무등기증 중의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세무등기증에 반영된 내용은 세무등기표상의 주요 내용이기에 세무등기표의 내용이 세무등기증의 내용보다 많아 일부 변화 내용은 세무등기표의 내용으로서 세무등기증상의 내용과는 관계되지 않는다. 둘째, 세무등기증과 세무등기표의 내용이 모두 상응한 변화가 있을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든지 모두 세무등기 내용의 변화로서 모두 변경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하고 다만 변경등기절차가 다를 뿐이다.

세무등기 내용이 변화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을 할 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래의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변경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또는 세무등기의 변경 내용과 공상등기의 내용이 무관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비준하거나 또는 변경을 공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가지고 본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변경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 3) 취소세무등기(注销登记)

취소세무등기란 이미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취소를 신청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등기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공정탐사와 노무제공을 도급경영할 경우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중국을 떠나기 15일 전에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취소세무등기를 신청해서 처리해야 한다.

#### 가) 취소세무등기의 조건

납세자가 취소세무등기를 처리하는 전제조건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종료이다. 납세자의 납세의무 종료 상황에는 일반적으로 능동적 상황과 수동적 상황이 있다.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납세의무를 종료하는 상황에는 납세자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해체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수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란 납세자가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철수당하거나, 납세자가 파산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공상기관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몰수당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 간의 합병 또는 분할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자는 없어지고 본래의 납세자 바탕 위에 새로운 납세자가 생기게 되면서 본래의 납세자 납세의무는 종료되므로 법에 따라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는 기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 나) 시간적인 순서

납세자가 해체, 파산, 철수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되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먼저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취소세무등기를 한 후에 취소등기를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관리기관에 취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비준하거나 또는 종료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가지고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납세자의 주소 및 생산경영장소의 변동으로 주관 세무기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세무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변경 전의 본래 세무등기기관에 취소세무등기를 한 후에 전입지 세무기관에 새로운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기관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몰수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 다) 납세자가 취소세무등기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납세자는 취소세무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기관에 납부세액, 체납금, 벌금을 결산·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분할할 경우 본래의 납세자가 이행하지 못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합병·분할 후의 납세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의무의 이행과 조세위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4) 영업정지 및 복귀등기와 검사신청세무등기

#### 가) 영업정지(停业) 및 복귀(复业)등기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실행하는 납세자만이 영업정지 및 복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측이 영업정지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영업정지신청을 하면 세무기관은 ‘영업

정지신청심사비준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반납 폐기하고 관련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반환하며 납부세액과 체납금을 정산하고, 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서 영업정지에 동의할 경우에 영업정지 수속을 처리한다.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복귀신청을 해야 하며, 확인을 거친 후 세무기관은 영업복귀수속을 처리하며, 보관해 두었던 증거서류와 자료를 돌려준다. 납세자가 특수한 상황이 있어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중에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정지연장등기신청을 하고 '영업정지 및 복귀보고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확인을 거친 후 계속하여 영업정지를 허락한다.

#### 나) 검사신청세무등기

검사신청세무등기란 납세자의 외지(外出)경영에 대한 세무등기관리를 말한다. 외지경영이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지 현(시)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지경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기관으로부터 '외지경영조세관리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외지경영활동이 마감된 후 납세자는 외출경영지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세무기관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결산하고 미사용영수증을 반납 폐기하며 관련 수속을 거친 후 외출경영지세무기관은 검사신청등기를 취소 처리하고 '외지경영조세관리증명'에 납세자의 경영, 납세 및 영수증 사용 상황을 기입하고 증명배달증명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증명발급지 세무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증명서의 증명란은 외출경영지 세무기관이 보존한다.

## 5) 원천징수세액등기(扣繳稅款登記)

원천징수세액등기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등기를 말한다.

代扣代繳(대리공제 대리납부)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원천징수의무를 가지는 법정의무자가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급자가 납세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서 법에 따라 직접 세액을 공제하여 세무기관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목적은 분산되고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세원에 대하여 원천공제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단위에서 원천징수한다.

代收代繳(대리수취 대리납부)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법정의무자가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자와 경제거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납세자에게서 금액을 받을 때 법에 따라 세액을 받고 받은 세액을 세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代扣代繳, 代收代繳 세액의무자를 통틀어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의 원본 및 복사본을 가지고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세액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 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관리와 사용

#### 1)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개념과 분류

세무등기 증거서류란 세무기관이 세무등기를 하는 납세자를 심사해서 발급하는 일종의 증거서류로서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증명이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징수 누락 및 관리 누락을 감소시키며, 세수징관의 기타 절차를 위한 양호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세무등기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세무등기증 및 그 부분

영업집조를 수령하는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분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상공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등에 적용된다.

② 등록세무등기증 및 그 부분

비독립계산의 분점, 생산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납세자 등에 적용된다.

③ 외국관련 세무등기증 및 세무등록증

「세수징관법」에 의해 내외 조세징수관리제도가 통일되었으나, 외국 관련 세수징관의 일부 특수요를 감안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외국 관련 세무등기증 및 그 부분을 만들었다. 이에선 외상투자기업 세무등기증, 외국기업세무등기증, 외상투자기업 분점 세무등기증이 포함된다.

세무등기코드는 세무등기의 핵심 절차이고 납세자의 납세신분에 대한 식별코드로서 모든 세무등기증 정본과 부분에 반드시 세무등기코드를 찍어야 한다.

## 2)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 예금계좌를 설치할 경우
- ② 감면세, 세액환급 신청시
- ③ 영수증을 구입할 때
- ④ 외출조세관리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 ⑤ 증치세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신청 처리할 때
- ⑥ 기타 세무관련 사항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에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무등기 증거

서류를 빌려주거나 고치거나 훼손 또는 매매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정본은 생산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 하며, 부분은 주로 납세자가 세무사항을 처리할 때 사용된다.

### 3)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검증과 교체

세무등기 증거서류에 대하여 정기 검증과 교체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호적관리를 강화해서 징수 및 관리의 누락을 방지하고,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세무기관의 세무등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는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 검증제도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거서류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1회이다. 납세자는 당지 주관 세무기관이 상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시간 내에 세무등기 증거서류(정본, 부분) 및 주관 세무기관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증거서류 그리고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세무기관은 이를 검증한다.

검증시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관련 세무등기 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을 하는데, 주로 납세자의 세무등기 증거서류상의 등기 상황과 납세자의 실제 생산경영 상황과의 일치 여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사용하는지 여부,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타인에게 차용하거나 훼손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교체제도

교체는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세무등기를 하는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등기증을 교체하는 경우(통일적으로 등기증을 교체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와 개별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개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교체발급을 처리한다.

#### ○ 기타 문제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변경세무등기 및 세무등기의 검증과 교체를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재료를 받는다. 그 외에 납세자로부터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 3. 장부 및 증빙의 관리

#### 가. 장부 · 증빙의 관리

##### 1) 장부 · 증빙관리

여기에서의 장부 · 증빙관리란 「회계법」과 기타 관련 법규가 규정한 장부 · 증빙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라,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의 실제수요에 의하여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 · 증빙에 대하여 세무관리를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 세무기관은 장부 · 증빙관리의 전문기능부서는 아니지만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장부 · 증빙관리는 세무기관의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이다.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장부 · 증빙에 대한 관리란 일반의미에서의 장부 · 증빙관리, 영수증관리, 조세통제장치(税控装置)의 관리를 포함한다.

장부(帳簿)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증빙을 근거로 각종 경제업무를 전면적 · 연속적 · 체계적으로 등기한 장부나 부기를 말한다. 이는 원장(總帳), 명세장(明細帳), 일기장(日記帳) 및 기타의 각종 보조장부를 포함한다.

증빙(凭证)이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제업무를 기록하고 경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재하는 서면증명을 말한다. 증빙에는 원시증

빙(原始凭证)과 기장증빙(记账凭证)이 있다. 원시증빙은 경제업무가 발생할 때 취득하거나 작성한 증빙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영수증 등이 있다. 기장증빙은 회계인원이 심사확인한 원시증빙을 근거로 그 내용에 따라 회계계정(会计科目)과 복식기장방법(复式记账方法)에 따라 분류·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분록(会计分录)과 등기장부를 확정하는 증빙을 말한다. 증빙의 작성과 심사를 통하여 장부기록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고, 각종 경제업무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 수준과 경제효율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 2) 「세수징관법」 및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상의 장부·증빙관리의 특징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이 말하는 장부, 증빙관리는 「회계법」에서 규정한 장부, 증빙관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세수의 징수관리에서의 장부, 증빙관리는 주로 세수 방면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목적은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며 세수의 징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데 있다.

조세법에서의 장부증빙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은 관련 조세법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세수징관법」이 요구하는 장부·증빙관리가 주로 표현하는 것은 강제성 요구이다. 특히 「세수징관법」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의 관련 조세규정에 저촉될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의 관련 조세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세수징관법」에서의 장부·증빙관리는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일정부분 조세의 강제성도 띠고 있다.

- 세무기관은 영수증의 주관기관이다.

영수증은 회계계산의 원시증빙이고, 세무기관의 장부·증빙관리 중 영수증에 대한 관리는 세무기관의 직무 및 장부·증빙관리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수징관법」 제21조는 “세무기관은 영수증의 주관기관으로서 영수증의 인쇄 제작, 구입, 발행, 취득, 보관, 몰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단위와 개인은 상품을 구입 판매하고 경영서비스를 제공 또는 접수하거나, 또는 기타의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사용·취득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기관은 영수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며, 이는 주로 영수증이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납부세액을 심사 결정하며 세수징관을 강화하고 세수 유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3) 장부·증빙관리의 의의와 역할

장부·증빙관리는 세무등기단계 이후의 세수징관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부·증빙관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수 유실을 방지하며, 또한 납세자의 재무회계처리방법과 관련 조세법규가 불일치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무기관은 장부·증빙관리를 통하여 세원에 대한 감독통제 및 세수징관을 강화할 수 있고 세수징납 관계를 규범화하고 국가세수를 보장하고 조세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훌륭히 발휘하게 할 수 있다.

### 4) 세무기관의 장부·증빙관리에 대한 요구

여기에서 장부·증빙관리에 대한 요구란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이 규정한 납세자의 관련 장부비치, 재무회계처리, 증빙의 사용 등 일반적인 규정을 말한다. 이는 세무기관의 납세자에 대한 장부·증빙관리의 기본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 ○ 장부의 비치(설치)

장부의 비치는 장부관리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때문에 「세수징관법」 제19조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치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을 근거로 기장하며 계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 ① 장부비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세수징관법」이 장부비치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조세 측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회계주체의 측면에서 비치해야 할 장부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즉,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생산규모가 작고 장부비치 능력도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은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중개기구를 통하여 대신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증빙접착부(收支凭证粘帖簿) 또는 상품구입판매등기부를 건립하거나, 조세통제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장부비치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장부설치의 원칙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세무주관부문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해야 할 장부에 대하여 규정할 권한이 있다. 세무기관은 장부의 비치를 규정할 권한이 있을 뿐더러 장부비치의 기한에 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에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비치기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회계 전산화의 발전에 따라 갈수록 전자기장이 증가추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은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됴으로써 세수징관에서 말하는 장부증빙관리가 서면장부관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게 하였다.
- ③ 반드시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을 근거로 장부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증빙의 합법·유효는 회계계산이 정확하고 합법적인 근거일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기초이자 전제이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증빙은 회계계산의 혼란과 위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더러 납부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수 유실을 초래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은 반드시 동시에 진실, 합법, 완벽, 정

확, 적시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증빙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이다.

○ 재무회계처리규정

재무회계처리규정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기록제도(备案制度)와 모순처리규정(冲突处理规定)이다.

- ① 기록제도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그가 채택한 재무·회계제도와 구체적인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전자기장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용 전에 회계계산 소프트웨어, 회계처리방법 등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규정한 목적은 세무기관이 제때에 납세자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세무기관이 이들과 조세규정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록제도는 심사비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의 회계처리제도 또는 방법이 회계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조세 관련 규정과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납세자는 재무회계처리제도 또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회계처리제도 또는 처리방법이 조세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의 조세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하여 그가 선택한 재무회계처리제도 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관련 조세법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각종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체적인 재무회계처리에서의 특수한 수요를 가짐을 감안하여 국가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재무·회계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해 부문·단위의 재무회계처리제도 또는 방법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및 방법은 국가의 조세

관련 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조세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 새로운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의 장부·증빙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 장부비치 기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를 수령한 날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장부란, 원장, 명세장, 일기장 및 기타의 보조장부를 말한다. 원장과 일기장은 반드시 제본식(訂本式)을 채택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세액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② 세무기관에 기록하는 기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③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경영 규모가 작고 장부설치 능력도 확실히 없는 납세자는 비준을 받아 회계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구 또는 세무기관이 허가하는 재무회계인원을 초빙하여 대신 장부를 설치하고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기구 또는 인원을 초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경우 현금 이상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지증빙접착부, 상품구입판매등기부를 설치하거나 조세통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장부증빙의 보관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증빙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①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기한중에 장부증빙을 완벽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 기장증빙, 세액완납증빙 및 기타의 관련 자료는 그들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법률효력이 있는 기록과 증명이다. 장부, 기장증빙은 세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이고, 세액완납증빙은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한 법적 상징이자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정 증명이기 때문에 만약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한 징세에 불리할 뿐더러 조세감사에도 불리하다. 장부, 기장증빙, 세액완납증빙의 보존기한에 관하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② 장부, 기장증빙, 세액완납증빙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장부, 기장증빙, 세액완납증빙과 기타 관련 자료는 세수징관의 기초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다면 세수징관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심지어 탈세 및 세수 유실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장부, 기장증빙, 세액완납증빙과 기타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 또는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세수 유실을 방지하고 세수징관을 강화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법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다.

#### ○ 컴퓨터 기장

납세자가 컴퓨터 기장을 할 경우,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시스템의 회계계산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회계전산화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전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상황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경우, 그 컴퓨터의 회계기록을 완벽한 서면기록으로 출력한 후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

회계제도가 건전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원장 및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

된 기타의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 5) 장부, 증빙의 문자

장부, 회계증빙과 재무제표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은 동시에 당지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동시에 한 가지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영수증 관리

### 1) 영수증 관리 개요

영수증은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때 및 기타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대금수취 및 지불의 증빙이고, 재무회계계산의 원시증빙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중요한 근거이며, 경제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상거래증빙과 생산경영활동을 기록하는 서면증명이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영수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질서와 조세질서를 유지하고 재정수입을 보장하며 세수징관을 강화하는 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수증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분류는 증치세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증치세전용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과 일반영수증(普通发票)으로 나누기도 하고, 컴퓨터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영수증을 수기영수증(手工版发票)과 컴퓨터영수증(电脑版发票)으로 나누기도 하며, 업종에 따라 영수증을 건축설치영수증(建筑安装发票), 음식서비스업영수증(饮食服务业发票), 상업영수증(商业发票), 공업영수증(工业发票)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 2) 영수증 관리의 주체

「세수징관법」은 세무기관이 영수증의 주관기관이고, 영수증 관리의 각 단계와 전 과정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며, 기타 부문과 단위는 영수증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무기관이 영수증의 종류와 사용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담당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 3) 영수증 관리의 주요 내용

영수증 관리는 경제 감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수징관의 중요한 측면이다. 영수증 관리는 주로 영수증의 인쇄제작, 사용, 수취, 발행, 보관, 몰수와 조사처리 등을 포함한다.

### ○ 영수증의 인쇄제작 관리

영수증의 인쇄제작은 영수증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다.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과 영수증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의 인쇄제작 관리는 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① 증치세전용영수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이 지정한 기업이 인쇄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증치세전용영수증은 국가세무총국이 중국인민은행의 화폐인쇄조폐총공사(中国人民银行印钞造币总公司)에 위탁하여 인쇄제작한다.
- ②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영수증감제도장(发票监制章),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发票防伪专用品)의 생산은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한 기업이 인쇄제작한다.
- ③ 기타의 영수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이 각각 인쇄제작한다.
- ④ 세무기관의 지정 없이 영수증을 인쇄제작해서는 안 되고 국외에서 영수증을 인쇄제작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영수증을 인쇄제작하는 기업은 반드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제작해야 한다.

○ 영수증의 구입 관리

영수증의 구입이란 영수증 구입 심사비준권이 있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된 구입방식, 영수증 구입종류, 영수증 구입수량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영수증 구입을 비준하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판매하는 과정을 말한다. 영수증의 구입방식은 交旧购新(낡은 것을 반납하고 새 것을 구입), 验旧购新(낡은 것을 검사하고 새 것을 구입)과 批量供应(대량공급) 등 세 가지가 있다.

○ 영수증의 발행, 취득, 사용 관리

영수증의 발행, 취득과 사용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에 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영수증의 보관, 몰수와 검사

영수증의 보관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세무기관의 영수증 보관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무기관이 영수증의 완제품을 인쇄제작한 후,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공급하기 전 영수증에 대한 보관을 말하며, 세무기관의 영수증에 대한 보관은 주로 ‘집중 급별 보관(集中分级保管)’의 원칙을 실시한다. 즉, 모든 영수증은 반드시 세무기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세무기관 내부에서 보관의 급별을 구분하는데 즉 급별보관(分级保管)한다. 둘째, 영수증 구입단위와 개인이 이미 사용한 영수증과 미사용영수증에 대한 보관이다. 영수증을 구입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규를 근거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든 영수증을 구입한 단위나 개인이든 모두 일련의 영수증보관제도를 수립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전문창고(专库)보관제도, 전문인원(专人)보관제도, 전문장부등기(专账登记)제도, 정기재고조사(定期盘点)제도 등이 있다.

영수증에 대한 조사는 세무조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영수증 관리의 각 단계의 내용을 포함한다.

#### 4) 증치세전용영수증의 관리

증치세전용영수증은 중요한 상거래증빙과 회계계산의 원시증빙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세액을 공제받는 합법적인 증명과 근거로서 납세자가 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하고 세무기관이 증치세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치세 관리에서의 관건이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은 수기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기전용영수증(手工版专用发票)과 컴퓨터전용영수증(电脑版专用发票)으로 구분된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은 기본적으로 3개의 란(联次)으로 나뉘는데, 즉 영수증란(发票联), 세액공제란(抵扣联), 기장란(记账联)이 있다.

증치세전용영수증에 대하여는 영수증 관리의 일반적인 요구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는 외에 많은 특수한 관리규정이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의 사용대상에 대한 규정, 증치세전용영수증의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전용영수증에 대한 인증규정, 세무기관이 증치세 소규모납세자(增值税小规模纳税人)를 위하여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의 관리는 金税工程의 중요한 내용이다. 금세공정을 통하여 증치세전용영수증의 매출항목세액(销项税额), 매입항목세액(进项税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영수증에 대한 인증(认证), 교차검사확인(交叉稽核), 이지협조조사(异地协查) 등을 강화함으로써 전용영수증의 관리 효율을 대폭 제고하였고 세원에 대한 감독과 지배를 강화하였으며 세수징관을 유력하게 촉진하였다.

#### 다. 조세통제관리(税控管理)

##### 1) 조세통제관리 개요

조세통제관리는 세수징수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개념의 하나이다. 이는 세무기관이 조세통제장치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생산경영 상황에 대하여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근거와 납부세액을 확

정하며 조세관리를 진행하는 각종 활동의 총칭이다.

조세통제관리의 특징은 조세통제장치를 이용하고 전자기술과 기타의 기술수단을 통하여 과세근거와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게 생성해서 안전하게 전달하고 확실하게 저장함으로써, 거래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세원을 통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조세통제관리를 통하여 과세근거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고, 국가세입을 보장하며 세수유실을 방지하고 세수징관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며 조세비용을 절감하고 세수징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세통제장치는 납세자가 세금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납세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조세통제장치는 허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하여 공평한 경쟁조건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세수징관법」 제23조는 “국가는 조세징수관리의 수요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사용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28조는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통제장치의 보급응용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법적으로 조세통제장치의 지위를 확정하고 조세통제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세무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장부·증빙에 대한 관리를 납세자의 거래활동의 실제과정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세수징관의 질을 제고하고 세수징관 개혁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2) 조세통제장치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조세통제장치란 납세자의 수입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과세근거와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생성과 안전한 전달, 확실한 저장을 보장하며, 조세의 통

제·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 및 당해 기구를 지지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조세통제장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거래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저지하고 효과적으로 세원을 통제하며 국가세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통제장치의 응용대상은 주로 유통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납세자이며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조세통제장치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세 개 단계의 보장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데이터가 정확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 이는 조세통제장치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이다. 둘째,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 데이터가 안전하고 적시에 전달되어야만 세무기관이 제때에 관련 정보를 장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세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의 효과적인 저장. 조세통제장치는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에 세무기관의 조사와 법적 책임의 확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세통제장치의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세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세수 유실을 방지한다. 둘째, 부정행위를 저지하고 정상적인 조세질서와 경제질서를 유지한다. 셋째, 세수징관의 효율을 제고하고 조세비용을 절감한다. 넷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4. 납세신고제도(纳税申报制度)

##### 가. 납세신고 개요

##### 1) 납세신고의 개념

납세신고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기한과 내용에 따라 세무기관에 납세 관련사항의 서면보고를 제출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법적 책임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며 세무기관의 조세관리정보의 주요 원천이자 중요한 세무관리제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 신고내용에 따라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 재무회계제표 및 세무기관이 실제수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하는 기타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 신고내용에 따라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세액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실제수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하는 기타의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주적인 납세의식을 제고하며, 세무기관이 세원 상황을 제때에 장악하고 분석하는 데 모두 유리하다.

납세신고제도는 세무관리의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세법에서 납세자가 기한 내에 관련 세무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그에 대하여 처벌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납세신고제도를 세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하여 현행 각 세목의 법률, 법규에는 모두 납세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특히 「세수징관법」이 실시된 후 법적으로 납세신고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더욱 완비된 납세신고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세무기관이 납세신고를 관리함에 있어서 더욱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2) 납세신고의 원칙

### ○ 적시신고의 원칙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조세법률, 법규의 요구 또는 세무기관이 조세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에 따라 세무기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고 납세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 및 원천징

수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 ○ 전면적인 신고의 원칙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구에 따라 납세신고서, 원천징수세액보고서와 기타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보고서와 관련 자료는 완벽해야 하고 둘째, 보고서 내의 신고항목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사실신고 원칙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발생한 업무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전면적으로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데이터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하고 관련 데이터와 경영상황을 조작하거나 감추어서는 안 된다.

### 3) 납세신고의 내용

납세신고의 내용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할 때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납세신고 내용은 주로 각 세목의 납세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보고서에서 나타나며 또 다른 부분은 납세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기타의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 4) 납세신고 방식

납세신고 방식이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에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납세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말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법정의무이다. 그러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방식에서는 일정한 선택권을 가진다.

상이한 분류기준에 따라 신고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납세자가 독자적으로 납세신고사항을 처리하는가 여부에 따라 납세신고를 납

세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납세신고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대리신고로 나눌 수 있다.

납세신고의 수단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하는 납세신고와 우편신고, 납세자가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데이터전문(数据电文)신고 및 기타 방식의 신고로 나눈다.

납세자의 납세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납세자의 정상적인 납세신고, 납세자의 간이신고(简易申报)로 나눈다. 간이신고란 정기정액징수방식(定期定额徵收方式)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조세법률 및 법규를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이미 신고했다고 보아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신고방식을 말한다.

### 5) 납세신고의 절차

#### ○ 접수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할 때 세무기관이 확정된 신고방식에 따라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세무징수부문은 관련 신고자료를 접수·확인한다.

#### ○ 심사

세무징수부문은 신고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자료가 빠졌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납세자에게 알리거나 또는 신고재촉관리부문(催報催繳管理部门)에 넘긴다. 납세자가 데이터전문신고를 채택할 경우에는 서면자료도 신고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처리

세무징수부문은 신고정보와 자료를 세액징수, 신고와 납부독촉관리(催報催繳管理), 세금검사확인평가관리(稽核评稅管理), 영수증 관리, 징관기록관리, 조세계획, 통계·회계관리에 전달하고, '신고상황통계분석표'와 기타의 관련 보고서를 제작한다.

## 나. 납세신고의 요구

### 1)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요구

납세자는 반드시 법률·행정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신고기한 및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는 반드시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기한 내에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납세의식을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세수징관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한과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확정된 기한이 있다.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해야 한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신고내용이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인정은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납세신고서와 재무회계제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세무기관의 납부세액의 확정 및 처벌 등은 모두 납세자의 납세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신고서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지 않거나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정한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

### 2)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요구

「세수징관법」 제25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

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신고기한, 신고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실제수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을 요하는 기타의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하는 것은 조세관리에 있어서 필수이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징관법은 법적 책임 중에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원천징수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과세권에 대한 침해이며 납세자의 권익 침해이다.

#### 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

신고내용이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에 납부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는 내용을 말한다.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세액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금종류(税种), 세목(税目), 과세항목(应纳税项目) 또는 원천징수세액항목(应代扣代缴, 代收代缴税款项目), 과세의거(计税依据), 공제항목(扣除项目) 및 그 표준, 적용세율(适用税率) 또는 단위세액(单位税额), 환급세액항목(应退税项目) 및 그 세액, 감면세항목(应减免税项目) 및 그 세액, 납부세액(应纳税额) 또는 원천징수세액(应代扣代缴, 代收代缴税额), 세금소속기간(税款所属期), 연기납부세액(延期交纳税款), 세금체납(欠税), 체납금(滞纳金) 등을 포함한다.”

##### 1) 납세신고서와 원천징수보고서

납세신고서와 원천징수보고서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및 세액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한 주요한 증빙이며, 동시에 세무기관이 납부세액을 심사 및 계산하거나 또는 세액의 납입, 그리고 세액완납증빙을 발행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와 세액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후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납세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조세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재무회계제표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하는 관련 납세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2) 재무제표

재무(회계)제표란 장부기록 및 기타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규정된 지표체계와 격식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문건으로서, 기업, 기관, 사업단위 또는 기타 경제조직의 일정 시기 내의 경제활동 상황 또는 예산집행 결과를 반영하는 서면문건이다. 재무제표는 작성과 제출의 시간에 따라 월간 재무제표, 분기 재무제표와 연간 재무제표 등 세 가지로 나눈다. 다른 납세자는 종사하는 생산, 경영의 내용이 다르므로 사용하는 재무회계제표와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제표의 종류도 각각 다르다. 납세자가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어떤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한다.

## 3) 기타 납세자료

기타 납세자료란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납세신고서,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납세신고서는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확정할 때 직접적인 경제정보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일정기간의 납세자의 생산경영활동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납세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기관이 정확하게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규칙을 장악하며, 세원상황을 제때에 분석하고 국가의 세액이 제때에 충분한 액수만큼 국고에 납입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 신고를 처리할 때 사실대로 납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음의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재무, 회계제표 및 그 설명자료, ② 납세와 관련된 계약, 협의서 및 증빙, ③ 조세통제장치의 전자세금신고자료, ④ 외지경영활동조세관리증명과 異地세액완납증빙, ⑤ 국내 또는 국외 공증기구가 발행한 관련 증명문건, ⑥ 세무기관이 규정한 제출을 요하는 기타의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

## 라. 납세신고방법

납세신고방법이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후 신고기한 내에 조세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국은 납세신고제도를 수립한 이래 줄곧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수속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세수징관 개혁 이후, 납세자의 납세신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세신고방식도 다원화시켰다. 납세신고방식의 다원화는 세수징관 현대화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방법을 참조하였다.

### 1) 직접신고(방문신고, 上门申告)

직접신고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를 처리하거나 또는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신고방식이다. 오랫동안 중국은 비교적 집중적으로 직접신고의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세무감독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주요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정납세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직접 세금납부서(繳款书)를 발행하여 은행에 세액을 납부한 다음, 납세신고서, 세금납부서심사용

란(繳款書報查聯)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세무기관에 신고 처리한다.

- 나) 납세자는 은행에서 예비저축계좌를 개설하고 기한에 따라 사전에 당해 납부세액을 입금하며 법정 신고납세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이 은행에 통지하여 세액을 이체하여 국고에 납입되게 한다.
- 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자는 납세신고서와 관련 자료 및 납부세액 등액수표(應付稅款等額支票)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기관은 숫자명세서(數字清單), 수표를 집중적으로 납부신고(報繳)하고 통일적으로 국고에 납부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 2) 우편신고(郵寄申報)

우편신고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납세신고특급우편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우편관서를 통하여 우송절차를 처리하고 우편부문에서 영수증을 받아 신고증거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편신고는 발송한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1997년 9월 26일에 국가세무총국과 郵電部가 연합 제정한 「郵寄納稅申報辦法; 우편납세신고방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적용범위 : 장부검사징수방식(查賬徵收方式)을 실시하는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우편납세신고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나) 우편내용 : 우편신고의 우편물 내용은 납세신고서, 재무회계제표 및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하는 기타의 납세자료를 포함한다.
- 다) 처리사항 : 납세자는 법정 납세신고기한 내에 세무기관이 규정한 요구에 따라 각종 신고서와 납세자료를 작성한 후 통일적으로 규정한 납세신고특급우편전용봉투를 사용하며, 시간을 약속하여 우편인원이 방문하여 우편배달하게 할 수 있고, 지정된 우편관서에 가서 우송수속을 처리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우편관서는 모두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당해

영수증은 우편신고의 증거로서 심사를 위하여 비치해야 한다. 우편부문은 납세신고특급우편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도시의 특급우편방식의 우송, 발송처리를 참조하고 세무기관과 약정한 시한 내에 배달해야 하며 전달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각 세무기관은 인원을 지정하여 우편관서가 송달한 납세신고우편물을 통일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게 해야 한다.

- 라) 신고일자의 확인 : 우편납세신고의 구체적인 일자는 우편관서가 받은 소인일자(收寄日戳日期)를 기준으로 한다.
- 마) 전용봉투 : 우편납세신고전용봉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국이 동급 세무기관과 공동으로 인쇄공장을 지정하여 인쇄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각 지(시), 주, 盟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국가우정총국(国家邮政总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된 양식에 따라 인쇄하고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에서 구입 수령한다.

### 3) 전자신고(电子申报)

전자신고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납세자가 전화음성, 전자데이터교환과 인터넷전송 등 형식으로 처리하는 납세신고를 말한다. 납세신고는 현재 국제적으로 한창 확산되고 있는 납세신고방식의 하나로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편리한 특징이 있어 갈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일부 지방의 세무기관은 징수관리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하여서도 모색과 시험을 시작하였다.

「세수징관법실시세칙」은 데이터전문방식으로 납세신고하거나 또는 원천징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가 마감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전자데이터의 자료를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우편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존하다가 필요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세무기관이 받은 납세자의 데이터전문과 제출한 서면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서면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데이터전문은 세무기관이 신고데이터를 받은 시간을 실제 신고일자로 한다.

#### 4) 간이신고(簡易申報)

간이신고란 정기정액을 실시하는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액납부증빙으로 납세를 대체하는 등의 간편한 신고방식의 일종이다. 이러한 신고방식은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세무시스템이 실시하는 것은 납세신고를 기초로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신형의 세수징관 방식으로서 쌍방향 세무관리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납세자가 이 방식을 채택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간이신고의 적용범위는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실시하는 납세자에게만 한한다. 간이신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조사확정한 세액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액완납증빙으로 납세신고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세신고를 간단하게 한다. 둘째,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조사확정한 세액과 납세기한에 따라 신고납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한다.

#### 5) 기타 방식

기타의 방식이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처리, 우편처리, 데이터전문처리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거나 또는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신고연기(延期申報)

##### 1) 신고연기의 개념과 적용범위

신고연기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세액보고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세액보고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에서의 특수한 곤란이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재무회계처리상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

## 2) 신고연기의 절차

- 가) 신청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에 연기신고신청을 제출하고 「신고연기신청심사비준표(延期申报申请审议表)」를 수령하고 작성해야 한다.
- 나) 접수 : 접수절차에는 납세자가 작성한 표가 요건에 부합되는지, 필요한 첨부자료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 자료의 심사 비준절차로 넘긴다.
- 다) 심사 비준 : 세무기관은 신청자의 상황을 보아 연기신고의 구체적인 시한을 비준한다. 다만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 3) 신고연기의 세액처리

「세수징관법」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연기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연기신고신청자의 세액처리, 즉, 비준을 받아 연기신고 또는 제출사항을 처리할 경우 납세기한 내에 이전 기간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확정된 세액에 따라 세액을 예납하고, 비준한 연기기한 내에 세액결산을 처리할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5. 세액징수제도(稅款徵收制度)

### 가. 세액징수의 원칙과 방식

세액징수란 세무기관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고 국고에 납입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액징수는 징수방식의 확정, 납부세액의 확정, 세액의 국고납부(稅款入庫), 감면세 관리, 체납세액 추징(欠稅的追繳) 등을 포함한다.

#### 1) 세액징수의 원칙

가) 세액징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징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세법정원칙(稅收法定原則; 조세법률주의)으로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세권법정(稅權法定), 즉 조세의 입법권(稅收立法權)과 집행권(稅收執法權)은 모두 법으로 정하며, 세목법정(稅種法定), 즉 세목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설정되고 징수되거나 또는 법률이 행정법규에 권한을 주어 설정 및 징수하게 하는 과세법정(徵稅法定), 즉 조세의 징수절차는 반드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 세법의 확대해석(擴大解釋)을 금지하고 있으며, 즉 입법해석 외에 세법에 대하여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類推解釋)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에서 표현된다.

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세액징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무기관을 놓고 볼 때 세액징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세수징관법」은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세액을 징수 및 징수 정지하거나, 많이 또는 적게, 혹은 사전에 미리 징수하거나 미루어서 징수하거나 또는 균등하게 할당(攤派)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기관이 세액을 징수할 때 반드시 법정 권한과 법정 절차를 따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역시 세액징수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구

체적으로는 다음에서 나타난다. 세무기관이 세수보전(稅收保全) 및 강제집행조치(強制執行措施)를 취하고, 감면세 및 세액환급을 처리하며,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자의 체납세액(欠稅)에 대한 정리, 각종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세법 집행의 각 절차와 방면에서 나타난다.

- 다) 세액징수는 반드시 법정 징수관리 범위 내, 세액국고납부예산급수(稅款入庫預算級次)에 따라 징수 및 국고납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액징수 범위란 어떤 세목의 세액을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고, 어떤 세목의 세액을 지방세무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가를 말한다. 그 외에 국세, 지방세 등 각자 시스템 내부의 상이한 세무국, 세무분국도 규정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는 징수 범위 내에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세액 국고납부예산급차란 국가에서 규정한 재정예산과목징수국고납부(財政預算科目徵收入庫)의 예산등급에 따라 상이한 규모의 납세자의 상이한 세목의 세액을 징수 국고납부할 때 전액을 서로 다른 비례에 따라 각각의 급수별 재정에 납입해야 한다. 세액을 국고에 납부시 세액의 예산급수에 따라 국고납부 수속을 밟는 원칙은 세수가 국가재정 수입으로서의 엄격성을 나타내며 조세법 집행권의 엄격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라) 세무기관은 유일한 법정 세액징수주체이다. 「세수징관법」 제5조는 세수관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기관의 징세주체로서의 법률 지위를 확립하였다. 제29조는 세무기관, 세무인원 및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위탁한 단위와 인원 이외의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세액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1조는 세수보전과 강제집행조치의 권력은 법정 세무기관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는 감사기관, 재정기관이 법에 의하여 조사한 조세위법행위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관련 기관의 결정 및 의견서에 따라 받아야 할 세액, 체납금을 세액국고납부예산급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때에 관련 기관에 회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은 세무기관이 유일한 법정 과세주체라는 원칙을 나타내며 세무기관의 과세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률근거를 제공하였다.

마) 납세자는 납부세액을 적시에 금액대로 국고에 납부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적시에 금액대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바) 세무기관은 세액을 징수할 때 반드시 납세자에게 세액완납증빙(完稅憑證)을 발급해야 하고, 상품·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차압(査封)할 때 반드시 명세서(淸單)를 발급해야 하며, 상품·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압수(扣押)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세액·체납금(滯納金)을 징수할 때 반드시 세액완납증빙을 발급해야 하며, 벌금을 받을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세액완납증빙, 명세서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정수속 및 필수절차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세액을 완납했다는 증명이며, 세무기관이 차압·압수했다는 증명이고, 법의 의한 과세(依法治稅)의 표현이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2) 세액징수의 방식

가) 납부세액의 계산방식에 따른 구분

- ① 장부검사징수(查賬徵收) :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 재무제표가 반영하는 생산경영 상황을 근거로 적용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 및 징수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제도가 비교적 건전하고 납세의무를 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 ② 검사확정징수(査定徵收) : 일반적으로 장부가 건전하지 못하지만 원재료, 상품매입 및 판매를 지배할 수 있는 납세단위에 대하여 검사확정징수방법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는 납세단위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심사 및 확정을 거쳐 원재료의 사용, 상품의 매입 및 매출상황 등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 및 확정하며 납세납부서(納稅繳款書)를 발급하고 납세자가 이를 근거로 국고에 납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③ 검사징수(查驗徵收) : 납세자가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검사신청(報驗)하고, 세무기관이 검사를 한 후에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

며, 세무기관이 검사상황 및 납세자의 판매상황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징수방식이다.

- ④ 정기정액징수(定期定額徵收): 완벽한 심사자료가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신고상황을 근거로 전형조사, 업종평가 등 방식으로 정기정액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나) 세액국고 납부경로에 따른 구분

- ① 납세자가 직접 국고수납처(國庫經收處)에 납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국고수납처를 설치한 은행 또는 기타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기관에 신고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 ② 세무기관이 자체로 세액을 수납하고 국고납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인데 주로 현금으로 세액을 완납한 세액의 징수에 적용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
- ④ 위탁하여 세액을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 주로 소액·분산된 세액에 대하여 징수할 때 적용된다.
- ⑤ 기타 방식의 세액징수. 주로 우편납세, IC카드납세, 조세통제시스템을 통한 납세, 인터넷신고, 인터넷계좌이체방식을 통한 납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 가운데 일부, 예를 들면 IC카드납세는 이미 채택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아직 검토 중이다.

다) 기타 표준에 따른 구분

징수수단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세무기관이 강제적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있고, 납세장소에 따라 주로 납세자가 현지에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세액을 일괄납부(滙總繳納)하는 것이 있으며, 납세시간에 따라 주로 일별 납세, 월별 납세, 분기별 납세, 연도별 납세하고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세액을 예납하여 연말에 정산납부하는 것 및 횡수별로 납세하는 것 등이 있다.

### 3) 세액의 조사확정(核定徵收稅款)징수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조사확정징수란, 장부검사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세무기관이 생산경영 상황에 따라 납부세액의 금액을 조사확정하는 일종의 징수방식으로서 조사확정징수라고 약칭한다. 조사확정은 합리적인 요소를 기초로, 징수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추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조사확정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일 뿐이다.

#### 가) 조사확정징수의 대상과 범위

- 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
- ②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③ 함부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또는 납세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④ 장부를 설치하였지만 계정이 혼란스럽거나 또는 원가자료, 수입증빙, 비용증빙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장부검사가 어려울 경우
- ⑤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지만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기관이 기한을 주어 신고를 명했으나 기한 내에 여전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 ⑥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근거가 확실히 낮고 정당한 이유도 없을 경우
- ⑦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나) 납세자가 상술한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여 납부세액을 조사확정할 수 있다.

- ① 당지의 같거나 유사한 업종 가운데서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을 참조하여 조사확정한다.
- ②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하는 방법으로 조사확정한다.
- ③ 소모한 원재료, 연료, 동력 등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조사확정한다.

#### ④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확정한다.

상술한 방법 중의 하나를 채택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조사확정할 수 없을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채택하여 조사확정할 수 있다.

#### 다) 세액위탁대리징수(委託代徵稅款)

세액위탁대리징수의 원칙은 조세통제 관리에 유리하고 납세자의 세금처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진 산간지역에서는 납세자의 소재지가 세무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주 세무기관에 가서 관련 조세사항을 처리하는 데 불편하다. 이에 세무기관은 당지의 관련 부문에 위탁하여 대신 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세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세액위탁대리징수는 주로 소액의 분산된 경우와 이지방납부(異地繳納)의 경우에 적용된다.

위탁대리징수의 성격은 세무기관이 위탁한 단위와 인원이 세무기관을 대표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세무기관과 위탁대리징수자는 위탁관계이며 수탁자와 위탁대리징수 협의를 체결하고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탁단위와 인원은 대리징수증서의 요구에 따라 세무기관의 명의로 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한다.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수탁대리징수단위와 인원은 제때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대리징수단위와 인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행정처벌을 진행할 수 없고,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채택할 수도 없다.

#### 나. 납세연기와 감면세

##### 1) 체납금징수제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기한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체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주어 납부하게 하는 외에 세액을 체납한 날로부터 매일 체납세액의 0.05%를 체납금으로 추징한다.

- 가) 체납금의 계산 : 체납금의 개시시간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세액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로부터 시작하여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납부하거나 또는 세액을 원천징수한 날까지이다. 체납금의 계산은 체납일수에 징수비율을 곱한 금액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금이 된다.
- 나) 체납금의 징수절차 : 우선 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라 매일 체납세액의 0.05%가 되는 금액을 체납금으로 징수함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납세연기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준한 납세연기 기한 내에는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한 배려이다.

## 3) 감면세

감세·면세는 세법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일종의 조세우대조치 또는 특수한 조절수단으로서 감면세라 총칭한다. 감세는 징수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일부를 감소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면세는 일정한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세는 세수징수관리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의 지렛대 역할(杠杆作用)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가) 감면세의 조건

- ① 감면세는 반드시 조세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② 세법 통일, 세권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감면세의 입법권과 심사비준권은 고도로 집중된다.
- ③ 감면세는 조세실체법을 통하여 표현된다. 어떠한 감세 또는 면세 모두 어떠한 가지 세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반드시 세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를 진행해야 한다.

## 나) 감면세의 절차

- ① 납세자는 반드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 ② 납세자가 감면세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조사 및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조세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감면세 자격에 대한 인정을 진행해야 한다.
- ③ 심사비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납세자의 감면세 자격은 심사비준권이 있는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둘째는 납세자가 감면세 및 세액환급을 처리할 때에도 심사비준 수속이 필요한 것이다.
- ④ 감면세, 세액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 다.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

세수보전조치란 세무기관이 규정된 납세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자의 행위 또는 어떤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이후 세액징수를 보장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보장이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처리 또는 이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세수강제집행조치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 등 세수관리 상대자가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법정 강제수단을 취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세수보전조치는 규정된 납세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취하는 것이고, 세수강제집

행조치는 규정된 납세기한이 만료된 후에 취한다.

세무기관이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때 납세자의 재산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강제 집행조치는 당사자의 재산소유권의 이전을 발생시킨다. 즉, 당사자의 상품, 화물이 경매·환금되고 경매·환금소득으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자금으로 강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의 집행주체는 세무기관이다.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고 대신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단위와 인원은 단지 세무기관의 명의로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을 뿐, 세무기관의 명의로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고, 더욱이 수탁단위 자체의 명의로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1)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하는 전제조건

가) 세수보전조치의 전제조건

- 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혐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반드시 규정된 납세기한이 만료되기 전이고 세액납부를 명령한 기한 내이며, 기한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보전조치가 아니라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상술한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세수강제집행조치의 전제조건

- ①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액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담보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② 세무기관이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등에 기한을 주어 법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한다.
- ③ 세무기관이 기한을 주어 세액을 납부하게 했음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

을 경우.

## 2)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의 실시 범위

### 가) 세수보전조치의 실시 범위

- ① 보전조치의 실시대상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이다.
- ② 보전 범위는 저금,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포함한다.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과 물품은 세수보전 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나) 세수강제집행조치의 실시 범위

- ① 강제집행의 대상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이다.
- ② 집행 범위는 저금,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포함한다.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과 물품은 강제집행 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3)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의 형식

### 가) 세수보전조치의 형식

- ① 납세자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상당한 저금을 동결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납세자의 납부세액과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압수, 차압한다.

### 나) 세수강제집행조치의 형식

- ① 납세자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상당한 저금을 동결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납부세액과 상당한 금액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압수, 차압하여 법에 따라 경매 또는 환금한다.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때 전 항에서 열거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금에 대하여도 동시에 강제집행한다.

#### 4) 세수보전과 세수강제집행조치의 절차

##### 가) 세수보전조치의 절차

- ① 납세자에게 사전에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다.
- ②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 ③ 납세자의 저금을 동결하거나 납세자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차압, 압수한다.
- ④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세수보전조치를 취한 후 납세자가 기한을 지나 여전히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수강제집행조치로 넘어가게 된다.
- ⑤ 간이 세수보전조치(簡易稅收保全措施) : 간이세수보전조치는 단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만 실시한다. 간이세수보전조치와 「세수징관법」 제38조가 규정한 세수보전조치는 주로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간이세수보전조치는 세무기관이 납부세액을 조사확정하고 납부를 명한다. 둘째, 세무기관은 상품, 화물을 압수할 때 당장에 집행할 수 있고 사전에 현금 이상의 세무국장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나) 세수강제집행조치의 절차

- ① 세무기관이 기한을 주어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법률·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조세법률·법규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납세담보자(納稅擔保人)가 규정된 기한 내에 담보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직접적으로 상

대방의 재산을 경매·환급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자금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어, 즉 기한을 주어 세액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한다.

- ② 현금 이상 세무국장의 비준을 거쳐 상대방의 재산으로 세액을 징수하거나 또는 강제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가 세무기관이 기한을 주어 세금을 납부할 것을 명한 후 여전히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상대방의 상품, 화물, 기타의 재산을 차압, 압수, 경매 또는 환급하여 그 경매소득 또는 환급소득으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의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저금에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체납금의 강제집행.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때 체납금에 대하여도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 라. 체납세액(欠繳稅款)관리제도

체납세액이란 납세자가 납세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한 것을 말한다.

체납세액관리제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체납세액 예방제도 : 체납세액에 대한 예방조치는 주로 세액연기납부에 대한 심사비준제도(延期繳納稅款審批制度)를 엄격히 하는 것과 합리적인 세액예납제도(稅款預繳制度)를 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납세자는 세액을 연기납부할 때 성급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납세연기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연기를 신고할 때 규정에 따라 세액을 예납해야 한다.
- ② 체납세액유실방지제도 : 주로 출국세액정산납부제도(離境淸稅制度)와 납세자의 보고제도를 포함한다. 즉,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그 법정 대표자는 국경을 떠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세액과 체납금을 정산납부하거나 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금액이 큰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체납세액 청산납부(清繳)제도 및 조치 : 이는 주로 조세우선원칙(稅收優先原則), 대위권(代位權)과 취소권(撤消權)의 운용,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의 사용, 체납세액공고제도(欠稅公告制度), 체납금징수제도, 기한을 주어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했음에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행정처벌(行政處罰), 체납세액에 대한 추징을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행정처벌,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가 분할·합병시 세무기관이 청산에 참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1) 체납세액공고제도

체납세액공고제도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세액체납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고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로부터 볼 때, 체납세액공고제도는 납세자와 세무기관이 제때에 체납세액의 금액을 확인하고 납세의식을 제고하며 체납세액 정산납부의 강도를 높이고 납세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게 한다. 동시에,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직무이며, 납세자가 정상적인 생산경영방식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동시에, 체납세액공고제도와 더불어서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은 거래일방이 세무기관에 거래상대방의 체납세액 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조세법률·법규를 이해하고 거래과정에 체납세액공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함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래행위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납세액공고제도는 모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이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체납세액공고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체납세액공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납세자의 세액체납 상황을 통지할 때 납세자의 세액체납 관련 상황만 제공할 수 있고, 세무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납세자의 기타 생산경영

상황 등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출국세액정산납부제도

출국세액정산납부는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가 국경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세무기관에 체납세액과 체납금을 정산납부하거나 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국방 또는 세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3) 조세우선권과 대위권, 취소권

가) 조세우선권의 함의

- ① 조세는 무담보채권(無擔保債權)에 우선한다. 비록 조세가 무담보채권에 우선하지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면, 파산절차에서 직원의 임금은 채권에 속하지만 직원의 기본생활보장이란 인권보호 취지에서 국가의 조세에 우선하여 청산을 받게 된다.
- ② 조세는 그 후에 발생한 저당권(抵押權), 질권(質權), 유치권(留置權)에 우선한다. 즉, 납세자가 체납한 세액이 납세자가 그 재산으로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유치되기 전에 발생할 경우, 조세는 저당권, 질권, 및 유치권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한다.
- ③ 조세는 벌금(罰款), 위법소득의 몰수(沒收違法所得)에 우선한다. 납세자가 세액을 체납하고 동시에 행정기관에 의하여 벌금, 위법소득의 몰수를 당하였을 경우 조세는 벌금 및 위법소득의 몰수에 우선한다.

나) 대위권, 취소권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그의 만기채권에 대한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채권이

채무자에 전속되는 것은 제외한다. 취소권은 채무자가 그의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확실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고, 또한 양수자가 당해 상황을 알 경우에도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은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여기에서는 조세를 국가의 채권으로 본다.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위권,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 ① 법정조건은 납세자가 세액을 체납했다는 것이다. 체납세액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조에서의 대위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행위조건은 납세자가 만기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포기,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 ③ 결과조건은 국가의 세수에 손해를 주는 것인데, 세수에 손해를 준다는 것은 주로 세금의 징수를 방해하고, 직접적으로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며 기타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등을 말한다.

세무기관은 직접 대위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대위권, 취소권의 집행자이다. 때문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을 통하여 대위권,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 4)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가 그 부동산 또는 금액이 큰 자산을 처분할 경우의 보고 제도

「세수징관법」 제49조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금액이 비교적 큰 납세자는 그 부동산 또는 금액이 큰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제도의 전제는 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으며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세액을 체납해야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을까? 보고제도는 납세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고 법적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각지의 표준이 동일하지 않아 세무기관의 행정 법집행 표준이 통일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은 체납세액의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7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수징관법 제49조에서의 체납세액의 금액이 비교적 크다 함은 체납세액이 5만 元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마. 관련기업(关联企业)에 대한 세무행정상 관리

##### 1) 관련기업의 인정

여기에서의 관련기업이란 각종 국내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

‘관련기업’은 조세관리에서의 특정 법률개념으로서 그 함의도 특정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수징관법 제36조에서의 관련기업이라 함은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장소와 다음 관계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기업, 기타의 경제조직을 말한다. ①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 방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할 경우, ②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③ 기타의 이익상 관련관계가 있을 경우.”

‘기타의 이익상 관련관계가 있을 경우’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을 가리킨다. ①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대차자금(借贷资金)이 기업의 자체 자금액의 50% 또는 그 이상이거나, 기업의 대차자금총액의 10%를 다른 기업이 담보한 경우, ② 기업의 이사 또는 경리 등 고급관리인원의 절반 이상 또는 한 명의 상무이사가 다른 기업에 위임 파견한 경우, ③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반드시 다른 기업이 제공한 특허권리(산업재산권[工业产权], 독점기술[专有技术])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④ 기업이 생산경영을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부속품 등(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포함)을 다른 기업이 지배하거나 또는 공급할 경우, ⑤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를 다른 기업이 지배할 경우, ⑥ 기업의 생산경영, 거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기타 이익상 관련이 있는 관계, 가족, 친족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는 그와 관련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관하여 당지 세무기관에 관련 가격, 비용표준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2) 세무기관이 납세자와 관련기업 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와 관련기업 간의 업무거래가 다음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구입판매업무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 않을 경우.
- 나) 자금유통에 있어서 지불 또는 수취한 이자가 관련관계가 없는 기업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낮을 경우, 이자율이 같은 종류 업종의 정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낮을 경우.
- 다) 노무제공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노무비용을 지불 또는 수취하지 않을 경우.
- 라) 재산의 양도, 재산사용권의 제공 등 업무거래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비용을 수취하거나 지불하지 않을 경우.
- 마)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 않은 기타의 상황.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란 관련관계가 없는 기업 간에 공평한 거래성립가격(公平成交价格)과 영업관례(營業常規)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 3) 세무기관이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조정하는 방법

납세자가 상술한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액 또는 소득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독립기업 간에 같거나 유사한 업무활동을 진행하는 가격에 따르는 방법
- 나) 관련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입과 이윤수준
- 다)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하는 방법
- 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몇 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순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납세조정기한

납세자와 관련기업이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대금,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납세연도로부터 3년 내에 조정을 진행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납세연도로부터 10년 내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 5) 사전합의가격제도(預約定价制度)

사전합의가격제도는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의 정가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관련 정가사항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사전에 약정하며 납세자의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에 국제적으로 이전가격조세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종의 관리제도이다. 이는 세무기관이 이전가격에 대하여 사후심사하는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사전심사로 변경한 것이다. 사후

심사로 이전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인정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납세자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심사와 약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바. 세액의 추징(追徵)과 반환(退還)

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충납부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액을 많이 납부할 경우 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이를 환급해야 한다. 세액의 징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세무기관은 규정을 위반하여 세액을 많이 징수하거나 또는 적게 징수하면 안 된다.

##### 1) 세액의 추징

추징은 세무기관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세액을 보충납부하는 것이다.

체납세액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고 일부 세액만 납부했거나 적게 납부했음을 말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세액이 바로 적게 납부한 세액이다.

납세자에게 체납세액 또는 세액을 적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세수징관법」은 체납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즉 첫째,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것 둘째,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과실로 인한 것 셋째, 탈세·납세거부가 있다.

##### 가) 추징기한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추징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세무기관은 3년 내에 추징할 수 있으나 체납금을 추징할 수 없다. 둘째, 추징금액 제한이 없다. 즉, 3년 내에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이 얼마든 세무기관은 모두 추징할 수 있다. 단 3년을 초과하면 세무기관은 추징할 수 없다.

- 세무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80조는 “세수징관법 제52조에서의 세무기관의 책임이란 세무기관이 조세법률, 행정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법집행행위가 위법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이는 법률·행정법규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것과 세무기관의 법집행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측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액을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 납세자의 주관적인 고의로 인한 경우도 있다. 「세수징관법」은 다만 납세자의 계산착오 등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과실로 인하여 세액을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3년 이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추징기한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세수징관법」에서의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과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81조는 “세수징관법 제52조에서의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과실이란 비주관적인 고의의 계산 공식운용의 착오 및 분명한 글자 착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비주관적인 고의’란 납세자가 주관적으로는 조세회피의 고의가 없고 행동상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또는 체납하는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 ‘분명한 글자 착오’란, 명백히 알 수 있는 필기 착오를 말한다.
- 실시세칙 제81조 외의 기타의 상황, 예를 들면 실현수입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전에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을 공제한다든가 등의 경우에는 ‘과실’로 처리할 수 없다.

탈세·세금납부 거부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무기한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세금납부를 거부한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세무기관은 모두 무기한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세법의 강제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 또는 세금납부를 거부한 금액이 얼마이든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는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무기관은 무기한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나) 추정기한의 기산점

추정기한의 기산점이란 세무기관이 세액과 체납금을 추정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기산점을 말한다.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83조는 “세수징관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세액과 체납금을 보충징수 및 추정하는 기한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할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납세의무의 발생시간과 세액을 납부해야 할 시간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 체납세액추정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 추정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진 않았지만 당해 체납세액이 납세자측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고 「세수징관법」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기만 하면 세무기관은 무기한으로 세액과 체납금을 추정할 수 있다.

## 2) 세액의 환급

### 가) 세액을 많이 납부한 유형.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다납부세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세무기관이 발견한 것이 있고, 둘째는 납세자 자신이 발견한 것이 있다.

납세자가 세액을 많이 납부한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한 세액 다(多)납부 :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액을 예납하면서 발생한 결산세액환급(結算退稅), 수출세액환급(出口退稅), 각종 감면세액환급(減免退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조세 관련 법률·법규를 잘못 사용하면서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② 기술적인 원인으로 인한 세액 다납부 : 납세자의 계산착오로 인한 것, 판매된 상품이 환불되면서 발생한 것 등이 있다.
- ③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다납부가 있다.

나) 은행동기예금이자가산(加算銀行同期存款利息) 문제에 관하여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다납부세액을 발견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고 은행이자도 계산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한 다납부세액에 관하여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다납부세액의 환급 및 같은 시기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범위는 납세자 자신이 발견한 것이고, 법에 따라 세액을 예납하면서 발생한 결산세액환급·수출세액환급 및 각종 감면세액환급 이외의 다납부세액을 포함한다.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78조는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액환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 자신이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확인하고 환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고에서 환급하는 것은 법률·행정법규의 국고관리규정에 따라 환급

이는 국고관리와 환급의 합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 규정은 앞의 규정에 대한 제한이자 보충이다. 즉, 국고환급과 관련될 경우 앞에서 말한 환급세액의 기한 및 요구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국고에서 환급하는 행위는 국고관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제를 받으므로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 환급해야 할 세액에 대한 처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제79조는 “납세자가 환급해야 할 세액도 있고 체납세액도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세액과 이자를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

제 후 잔액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만약 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다면, 세무기관은 체납세액과 상당하는 환급세액 및 이자에 대하여 선징후퇴(先徵后退, 선징수 후환급)의 권한이 있다. 즉, 세무기관은 환급세액과 이자를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다납부세액과 이자에 대하여 먼저 환급을 요구하고 다시 공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기간의 납부세액을 징수(抵繳)하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납세자가 납부(抵繳)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다납부세액과 이자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마) 환급절차

납세자가 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세액을 다납부하게 된 원인과 많이 납부한 금액을 설명하고, 동시에 본래의 납세증빙번호·세금금액·납부일자를 제출하며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수입환급서(收入退还书)’를 작성하고 세액환급 수속을 처리하게 된다.

## 6. 세무조사(稅務檢査)

세무조사란 세무기관이 국가의 관련 조세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대하여 심사와 감독을 진행하는 관리활동이다.

세무조사의 주체는 세무기관이고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세무조사의 객체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이고, 국가의 관련 조세법률, 법규, 규장을 근거로 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세위법행위를 조사 및 처벌하고 세수를 보장하며 조세질서를 유지하고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납세하며, 세무기관의 징수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법

에 따른 과세(依法治稅)를 실현하는 것을 세무조사의 임무로 한다.

## 가. 세무조사 양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1) 세무기관의 권리와 법집행에 있어서의 제한

#### 가) 세무기관의 세무조사권

- ① 조사대상 확정권(檢査對象確定權) : 조사대상이란 세무기관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상대방을 말하는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어떠한 유형의 또는 어떤 구체적인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직권이다. 세무기관은 업무수요와 조세관리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선출하게 된다. 첫째, 컴퓨터사건선정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선별하는 것 둘째, 세무조사계획에 근거하여 상이한 납세자 유형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선정하거나 또는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선정하는 것 셋째, 국민의 신고, 관련 부문의 이전처리, 상급에의 이전처리, 정보교환 자료를 근거로 확정하는 것.
- ② 질문권(詢問權) : 질문은 세무조사담당자가 필요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련 당사자의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세무조사에서 세무기관 또는 담당자는 장부조사에서 파악한 상황 또는 일반인이 신고한 상황에 따라 질문을 통하여 관련 사실증거에 대하여 깊이 조사 및 확정하고, 상이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실의 진실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 ③ 장부조사권(查賬權) : 세무장부조사는 세무기관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본방식으로서 세무기관이 세법과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 기장증빙,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진행하

는 조사이다. 장부조사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업무장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조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납세자료를 세무기관에 가져와 조사할 수도 있다.

- ④ 현지조사권(实地检查权) : 현지조사권은 세무기관이 장부 외 조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생산경영장소 및 화물보관장소에 가서 과세해야 할 상품·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을 통하여 장부조사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무기관이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자료제출요구권(责成提供资料权) :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기관은 장부조사 외에 납세자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증(营业执照), 취업대기인원과 장애인을 비치한 증명, 신제품의 증명문건, 관련거래의 계약, 비준서류 등이 있다. 자료제출요구권이 확립된 후 세무기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법률근거가 있게 되고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⑥ 역, 부두, 공항과 우정(邮政)기업에서의 조사증명권(查证权) : 세무기관은 역·부두·공항·우편기업 및 그 지점에 가서 납세자가 운송하거나 우송한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의 관련 영수증과 증빙 및 기타 자료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 ⑦ 예금계좌조사권(检查存款账户权) :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예금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가 세액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에 부여한 일종의 중요한 권한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이에 협조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할 때 납세자와 금융기관의 합법적 이익에 대해 초래하는 손해를 피하고, 세무기관이 이러한 권력을 정확하게 운용하게 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은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⑧ 조사대상 이외의 기타 사람에 대하여 조사할 권리 : 세무조사의 순조롭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대상 이외의 기타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 ⑨ 세무기관은 조사 중에서 사건과 관련된 상황 및 자료에 대하여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및 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 ⑩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권한 : 세무조사에서 과세근거를 확정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세무기관은 조세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를 확정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의 관련 조세규정과 저촉될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의 관련 조세규정에 따라 납부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법에 따라 세수보전과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세무조사권의 법률제약

세수징관법은 세무조사권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기관과 그 담당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권에 대한 제약은 주로 집행인원·집행권한·집행절차 및 조사권의 사용범위 등의 방면에서 나타난다.

- ① 집행담당자 : 조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일정한 자격이 있고, 두 사람 이상이며, 세무조사증이 있어야 하고, 피조사인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조사인원과 조사대상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조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 ② 집행권한 : 세무기관은 세무조사의 각 절차에서 각종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때 모두 일정한 권한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사건혐의자의 예금을 조사할 때 반드시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세무기관과 그 담당자들은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때 엄격한 절차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파견인원이 조사를 진행할 때 세무조사통지서와

조사증을 제시해야 되고, 결론을 먼저 내린 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④ 세무조사권 행사의 범위 제한 : 주로 조사권의 행사는 지역 제한이 있어 규정을 위반하고 지역을 벗어나 조사할 수 없고, 납세자의 생활장소에 진입하여 조사할 수 없다. 우편, 역, 부두 등 장소에서는 납세자가 우송·운송한 화물 또는 상품의 관련 영수증만 조사할 수 있을 뿐, 화물 또는 상품 자체를 조사할 수는 없다.

## 2) 피조사자의 권리와 의무

가) 피조사자의 권리 : 알 권리·진술변명권·비밀유지 요구권 및 회피 신청권 등이 있고, 세무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조사인원이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무기관이 처벌결정을 하기 전에 공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이 처벌결정을 한 후에는 통지를 요구할 권리·행정재심을 신청할 권리·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및 배상을 신청할 권리 등이 있다.

나) 피조사자의 의무 :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일부러 지연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허위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 세무기관의 처리결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 3) 기타 관련 부문의 권리와 의무

세무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에 피조사자, 사건혐의자의 계좌와 예금상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역·공항·부두·우편기업 및 그 지점은 세무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관련 납세자 등 피조사자의 화물우송·운송상황과 관련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기타 부문은 세무기관의 조사를 지지해야 하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간섭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관련부문과 단위는 세무기관의 조사를 협조할 때 세무기관이 조사증, 증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세무조사의 종류·원칙과 방법

##### 1) 세무조사의 종류

가) 세무조사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세무검사와 징수관리부문의 조사로 나눌 수 있다.

- ① 세무검사(稅務稽查) : 이는 세무검사기관의 전문적인 조사를 말한다. 세무검사는 세무검사부문이 법에 따라 조직 및 실시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진행하는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이다. 세무검사는 주로 탈세·세금거부·조세회피 등 큰 사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조사이며 완벽하고 규범화된 조사절차와 분담(分工)이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세무조사로서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세무검사는 전문기관의 전문인원이 진행하는 전문조사로서 현행 세무검사기관의 설치와 직책으로 구분할 때 세무검사는 전문적인 검사국에서만 진행한다. 세무검사는 엄격한 검사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즉, 엄격한 사건선정, 검사실시, 검사심리, 검사결정의 집행 등 4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② 조세징수관리부문의 조사 : 이는 검사국 이외의 조세징수관리부서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이다. 징수관리부서의 세무조사는 주로 징수관리부서가 직책을 수행할 때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관련 징수관리절차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로서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조사절차도 매우 융통성이 있어 엄격히 사건선정, 조사, 심리, 집행 등 4개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징수관리부서의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시성(及時性) : 징수관리부서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어느 한 납세절차 또는 측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만 조세법 집행의 업무 실제와 결합하여 수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때에 조사·수정·처리하기에 편하다.

둘째, 융통성(靈活性) :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방식과 형식은 융통성이 강하고 다양하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일반적으로 행정법 집행의 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된다.

셋째, 맞춤형(針對性) :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절차, 어느 한 방안을 견주어 조사하는 것이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광범성 :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는 세수징관의 각 방면, 각 절차를 포함하고 징수부서의 일상업무의 한 부분이기에 광범성을 가지고 있다.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재지에 가서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설사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방안을 견주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은 주지 않는다.

징수관리부문의 조사와 검사부문의 조사는 서로 다른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원천이 다르다. 세무검사의 사건 원천은 주로 검사계획과 사건선정표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정한 것과 무작위로 추출한 사건, 징수관리부문의 의문점을 발견하여 이전하여 온 사건, 신고한 사건, 이전 또는 전달하여 온 사건 등이 있다. 징수관리부서의 사건 원천은 주로, 세수징관의 각 절차에서 납세자의 상황에 대한 심사, 세법 또는 실제상황의 수요에 따라 납세자의 상황에 대하여 진행하는 조사, 예를 들면 납세연기, 감면세 수속 등을 처리할 경우에 납세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조사 등이 있다.

둘째, 조사의 대상, 성격, 목적이 서로 다르다. 검사의 주요 대상은 중대한 사건,

특대사건이며 전문성이 강한 세무조사로서 주요 목적은 조세위법사건을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함에 있다.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대상은 세수징수관리활동 중에서 특정한 의무나 수요가 있거나 또는 어느 한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조사의 성격이 있을 뿐더러 조사와 심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은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징수관리절차를 유지하며 중대한 사건과 특대사건의 발생을 제때에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셋째, 조사의 방식, 절차와 수단이 서로 다르다. 세무검사는 엄격한 검사절차가 있고 엄격한 전문화된 분담을 견지하며 각 절차는 서로 제약된다.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는 방식이 다양하고 융통성이 강하며 절차적으로는 꼭 엄격히 사건선정, 조사, 심리, 집행 등 4개 절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없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조세법 집행이기만 하면 된다.

넷째, 조사의 시간이 다르다. 세무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전 연도의 상황을 조사하고, 징수관리부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물론, 징수부서의 조사와 검사부서의 조사는 서로 연관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첫째, 징수부서의 조사와 검사부서의 검사는 서로 보충하고 지지한다. 세무검사는 세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조세 위법과 세수 유실을 방지하고 조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큰 제방을 쌓는 것이고, 징수관리부서의 조사는 주로 이러한 제방을 위한 기초업무를 닦는 것이며 유지와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징수부서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검사부서를 위하여 사건의 원천을 제공한다. 징수관리부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중대한 탈세 및 기타 조세위법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건 선정을 통하여 제때에 검사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이는 검사부서의 사건원천의 하나로 된다. 셋째, 검사부서가 검사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관련 상황을 징수관리부서에 재반영하고 징수관리부서는 이를 근거로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징수관리부서의 세무조사 중점을 확정하게 되고 징수관리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 나) 기타 표준에 따른 구분

세무조사는 상술한 표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 외에 기타 표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조사장소에 따라 현지조사와 장부조사로, 조사시간에 따라 이전 연도의 납세상황에 대한 조사와 당해 연도의 납세상황에 대한 조사로, 조사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장부내 조사(账内检查), 장부의 조사(账外检查), 이지협조사(异地协查) 등이 있다.

## 2) 세무조사의 원칙과 방법

### 가) 세무조사의 원칙

- ① 사실 근거의 원칙 : 세무조사의 조사, 증거수집, 처리 등 각 절차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어야만 세무조사 및 처리의 근거로 된다.
- ② 법률 근거의 원칙 : 이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세법으로 세무조사의 매 절차를 규범하고 세무조사의 조작절차와 조사행위 측면에서도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둘째,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법률을 근거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즉 법에 따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며 법에 따라 인정하고 성질을 규정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③ 타격과 교육의 결합 원칙 : 세무조사는 조세위법행위를 타격해야 하는 한편, 동시에 위법자를 교육하고 납세자에게 경고를 주며 국가세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조세를 견지해야 한다.
- ④ 납세자 권익 존중 원칙 : 세무기관은 조세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조사자를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피조사자의 당연한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피조사자의 진술을 열심히 듣는 등 피조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⑤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르는 원칙 :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

행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요구이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측면으로서, 이를 세무조사의 원칙의 하나로 하는 것은 법정권한과 절차를 위반한 조사는 무효하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나) 세무조사의 방법

세무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면조사법(全査法)과 추출조사법(抽查法) : 전면조사법은 상세조사법, 감사식조사라고도 하는데 추출조사법과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피조사자의 일정한 기간 내의 모든 회계증빙, 장부, 재무제표, 납세상황 및 각종 재고에 대하여 전면적·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추출조사법은 선별조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전면조사법과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피조사자의 일정 기간 내의 회계증빙, 장부, 재무제표 및 재고 등에 대하여 일부분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 ② 순위조사법(順査法)과 역조사법(逆査法) : 순위조사법은 역조사법과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조사대상에 대하여 회계계산의 순서에 따라 회계증빙, 장부, 재무제표를 순서대로 조사하고 서로 대조 확인하는 일종의 조사방법이다. 역조사법은 순위조사법과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역회계계산의 순서를 말하는데, 회계재무제표, 장부, 증빙을 순서대로 조사하며 서로 대조 확인하는 일종의 조사방법이다.
- ③ 현장조사법(現場檢査法)과 장부조달조사법(調帳檢査法) : 현장조사법은 장부조달조사법과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세무기관이 조사대상기업의 사무장소에 인원을 파견하여 장부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장부조달조사법은 현장조사법과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피조사자의 장부자료를 세무기관에 가져와서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 ④ 비교분석법(比較分析法) : 피조사자의 관련 재무지표의 실제 완성수에 대하여 종행 또는 횡행으로 비교하고 이상한 변화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중에서 납세문제의 단서를 발견하는 일종의 조사방법이다.
- ⑤ 통제계산법(控制計算法) : 이는 피조사자의 관련 재무수치 간의 상호제약관

계에 의하여 믿을 수 있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측정된 수치로 조사기간의 장부기록 또는 신고한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방법이다.

- ⑥ 기타 조사방법 :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많은데 위에서 말한 조사방법 외에 관찰법, 대조확인법(核對法), 교열법(審閱法), 재고조사법(盤存法), 외부조달법(外調法) 등이 있다.

각종 세무조사방법은 각자 장점이 있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다. 실제 세무조사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세무조사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 다. 세무조사의 내용과 절차

##### 1) 세무조사의 내용

세무조사의 내용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인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징수관리 방면에서의 의무이행 상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실체법의 요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등기, 납세신고, 감면세, 납세연기, 세액 국고납부 및 장부처리 등 방면에서의 의무이행 상황,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의 구입수령, 사용, 보관, 취득 등 방면에서의 상황,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매 과세세목에 있어서 수입과 소득의 확인, 과세근거의 확정과 적용세율, 세액의 계산 및 납부 등 방면에서의 상황이 있다.

##### 2) 세무조사의 절차

세무조사는 주로 사건선정, 조사실시, 심리, 집행 등의 절차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무조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세수징수관

리부서의 세무조사와 감사의 성격을 가진 조사는 특정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지만, 조세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특히 세무검사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세수징수관리부서가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 융통성이 있어 반드시 사건선정, 조사실시, 심리, 집행 등 몇 개의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이 네 가지 절차를 벗어나지는 않고, 여전히 이 네 가지 절차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다만 집행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 몇 개 절차는 시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되며 반드시 세무검사의 공문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II. 세무위법 및 세무처벌

세무위법이란 조세법률관계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행위주체는 납세주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과세주체 및 조세법률관계를 위반한 기타의 당사자도 포함한다.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만 법에 따라 행위주체로 하여금 상응한 법적 책임,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세무위법처벌 또는 세무위법책임이란 세무법률관계 중의 주체가 그 행위의 위법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할 소극적인 법적 결과를 말한다.

법적 책임은 법률·법규에서 불가피한 구성부분으로서 법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완벽한 법률·법규 모두 적용요건, 행위유형 및 행위유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 등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중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률규범의 국가 강제력을 나타내는 핵심부분이다. 만약 어떠한 법률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결핍된다면 법률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는 형식적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법률·법규 내지 규장에서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관계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법적 책임을 선택 및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위법행위의 성격과 손해 정도에 따라 위법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도 서로 다르다. 즉, 상이한 성격과 손해 정도의 위법행위는 상이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세수징관법의 성격과 특징에 의하여 조세위법행위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행정법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의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다. 상이한 위법주체에 따라 납세주체 즉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위법책임, 과세주체 즉 세무기관과 세무담당자의 위법책임, 기타 조세법률관계를 침해한 행위자의 위법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부담방법에 따라서는 재산책임과 인신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세무처벌(稅務處罰)

세무위법에 대한 처벌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가. 행정처벌

#### 1) 행정처벌의 의미

행정처벌은 행정벌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처벌권이 있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법률·법규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행정법률규범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행정 상대방에게 법률제재를 가하는 행위이다. 국가관리는 일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세무관리를 포함한 많은 규칙을 확정함으로써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질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행정처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가)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이 있는 행정주체이다. 즉,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의 행위이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것으로서 형사처벌·민사처벌과 구분된다.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행정처벌은 행정 상대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우선 처벌권자에 대한 것인데 법률·법규가 어떠한 행정주체에 특정한 행정처벌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이 행정주체가 당해 권력을 행사하고 처벌행위를 할 수 있다.

상이한 등급의 행정기관은 직권을 초월하여 처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행정법규가 위임한 조직은 위임범위 내에서만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위탁을 받은 조직은 법정 위탁조건에 부합되는 조직이어야 하며 위탁권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 행정처벌은 행정관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다.

처벌대상으로부터 볼 때 행정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은 행정관리의 상대방 당사자이며 이는 행정처분과 서로 구분된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업무자에 대한 처분이다. 행정관리 상대방 당사자란 행정권력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각종 사회조직과 공민·개인을 포함한다. 이들과 행정기관 간에는 관리와 피관리의 관계가 존재하며 국가법률·법규가 확정된 각종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은 처벌함으로써 경계를 줄 수 있다.

다) 행정처벌은 행정관리 상대방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행정처벌의 전제이다. 상대방 당사자의 위법행위는 여기에서는 주로 관련 행정관리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만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법규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법률·법규가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라) 행정처벌이 취하는 제재방식은 행정제재일 수밖에 없고, 형사제재나 민사제재는 안 된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의 어떤 위법행위는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형사범죄행위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행정처벌은 행정제재일 수밖에 없다. 행정처벌은 다만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 행정처벌의 특징

행정처벌의 특징은 기타 개념과의 비교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다. 행정처벌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다음 몇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가) 행정처벌과 행정처분과의 구별

- ① 결정을 내린 기관이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은 국가관리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공상행정기관의 공상행정처벌, 세무기관의 세수관리처벌 등이 있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내부관리기관 또는 피처분자와 조직상의 종속관계가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의 외부행위의 일종이고,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의 일종으로서 행정조직관계로 인한 것이다.
- ② 대상으로 되는 위법행위가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은 보통 공민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은 행정업무담당자의 위법, 직무상의 과실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③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가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행정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률·법규이며 이러한 법률·법규는 행정처벌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행정업무인원법(또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근거는 국가행정업무인원법(또는 공무원법)이다.
- ④ 형식이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의 형식은 주로 경고, 벌금, 구류, 몰수, 노동교양, 재물의 압수, 영업정지 등이 있다. 처벌은 구류와 같이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몰수와 같이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형식을 주로 경고(警告), 과실기록(记过), 감등 또는 강직(降职), 공직에서 제명(开除公职) 등이 있다. 때문에 성격으로부터 볼 때 행정처분은 피처분자의 직무상의 권리와 관련된다.

나) 행정처벌과 형벌과의 구별

- ① 처벌기관이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은 국가행정기관이 내리는 것이고, 형벌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 ② 대상으로 되는 위법행위가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의 대상으로 되는 위법행위는 관련 행정관리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이고, 형벌이 처벌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법을 저촉하고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 ③ 처벌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형사처벌의 종류는 경고, 벌금, 몰수, 구류 등이 있고 법률·법규에서 각각 규정한다. 형벌의 종류는 형법이 규정한 다섯 가지 주형인 금고(管制), 구금(拘役),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無期徒刑), 사형과 세 가지 부가형인 벌금, 정치적 권리의 박탈, 재산몰수 등이 있다.
- ④ 형벌을 내리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내리고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벌결정을 유지,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벌은 단지 법원이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 행정처벌과 집행벌(執行罰)과의 구별 : 집행벌은 행정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처벌의 형식으로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처벌과 집행벌은 모두 처벌의 형식을 가지지만 양자간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다.

- ① 법률성격 면에서 집행벌을 일으키는 행위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집행벌은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조치이며 법률이 집행벌을 설정한 목적은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벌은 상대방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없으면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
- ② 구성요건 면에서 행정처벌은 행위자가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 주관상 과오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고의와 과실이 없으면 행정위법을 구성하지 않고 행정처벌도 줄 수 없다. 집행벌은 주관상의 과오를 요구하지 않고 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지만 하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하여 집행벌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목적이 서로 다르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위법행위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징계로서 위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벌의 목적은 의무 이행에 있으며 처벌의 방식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다면

집행벌은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처벌은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집행벌은 법률이 규정한 장래의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3) 행정처벌의 원칙

행정처벌의 원칙이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실시에 대하여 보편적인 지도의의가 있는 행위준칙을 말한다. 세무행정처벌은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 처벌법정의 원칙

이는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에 엄격히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행정활동 합법성 요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행정처벌은 행정관리목표를 실현하는 중요수단으로서 사회공공 관리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제재를 진행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행정처벌을 잘못 행사하면 상대방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공민·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실시는 반드시 법률규범의 엄격한 규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① 처벌의 설정은 법이 정해야 한다. 처벌을 실시하는 행위가 합법적이어야 함은 우선 처벌의 설정과 관련된 규범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의 제정권 또는 관련 처벌의 설정권은 행정처벌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법정 권한 내에서 법정 형식에 따라 관련 처벌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을 설정해야 한다. 법정의 설정권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의 규범은 위법이 되고 처벌을 실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행정처벌행위는 필연적으로 위법이 된다.
- ② 처벌을 실시하는 주체는 법이 정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실시는 반드시 법정 처벌권이 있는 행정기관·법률·법규가 위임한 조직 또는 행정기관이 위탁

한 조직이 실시해야 한다. 법률·법규가 어떤 위법행위의 행정처벌권은 어떤 기관 또는 조직이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야만 이러한 기관 또는 조직은 처벌을 실시할 수 있고, 기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은 모두 처벌행위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행위는 무효이다.

- ③ 처벌을 실시하는 근거는 법이 정해야 한다. 법치원칙 중의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에 의하여 법률규범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처벌을 실시하는 주체는 상대방이 행정법률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벌을 내릴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처벌을 내릴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④ 처벌을 실시하는 절차는 법이 정해야 한다. 처벌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주체가 처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실체합법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보장이기도 하다.

#### 나) 행정처벌의 공정과 공개의 원칙

##### ① 처벌공정의 원칙

이는 행정처벌의 설정과 실시는 공평하고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처벌법정 원칙의 연장이자 보충이다. 처벌은 합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적당해야 한다. 처벌공정의 원칙은 행정처벌의 실체공정과 절차공정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실체공정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실시에 있어서 잘못과 처벌이 상응하고, 처벌과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위험 정도와 상응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처벌의 설정에서는 각각의 위법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위법행위와 상응하는 처벌의 종류와 폭을 적당하게 규정해야 한다.

##### ② 처벌공개 원칙

이는 행정처벌의 설정과 실시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직 공개하여 처벌의 전반 활동에 대하여 공중이 감독하게 하여야만 공정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때문에 공개는 공정 원칙의 보장이 되는 것이다. 공개 원칙은 다음

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시절차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주체는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법률 근거 및 당사자가 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해야 하며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罰)의 원칙

일사부재리(一事不再罰)의 원칙이란 행정관리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행정처벌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실시하였다면 이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다시금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중복처벌이 되고 잘못과 처벌이 상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게 되며 공평에 어긋난다.

이 원칙은 두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두 번 또는 두 번 이상의 같은 유형의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둘째,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법원이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판결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행정구류를 실시하였다면 법에 따라 상응한 형기를 감소해야 하며, 법원이 벌금에 처했을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벌금을 부과하였다면 이에 상응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 라) 이익보장의 원칙

이익보장의 원칙이란 행정처벌을 할 때 행정관리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본요구는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공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상대방이 처벌과정에서 진술권(陈述权), 해명권(申辩权), 공청권(厅证权), 재심신청권(申请复议权), 소송제기권(提起诉讼权) 및 배상청구권(赔偿请求权)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

리는 행정주체에 있어서 일종의 의무가 된다.

처벌주체는 처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지 아닐 경우에는 본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 4) 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방식이 작용하는 분야에 따라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훈계벌(申誡罰), 재산벌(財産罰), 행위벌(行為罰)과 인신벌(人身罰)로 나누게 된다. 세무행정처벌은 행정처벌의 일부분으로서 그 법률근거는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이 있고 그 특징은 행정처벌과 마찬가지로 주체는 세무기관이고(반드시 집행주체자격을 가진 각급 세무기관이어야 함) 객체는 법률·법규를 위반한 상대방이다. 구체적으로 세무분야와 관련되는 행정처벌의 종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것

이는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질책과 훈계이다.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주로 경미하거나 또는 실제 손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위법행위에 적용되며 일종의 가벼운 처벌형식이다.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교육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처벌 역할도 있어 조세법률·법규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 나) 벌금

이는 조세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경제상의 처벌이다. 벌금은 피처벌자의 인신자유 및 합법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경계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세무행정처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벌금이 세무행정처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형식은 반드시 법

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법률·법규가 규정한 금액, 폭, 권한, 절차 및 형식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법적 직접책임자와 위법행위자를 지시하거나(指使) 의견을 알려주거나(授意) 또는 중용한(怂恿) 자에 대하여는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다) 몰수

이는 행정관리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권을 대하여 박탈하는 처벌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상대방 당사자의 불법 소득재물에 대한 몰수. 이러한 재물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유가 아니라 그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이지만 불법활동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몰수하는 경우

라) 미사용 영수증의 몰수와 영수증의 잠정 공급 중단

마) 수출세액환급권의 정지

5) 행정처벌의 관할

행정처벌의 관할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느 등급 또는 어떤 행정기관이 처벌을 실시해야 하는가를 확정하는 법률제도이다.

세무행정처벌은 세무위법행위 발생지의 세무기관이 관할한다. 이는 「행정처벌법」이 확정된 세무행정처벌 지역관할의 일반원칙에 의한 것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행정위법을 구성한다면 그 중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객관적으로 행정위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무기관이 처벌에 대한 관할을 구분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급별관할(級別管轄)’인 것이다. 급별관할은 주로 상이한 등급의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위법행위를 관할할 것인지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행정위법행위는 등급이 낮은 행정기관이 처벌할 수 있고 어떠한 행정위법행위는 등급이 높은 행정기관에서만 처벌할 수 있

는 것이다. 「행정처벌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행정처벌은 현금 이상의 세무국(분국)이 결정하고, 벌금액이 2,000元 이하일 경우 세무소가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현금 이상의 세무기관이 2,000元 이하의 벌금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세무소는 2,000元을 초과하는 벌금처벌을 결정할 수 없다.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세무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할 경우 관련 세무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하고 협의결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그들의 공동 상급 세무기관이 지정하여 관할한다.

## 6) 행정처벌의 절차

세무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경미하며 제때에 처벌해야 할 경우인데 이러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정기거래시장(集市贸易市场)에서의 영업허가가 없는 경영(无照经营)에 적용된다. 두 번째 유형은 사건이 비교적 복잡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다. 전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간이절차(简易程序)에 따라 처벌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일반절차(一般程序)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처벌의 일반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가) 접수와 입안

세무기관은 관할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단서 및 자료를 접수하는데, 이는 세무기관의 컴퓨터시스템의 사건선정을 통하여 발견한 것, 관련 부서가 이송한 것, 일반인이 고발한 것, 당사자 스스로 자술하거나 또는 신고한 것 및 국제 정보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 이러한 실마리와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심사하고 반영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초보심사를 통하여 세무위법사실이 있고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해야 한다. 세무위법사실이 없거나 또는 세무위법사실이 확실히 경미하며 행정처벌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입안하지 않는다.

## 나) 조사

입안한 위법사건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증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업무편의 및 부정행위방지를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세무직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담당자는 반드시 신분을 표명하고 검사증거서류(檢査證件)를 제시하며 그 다음 「세수징관법」이 부여한 직권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및 증거수집시 기록, 녹음, 녹화, 사진을 찍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비밀·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경우에는 피조사자를 위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세무위법행위가 있거나 또는 없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고 세무위법행위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는 모두 수집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잘 들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무위법사건의 조사가 마감되면 조사인원은 조사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 다) 심사

심사절차의 설립은 사건조사의 질을 확보하고 징납 양측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심사담당자는 조사담당자의 조사보고를 받은 후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첫째, 처리하는 사건이 관할범위에 속하는지, 둘째, 당사자의 위법사실이 명확한지, 증거는 충분한지 셋째,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은 정확한지, 법률·법규·규장의 적용은 정확한지, 처벌의 정도는 적당인지, 절차는 합법적인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되는 기타의 중요한 문제.

사건심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절차는 공청인데 다음에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사건은 심사를 거친 후 세무행정처벌결정서(稅務行政處罰決定書)를 작성한다.

## 라) 집행

행정기관의 처벌결정은 국가를 대표한 것으로서 국가의지(國家意志)를 가지며 국가의지는 그 어떤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세무기관의 행정처벌결정을 받은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처벌결정을 이행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즉, 당사자는 실제 행동으로 처벌결정이 설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둘째, 제때에 이행해야 한다. 처벌결정은 모두 당사자의 이행의무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후 기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셋째,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처벌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처벌결정이 규정한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그 중의 일부만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 7) 세무공청(稅務公聽)

세무공청은 세무행정처벌절차에서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서 세무기관이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한 가지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참여하고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결정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때 당사자에게 해명하고 대질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공민에 대하여 2,000元 이상의 벌금을 처하거나 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1만元 이상의 벌금을 처하는 행정처벌을 내릴 때 당사자는 공청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공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고지

세무기관은 공민에 대하여 2,000元 이상의 벌금을 처하거나 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1만元 이상의 벌금을 처하는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세무행정처벌사항고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미 조사 확인한 위법사실, 증거, 행정처벌의 법률 근거와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을 고지해야 하고, 공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나) 신청

공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세무행정처벌사항고지서’를 송달한 후 3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공청 신청을 제기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공청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공청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청을 조직해야 한다.

## 다) 공청의 진행

세무기관은 당사자의 공청 요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을 진행하기 7일 전에 ‘세무행정처벌공청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청의 시간, 장소, 공청 사회자의 성명 및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으로 공청을 지체할 경우 장애가 없어진 5일 이내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허락할지 여부는 공청을 조직한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공청을 제기한 후 세무기관이 자신이 내리고자 하는 행정처벌결정이 사실 인정상 착오 또는 편차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하며, 제때에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세무행정처벌의 공청은 세무기관의 책임자가 지정한 당해 사건의 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직원이 주관하고 당사자, 당해 사건의 조사직원, 및 기타 관련 직원이 참가한다. 공청의 사회자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당사자는 직접 공청에 참가할 수도 있고 1명 내지 2명을 위탁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공청에 참가할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리위탁서는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세무기관 또는 공청 사회자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는 공청 사회자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회피신청은 공청을 진행하기 3일 전에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청 사회자의 회피는 공청을 조직한 세무기관 담당자가 결정하고, 회피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 당사자는 한 번의 재조사(复核)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행정처벌 공청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경우 공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개적으로

공청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공청사건 조사담당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과 공청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하고 공청 사회자의 허락을 거쳐 방청객은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청사건은 비공개 이유를 공포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공청에 참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공청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공청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공청사건의 조사담당자가 참가하지 못할 경우 공청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청 과정에서 사건의 조사담당자가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적 및 고발하고 사실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행정처벌건의를 제기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적한 사실 및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과 대질을 진행할 수 있다. 공청사회자는 사건과 관련되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양측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고 의견을 발표하며 각자 제시한 증거의 합법성·진실성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변론은 우선 사건의 조사담당자가 발언하고 다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답변하며 그 다음 양측이 상호 변론을 진행한다. 변론이 끝난 후 공청 사회자는 다시 사건의 사실, 증거 및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사건 조사담당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후진술할 권리가 있다. 공청 사회자는 증거가 의심스럽고 공청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여 세무행정처벌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공청의 증지를 선포하고 사건의 조사담당자가 증거에 대하여 조사 확인을 거친 후 다시 공청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증거에 대한 재확인 또는 공청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허락할지 여부는 공청 사회자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공청의 전반 활동은 기록원이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공청 사회자가 심사 일독하고 공청 사회자와 기록원이 서명한 후 봉인하여 세무기관 책임자가 심사 일독하도록 제출한다. 공청기록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사건의 조사담당자, 증인 및 기타 관련 인원이 일독하게 하거나 또는 대중 앞에서 낭독해야 하며 만약 그들이 누락 또는 착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보충 또는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첨부로 기록해야 한다.

공청을 진행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공청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벌결정은 성립될 수 없으나, 당사자가 공청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공청권리를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청비용은 공청을 조직한 세무기관이 지불하고 공청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변형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8) 세무사건 조사 증거수집과 처벌결정을 분리하는 제도

세무기관의 세무행정처벌행위를 규범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행정처벌법」과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행정처벌법을 관철·실시하는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税务案件调查取证与处罚决定分开制度实施办法(施行); 세무사건조사 및 증거수집과 처벌결정분리제도 실시방법(시행)」을 제정 및 실시하여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세무행정처벌은 법에 의하여 즉석에서 행정처벌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반드시 조사 및 증거수집과 처벌결정을 분리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세무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분담책임을 실시하며 조사 및 증거수집은 세무기관의 관련 조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는 세무기관의 책임자가 지정한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이 책임지는데 이는 심사기관이 책임진다고도 말한다.

조사기관은 세무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증거수집을 진행한 후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처벌건의를 제기하고 세무행정처벌사항고지서(税务行政处罚事项告知书)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처벌건의를 작성한 사실, 이유와 증거 및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가지는 진술·해명 또는 공청청구권을 고지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 의견을 충분히 접수하고 진술·해명 상황에 대하여 기록을 진행하거나 또는 ‘진술해명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기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자료와 함께 심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심사기관은 조사기관이 이송한 사건문서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등기를 진행하고 ‘세무사건심사등기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건문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조사기관에 보충을 통지할 수 있다.

심사기관은 조사기관이 사건문서자료를 이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사건문서자료와 함께 동급 세무기관 책임자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세무기관 책임자는 조사보고 또는 심사보고에 중대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문서자료를 조사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되돌려보내 다시 처벌하게 할 수 있다.

심사기관은 동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심사비준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이한 상황에 따라 다음의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동급 세무기관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서명하고 발급하게 해야 한다.

## 나. 형사처벌

### 1) 형사처벌의 종류

형사처벌의 대상은 범죄이며 범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한다. 첫째, 사회 위험성(社会危害性)이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둘째, 刑事违法性이 있어야 한다. 즉 범죄행위는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다. 셋째, 징벌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범죄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위법행위가 일정한 사회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형법을 위반하면 범죄를 구성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처벌의 종류는 주형과 부가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세금관련범죄와 관련된 형벌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가) 구금(拘役) : 범인의 단기 자유를 박탈하고 가까운 곳에서 개선을 실시하는 형벌로서 범행이 비교적 가볍지만 수감해야 할 범인에 적용된다. 집행

기간중 범인은 매달 1일 내지 2일 귀가할 수 있으며, 노동에 참가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구금의 기한은 1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

- 나) 유기징역(有期徒刑) : 범인에게 일정 기한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동개조를 실시하는 형벌이다. 유기징역의 기한은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형기의 폭이 크기에 비교적 가벼운 범죄뿐만 아니라 무거운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기징역에 처한 범인은 감옥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기타의 노동개조장소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 다) 무기징역(無期徒刑) : 범인의 종신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동개조를 실시하는 형벌이다. 사형을 판결할 필요가 없지만 유기징역으로는 형벌이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집행장소는 주로 감옥이다.
- 라) 사형(死刑) :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범행이 극악한 범인에만 적용한다. 범행이 극악하다 함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대한 위험이 특별히 엄중하고 사건이 특별히 악질인 범죄를 말한다.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에 있어서 반드시 즉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노동개조를 실시하고 관찰할 수 있다.
- 마) 벌금(罰金) : 범인이 국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을 말하는데, 일종의 가벼운 형벌이다. 벌금만 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되고, 주형과 함께 부가로 벌금을 처하는 것은 비교적 중한 범죄에 적용된다. 벌금의 금액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인 본인의 실제 경제 부담능력에 의하여 결정한다. 벌금의 집행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기한을 주어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것, 할부로 납부하는 것,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 납부를 감소 또는 감면하는 것.
- 바) 재산몰수(沒收財産) : 범인의 개인소유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무상으로 국가소유로 돌리는 형벌을 말한다. 이는 벌금보다는 무거운 재산형으로서 주로 엄중한 경제범죄에 적용된다. 일부 재산을 몰수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전부를 몰수할 것인지는 범죄의 성격, 상황과 엄중 정도 및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확정한다.

## 2) 형사처벌의 절차

형사처벌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금관련 형사사건의 처벌은 형사처벌의 한 부분으로서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관련 범죄사건의 조사는 입안, 수사, 체포허가, 기소와 심판을 거쳐야 한다. 현재 중국 사법기관의 분담에 의하여 입안과 수사는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체포허가와 기소는 검찰기관이 책임지며, 심판은 법원이 책임진다.

- 가) 입안(立案) : 세무행정처벌과 같은 것은 공안기관이 세금관련 사건에 대하여 단서와 자료를 접수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 중에는 공안기관이 자체로 조사한 것도 있고, 세무기관이 이송한 것(예를 들면 탈세금액이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고, 탈세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에 의하여 두 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탈세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안기관에 이송하게 된다)도 있다. 공안기관은 이러한 단서와 자료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거친 후 입안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나) 수사(侦查) : 입안한 세금관련 범죄용의자이기만 하면 공안기관은 하나하나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수단과 방법을 충분히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기만 하면 공안기관은 검찰기관에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 다) 체포허가(批捕) : 검찰기관은 공안기관이 수사 및 미리 심사한 사건의 기본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령을 발급하게 되고 공안기관에 넘겨 체포를 집행하게 한다.
- 라) 공소의 제기(提起公诉) : 범죄용의자가 체포된 후 검찰기관은 사건을 한층더 심사하고 사건문서자료를 심사 및 일독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를 결정한 사건이기만 하면 검찰기관은 소장을 준비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 마) 심판(审判) : 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소장에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증거목록과 증인명단 및 주요 증거복사

본 또는 사진을 첨부했을 경우 심판을 결정하게 되며,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검찰기관이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할 수 있고, 법원은 법에 따라 종심판결을 내리게 된다.

바) 집행(執行) : 판결과 재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과 재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항소하지 않은 판결과 재정 둘째, 종심판결과 종심재정 셋째, 최고인민법원이 심사비준한 사형과 최고인민법원이 심사비준한 사형 집행 유예 2년의 판결.

## 2. 세무위법

조세위법행위의 성격, 수단, 방식, 상황에 따라 각종 세무위법행위에 대한 구분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처벌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2001년 5월 1일 중국은 개정 후의 「세수징관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신징관법 및 관련 조세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위법행위의 법적 책임을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세무관리 기본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세수징관법」 제60조에서는 납세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2,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한 경우에는 2,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 ①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등기의 신고처리, 변경 또는 취소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② 규정에 따라 장부 또는 보관 기장증빙과 관련 자료를 보관·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③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과 회계계산 소프트웨어를 세무기관으로 제출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 ④ 규정에 따라 모든 은행계좌번호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⑤ 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다섯 종류의 행위에 대해 「세수징관법」은 응당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무등기를 한 후 등기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변경등기 또는 취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행위는, 납세자가 당연히 장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장부·증빙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보관기한 이전에 장부·증빙과 관련 자료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이다.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기관은 이를 검사하여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세 번째 행위는, 납세자가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과 회계계산 소프트웨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응당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네 번째 행위는,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은행계좌번호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의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발견한 즉시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행위는,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세무기관은 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상술한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이를 발견한 후 개정을 명해야 하고

상황에 근거하여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인이 중대할 경우, 예를 들면, 기한 내에 여전히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등기 증거서류는 납세자의 합법경영의 중요한 근거이고 또한 납세자가 세원관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증빙이다. 세무등기 증거서류는 납세자 1인에게 증거서류 한 부씩을 발급하고 상응한 사용규정을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변경, 전대, 훼손, 매매, 위조하여서는 안 된다. 상술한 행위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2,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중할 경우는 10,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생산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걸어놓아야 하고, 증거서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걸어놓지 않고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장부·증빙관리위반에 대한 처벌

「세수징관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장부 또는 기장 증빙 및 관련 자료를 설치·보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고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할 경우에는 2,000元 이상 5,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리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다. 원천징수의무자란 법률에서 규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단위와 개인이다. 원천징수는 정책성이 강하고 기술성이 비교적 높은 업무로서 원천징수세액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원천징수 및 세무기관의 감독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원천징수장부를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장부와 기장증빙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감독검사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세무검사의 질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상술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 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납세신고는 법에 의한 조세의 중요한 절차로서, 납세신고를 통하여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관련 수입·지출활동을 파악하고 세액의 징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중국은 점차 납세자 자진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고,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목을 스스로 확정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스스로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제의 장점 중 하나는 납세자와 징수기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제는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산물로서 납세자는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조세 관련 사항을 알 수 있고, 세수징관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함으로써 납세의식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기관의 행정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자진납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수징관법」은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과 장소에 따라 신고하고 납세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수징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세액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하고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할 경우에는 2,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 및 납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는 두 단계의 처벌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세수징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세액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상황에 따라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할 경우, 예를 들면 기한 내에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2,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탈세의 인정 및 그 법적 책임

탈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행위주체는 납세자로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단위와 개인이다.
- 2) 행위주체가 탈세행위를 실시하는 것이다. 탈세행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단으로 탈세행위를 한다.

가) 장부·기장증빙을 위조, 변조, 은닉 또는 함부로 없앤다. 그 중 ‘위조’란 행위자가 진정한 장부·증빙에 따라 허위 장부와 기장증빙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가짜로써 진짜를 대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거짓장부’, 또는 ‘두 개 장부’라고 한다. ‘변조’란 행위자가 장부·기장증빙에 대해 보충, 수정, 짜깁기 등 방식으로 거짓 장부, 거짓 증빙을 제작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은닉’이란 행위자가 장부·기장증빙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과세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함부로 없애는 것은 법정 보존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용중이거나 아직 만기하지 않은 장부·기장증빙을 없애버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 장부에 지출을 많이 열거하거나 또는 수입을 열거하지 않거나 적게 열거한다. 지출을 많이 열거한다는 것은 장부에 실제지출보다 많은 액수를 대량 기입함으로써 실제수입의 액수를 상쇄 또는 감소시키고 원가를 불리고 비용을 늘리며 이윤액수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고, 수입을 열거하지 않거나 적게 열거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장부 외 경영을 하여 얻은 수입을 판매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윤 또는 준비금으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거래계좌에 방치시켜두고 결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 다) 세무기관의 신고통지를 받고도 신고거부 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 중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의해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신고거부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허위거짓 납세신고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납세신고 과정에서 허위거짓 상황을 만드는 행위, 예를 들면 납세신고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및 기타의 납세자료 등을 성실하게 입력·제출하지 않거나 과세항목, 판매수입과 경영이윤 등을 적게 신고하거나 또는 숨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 3) 세금을 적게 또는 내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탈세행위의 경중에 근거하여 상응한 행정법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의 탈세를 발견하면 세무기관은 탈세한 세액, 체납금을 추징하고 동시에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형법」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액수가 총납부액의 10% 이상 30% 이하이고 탈세액수가 10,000元 이상이고 100,000元이 안 될 경우 또는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행정처벌을 받고도 또 탈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며 동시에 탈세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탈세액수가 총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실제 탈세액수 두 가지 모두 「형법」에서 규정한 표준을 초과해야만이 탈세죄에 해당된다. 이는 탈세죄 자체의 특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탈세액수가 총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크기는 일정한 정도에서 행위자의 주관·악의 정도의 크기를 반영하고 탈세액수의 다소는 실제상 객관적인 사회위험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탈세액수가 총납부세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동시에 탈세액수가 10만元 이상일 경우 최고로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탈세액수의 다소는 그 사회위험 정도가 다르고 각기 상이한 정도의 처

벌을 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상술한 두 개의 형벌에서 모두 동시에 탈세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범죄자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범죄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러한 범죄의 탐욕적 특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세수가 범죄활동으로 인해 유실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실제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액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이상이고 동시에 10,000元 이상일 경우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형법」은 또한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행정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탈세하는 것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탈세액수가 형법에서 정한 액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탈세하고 특히 세무기관의 두 차례 행정처벌 후에도 뉘우침이 없이 여전히 탈세하는 악질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형법」은 여러 차례 탈세행위를 범하고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누계액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누계액수로 계산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여러 차례 탈세한 액수를 합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차례 탈세행위가 있으면 매회 액수의 다소에 관계 없이 합계 후의 액수가 형법에서 규정한 액수표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마. 허위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한과 내용에 따라 납세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일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허위로 과세근거를 조작하는 행위, 예를 들면 사람의 명단을 조작하거나 또는 원가를 불리고 수입을 줄이는 등의 행위의 목적은 세무기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국가 세액을 자기소유로 하려는 데 있다. 허위 과세근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허위 과세근거를 조작하여 납

부세액을 체납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탈세로 인정하고 「세수징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두 번째는 허위 거짓 과세근거를 조작하였는데 그 결과가 세액을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결과는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신고의 진실성에 영향을 주어 이후 기한에 체납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가능성(예를 들면 허위거짓 과세근거를 조작한 후 결손액이 증가되거나 매입세액이 증가되지만 아직 공제되지 않아 실제로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동시에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또는 세액을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에 세무기관은 그 체납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하고 동시에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바. 체납세액추징 도피에 대한 법적 책임

제때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규칙이다. 체납세액추징을 도피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세무기관에서 확정된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제때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기관에서 세액을 추징하는 기간에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하는 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의 체납세액추징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세법에서의 ‘세액체납’ 개념은 세무기관이 확정된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제때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납세기한은 실체법에서 규정한 납세기한을 말한다. 체납세액은 국가 세액이 제때에 납입되는 것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액을 점용함으로써 세법의 엄숙성을 파괴하므로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체납하는 비용이 법에 의해 납세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해야 한다.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전 또는 은닉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하는데, 체납금은 체납일로부터 계산하고 체납세액추징을 방해하는 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체납한 납세자가 불법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추징할 수 없는 체납세액이 1만원 이상이 되게 할 경우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세무기관이 체납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액수가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체납세액의 5배 이하가 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체납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액수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체납세액추징 도피는 납세자가 응당 납부해야 할 세액을 체납하고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하는 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추징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납세자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하는 수단을 취해 도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세액체납을 전제로 하지만 세액체납과 다른 점은 세액체납은 납부능력이 없는 것이고, 체납세액추징 도피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양자를 구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체납세액추징을 도피하는 행위자는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하는 수단을 취해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추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세액체납 행위자는 상술한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자는 주관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바, 체납세액추징 도피는 납세를 도피함으로써 불법이익 취득의 목적이 있지만, 체납세액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세액체납이고 납세를 도피하려는 고의가 없다. 체납세액추징 도피행위와 탈세 모두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탈세가 감추고 있는 것은 과세근거(즉 조세객체; 税基)이고, 체납세액추징 도피행위가 감추고 있는 것은 납부능력이다.

#### 사. 수출세액환급 편취의 법적 책임

1985년부터 국제관례에 따라 중국은 수출세액환급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기업 제품을 수출한 후 증치세전용영수증, 수출화물세금신고서(出口貨物保管單)와 수출외환수취통지서(出口收匯單證) 등에 의하여 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다시 기업에 환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제품수출과 외화수입을 독려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하고 국제시장을 넓히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과 개인은 이러한 조세우대정책을 이용하여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함으로써 국가세액의 대량유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세수징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거짓 수출보고 또는 기타 기만 수단으로 국가의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그 편취한 환급세액을 추징하고 동시에 편취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의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한 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된 기간 내에 그 기업의 수출세액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수출세액환급의 편취는 고의적인 행위로서 불법으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세관의 ‘검사필장(驗訖章)’이 찍혀 있는 제품수출전송표(出口報送單), 수출판매영수증(出口銷售發票), 수출제품구매영수증(出口產品購進發票)과 은행의 수출외화결제계산서(出口結匯水單)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상술한 관련 증빙, 계산서에 의하여 법에 따라 수출기업에 세액환급을 처리한다. 그러나 거짓수출보고는 행위자가 제품을 전혀 수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하기 위해 상술한 관련 계산서, 증빙 등을 위조하여 거짓으로 수출을 보고하는 행위이다. 기타의 편취수단은 ‘거짓수출보고’ 이외의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하기 위한 모든 편취수단을 가리킨다. 수출세액환급의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 「형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세액환급편취죄에 해당할 때의 처벌은 3개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의 처벌은 액수

가 비교적 큰 경우로서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며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 단계의 처벌은 액수가 크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 번째 단계의 처벌은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별히 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형법」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후, 거짓수출보고 또는 기타 편취수단을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탈세죄로 인정하고 이를 처벌하며 편취세액이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출세액환급편취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주체는 납세자에 한정된다.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후, …… 납부한 세액을 편취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세액을 편취하는 행위가 세액을 납부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거짓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실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거짓으로 돌려받는 편취행위자는 늘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세액환급을 편취한다. 상황을 구별하고 적절한 죄형을 정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편취하는 행위는 탈세죄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편취한 부분은 수출세액환급편취죄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자신이 납부한 세액을 편취하는 것은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고 성격이 탈세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세액은 실제로 국고의 재산이므로 이 재산을 자기소유로 하는 것은 수출세액환급취편죄의 성질과 같은 것이다.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세액환급편취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 납세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납세거부는 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모든 행위 중에서 수단이 가장 악질이고, 상황이 가장 엄중하며 영향이 가장 나쁜 행위이다. 또한 공공연히 국가

법률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국가세무직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엄중히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조세질서와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세수의 실현에 영향을 주며 세무직원의 인신 안전에 위협을 준다. 특히 폭력수단으로 세무직원에 상해를 가하는 납세거부행위는 침해객체가 국가세수일 뿐만 아니라 세무직원의 인신건강과 생명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세수징관법」 제67조는 납세거부의 개념에 대해 범주를 확정하고 그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세액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거부로서 세무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경미하고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하고 거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거부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고의로 조세법규를 위반하고 폭력·위협을 통하여 세액납부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① 당사자는 침해대상이 법에 따라 세금징수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세무직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② 방식은 일반적으로 폭력·위협을 사용함으로써 세무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③ 이러한 행위를 실시하는 주체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일 수도 있고 기타 사람일 수도 있다. 때문에 납세거부행위의 특징은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에게 대해 폭력과 위협을 실시하였는가 하는 것이고 납세거부행위의 성립 여부는 납세거부세액의 액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폭력·위협을 방법으로 세액납부를 거부했을 경우 세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거부에 해당된다.

소위 “세액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응당 납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납세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폭력방법으로 세액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세무직원에게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구타, 밀기, 상해, 강제 감금 및 징세를 방해하기 위해 세무직원이 사용하는 공구를 파괴하는 것, 사람을 집합시켜 세무기관을 공격하는 등의 세액납부거부행위를 포함한다. 위협방법으로 세액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가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액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예를 들면, 끝장을 보겠다며 위협해

서 납세를 거부하거나 또는 세무인원 및 그 친인척의 인신·재산안전에 대해 상해·손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세무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징수직무집행을 포기하도록 하여 납세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납세거부에 사용되는 폭력과 위협방법의 정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일부 현저하게 경미한 폭력과 위협방법은 범죄라고 볼 수 없고, 세무기관이 납부거부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납세거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납부거부세액과 체납금을 추징하는 외에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여기에서 상황이 중하다는 것은 폭력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방법이 특별히 악랄하고 중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또는 납부거부한 세액의 액수가 거대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징수관리법」 및 「형법」에서 모두 탈세와 납세거부에 대해 각기 규정한 것은 납세거부의 위해가 세수징관체계 중에서의 독립지위를 특별히 하고 납세거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형법」에서 납세거부죄의 수단을 ‘폭력·위협방법’의 범주 내에서 정의하고 납세거부죄의 최고형기를 제고하였는데, 즉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각 단계의 형벌에서 벌금형을 증설하였으며, 상황의 중함을 가중처리의 조건으로 하고 중대한 납세거부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세액납부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동시에 납세거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납세거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 납세거부행위와 납세거부죄의 차이점은 상황의 경미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개 방면이 있다. ① 폭력 정도, 결과 및 위협내용. ② 납세거부 세액의 액수와 납세거부 횟수이다. 전자는 중요한 것으로서 만약 납세액수가 비교적 적고 현저한 폭력·위협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일반적인 위협단어를 사용했다면 ‘정상이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납세거부세액의 액수가 적지만 분명히 폭력을 사용했을 경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저항을 넘어서 법집행중인 세무직원을 구타했을 경우

에는 납세거부죄로 처벌한다. 때문에 납세거부죄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은 폭력사용 여부이지 결코 납세거부세액의 액수가 아니다.

#### 자. 세액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

「세수징관법」 및 실체법에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충분한 금액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원천징수할 것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의 없이 납세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제때에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둘째는, 고의적인 것으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세액을 점용하고 제때에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고의 여부를 떠나 세무기관은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청을 제기했는데 세무기관이 비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술한 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세수징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체납 또는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게 해야 하고 체납 또는 체납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차.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원천징수제도는 세수징관 중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납세자 자신의 납세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을 지불하거나 또는 대금을 수취할 때 세무기관을 대신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법률이 부여한 것으로서 실체법에서 어떤 금액을 지불 또는 수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을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법정의무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두 법에 따라 원천징수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일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심지어는 납세자와 결탁하여 공동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세수징관법」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거나 또는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액을 추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하지 않거나 또는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본조는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 또는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액을 추징해야 하며 납세자는 발견한 후 적극적으로 세액을 보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카. 세무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세무조사는 조세징수관리의 사후감독으로서 납세신고 및 세액이 제때에 충분한 금액대로 국고에 납입되기 위한 보장이다. 중국의 경제분야는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소유제구조, 경제구조,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모두 예전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방식과 경영방식의 경제실체는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획적인 경제합작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발맞추어 건립되고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는 복세제체계(复税制体系)는 십여 가지 세목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 징수대상·징수범위 등도 각자 다르다. 징납 양측을 놓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문외한은 알기 어렵고 전문가는 기억하지 못하는” 각종 착오와 누락은 피할 수 없으며, 게다가 현행 체제의 영향과 기업경영시스템의 변환 영향을 받아 자기 본위 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납세자와 국가간의 국부 이익과 전반 이익, 당면의 이익과 장기이익상의 모순도 더욱 첨예해질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의 세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탈세 또는 조세를 회피하게 된다.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세, 납세거부 및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법에 의한 조세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경제범죄에 대한 타격과

부패방지 및 세무기관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예전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필요하고 더욱 의미가 있게 된다.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이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 「세수징관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거부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이 시정을 명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중할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관련 부문과 단위는 세무기관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여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해야 하며, 세무기관에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당사자가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된 상황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관련 자료와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거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위가 있다. ①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것 ②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 ③ 기타의 방식. 예를 들면 장부를 거두지나 비생산경영지에 두었다는 핑계로 세무직원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장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무직원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며 동시에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엄중할 경우, 예를 들면 수단이 악랄하고 태도가 야만적이며 기한 내에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는 세무조사에서 징납 각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 ① 세무기관은 세무조사를 할 때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해야 한다. 세무기관의 파견인원이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세무조사증명을 제시하고 신분을 표해야 하며 법정 조사직권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고 피조사자를 위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결론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장부, 기장증빙, 제표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장부, 기장증빙과 관련 자료를 조사할 때 일

반적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업무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받아 장부, 기장증빙, 제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에 가져와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져온 자료에 대하여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세서를 발급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한다.

- ③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 파. 영수증 관련 법적 책임

##### 1) 영수증을 불법인쇄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영수증은 모든 생산·경영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입을 취득할 때 대금지급자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상거래 증빙이다. 이는 회계계산의 원시증빙이며, 재무수입과 지출의 법정증빙이고 세무조사의 중요한 근거이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판매수입을 실현하고 업무수입을 취득하며 손익과 납세를 계산하는 원시자료이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노무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권리점유를 실현하고 이를 근거로 원가를 계산하는 원시자료이다.

영수증 관리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영수증의 인쇄, 사용, 보관의 전반 과정에 대하여 조직, 협조, 감독 등 활동을 진행하는 총칭이며, 조세징수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세무기관은 영수증 관리 강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경영행위와 상품유통 및 재무수입과 지출의 상황을 장악하고 세원을 통제하며, 재무감독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경영을 보호하고 불법경영을 억제하며 탈세와 세액 누락을 방지하고 재정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업의 경제계산에 대한 강화를 촉진하고 재무감독을 강화한다. 기업은 경

제와 재무수입 및 지출 업무활동을 진행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취득하여 회계계산의 원시증빙으로 해야 한다. 영수증의 발급 또는 취득의 합법성 및 정확성은 기업, 사업단위가 효과적으로 회계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결정하며 경영성과를 진실하게 반영한다. 영수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업의 회계계산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수증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하여 각종 재무수입과 지출이 국가의 정책과 법률에 부합되는지를 심사 확인하고, 기업이 원가를 함부로 분담하고 수입을 숨기는 것을 제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재무감독을 강화하도록 촉진하고 재경규율(财经规律)을 엄격히 하도록 하며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하게 한다.

- 나) 합법경영을 보장하고 불법활동을 타파한다. 영수증은 경제활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보편적인 상거래 증빙으로서 경제생활의 곳곳에 관련된다. 때문에 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꾀하는 위법행위가 매우 많아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영수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위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여야만 기업과 개인의 경제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위법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타파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 다)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임무의 완성을 확보한다. 영수증은 경제활동을 기재하는 증빙으로서 납세자가 회계계산을 정확히 진행하고 과세액을 계산하는 근거이며 세무기관이 징수업무를 처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액체납행위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외에 납세단위와 개인의 영수증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금액을 제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영수증을 반납하게 하고 체납세액을 완납한 후 다시 발급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영수증 관리로 세금관리를 촉진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영수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관철과 집행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탈세 및 누락세액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양식을 설계하고 인쇄공장을 지정하여 인쇄하며 전문인원을 설치하여 인쇄·제작 및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전국통일영수증감시제작장(全国统一发票监制章)을 만든다. 그 외에 어떤 특수한 경영업종은 각 주관 부문이 통일로 영수증의 양식·내용을 설계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심사 및 동의를 거친 후 ‘영수증인쇄통지서’를 발급한다. 영수증을 인쇄하는 인쇄공장은 세무기관의 ‘영수증인쇄통지서’를 받은 후 설명사항과 첨부된 영수증 양식에 따라 조판 및 인쇄하며 영수증감시제작장을 만든다. 인쇄가 끝난 후에는 제때에 조판을 없애고 폐기영수증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인쇄한 란수(联数), 책수(册数), 시작번호와 마감번호를 ‘영수증인쇄통지서’에 복사한 후 공장을 찍음으로써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많이 인쇄하거나 또는 적게 인쇄해야 할 경우에는 제때에 영수증의 인쇄를 비준한 세무기관에 통지하여 적당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모두 함부로 영수증을 인쇄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수증을 인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으로 인쇄한 영수증을 없애고 위법소득과 이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며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2) 영수증의 몰수 및 판매정지에 관한 규정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납세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세무기관의 처리와 시정 및 벌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영수증을 몰수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영수증의 판매를 정지할 수 있다. 영수증은 모든 생산·경영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의 업무활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취득할 때 대금지급자에게 발급하는 상품판매영수증 또는 영업대금지급증빙으로서 경제업무를 기록하고 재무수입과 지출을 반영하며 회계계산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이를 법정증빙으로 사용한다. 특히 증치세전용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의 법률효력을 가지는 외에, 구매자가 매입세액으로 기장하고 증치세의 매출세액을 공제

하는 증빙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판매정지 또는 몰수는 필연적으로 기업 또는 개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심지어 생산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초래할 수 있어 그 경계력과 위협은 매우 현저한 것이다. 일부 지방의 세무기관은 줄곧 세액을 체납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강제가 약할 경우에 이를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았다.

#### 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조세징수관리 업무협조에 대한 법적 책임

「세수징관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관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고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인정할 경우, 규정된 기한 전에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세자가 과세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수입의 흔적을 분명히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기준을 거치고, 비생산경영납세자가 납세의무 회피행위가 있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국 국장의 기준을 거쳐 세무기관은 서면으로 납세자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담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담보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기준을 거치며, 비생산·경영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했음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국 국장의 기준을 거쳐 세무기관은 서면으로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예금에서 세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기준을 거쳐 전국통일양식의 조사저금계좌허가증명으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내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계좌조사·동결과 세액징수행위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을 위반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이 내린 예금동결 또는 세액징수의 결정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도와서 예금을 이전하고 세액 유실을 초래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직접책임자를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세무기관의 예금계좌조사를 거부하여 세액 유실을 초래한 행위. 이러한 거부행위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계좌 또는 수입원인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은닉하거나 감추며 세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또는 고의적으로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하거나 세무기관이 법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를 비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②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세무기관이 내린 예금동결 또는 세액징수결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세액의 유실을 초래한다. ③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도와 예금을 이전하고 세액유실을 초래한 행위.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계좌이체·인수 등 결산방식을 통하여 자금의 이전을 돕는 것으로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도와 자금내역을 은폐하고 과세수입과 과세능력을 감추어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하. 행정처벌의 권한

「세수징관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법이 규정한 행정처벌 중 벌금액이 2,000원 이하일 경우 세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세무기

관의 행정처벌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본 조항에서의 행정처벌은 벌금을 말한다. 처벌금액의 다소에 따라 본조가 규정한 벌금권은 현금 이상의 세무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벌금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피처벌 상대방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 집행직원의 자질 및 위법행위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피처벌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액이 2,000元 이하일 경우 세무서가 결정할 수 있다. 세무서는 벌금액이 2,000元을 초과하는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기타 세무기관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벌금액이 2,000元 이하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본법이 부여한 모든 벌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거.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에 대한 처벌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 1) 세무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조세징수관리 범위와 세액국고납부예산 등급을 함부로 변경할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 2) 세무직원이 사리를 도모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송해야 할 사건을 이송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중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3) 세무인원과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상호 결탁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탈세, 체납세액추징 도피, 국가의 수출환급세액편취를 지시하거나 협조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공동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 4) 세무인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물을 수령 또는 요구하거나 기타 부당이익을 피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뇌물수수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 5) 세무직원이 사리를 도모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직무를 제대로 수

행하지 않아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징수함으로써 국가세수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 6)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괴롭힐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납세자가 조세위법행위를 고소·고발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고발자에 대하여 보복을 가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 7)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주로 위법으로 사전에 징수하고, 연기하여 징수하고 세액을 분담하는 것,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세액의 징수, 징수정지, 감면세, 세액환급, 보충 및 기타 조세법률법규와 저촉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을 개정하고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며 직접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너. 세무행정처벌의 소급시효(追溯时效)

세무행정처벌의 소급시효란 조세위법행위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시간 내에 처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년 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수징관법」 제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위법행위의 소급기간은 5년이다.

다. 「세수징관법실시세칙」상의 조세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

- (1)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의 검증 또는 환증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할 경우에는 2,000元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2) 세액완납증빙을 불법인쇄,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할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00元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할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3)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번호에 세무등기증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며 2,000元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중할 경우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 (4) 타인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세수손실을 초래할 경우의 법적 책임.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은행계좌번호, 영수증, 증명 또는 기타 편의를 불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세액을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국가의 수출세액환급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편취세액의 1배 이상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 (5) 관련 단위가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세무기관이 「세수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역, 부두, 공항, 우편기업 및 그 지점에 가서 납세자의 관련 상황을 조사할 때 관련 단위가 거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중할 경우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6) 세무직원이 차압, 압수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사적으로 분할하

고, 그것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 (7) 세무대리인이 조세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가 세액을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하게 할 경우, 납세자가 납부세액 및 체납금을 납부 또는 보충 납부하는 외에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납세자의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 (8)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수징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① 허위 거짓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② 세무기관이 기록, 녹음, 녹화 또는 사진을 찍거나 사건관련 상황과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저지할 경우 ③ 조사기간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하거나 은닉 또는 폐기할 경우 ④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타의 경우.

러. 증치세전용영수증 관련 법적 책임

1) 증치세전용영수증 허위작성 또는 수출세액환급편취, 세액공제에 사용할 기타 영수증을 허위발행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허위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세액환급편취, 세액공제에 사용할 기타 영수증을 허위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며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액이 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상술한 행위가 있고 국가 세액을 편취하며 그 금액이 특히 크고 상황도 특히

중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단위가 이상의 영수증을 허위발행할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고 직접책임자나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액이 크거나 또는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재 중국의 조세징수관리제도에는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제외한 기타 영수증도 세액공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주로 농림목수산품의 구입영수증, 폐기물품의 구입영수증, 운송영수증 등이 있고,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수출할 때 발행하는 영수증도 수출세액환급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세징수관리업무의 강화와 함께 향후 세액공제기능이 있거나 또는 환급세액기능을 가진 일부 전용영수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허위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세액환급편취와 세액공제에 사용하기 위한 기타 영수증을 허위발행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허위발행하는 것, 자신을 위하여 허위발행하는 것, 타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허위발행하게 하는 것,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발행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상품거래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하여 상품거래 내용과 세액을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런 허위발행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둘째, 진실한 상품거래가 존재하지만 적은 것을 많이 발행함으로써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있다.

타인을 위하여 영수증을 허위발행한다는 것은 행위자 본인이 상품거래활동이 없지만 소지하고 있는 상술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또는 적은 것을 많이 발행하는 수단을 통하여 타인을 위하여 영수증을 허위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중에는 종전에 말하던 영수증을 대리발행하는 행위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규정한 타인은 기업·사업단위·기관단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한다. 자신을 위하여 영수증을 허위발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상술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허위발행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진행한다는가 또는 수출세액을 편취한다는가 하는 것 등이 있다. 타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영수증을 허위발행하게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만·매수하여 자신을 위하여 상술한 영수증을 허위발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발행하게 하는 것은 상술한 영수증을 허위발행하는 범죄과정에서 서로 연계하고, 조직 및 계획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 2)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위조한다는 것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의 형태, 양식, 색상, 도안 등을 모방하여 여러 가지 모조방법을 사용하여 가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제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한다는 것은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법원은 형법의 규정과 사건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형벌규정을 적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위조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는 위조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한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판매한 수량이 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한 영수증을 판매한 수량이 특히 과다하고 상황이 특히 중하며 경제질서를 중하게 파괴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단위가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며 직접책임 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 에 처할 수 있으며,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수량이 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 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3)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판매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판매한다는 것은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증치세전용 영수증을 판매하는 외에 증치세전용영수증의 소지자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영 수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은 국가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 라 판매하는 것으로서 증치세의 일반납세자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판매할 수 없으며 증치세전용영수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불법판매는 세무기관 및 그 업무자가 고의 적으로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할 뿐 아니라 기타 사람이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외에 증치세전용영수 증은 우선 이러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그들이 이러한 영수 증을 취득한 것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것, 즉 일반납세자의 조건에 부합되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세무부문에서 구입 수령한 증치세전용영수증 이 있고 또는 절도·편취나 기타 범죄수단으로 증치세전용영수증의 소지자에게 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있다. 그러나 불법판매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의 원천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불법판매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은 반드시 국가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이어야 하며 위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량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으며, 수량이 과다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 4) 증치세전용영수증의 불법구매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의 구매 및 불법 구매한 것을 다시 허위작성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구매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구매하는 것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증치세전용영수증의 구입은 반드시 일반납세자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세무기관의 인정을 거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세무기관에 가서 구입 수령해야 한다. 그 밖에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 사사로이 증치세전용영수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사적으로 구입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불법구매에 속한다.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것은 구매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이 국가 세무기관이 판매한 진짜 증치세전용영수증이 아니라 위조한 것임을 말한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구매하거나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구입한 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불법구매한 것을 허위발행하거나 판매한다는 것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구매하거나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구매한 후 허위발행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불법구매하거나 또는 위조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을 구입한 후 허위발행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법의 상응한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체납할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추징할 수 있다. ①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예금에서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 ② 납부세액과 상응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차압, 압부, 경매하고 그 경매소득으로 징수하는 것. 이와 동시에 세무기관은 체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가 세무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함에 있어서 폭력·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지

는 않았지만, 납부를 계속 미룬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며. 영수증 관련 법적 책임

##### 1)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가 영수증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

- 가)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하지 않거나 또는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구입, 수령, 발행, 취득 및 보관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상술한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 나) 공백영수증(空白發票)을 불법으로 휴대, 우송, 운송 또는 보관할 경우 영수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동시에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 다) 영수증을 인쇄하거나 위조 또는 전매, 영수증 감시제작장과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사적으로 제작할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차압, 압수 또는 폐기하며, 불법소득과 이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고 동시에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라) 영수증 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세액을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하게 하고 또는 세액을 편취하게 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또는 편취한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 마) 기타 영수증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죄. 기타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함부로 제조하고 또는 위조하거나 함부로 제조한, 수출세액환급의 편취와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며,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량이 클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금액이 특히 과다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 2) 영수증 절도죄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절도하거나 또는 수출세액환급의 편취, 세액공제에 사용할 기타 영수증을 절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크거나 또는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 3) 영수증 관리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다음의 행위에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가)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하지 않거나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 ① 성급 세무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기업이 함부로 영수증을 인쇄할 경우
- ② 국가세무총국의 지정을 받지 않은 기업이 함부로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고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사적으로 인쇄할 경우
- ③ 영수증감시제작장을 위조하거나 사적으로 새기거나 또는 영수증위조방지전

용품을 위조하거나 사적으로 제작할 경우

- ④ 영수증을 인쇄하는 기업이 ‘영수증인쇄통지서’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하지 않고,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생산통지서’에 따라 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 ⑤ 영수증감시제작장과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전대·양도할 경우
- ⑥ 영수증을 인쇄하는 기업과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폐품(조약품)을 훼손하지 않아 유실을 초래할 경우
- ⑦ 영수증사용단위가 사적으로 영수증을 인쇄할 경우
- ⑧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제작하지 않고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의 생산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 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하지 않고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타 행위

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 ① 세무기관 이외의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구입하는 것
- ② 영수증을 사적으로 판매하거나 전매하는 것
- ③ 가짜영수증을 구입·운반하거나 은닉하는 것
- ④ 타인에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의 영수증을 차용하는 것
- ⑤ 영수증을 도용하는 것
- ⑥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구입하지 않는 기타의 행위

다)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 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발행하지 않는 것
- ② 한개 난으로 작성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상하란의 금액, 증치세 매출세액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③ 기입항목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 ④ 영수증을 고쳐쓰는 것
- ⑤ 영수증을 전대·양도·대리발행할 경우

- ⑥ 비준을 거치지 않고 탁본(拆本)하여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 ⑦ 경영업무활동을 허위로 하고, 영수증을 허위발행하는 것
- ⑧ 발행한 영수증의 객체(票物)가 영수증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 ⑨ 폐기처리된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 ⑩ 비준을 거치지 않고 규정된 사용구역을 넘어서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 ⑪ 기타의 계산서 또는 증서로 영수증의 발행을 대신하는 것
- ⑫ 전용영수증 또는 증치세전용영수증의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
- ⑬ 규정에 따라 영수증등기부를 설치하지 않은 것
- ⑭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사용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것
- ⑮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기타의 행위

라)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 ① 영수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취득하지 못한 것
- ②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영수증을 취득한 것
- ③ 영수증을 취득할 때 품명, 금액 또는 증치세세액을 자체로 변경하거나 또는 이를 발행측에 요구할 경우
- ④ 자체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장부에 올리는 것
- ⑤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는 기타의 행위

마)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 ① 영수증을 분실하는 것
- ② 영수증을 훼손하는 것
- ③ 영수증부분란 및 영수증등기부를 분실하거나 함부로 없애는 것
- ④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반납 폐기하지 않는 것
- ⑤ 영수증을 인쇄하는 기업과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영수증 또는 영수증감시제작장이나 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 등을 분실하는 것
- ⑥ 규정에 따라 영수증보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
- ⑦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기타의 행위

### Ⅲ. 조세구제제도 및 행정배상(行政賠償)

#### 1. 세무행정재심(稅務行政復議)

세무행정재심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행정행위를 방지 및 교정하고,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담당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 및 감독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행정사법활동이다. 이는 신청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담당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에 제소(申訴)하고 상급 세무기관이 교정을 진행할 것을 청구하며, 상급 세무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을 일으킨 하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하고 법에 따라 본래의 행정행위(行政行為)를 유지(維持), 변경(變更), 취소(撤銷)하거나 또는 하급 세무기관이 보충 개정하고(補正), 기한 내에 이행하며(限期履行), 행정행위를 다시금 할 것을 명하는 등의 재결(裁決)을 내리는 행정사법활동이다.

납세자와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稅務行政復議機關)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재심이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벌(行政處罰) 또는 기타 처리결정(處理決定)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본래의 처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제소하여 본래의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처리결정의 합법성 여부(合法)와 적당성 여부(適當)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 재결을 내리는 행정절차제도(行政程序制度)이다. 구체적으로 세무행정재심이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세무부서의 과세결정(徵稅決定) 및 처벌결정(處罰決定)에 대하여 불복할 때 세무부서에 재재결(重新裁決)을 청구하는 절차제도이다.

세무행정재심은 주로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

법」(이하 ‘행정재심법’이라 약칭함), 「세수징관법」 제88조 등 관련 조항의 규정, 및 국가세무총국이 「행정재심법」, 「세수징관법」,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税务行政复议规程(暂行); 세무행정재심규정(잠정)」 등을 그 법률근거로 하고 있다.

#### 가. 세무행정재심의 전제조건(前置条件)

행정재심은 일종의 절차제도로써 중국에서는 자유선택과 재심전치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세무행정재심도 자유선택과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 등 두 가지가 있다.

「税务行政复议规则(暂行); 세무행정재심규칙(잠정)」 제2조는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具体行政行为)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면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 등 당사자는 주관적으로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면 세무행정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행정재심을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자유선택재심(自由选择复议)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말한 것이고, 일부 경우에 세무행정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치조건이 있는데 납세자는 이러한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에 주의해야 한다.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은 행정객체가 세무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할 때 직접 세무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세무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기관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선 세액 및 체납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한 후에야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기관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심을 전치해야 하는 데에 관한 규정이다.

재심전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데서 출발한다. 첫째,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행정기관이 행정전문지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당사자에게 편리하다. 상급행정기관은 재심을 통하여 본래의 결정을 직접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행정기관의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하도록 판정하고, 변경권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결정을 취소한 후 또다시 본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넷째, 절대다수의 행정분쟁을 재심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압력을 경감하게 한다.

자유선택재심의 경우와 전치조건이 있는 재심의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세수징관법 실시세칙」은 납세분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분쟁이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세무기관이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세 및 세액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과세절차,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액징수방식의 확정 등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으로 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 나. 세무행정재심의 사건접수범위

「행정재심법」은 행정재심사건의 접수범위를 규정하고 재심기관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접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납세자 등 행정 상대방이 세무기관의 어떠한 세무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2004년 2월에 공포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税务行政复议规则(暂行); 세무행정재심규칙(잠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행정재심기관이 접수하는 것은 공민, 법인과 기타 외국조직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기타 조직이 다음의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재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세무기관의 과세행위 : 이는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세 및 세액

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절차,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액징수방식 등 구체행정행위와 세액징수, 체납금의 추징 및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고 세금을 징수하는 단위의 원천징수행위를 포함한다.

나)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을 동결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 ②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차압하는 것

다) 세무기관이 제때에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받게 한 행위

라) 세무기관의 강제집행조치

-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 ② 차압, 압수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환급 또는 경매하는 것

마)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 ① 벌금
- ② 재산 및 위법소득의 몰수
- ③ 수출세액환급권의 정지

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회신(答复)하지 않는 행위

- ① 감면세 또는 수출세액환급을 심사 비준하지 않는 것
- ②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 ③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
- ④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판매하지 않는 것
- ⑤ 세액완납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수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
- ⑥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⑦ 연기신고를 심사비준하지 않고, 세액연기납부를 비준하지 않는 것

사) 세무기관의 증치세 일반납세자자격을 취소한 행위

아) 영수증의 몰수, 영수증판매정지

자)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납세담보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차)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보고에 대한 장려를 하지 않는 행위

카) 세무기관이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금지를 취한 행위

타) 세무기관의 기타 구체행정행위

납세자와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로 되는 다음의 규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재심기관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① 국가세무총국과 국무원 기타 부문의 규정
- ② 기타 각급 세무기관의 규정
- ③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규정
- ④ 지방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문의 규정

이러한 규정은 국무원 각 부, 위원회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 및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규장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성 문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 세무행정재심의 관할

1) **각급 세무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국무원의 재결은 최종재결이다.

2) **기타 세무기관, 조직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가) 계획단렬시 세무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성 세무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나) 세무소, 각급 세무국 검사국(稽查局)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그 주관 세무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주관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은 단위의 세액대리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위탁세무기관의 상급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라) 국세국(검사국, 세무소)과 지방세무국(검사국, 세무소), 세무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이 연합조사한 세금 관련사건에 있어서 각자의 법정 직권에 따라 협상을 거쳐 별도로 구체행정행위를 해야 하고 공동으로 구체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세국(검사국, 세무소)과 지방세무국(검사국, 세무소)이 공동으로 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세무기

관과 기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한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그 공동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마) 취소된 세무기관이 취소 전에 한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전 항 나), 다), 라), 마)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발생지의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재심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을 받은 현급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이송하게 할 수도 있다.

## 라. 세무행정재심 참가자 및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세무행정재심의 참가자란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에 참가하는 재심신청자, 피신청자, 제3자 및 재심대리인을 말한다. 그 중에서 재심신청자, 피신청자를 통틀어 ‘당사자’라 한다. 세무행정재심의 당사자의 기본 특징은 반드시 법률이 부여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세무행정재심 활동의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 1) 세무행정재심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가) 신청자의 세무행정재심에서의 권리

①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또는 기타의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법정기한 내에 재심기관에 재심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세무행정재심 신청자의 세무행정재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재심신청을 취하(撤回)할 권리가 있다.

세무행정재심의 신청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심기관이 재정(裁定) 또는 재심결정(复议决定)을 내리기 전에 재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

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신청자가 주동적으로 재심신청을 취하할 것을 제기하는 것, 둘째, 피신청자가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하고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며 재심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신청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할 때 반드시 재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건기록을 작성해야만 취하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재심신청을 취하할 경우,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세무행정재심기관의 접수거부재정(不予受理裁定)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접수거부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 ④ 재심기관이 피신청자에게 이미 발효한 재심결정을 이행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구체행정행위를 취소, 교정할 것을 명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⑤ 행정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나) 신청자의 세무행정재심에서의 의무

- ①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세무행정재심 신청자가 신청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② 재심기간에는 구체행정행위를 계속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다. 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자의 구체행정행위를 집행정지해서는 안 된다.
- ③ 재심기관에 재심과 관련된 사실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세무행정재심 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상황과 문제를 조사 및 확정하게 해야 한다.
- ④ 정상적인 재심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⑤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세무행정재심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 2) 세무행정재심 피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 가) 세무행정재심 피신청자의 권리

- ① 신청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변호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신청자는 재심 신청서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에 구체행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를 제출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 ② 재심기간에는 신청자가 구체행정행위를 계속하여 집행할 것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 ③ 법원에 이미 발효한 재심결정의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세무행정재심 규칙(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행정재심신청자가 재심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신청자가 기한 내에 기소하지도 결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할 경우 피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④ 세무행정재심기간에 세무행정 분쟁을 일으킨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나) 세무행정재심 피신청자의 의무

- ① 피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기관의 심사를 전면적으로 받을 의무가 있다.
- ② 재심기관에 구체행정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③ 법률효력을 발생한 재심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 행정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신청자는 세무행정재심을 청구할 때 대리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무행정재심 가운데서 신청자의 위탁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주로 변호사,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내부에서 추천한 자, 국민의 근친 등이 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대리인은 피대리인(즉 신청자)의 명의로 세무행정재심활동에 참가하며, 자신의 명의로 참가할 수는 없다. ②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권한 내에서 세무행정재심활동에 참가해야 하고, 대리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는 피대리인에 대하여 법률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한 내에서 재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한 법률 결과는 피대리인이 부담한다. ④ 대리인의 대리활동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마. 세무행정재심의 절차

세무행정재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재심의 신청, 접수, 심사와 결정 등 4개 단계로 나눈다.

##### 1) 세무행정재심의 신청

세무행정재심의 신청이란 신청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구체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에 당해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 및 재결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이다.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과세행위에 불복할 경우 우선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심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기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할 경우 재심기관은 신청자의 기본상황, 행정재심청구,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주요 사실, 이유와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함으로써 재심신청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을 보장해야 한다.

세무행정재심의 신청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가) 신청자는 구체행정행위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조직이다.
- 나) 명확한 신청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

인과 기타 세무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다) 구체적인 재심청구와 사실근거가 있어야 한다.
- 라) 재심신청의 범위에 속한다.
- 마) 접수한 재심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해야 한다.
- 바) 재심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확정  
한 세액을 세액 및 체납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 사) 재심신청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세무기관이 구체행정  
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가항력 또는 피신청자가 장애를 설치하는 등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법정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  
속하여 계산한다.
- 아)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신청자가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  
고 재심기관이 이미 접수한 경우, 법정행정재심기한 내에 신청자는 인민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을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 2) 세무행정재심의 접수

세무관리 상대방이 재심신청을 제기한 후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신청에 대  
한 심사를 통하여 당해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할 때 신청을 접수하  
고 입안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만 당해 기관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행  
정재심기관에 신청을 제기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우선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기관이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재심기한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와 기타 세무당사자는  
접수거부결정서를 받은 날 또는 행정재심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당사자가 법에 따라 제기한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 재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거부하고 또한 신청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그 재심기관에 접수를 명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세무행정재심기간에 구체행정행위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가) 피신청자가 집행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나) 재심기관이 집행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다) 신청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심기관이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 라) 법률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 3) 세무행정재심의 결정

세무기관의 법제업무기관이 피신청자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 심사 및 적당성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재심기관 담당자의 동의를 거쳐 유지, 취소 또는 변경 등 행정재심결정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 가) 구체행정행위 유지의 결정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행정행위의 사실 인정이 정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률근거의 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지 결정을 내리며,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1차집행의 법률효력을 부여한다.

#### 나) 구체행정행위 보충개정(補正)의 결정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당하지만 일부 법정절차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충개정 결정을 내린다.

다)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하는 재심결정

재심기관은 세무행정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본래의 세무기관과 담당자가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한 내 이행을 결정한다.

라) 구체행정행위 취소, 변경의 재심결정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래의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것을 결정한다.

마) 배상결정

배상결정이란 세무행정재심기관이 심사를 거쳐 피신청자로서의 본래의 세무기관이 내린 구체행정행위가 신청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자의 배상청구에 의하여 재심기관이 본래의 세무기관에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재심결정을 말한다.

신청자는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관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할 경우 구체행정행위의 취소,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구체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때 동시에 피신청자가 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가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기관은 법에 따라 구체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때 동시에 피신청자에게 세액, 체납금과 벌금을 반환하고 재산에 대한 압수·차압 등 강제조치를 해제하거나 또는 상응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해야 한다.

#### 4) 재심서류의 송달

재심서류의 송달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

가) 직접송달(直接送達) : 세무기관의 송달자가 재심서류를 직접 재심참가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재심참가자가 부재시 대리수령인, 같이 살고 있는 성

인가족 또는 소재단위에 수령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참가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수발부서에 수령 확인하게 한다.

- 나) 유치송달(留置送達) : 피송달자가 재심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때 송달자가 관련 담당자를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명서에 접수거부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송달 증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하고 재심서류를 피송달자의 주소 또는 수발부서에 남겨 두는 송달방식을 말한다.
- 다) 위탁송달(委託送達) : 재심기관이 재심서류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기타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송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 라) 우편송달(郵寄送達) : 재심기관이 우편국을 통하여 재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재심참가자에게 보내는 송달방식을 말한다.

행정재심서는 송달을 통하여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피신청자와 신청자는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피신청자가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을 지연할 경우 재심기관 또는 관련 상급 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 내에 기소하지도 않고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도 않거나 또는 최종재결의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첫째, 구체행정행위 유지의 행정재심결정. 구체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둘째, 구체행정행위 변경의 행정재심결정은 재심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 2. 세무행정소송

세무행정소송이란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당성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결하게 하는 사법활동을 말한다.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르면 세액 관련 처벌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분쟁은 반드시 세무행정재심을 경과해야 하고, 세무행정재심에 불복할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 가. 세무행정소송의 원칙

행정소송의 일반에서 적용되는 공유의 원칙을 제외하고 세무행정소송은 반드시 기타 행정소송과 같아야 하며, 다음이 몇 가지 특수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1) 인민법원의 특정사안 주판원칙

인민법원은 세무행정 사건에 대하여 부분관할권만이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세무행정 쟁의案만을 수리할 수 있다.

#### 2) 합법성 심사 원칙

세무당국의 권력남용 여부, 세무행정처벌이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었는지의 여부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단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 3) 화해부적용 원칙

세무행정관리권은 국가권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세무당국 자의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도 세무행정소송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화해할 수 없다.

#### 4) 기소지속집행 원칙

당사자는 기소를 이유로 하여 세무당국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 5) 세무당국의 증거제출 책임 원칙

세무행정행위는 세무당국이 일정한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기 때문에 단지 세무당국만이 가장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으면 패소할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증거제출 책임을 진다.

#### 6) 세무당국이 배상을 책임지는 원칙

세무당국 및 공무원이 업무집행이 부당하여 당사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 나. 세무행정소송의 관할

세무행정소송의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급별관할, 지역관할과 재정관할 등 세 가지로 나눈다.

##### 1) 급별관할(级别管辖)

급별관할은 상·하급 인민법원간에 제1심행정사건(一审行政案件)을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는 분담과 그 권한을 말한다. 세무행정소송의 급별관할의 주요 내용은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이 일반적인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하고, 중급·고급인민법원이 본 관할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

할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전국 범위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것이다.

## 2) 지역관할(地域管轄)

지역관할은 동급 인민법원간에 제일심 행정사건을 확정하는 분담과 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가) 일반지역관할(一般地域管轄) : 행정사건은 최초로 구체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거친 사건에 있어서 재심기관이 본래의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했을 경우 재심기관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 나) 특수지역관할(特殊地域管轄) :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피고소재지 또는 원고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다) 전속관할(專屬管轄) : 부동산으로 인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의 양도·임대에 대한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소송은 부동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라) 선택관할(選擇管轄) :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세무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장 먼저 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3) 재정관할(裁定管轄)

재정관할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스스로 재정하는 관할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가) 이송관할(移送管轄) : 인민법원은 접수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접수한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이송해서는 안 된다.

나) 지정관할(指定管轄) :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특수원인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그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법원이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양측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될 때 그들의 공동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한다.

다) 관할권의 이전(管轄權轉移) :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제1심 세무행정사건을 심판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제1심 세무행정사건을 하급법원에 넘겨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급법원은 그가 관할하는 제1심 세무행정사건에 대하여 상급법원이 심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할 수 있다.

#### 다. 세무행정소송의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외에, 세수징관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소송을 접수한다.

- ① 세무기관의 과세행위
- ②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보증금 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명한 경우
- ③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정처벌행위를 포함한다.
  - ㉠ 벌금
  - ㉡ 불법 인쇄한 영수증을 폐기하고 위법소득을 몰수
  -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하여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게 하고 국가의 수출환급세액을 편취할 경우 그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 ④ 세무기관이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금지를 통지한 행위
- ⑤ 세무기관이 취한 세수보전조치
- ⑥ 세무기관이 취한 세수강제집행조치
- ⑦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탁하여 행한 원천징수세액행위

- ⑧ 법정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의 발급과 영수증의 판매를 신청하였으나 세무기관이 발급, 판매를 거부하거나 또는 회신을 하지 않는 행위

## 라. 세무행정소송 참가자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

세무행정소송의 참가인이란 법에 따라 세무행정소송활동에 참가하고 일정한 소송권리를 가지며 상응한 소송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세무행정소송 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구체적으로는 원고, 피고, 제3자 및 소송대리인이 있다.

### 1) 세무행정소송의 원고

원고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참가자를 말한다. 세무행정소송에서 원고로 될 수 있는 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 직접담당자 및 세무기관의 처리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의 사람이 있다.

가) 원고의 권리

나) 원고가 소송 중에 지는 의무는 행위(作为)와 부작위(不作为)의 두 가지가 있다. 행위의 의무란 법률 또는 심판기관이 원고 일방에 일정한 행위를 행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 이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의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소송활동에 참가할 의무, 법원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을 이행할 의무, 법정기간을 지키고 법정의 지휘에 따를 의무 등을 포함한다.

부작위의 의무란 법률 또는 심판기관이 원고 일방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

##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기소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받은 행정기관이다. 세무행정소송활동에서 피고는 항상 세무기관이고, 세무기관을 대표하여 당해 구체행정행위를 실시한 세무업무담당자를 피고로 하여서는 안 된다.

## 3) 제3자

제3자란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구체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참가하게 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구체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다. 즉 제3자와 피고인 세무기관간에는 관리와 피관리의 행정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와는 어떠한 행정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4)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지정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일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명의로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피대리되는 일방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인’이라고 한다. 대리인에 행정소송을 위탁할 경우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부담한다. 위탁대리의 권한범위는 위탁인의 권리 부여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제로는 전권위탁(全權委託)과 부분위탁(部分委託)의 구분이 있는데, 전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부여받은 권리에 의하여 당사자의 실제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지만, 후자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 마. 세무행정소송의 내용과 절차

### 1) 기소(起訴)

세무행정소송의 기소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세무기관의 행정처리결정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행정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 또는 접수거부의 재정을 내리게 된다.

### 2) 심리(審理)와 판결(判決)

법원이 접수한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전의 준비작업을 마친 후에 소송절차는 정식심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심사는 법원이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실질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판결을 위한 기초로 된다. 심리절차는 ① 개정(開庭)의 선포 ② 법정조사 ③ 법정변론 ④ 합의법정(合議庭)의 평가 ⑤ 판결의 선고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이다.

법정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3자의 선후순서대로 그들의 최후의 견을 구하고, 그 다음 합의법정이 평가를 진행하며 합의법정의 평가를 기초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가 제1심판결(一審判決)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심재결(一審裁決)에 불복할 경우 재정서(裁定書)를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제1심판결 또는 재정은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판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유지판결 :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법규의 적용이 정확하여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 안건에 적용된다.
- 나) 철회판결 :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법규의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직권을 초월하고 남용한 경우

에 인민법원은 철회나 부분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 동시에 세무당국이 다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 이행판결 : 세무당국이 법적 직책을 불이행하거나 지행 이행할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판정한다.

라) 변경판결 : 세무행정 처벌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으면 변경을 판결할 수 있다.

### 3) 항소(上诉)와 상고(申诉)

제1심판결과 재정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 양측은 모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그 조건으로는 ①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② 항소의 대상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제외한 기타의 판결과 재정이다. ③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항소장을 사용해야 하고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기본상황, 항소이유 및 청구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항소인은 원심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상응한 항소장 부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직접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 바. 집행과 배상

세무행정소송의 집행은 법원이 국가의 힘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원이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을 실현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집행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원고인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강제집행 둘째, 피고인 행정기관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다.

세무행정배상의 전제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관이 이미 인정하거나 또는 재심기관의 재정을 통하여 본래의 구체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으나, 본래의 구체행정행위가 가져온 손해에 대하여는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즉 세무기관이 보전조치를

부당하게 취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했음에도 세무기관이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배상은 납세자의 합법적 이익에 가져다 준 실제 경제손실이고 일반적으로 화폐 형식으로 보충한다.

### 3. 세무행정배상(稅務行政賠償)

#### 가. 세무행정배상 개요

##### 1) 세무행정배상의 성격 및 특징

세무행정배상은 국가배상 중의 행정배상에 속하며,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정 또는 행정행위가 부당함으로 인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등 세무행정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주어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배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세무행정배상 청구인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인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직무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 가) 피해를 본 납세자와 기타의 세무당사자
- 나) 피해를 본 국민의 승계인,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권리는 이상의 자가 승계한다.
- 다) 본래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피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의 권리는 그 승계자가 승계한다.

### 3) 세무행정배상의 의무기관

세무행정배상의 배상의무기관은 세무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 가) 일반적으로 어떤 세무기관이 위법행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세무기관이 바로 배상의무기관이 된다. 두 개 이상의 세무기관이 공동으로 한 위법행정행위에 있어서 이 두 세무기관이 공동배상기관이 되고, 배상청구인은 그 중 임의의 하나의 세무기관에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상급 세무기관의 행정재심을 거친 경우 최초에 권리침해를 준 세무기관이 배상기관이다. 재심결정이 손해를 가중시켰을 경우 상급기관은 가중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 다) 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할 세무기관이 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세무기관이 배상기관으로 되고,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세무기관이 없을 경우 당해 배상기관을 취소한 세무기관이 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 라)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은 단위와 인원이 납세자 또는 기타 행정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위탁위임을 한 세무기관이 배상기관이다.

#### 나. 세무행정배상의 기본원칙

##### 1) 위법손해배상(違法損害賠償)의 원칙

위법손해배상의 원칙이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비합법적인 구체행정행위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줄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 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직접손실배상(賠償直接損失)의 원칙

세무기관은 구체적인 위법행정행위로 인하여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 당사자의

재산권에 준 직접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 3) 배상금 지불(支付賠償金)을 주요 방식으로 하는 원칙

세무행정배상의 주요 방식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실제 손실의 가치와 손해 정도에 의하여 배상금의 법정계산표준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 4) 先배상 后구상(先賠償后追償)의 원칙

우선 세무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진행하고 다음에 위법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원칙인데, 이는 주로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장을 나타낸다. 세무기관은 손실을 배상한 후 다시 책임을 구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업무인원이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 다. 세무행정배상의 구성요건

세무행정배상을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정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 1)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한 주체는 세무기관과 세무기관의 업무담당자이다.
- 2) 반드시 세무당국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세무행정배상을 구성하는 핵심요건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는 세무기관 및 그 업무담당자가 직권을 행사할 때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세무행정배상 책임을 진다. 둘째, 세무행정배상은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의 행위가 위법임을 전제로 한다. 직무상 위법행위에는 구체행정행위를 한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것, 구체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법규 또는 규장을 잘못 적용한 것,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서 집행한

것, 직권초월 및 남용 등이 있다.

- 3) 침해대상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기타 행정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이어야 한다. 납세자 또는 기타 행정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세무기관은 배상의무를 지지만 비합법적인 이익에 대하여는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세무기관이 영수증을 불법 인쇄하는 도구를 몰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할 것이지만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반드시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받은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즉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배상은 손실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손실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 때문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받는 것은 배상을 구성하는 필수법률요건이다.
- 5) 권리침해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간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세무기관의 위법행정행위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자 등 행정상대방의 손실은 논리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세무기관의 행정배상을 구성하는 법정 전제조건이다. 위법행위와 실제 손실이 있다고 하여 꼭 행정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위법행위가 반드시 현실에서 발생한 손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행정배상을 하게 된다.
- 6) 절차상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상청구인은 우선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세무행정배상은 국가배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은 주로 「국가배상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세무행정배상의 전제는 납세자 등 행정상대방이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배상청구는 단독으로 세무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고 세무행정재심에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세무행정소송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

## 라. 세무행정배상의 범위

세무행정배상의 범위란 국가가 세무행위가 초래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고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가를 정하는 것, 즉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말한다.

### 1) 세무행정배상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 가) 조세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액 및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
- 나) 위법으로 세수보전조치와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 다) 위법으로 세무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 라) 위법으로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한 경우

### 2) 세무기관이 행정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 가) 세무기관 업무담당자가 행한 직무와 무관한 행위
- 나)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행정 상대방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다)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행정 상대방의 태만과 착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라)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경우.

## 마.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시효, 절차와 표준

### 1) 세무행정배상의 청구시효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행정배상 청구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시효는 2년으로서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한 행위가 법에 의하여 위

법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배상 청구인이 배상청구시효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중단의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배상청구시효는 계속하여 계산한다.

## 2) 세무행정배상의 절차

- 가) 세무행정배상의 비소송절차 :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배상 청구인은 우선 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할 세무기관에 배상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세무행정배상의 필수절차이다. 배상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기할 수도 있다. 배상청구는 또한 단독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세무행정재심 또는 세무행정소송에서 함께 제기할 수도 있다. 배상의무가 있는 세무기관은 배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정 배상방식과 표준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거나 또는 배상청구인이 배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나) 세무행정배상의 소송절차 : 무배상의무기관이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인이 배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로부터 세무행정배상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무행정배상소송’과 ‘세무행정배상의 비소송절차에서 규정한 세무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세무행정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 우선, 세무행정배상소송의 제기는 반드시 세무기관의 선행처리를 조건으로 한다. 다음으로, 세무행정소송은 조정원칙을 적용하지 않지만 세무행정소송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인 세무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세무행정배상소송에서 손해사실 부분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게 된다.

### 3) 배상의 표준

세무행정배상은 배상금의 지불을 주요방식으로 한다. 만약, 배상의무기관이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통하여 국가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재산을 반환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위법으로 세액을 징수하고 체납금·벌금을 추징할 경우 세액, 체납금 및 벌금을 반환해야 한다.
- 나) 위법으로 소득을 몰수하거나 또는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물을 징수하고 비용을 분담한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재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재산의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다) 재산을 차압, 압수 또는 동결하고, 재산에 대한 차압, 압수, 동결을 해제하면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또는 분실한 경우 원상회복시키거나 또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라) 반환해야 할 재산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마) 반환해야 할 재산이 분실된 경우, 상응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바) 재산을 이미 경매한 경우, 경매소득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사) 재산권에 대하여 기타의 손해를 준 경우 직접손실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아)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위법으로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납세자 또는 세무당사자의 인신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상황 및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계산표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다.

## 참고문헌

### 한국문헌

- 국세청,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2008. 9.
- 김경환, 『중국세법개론』, 학고방, 2007. 10.
- 오현석·최인순 공저, 『중국진출기업의 세무·회계 실무』, (주) 영화조세통람, 2008. 5.
- 이상일, 『중국의 회계와 세무』, 삼정KPMG, 2004. 10.
- 崔达坤·郑庆谟 (编著), 『中国法令集(上卷)』, 财团法人 大陆研究所, 1995.
- 한국조세연구원 (편저), 『중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한국조세연구원, 2006. 7.
- 한상국,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5. 6.
- 한상국, 『대중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1997. 12.
- 한상국,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7. 7.
- 한상국,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7. 9.

### 중국문헌

- 姜明安 (主编), 『行政法与行政诉讼法(第三版)』, 北京大学出版社, 2007. 1.
- 国家税务总局 (编), 『中华人民共和国税收基本法规(2009年版)』, 中国税务出版社, 2009. 1.
- 国家税务总局税收科学研究所 (编著), 『中国税收实务 - 2006年修订版』, 中国税务出版社, 2007. 3.

- 国家统计局(编),『2007 中国统计摘要』,中国统计出版社,2007. 5.
- 国家统计局(编),『2009 中国统计摘要』,中国统计出版社,2009. 5.
- 金鑫(编),『中国税收实务全书』,经济管理出版社,1995.
- 范 坚·李 丽凤,『税收征收管理实务』,中国财政经济出版社,2004. 12.
- 施正文,『税法要论』,中国税务出版社,2007. 6.
- 刘左,『2009年 中国税制概览』,经济科学出版社,2009. 3.
- 张明楷,『刑法学(第三版)』,法律出版社,2007. 8.
- 张宝云·张 捷·蒋晓华,『新企业所得税法及实施条例读解及操作实务』,中国税务出版社,2007. 12.
- 翟继光,『新企业所得税法及实施条例实务操作及筹划指南』,中国法制出版社,2008. 1.
- 翟继光 (主编),『<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营业税·消费税暂行条例>释义与实用指南及案例精解』,立信会计出版社,2008. 11.
- 中国法制出版社,『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注释与配套』,2008. 9.
- <中国税收征纳手册>编写组(编),『中国税收征纳手册』,中国财政经济出版社,2006. 12.
- 中国注册会计师会(编),『税法』,经济科学出版社,2009. 4.
- <中华人民共和国税法典>编审委员会(编),『中华人民共和国现行税收法律法规汇编(2008年权威注释版)』,立信会计出版社,2008. 3.
- 中华人民共和国 财政部 税政司(编),『中国税收制度(2004)』,企业管理出版社,2004, 9.
- 楼继伟(主编),『新中国50年 财政统计』,经济科学出版社,2000. 4.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 -

---

---

2009년 10월 20일 인쇄  
2009년 10월 27일 발행

저 자 한상국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 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42-4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3,000원

